

PART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01	매개시설	44
02	내부시설	116
03	위생시설	216
04	안내시설	284
05	기타시설	310
06	기타설비	394
07	종합평가	402

1 매개시설

1.1 접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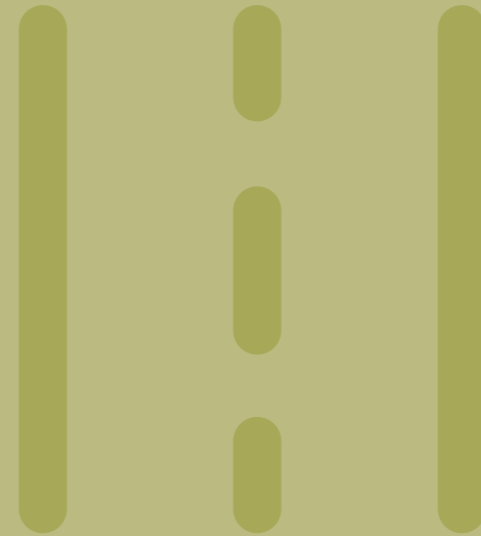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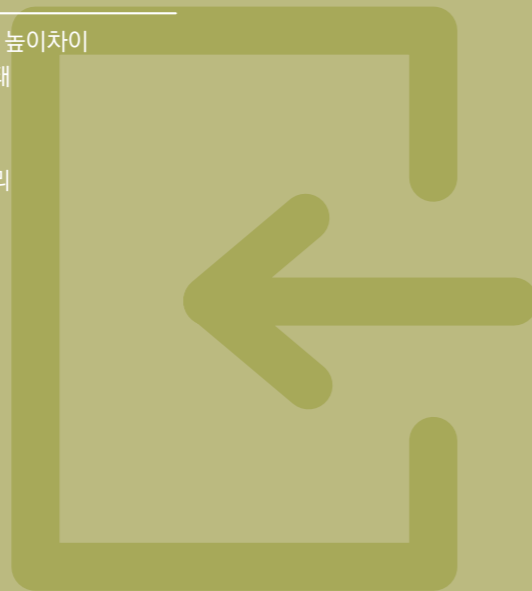
-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 1.1.2 유효폭
- 1.1.3 단차
- 1.1.4 기울기
- 1.1.5 바닥 마감
- 1.1.6 보행장애물
- 1.1.7 덮개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1.2.2 주차면수확보
- 1.2.3 주차구역크기
- 1.2.4 보행안전통로
- 1.2.5 안내 및 유도표시

1.3 출입구(문)

- 1.3.1 출입구(문)의 높이차이
- 1.3.2 출입문의 형태
- 1.3.3 유효폭
- 1.3.4 단차
- 1.3.5 전면 유효거리
- 1.3.6 손잡이
- 1.3.7 경고블록



1.1 접근로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차량과의 간섭 없이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평가

배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로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로	점수
최우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6.0
우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4.8
일반	주출입구 접근로만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4.2

-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는 계획 단계부터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대지내로 진입한 이후에 차량과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주출입구까지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한 경우에 해당함
-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는 보행자 우선성을 위한 재질과 색상을 달리 하여 함
- 지형구조상 부출입구가 주출입구를 대신할 경우, 부출입구를 주출입구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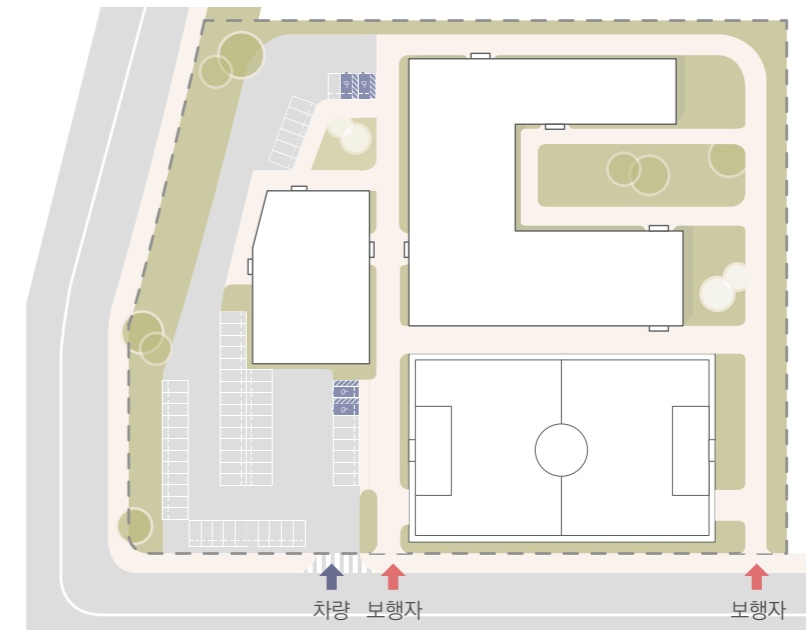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는 계획 단계부터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대지내로 진입한 이후에 차량과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주출입구까지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한 경우에 해당함
- 2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는 보행자 우선성을 위한 재질과 색상을 달리 하여야 함
- 3 모든 출입구(문) 및 대지 내 계획된 접근로 전체를 평가함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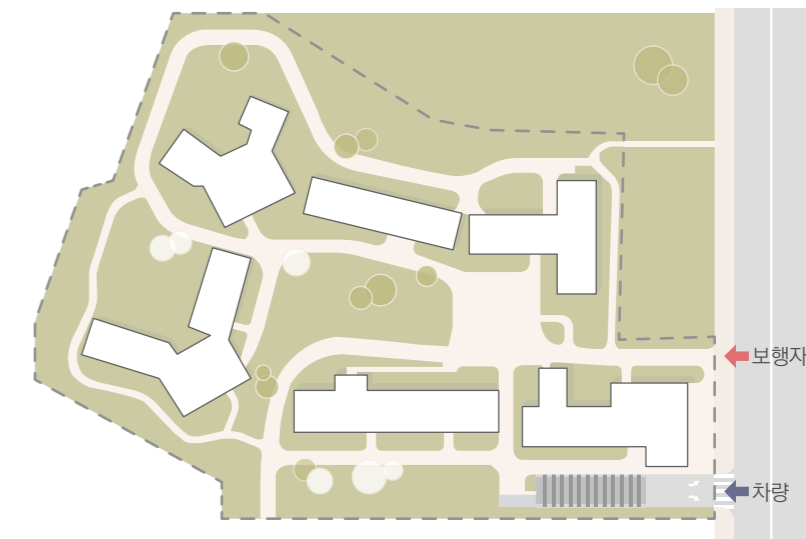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모든 출입구 중 계획단계부터 50%이상 보행자와 차량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대지 내로 진입한 이후에 차량과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출입구까지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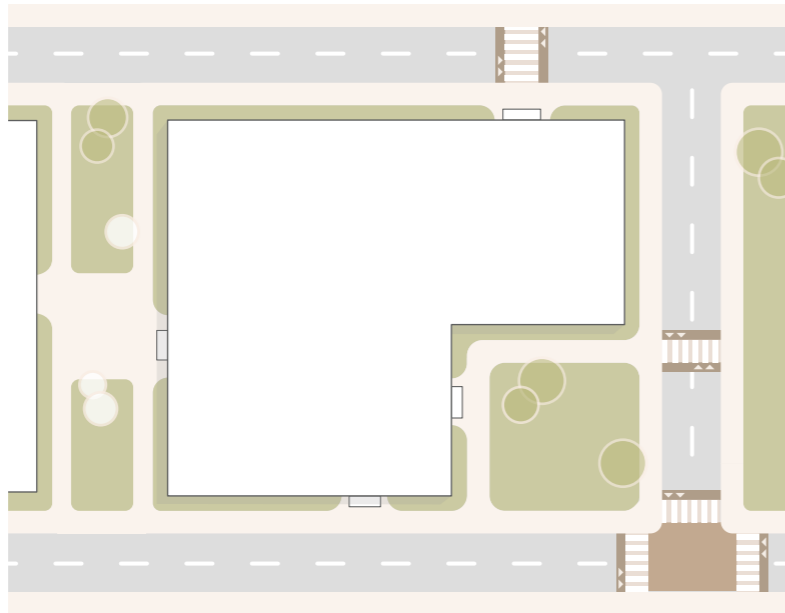
공동주택



- 공동주택에 모든 출입구 중 계획단계부터 50%이상 보행자와 차량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대지 내로 진입한 이후에 차량과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출입구까지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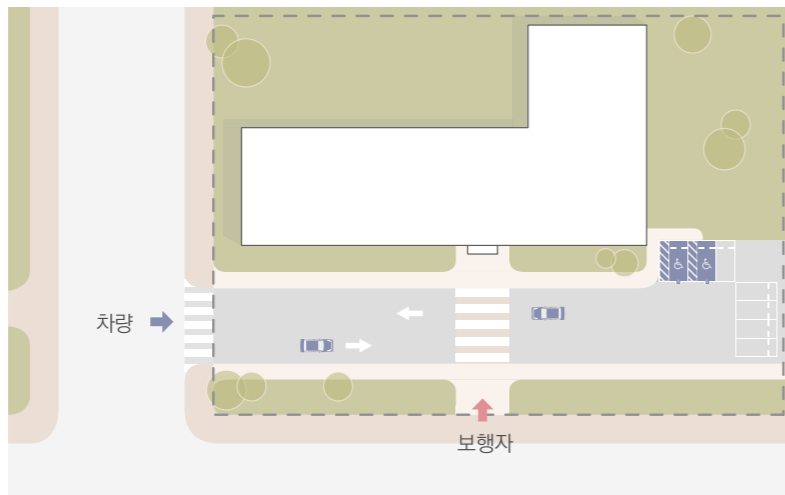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는 보행우선을 위한 재질과 색상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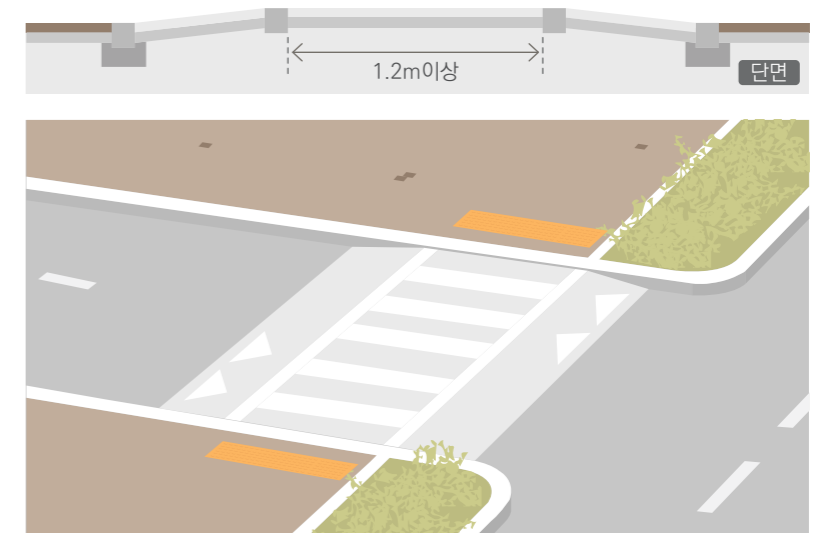
주출입구 접근로만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 주출입구 접근로만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는 보행우선을 위한 재질과 색상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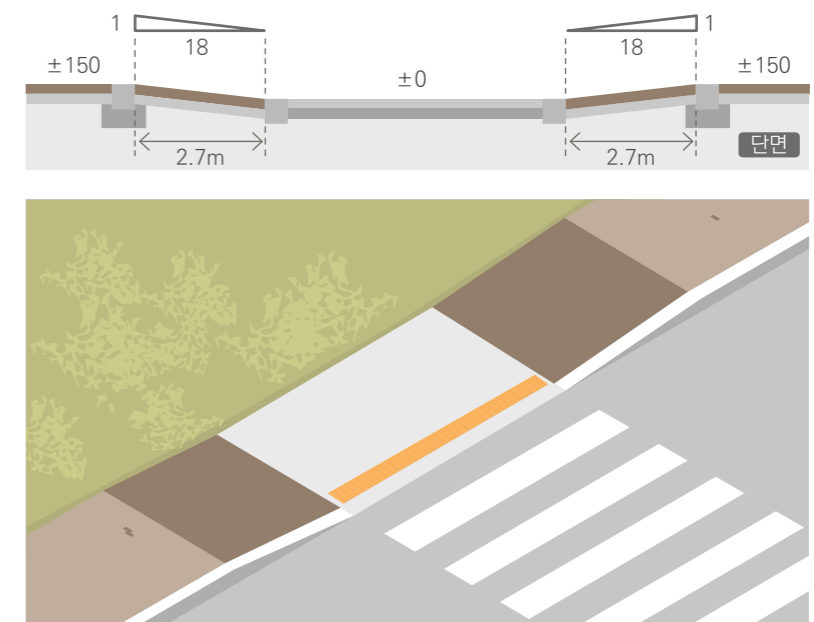
고원식 횡단보도



-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는 보행자 우선을 위한 재질과 색상을 달리 하여야 합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보행구간은 수평면으로 계획하고 최소 1.2m이상 유효폭 확보 및 점형블록을 폭만큼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전체 턱낮춤 방식



1.1 접근로

1.1.2 유효폭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접근로의 유효폭 확보 정도로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접근로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의 유효폭	점수
최우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3.0
우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	2.4
일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2.1

- 접근로의 유효폭은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 전체 유효폭 중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함
- 접근로의 유효폭이 1.2m이상일 경우 휠체어와 사람의 교행이 가능하고, 1.5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며, 1.8m이상일 경우 휠체어끼리의 교행이 가능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의 폭이 1.8m이상인 경우 최우수로, 폭이 1.5m이상인 경우 우수로 평가하며, 폭이 1.2m이상 확보한 경우는 일반으로 평가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접근로의 유효폭은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 전체 유효폭 중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함
- 2 접근로의 유효폭은 경계석을 제외한 바닥마감을 기준으로 측정함
- 3 굴절구간 및 막다른 접근로의 경우 휠체어 회전공간 1.5m×1.5m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4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5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 6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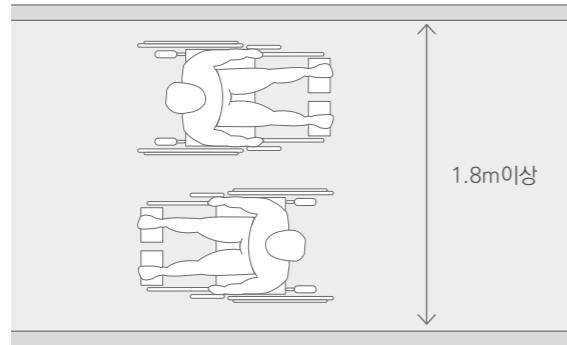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호가목(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호가목(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호가목(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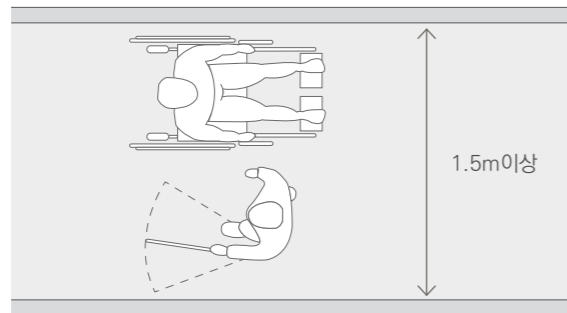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 1.8m이상일 경우 휠체어끼리의 교행이 가능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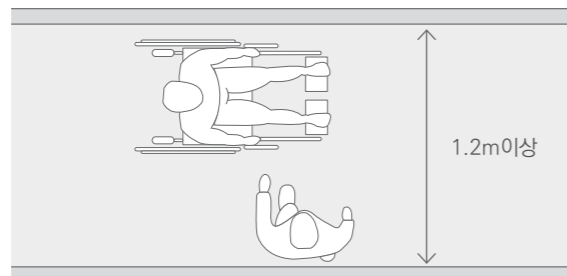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



· 1.5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과 교행이 가능합니다.

★ 일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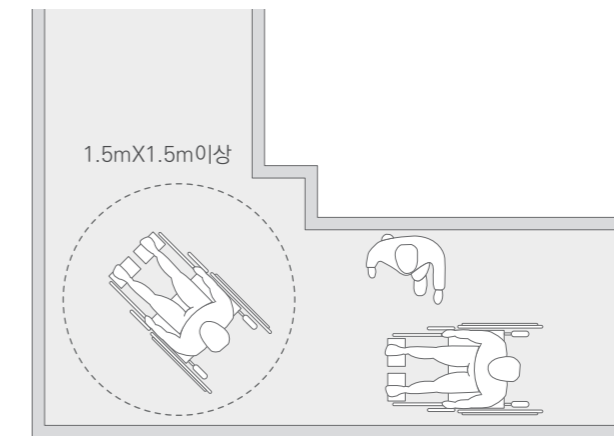


· 1.2m이상일 경우 휠체어와 사람의 교행이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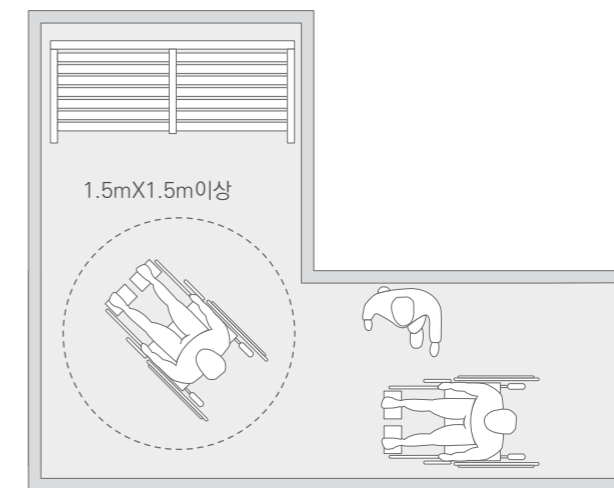
휠체어 회전공간

굴절구간



· 접근로의 굴절구간은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회전공간(1.5m×1.5m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막다른 구간



· 접근로의 막다른 구간은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회전공간(1.5m×1.5m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A 접근로 유효폭

노상시설 등 보행장애물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말한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7. 12.(공공건물·공원·공동주택)]

1.1 접근로

1.1.3 단차

세부평가기준

- 평가목적** 접근로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 평가방법** 대지 내를 연결하는 모든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상의 단의 높이차이 정도로 평가
- 배점** 3점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접근로의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의 단차	점수
최우수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3.0
우수	전체구간 중 일부에 단차 2cm이하	2.4

- 접근로의 단차는,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 단차가 제일 큰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에 단차가 없는 경우 최우수로, 활동공간에 단차가 2cm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접근로의 단차는,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 단차가 제일 큰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2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3 접근로 바닥면에 2cm이하의 단차가 발생할 경우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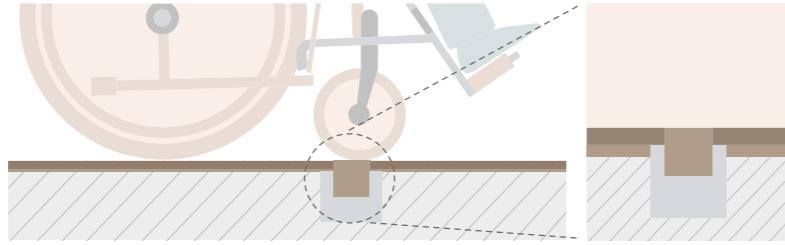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호나목(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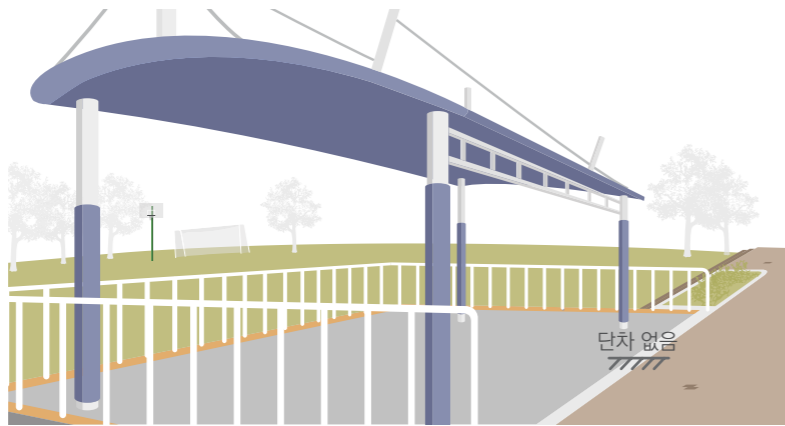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바닥마감과 경계석



· 접근로 바닥마감과 경계석의 단차를 제거하여 무단차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조희대



· 조희대와 접근로의 접점 부분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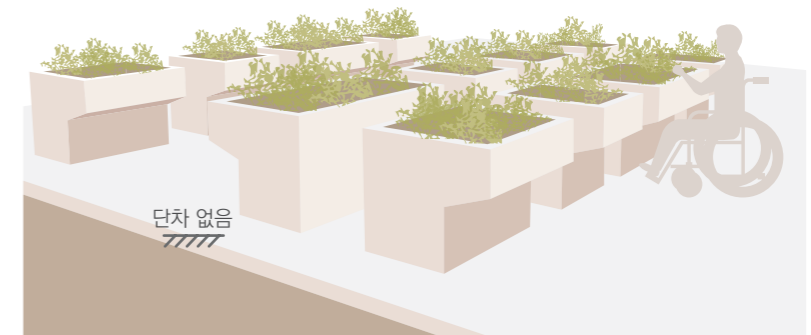
· 쉼터 등 걸터앉는 형태의 경우 일부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접근로와 휴게공간은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질재료 마감



· 바닥마감이 서로 다른 이질재료의 접점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단차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텃밭



· 텃밭을 구획할 때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일부분의 하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전거 보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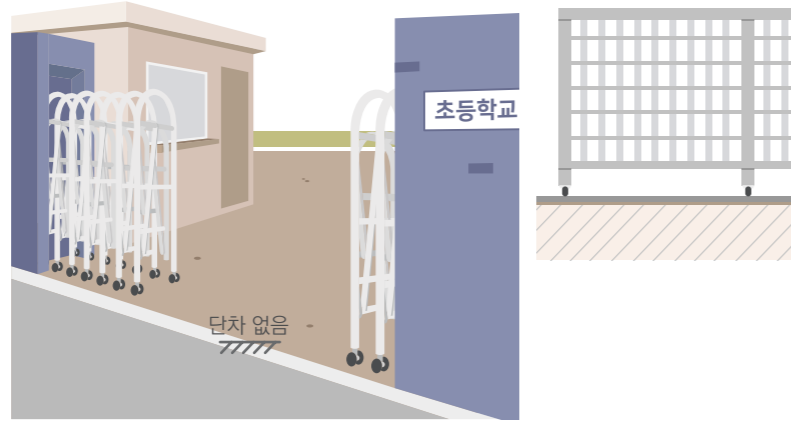
· 자전거 보관소는 단차 없이 설치하고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알코브(凹) 방식으로 보행로와 간섭 없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벤치



· 휴게공간은 접근로와 단차 없이 설치하고 보행자와 간섭되지 않도록 녹지공간에 알코브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접이식 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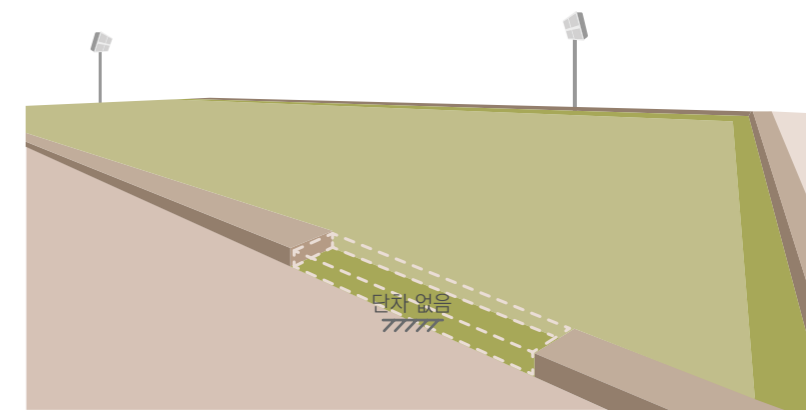
· 출입구에 문을 설치할 경우 바닥에 레일이 없는 무레일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레일을 매립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부 운동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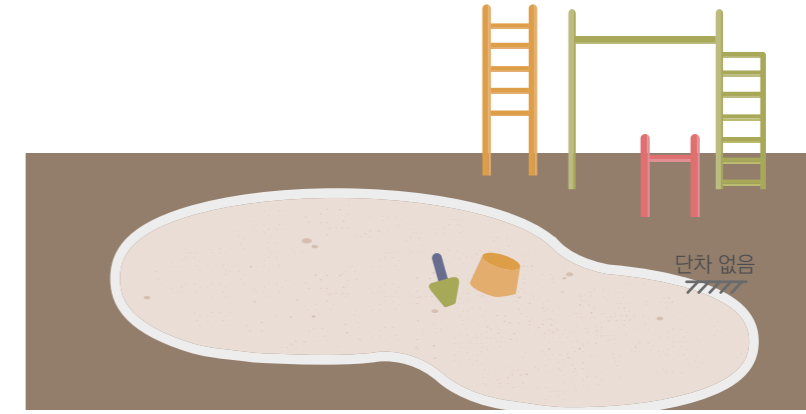
· 운동시설 공간과 접근로 바닥마감의 접점은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게이트볼장



· 게이트볼장에 공의 이탈방지를 위해 설치된 턱은 일부분을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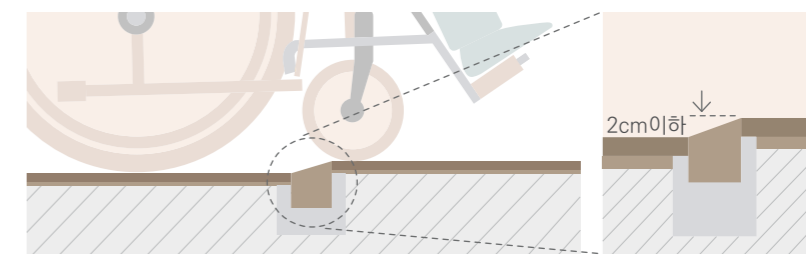
모래놀이터



· 모래놀이터는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무단차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 우수

전체구간 중 일부에 단차 2cm이하



· 접근로의 모든 단차는 무단차로 계획하거나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경우 2cm이하로 계획하고 턱낮춤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1.1 접근로

1.1.4 기울기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의 정도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접근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의 기울기	점수
최우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24(4.17%/2.39°)이하	3.0
우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8(5.56%/3.18°)이하	2.4

- 접근로의 기울기는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에 경사가 있는 경우 경사가 제일 급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에 기울기가 1/18(5.56%/3.18°)이하인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기울기가 1/12(8.33%/4.76°)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접근로의 기울기는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에 경사가 있는 경우 경사가 제일 급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2 경사 기울기는 한방향으로만 설치하고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3 기울기 외 2.4 경사로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4 접근로에 계단이 설치될 경우 경사로와 같이 설치하고 계단 설치 기준은 2.3 계단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5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보도로부터 직접 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 또는 보도의 공간에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평가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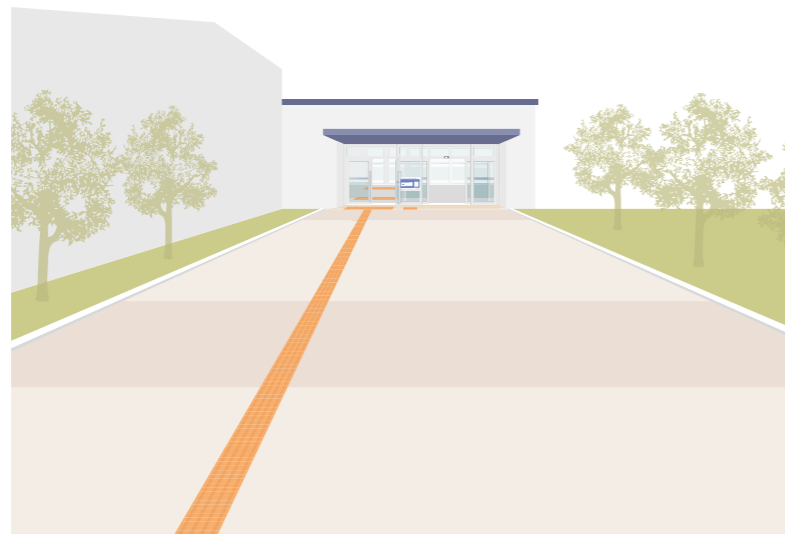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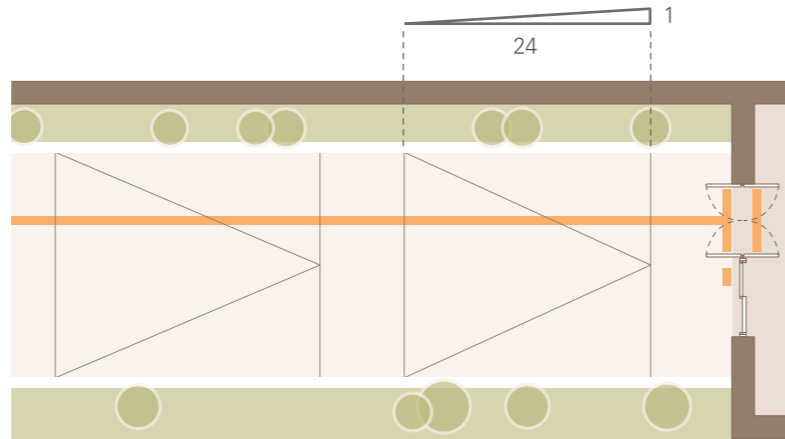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호나목(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최우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24(4.17%/2.39°)이하

경사로 1/24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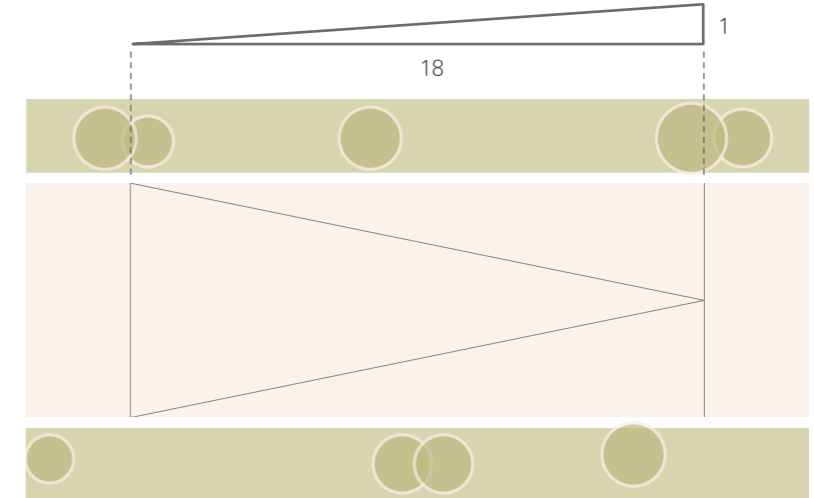


· 접근로의 전체구간 기울기는 1/24 이하로 설치하고 30m마다 수평참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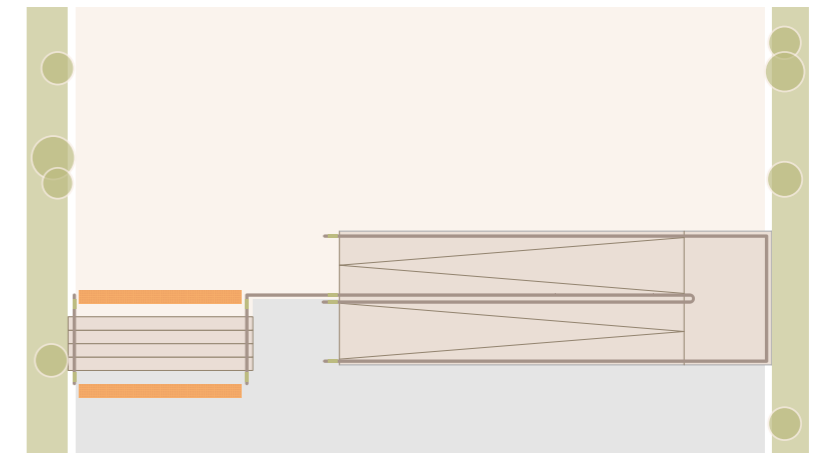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8(5.56%/3.18°)이하

경사로 1/18 이하



· 접근로의 전체구간 기울기는 1/18 이하로 설치하고 높이 30m마다 수평참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단+경사로



· 접근로의 경사로를 직선 방향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굴절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용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계단과 함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 접근로

1.1.5 바닥 마감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마감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정도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접근로의 바닥 마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의 바닥 마감	점수
최우수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인 경우임	3.0
우수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인 경우임	2.4

- 출입구 접근로의 바닥이 여러 재료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 그 마감 정도가 가장 미비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줄눈이 0.5cm이하이며 미끄럽지 않은 평탄한 재료로 마감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줄눈이 1cm이하이며 미끄럽지 않은 평탄한 재료로 마감된 경우 우수로 평가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출입구 접근로의 바닥이 여러 재료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 그 마감 정도가 가장 미비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2 모든 접근로 바닥마감은 평탄하게 설치하여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아야 함
- 3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 활용하여 출입구 활동공간으로 평가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호라목(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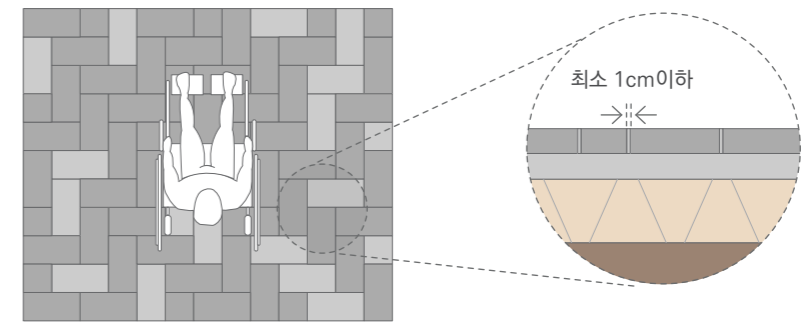
제1호라목(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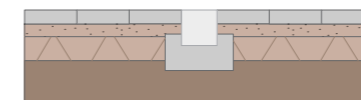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인 경우임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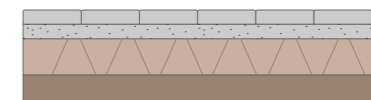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인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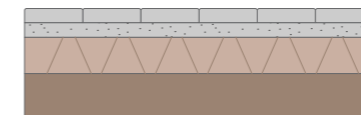
- 바닥마감을 평탄하게 설치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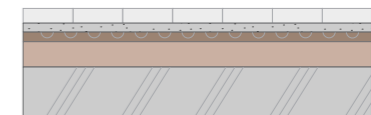
재료분리경계석



소형고압블럭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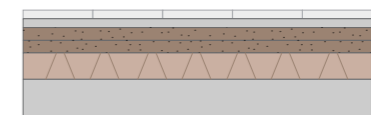
화강석판석포장



화강석통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1



인조화강석블록포장2

- 바닥마감을 평탄하게 설치하고 줄눈이 있는 경우 최소 1c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1 접근로

1.1.6 보행장애물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차량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위험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 되고,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정도로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 및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장애물	점수
최우수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의 장애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1.0
우수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이 연속적으로 가능함	0.8

· 가로수가 있는 경우 높이 2.1m까지 가지치기 되어야함

구분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점수
최우수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차량과 보도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확보	1.0
우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0.8

- 접근로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분리 항목은 최우수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내에서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단, 보도의 일부를 차량과 완전분리한 경우는 최우수로 평가하나 완전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접근로에 가로수가 있는 경우 지면에서높이 2.1m까지 가지치기가 되어야 함
- 2 접근로에 CCTV, 가로등, 조경등, 안내판 등은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접근로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함
- 3 접근로에 기둥, 프로젝트창호, 계단하부 등이 설치될 경우 기둥 바닥면에 W0.4~0.6m 이상 이색, 이질 조치를 하거나 접근방지 난간 등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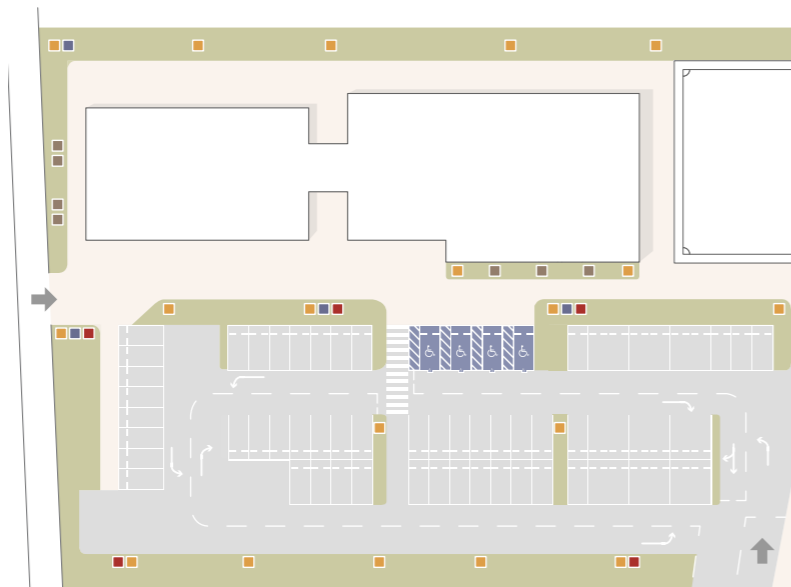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호다목(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속·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제1호다목(2) 연속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제1호마목(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호마목(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보행장애물]

★★★ 최우수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의 장애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가로등 ■ 안내판 ■ CCTV ■ 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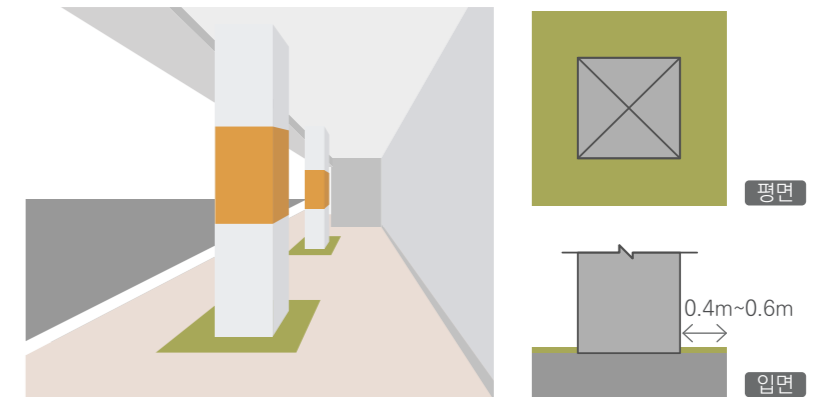


· 가로등, CCTV, 안내판 등은 접근로와 간섭되지 않도록 녹지공간 등에 설치하여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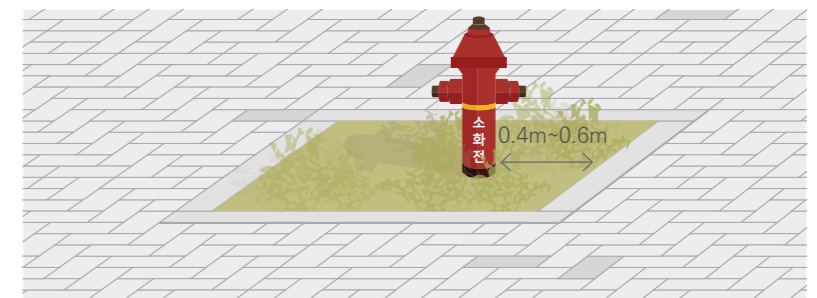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이 연속적으로 가능함

기둥 충돌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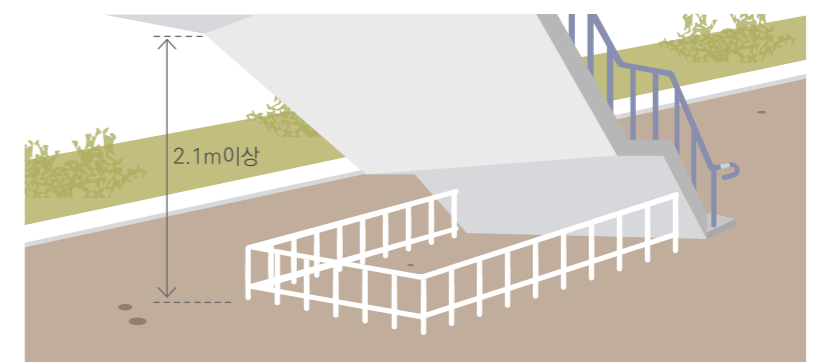
· 보행로에 기둥이 설치될 경우 충돌방지를 위해 기둥 바닥면에 W:0.4m~0.6m 이격, 이질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소방 관련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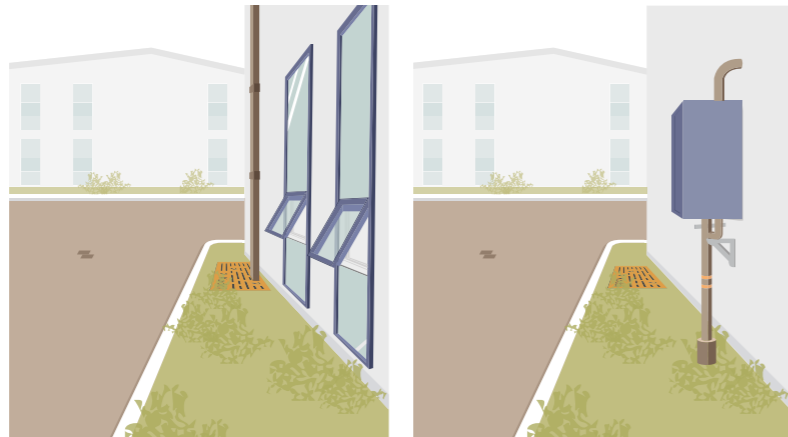
· 접근로에 소방 관련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주변 바닥마감과 달라하여 충돌방지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계단하부 충돌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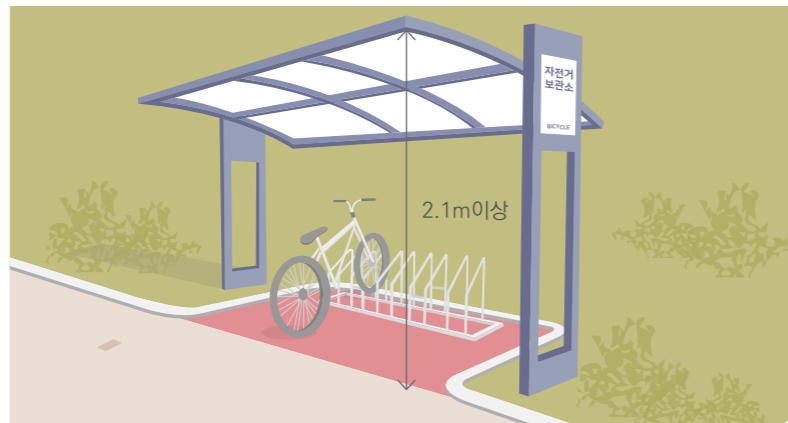
· 계단 하부의 경우 바닥면 기준 높이 2.1m이내에 충돌방지 조치를 위한 접근방지 난간을 높이 0.6m이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외부 돌출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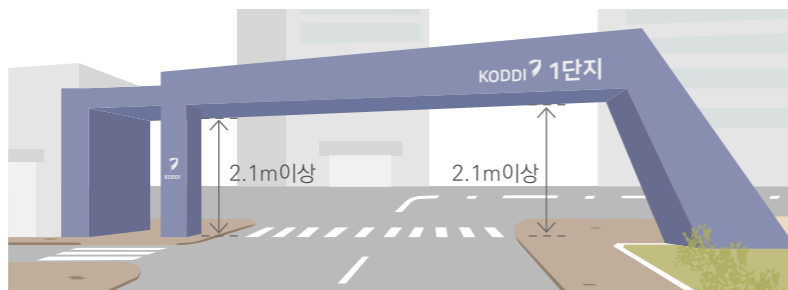
- 프로젝트창호, 가스메타함 등 외부 돌출된 시설물의 경우 접근로와 간섭이 되지 않도록 녹지공간 등에 설치하여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보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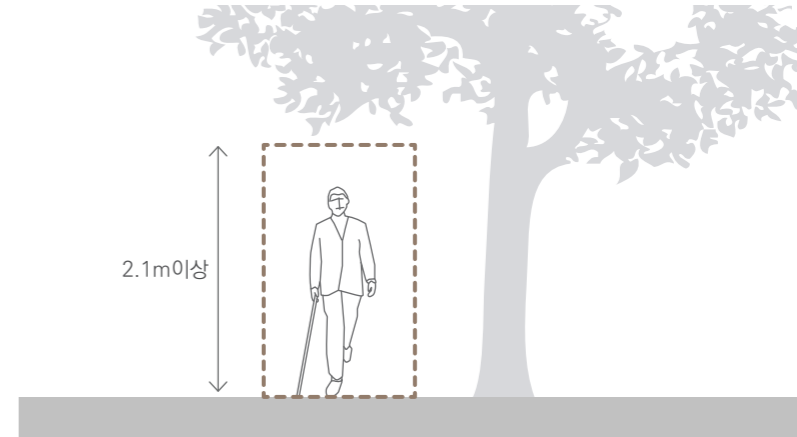
- 접근로에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할 경우 접근로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 코브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출입구 (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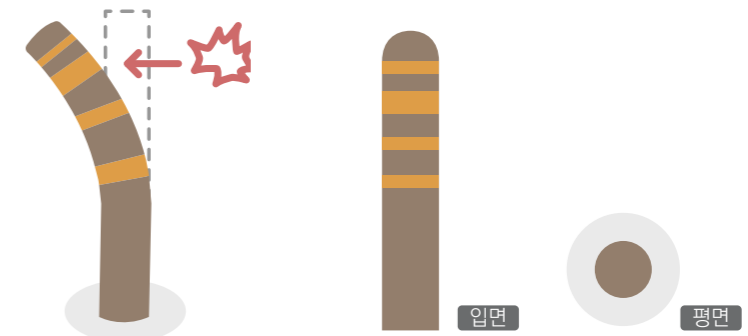
- 아파트와 같이 문주 디자인을 하여 설치할 경우 접근로와 구조물이 간섭이 되지 않는 형태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 접근로에 가로수가 설치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높이 2.1m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합니다.

차량진입 억제 말뚝



- 횡단보도 또는 접근로에 차량 진입억제 말뚝을 설치할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제7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보행장애물

보도 등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으로 장애인들의 보도 상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지칭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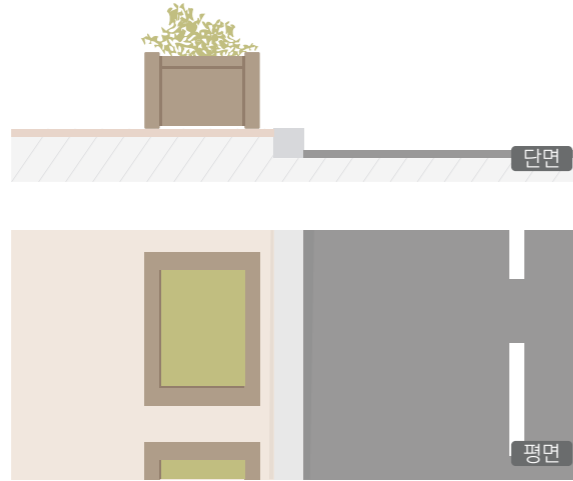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7. 12.(공공건물·공원·공동주택)]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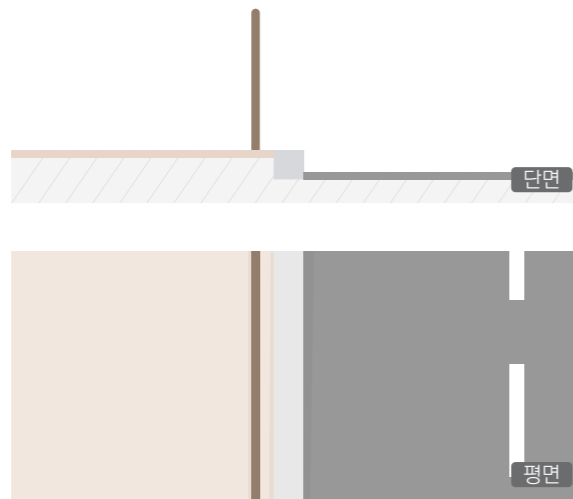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차량과 보도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확보

보·차도 공작물



·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을 설치하여 높이를 달리하고 식재공간을 추가로 설치하여 차량과 보도가 완전히 분리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보·차도 울타리



·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을 설치하여 높이를 달리하고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여 차량과 보도가 완전히 분리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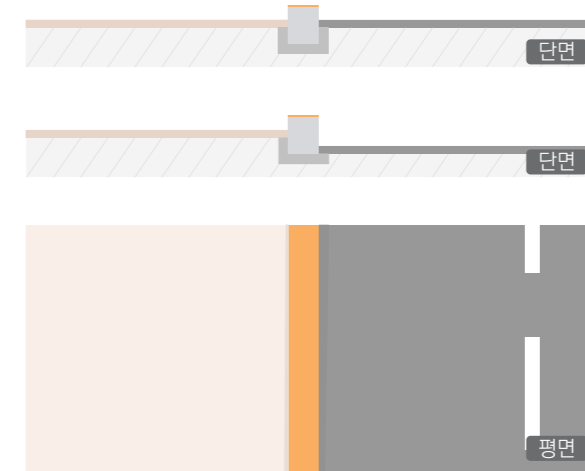
★★ 우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보·차도 경계석



·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을 설치하여 높이를 달리하고 재질과 색상을 모두 구분하여야 합니다.



· 보행통로와 차도의 방향이 동일할 경우 설치 가능하고 주차장에서는 설치를 지양합니다. 돌출된 경계석 상단에 색상을 달리하여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차량과 보도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대지내로 진입한 이후에 차량과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주출입구까지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한 경우를 말한다.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산출기준]

1.1 접근로

1.1.7 덮개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를 평가하여 배수로 덮개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이나 배수로 격자구멍 또는 틈새에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이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배수로 덮개	점수
최우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	2.0
우 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격자구멍(틈새)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1.6

- 출입구 접근로 상에 배수로 등과 같은 빠질 위험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덮개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빠질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덮개를 설치하고 격자 구멍 등이 양방향으로 2cm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 2 덮개에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 3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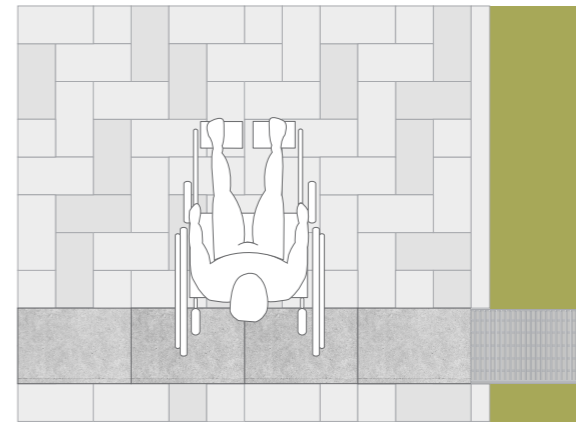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호라목(3)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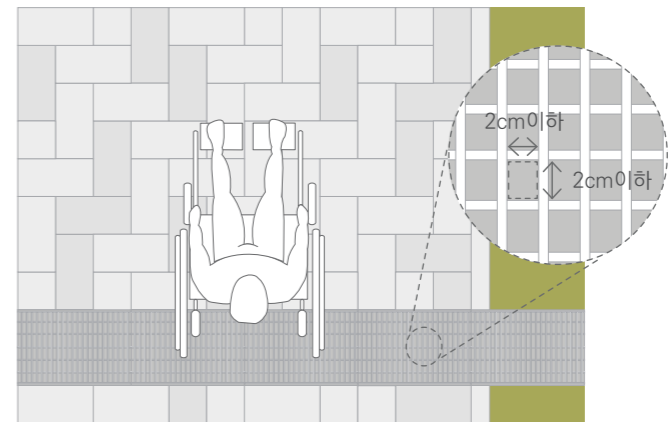
높이차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



- 접근로의 바닥과 배수로 덮개의 표면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 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격자구멍(틈새)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 접근로의 바닥과 배수로 덮개의 표면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 등은 양방향 모두 2cm이하인 덮개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후 안전하게 주출입구 또는 승강설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평가
배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 경로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점수
최우수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6.0
우수	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	4.8
일반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울기가 1/12(8.33%/4.76°) 이하로 설치	4.2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경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 평가범주)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다른 요건이 만족되면 일반으로 평가함
- 기울기 1/24(4.17%/2.39°) 이하는 수평접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건축물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함
- 2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함
- 3 1.1 접근로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4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2.4 경사로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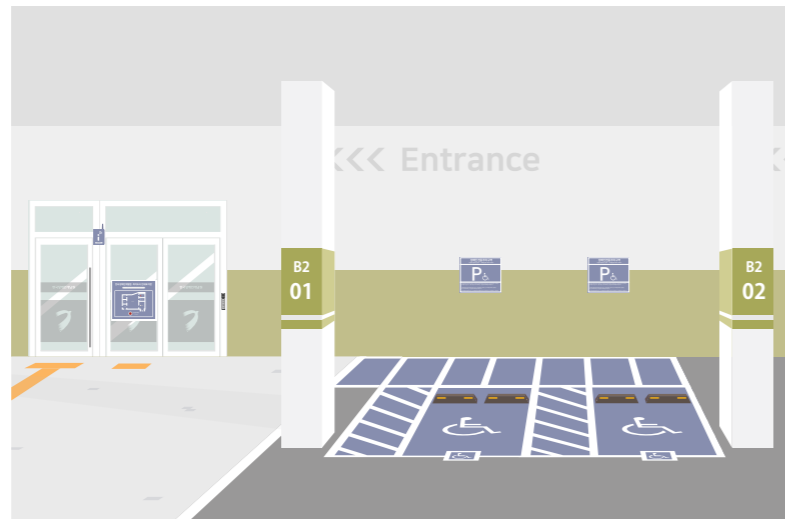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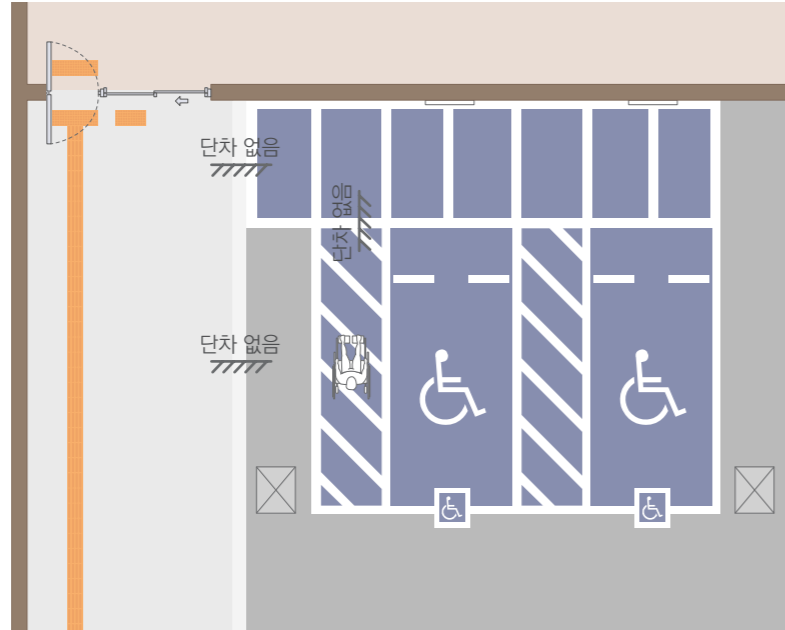
제4호가목(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가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호가목(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4호가목(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최우수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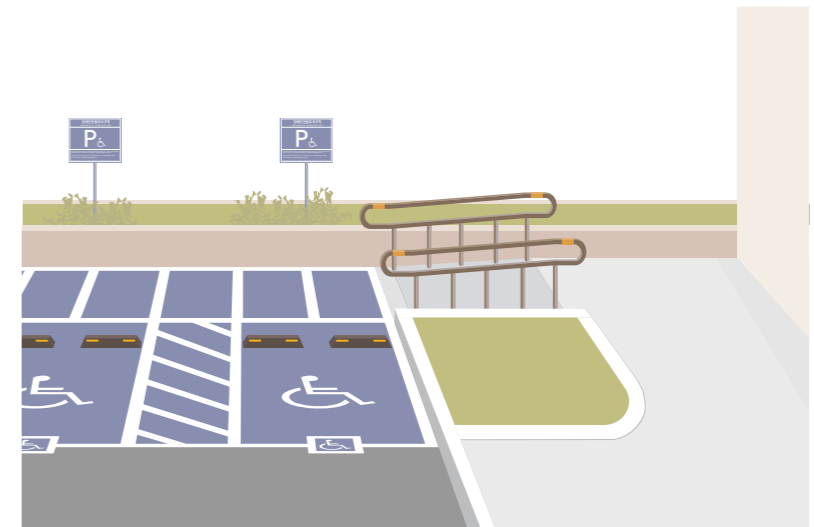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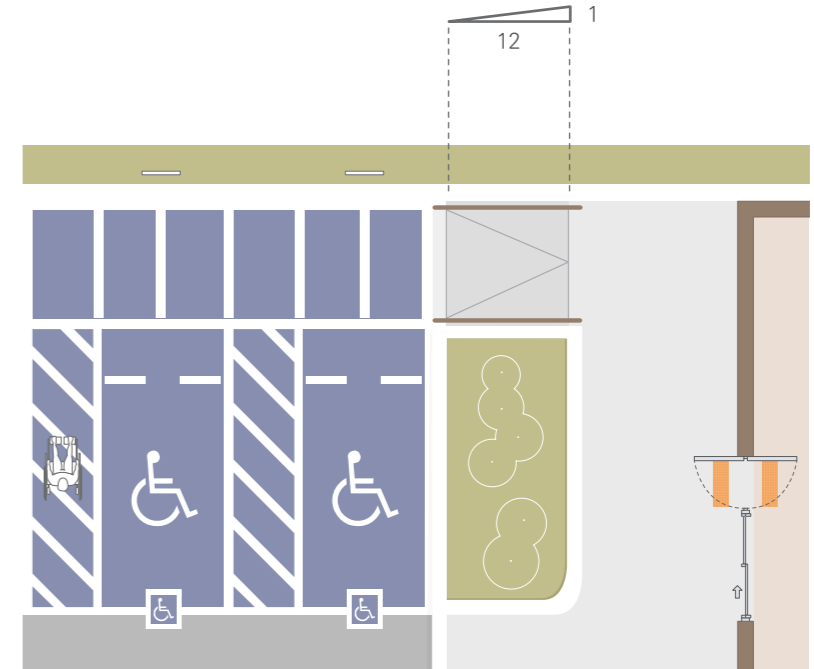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



·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을 설치하는 등 휠체어사용자가 눈이나 비를 맞지 않고 출입구까지 경사로 없이 수평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 일반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울기가 1/12(8.33%/4.76°) 이하로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에서 시설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 높이차이를 없애야 하며, 경사로는 2.4 경사로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2.2 주차면수 확보

세부평가기준

-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를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전용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함
-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정도 평가
- 배점** 4점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주차면수 확보	점수
최우수	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	4.0
우수	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3.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름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산출기준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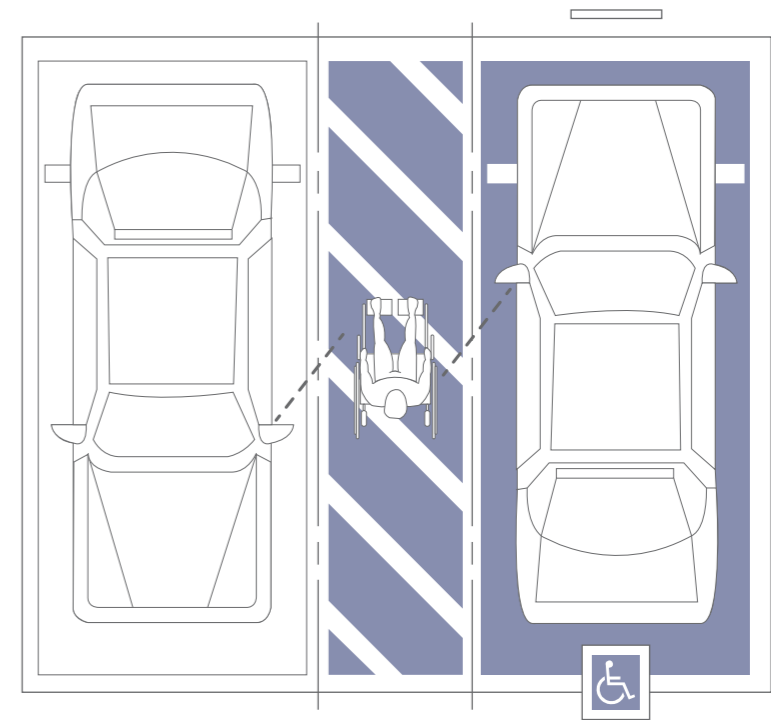
- 1 일반주차구역을 1면 이상 설치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최소 1면 이상을 의무 설치하여야 함
 - 2 두 개 이상의 동이 계획된 경우 각 동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승강설비로 차량의 교행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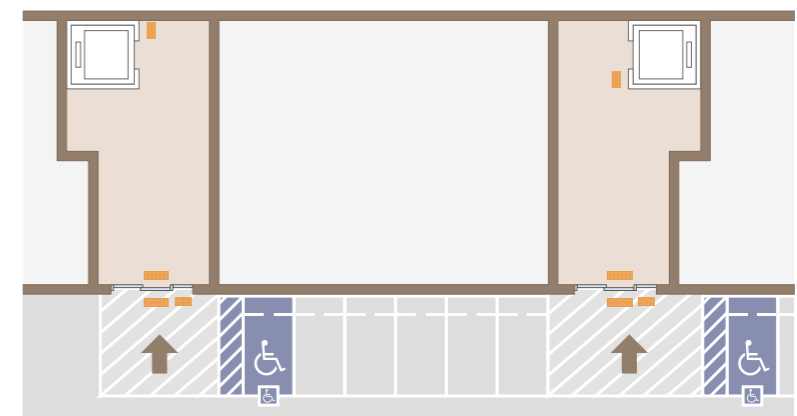
비고 제10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우수
★★ 우수

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
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 일반주차구역을 1면 이상 설치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최소 1면 이상을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동, 두 개 이상의 승강설비가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차량과 간섭이 발생되지 않는 위치에 각각 최소 1면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필수로 설치하고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 경로에 대한 보행자구역 안전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2.3 주차구역 크기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을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 평가

배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주차구역 크기의 주차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주차구역 크기	점수
최우수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4.0
우 수	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3.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휠체어 활동공간을 포함한 주차구역 크기로 평가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산출기준 기본사항

1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수평면에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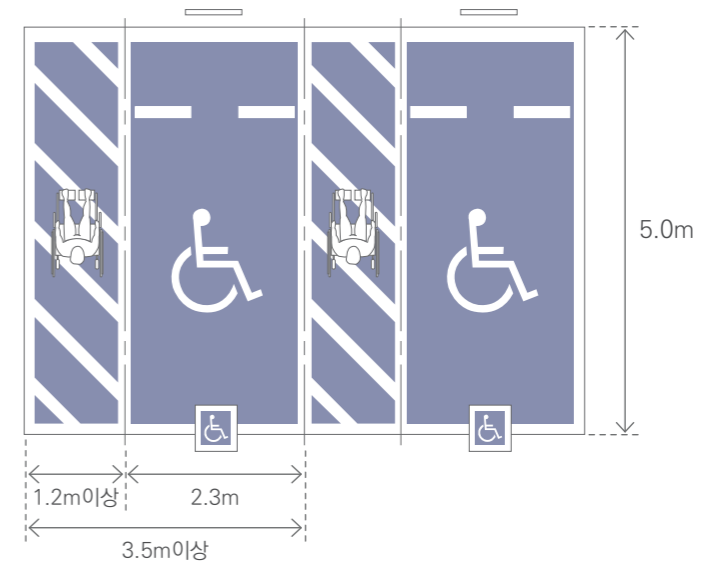
제4호나목(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호나목(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호나목(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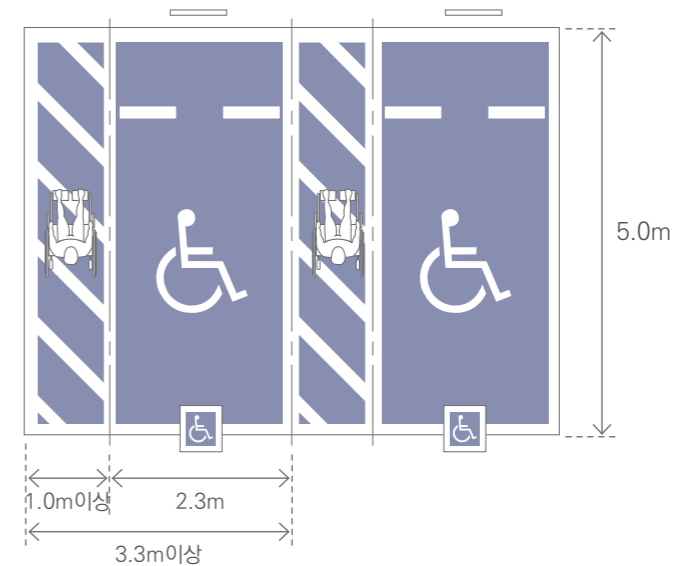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 주차구역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구역선이 중첩되는 부분은 중심선 기준으로 크기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 휠체어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자동차 문을 활짝 열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장하는 폭 치수는 3.5m 이상입니다.

★★ 우 수

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 주차구역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구역선이 중첩되는 부분은 중심선 기준으로 크기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2.4 보행안전통로

세부평가기준

-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를 평가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함
-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보행안전통로의 폭 및 연속성 정도 평가
- 배점** 4점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통로	점수
최우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4.0
우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3.2
일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2.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닐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및 차량간섭 없이 연속되어야 하며, 차량과의 간섭부분이 생길지라도 보행우선의 점점계획이 있을 경우 평가등급을 부여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함
- 2 보행안전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없이 연속되어야 함
- 3 1.1 접근로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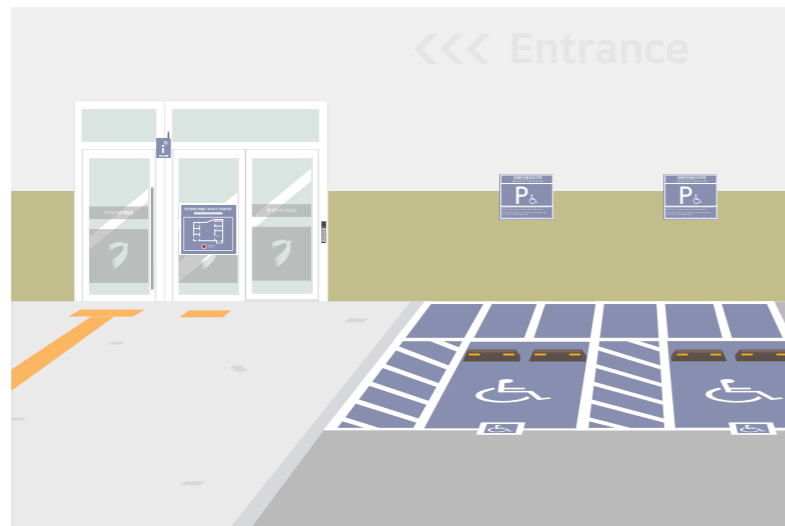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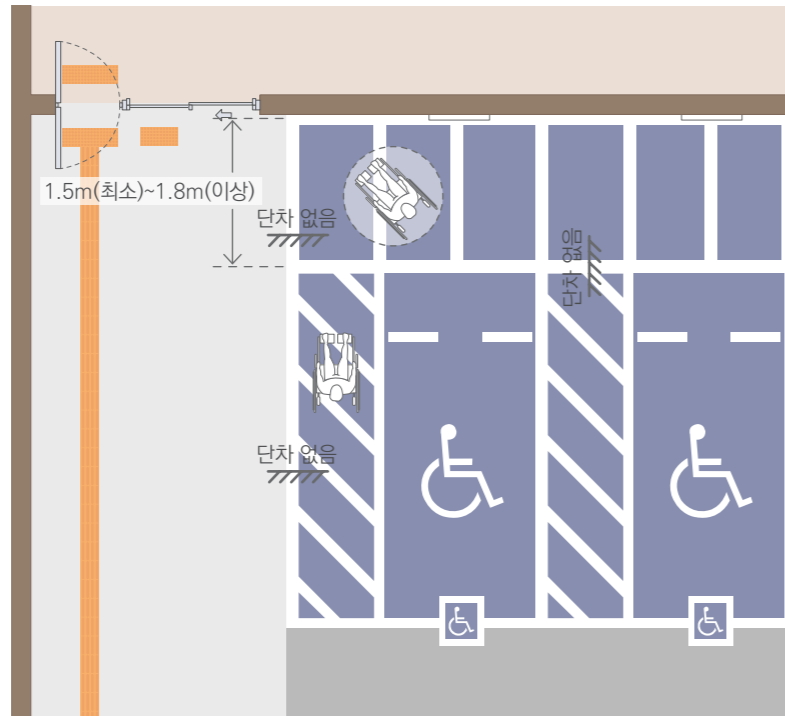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호가목(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4호가목(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최우수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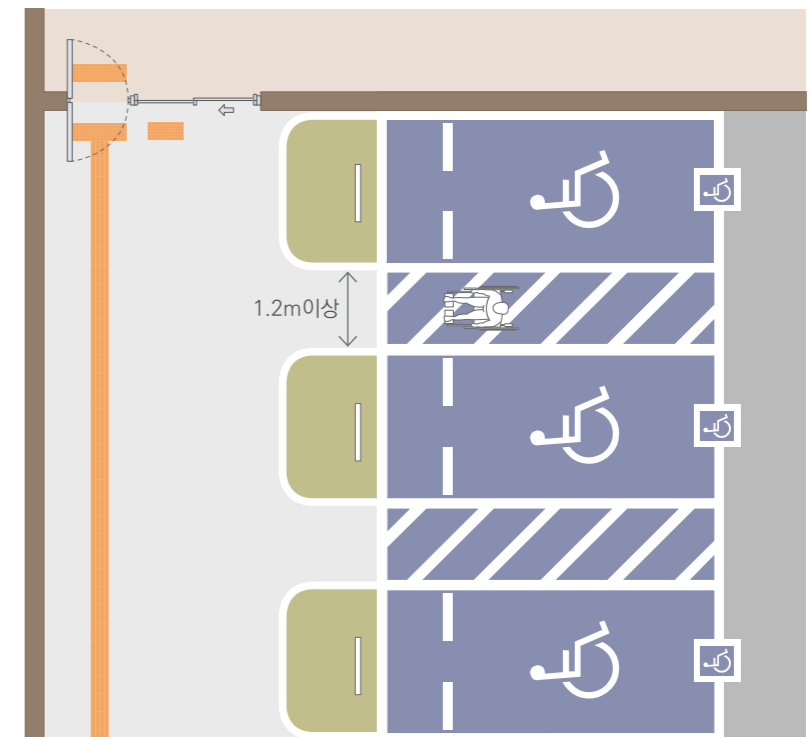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 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 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하차 후 휠체어사용자가 회전해야할 경우 1.1.2 접근로 유효폭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m 이상 확보)
-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고, 1.1 접근로 산출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일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2m 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하차 후 휠체어사용자가 회전해야할 경우 1.1.2 접근로 유효폭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휠체어사용자의 회전공간을 고려하여 최소 1.5m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고, 1.1 접근로 산출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보행안전통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까지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통로를 말합니다.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2.5 안내 및 유도표시

세부평가기준

-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를 평가하여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쉽게 주차전용주차구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방법** 주차장의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및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정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정도 평가
- 배점** 3점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 및 유도표시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3.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2.4
일 반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	2.1

-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지 입구부터의 장애인주차구역 유도표시 연속성 정도로 평가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차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입식 안내표시는 주차가능 차량, 과태료(주차방해 포함) 및 신고전화번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가로 1.3m, 세로 1.5m이며,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50cm, 세로 58cm로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호다목(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제4호다목(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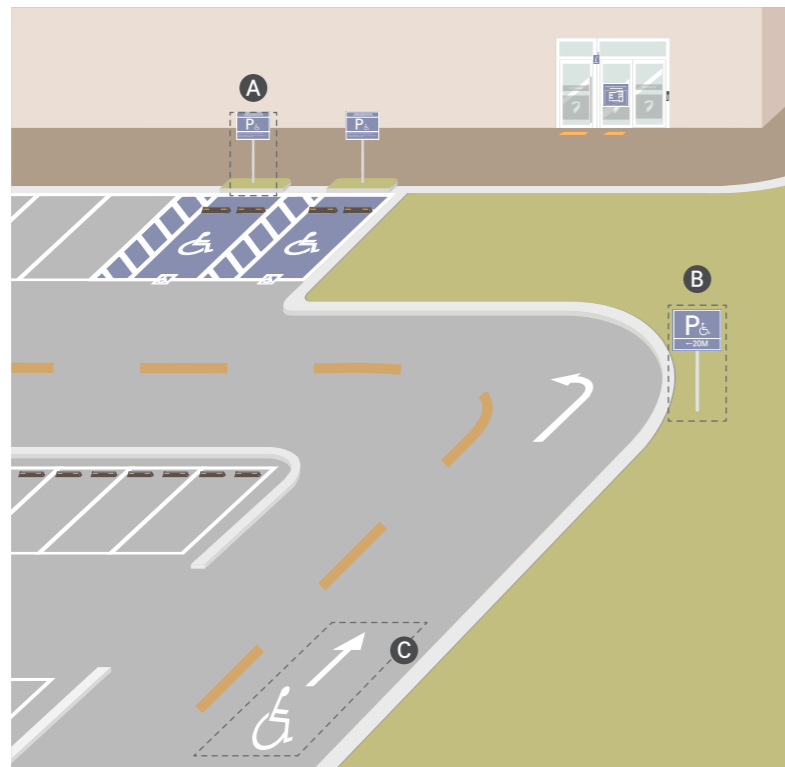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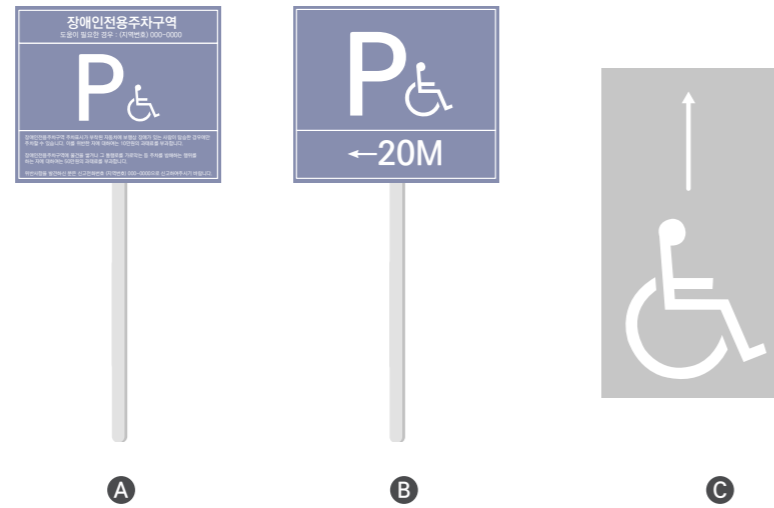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및 유도 표지는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설치하여야 함
- 3 장애인전용 표시는 「장애인등의 편의법」시행규칙 별표 2의 편의시설의 안내표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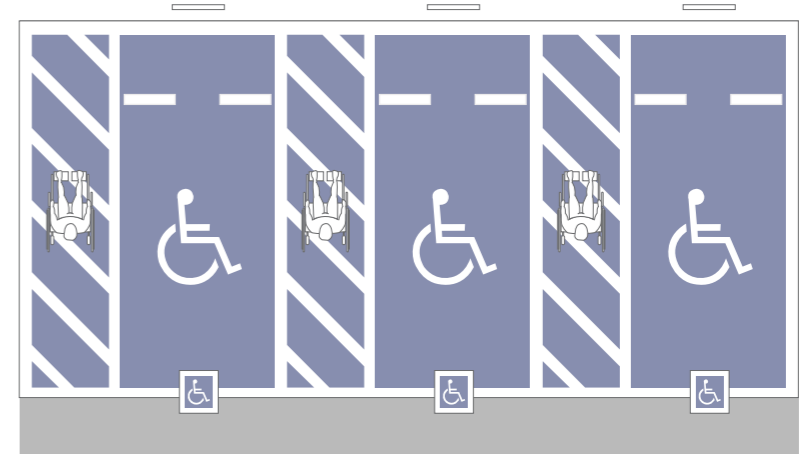
우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 장애인 등이 쉽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대지 입구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유도표시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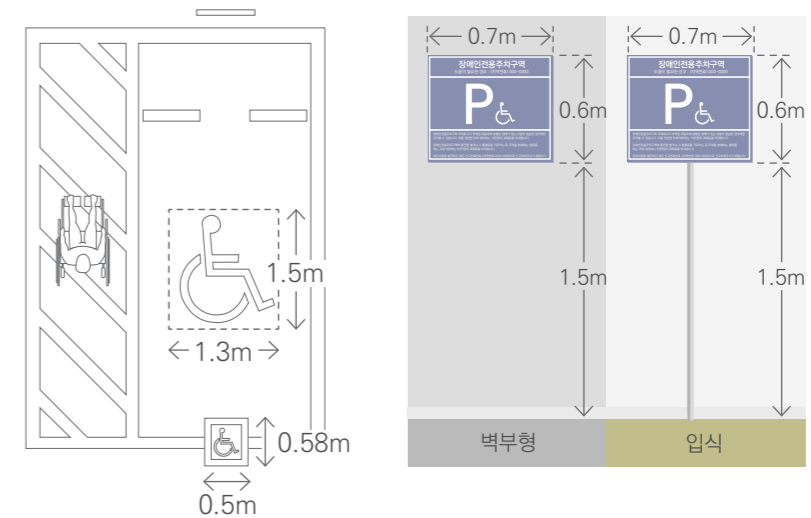
일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일반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



· 안내표지 문구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의 세부기준 제4호다목(2)를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안내표지판은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바닥면에 장애인전용 표시는 차량의 진입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3 출입구(문)



1.3.1 출입구(문)의 높이차이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높이차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안전하고 편리한 진입여부를 출입구(문)의 높이차이와 기울기로 평가

배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출입구(문) 높이차이 및 경사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출입구(문) 높이차이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3.0
우수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2.4
일반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2.1

구분	출입구(문) 경사로 기울기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3.0
우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2.4
일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2.1

- 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0.15m이상 높이의 경사로 설치 시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
- 경사로 위에 지붕이나 차양을 설치한 경우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평가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대지 내 접근로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출입구(문)를 평가함
- 2 경사로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0.15m 이상 높이의 경사로 설치시 2.4.5 손잡이 산출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함
- 3 경사로 설치시 2.4 경사로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4 경사로의 최소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 5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 X 1.5m 이상 활공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6 접근로에 계단이 설치될 경우 경사로와 같이 설치하고 계단 설치 기준은 2.3 계단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7 경사로 위에 지붕이나 차양을 설치한 경우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평가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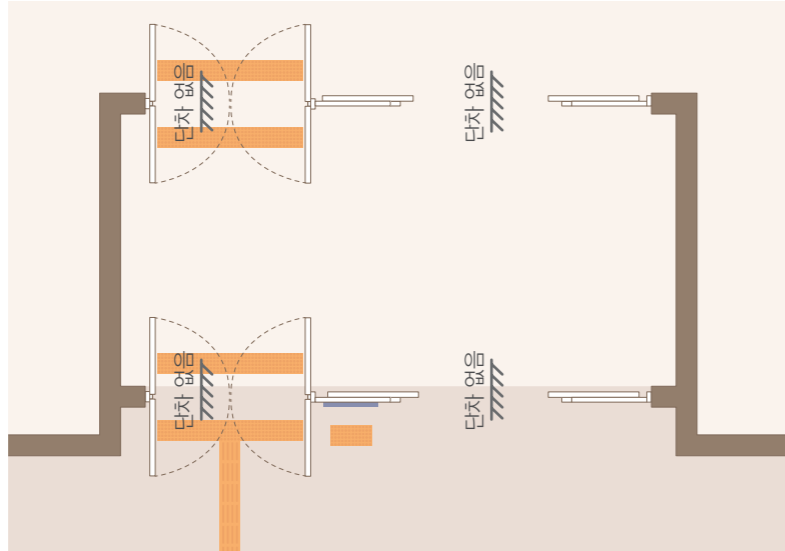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가목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호나목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도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도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출입구(문) 높이차이]

★★★★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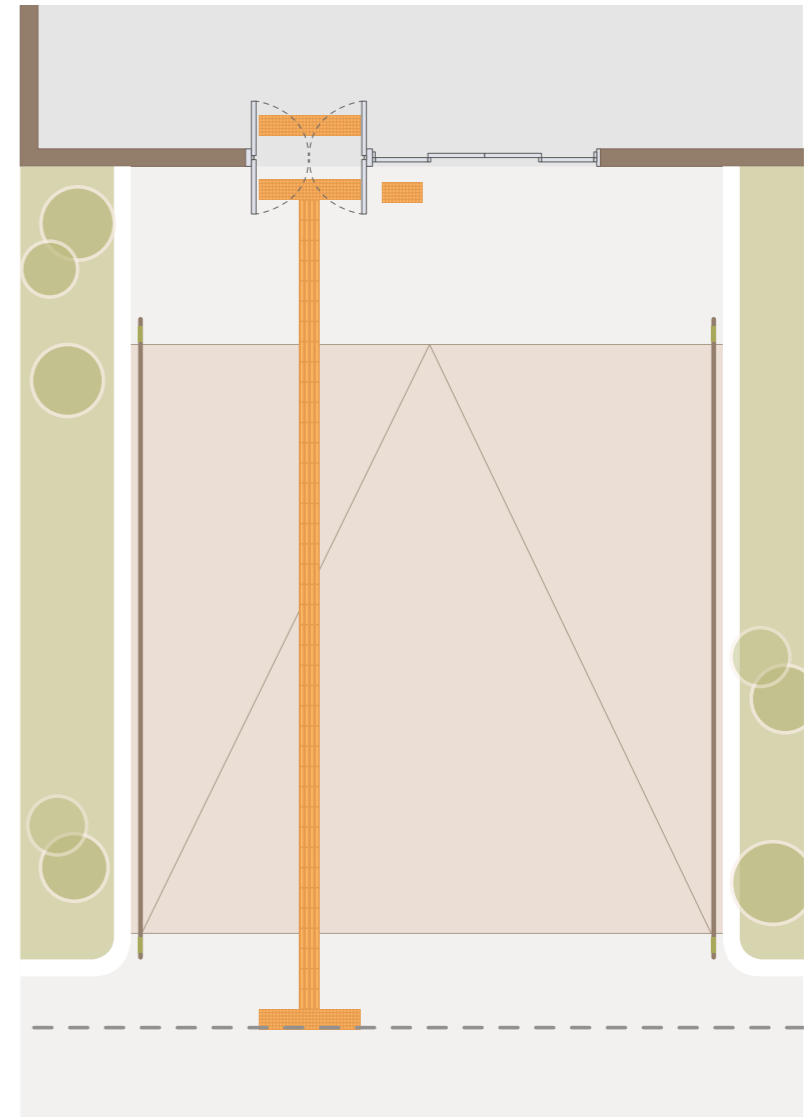
· 출입구(문)는 단차 없이 수평 접근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입구(문) 높이차이]

★★ 우수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 우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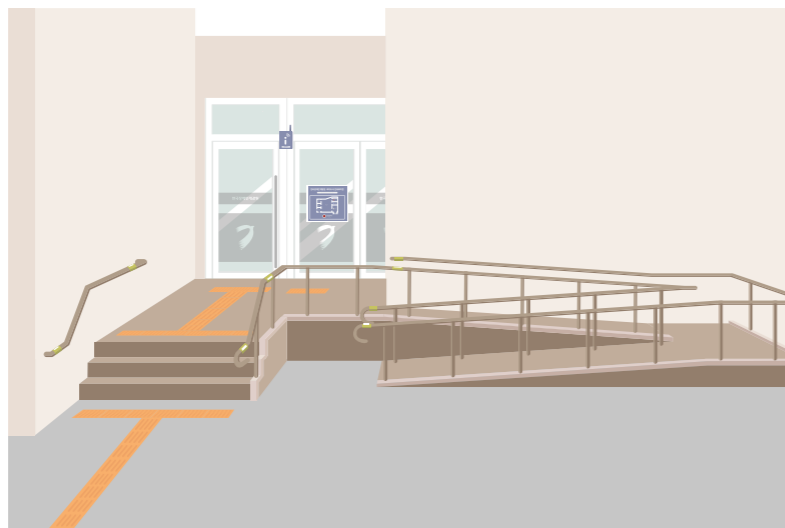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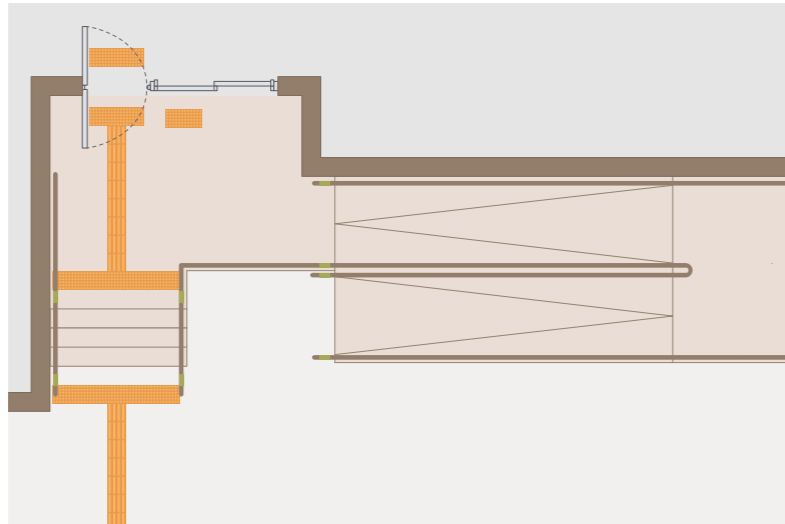
· 출입구(문)에 0.75m이하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2.4 경사로 산출기준에 준하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계단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계단은 2.3 계단 산출기준에 준하여야 합니다.

[출입구(문) 높이차이]

- ★ 일반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 ★★ 우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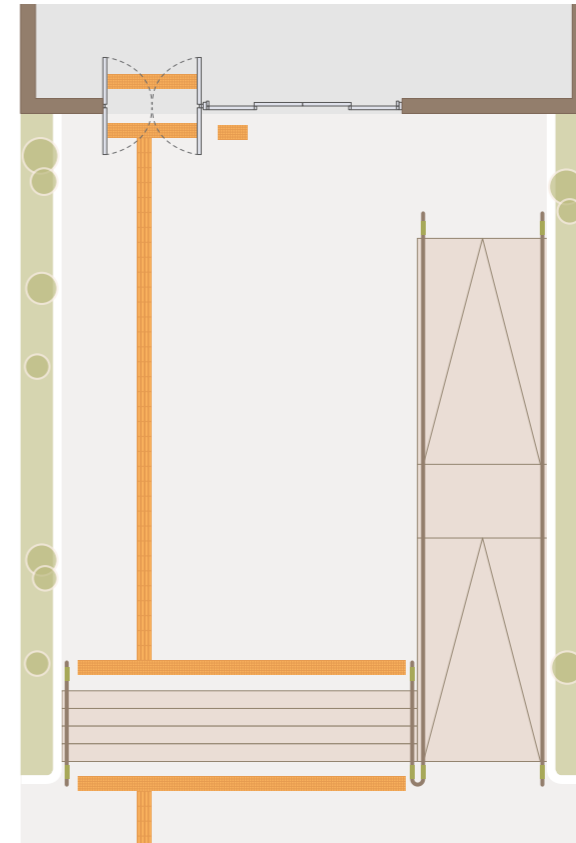
- 출입구(문)에 0.75m이상 단차가 발생되는 경우 2.4 경사로 산출기준에 준하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계단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계단은 2.3 계단 산출기준에 준하여야 합니다.

[출입구(문) 높이차이]

- ★ 일반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 ★ 일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 출입구(문)에 0.75m이상 단차가 발생되는 경우 2.4 경사로 산출기준에 준하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계단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계단은 2.3 계단 산출기준에 준하여야 합니다.

경사로의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는 1/A의 형식으로 말하며, 1의 높이를 해소하기 위해 A의 거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1/12의 경사로는 0.1m의 높이를 해소하는데 1.2m의 거리부터 경사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016. 12. 31. ISBN 978-89-6921-322-8)]

1.3 출입구(문)



1.3.2 출입문의 형태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문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출입구(문)의 형태로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출입구(문)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주출입문의 형태	점수
최우수	출입구(문)를 포함하여 모든 출입구의 출입문 중 60%이상 자동문 설치	3.0
우수	자동문 설치	2.4
일반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	2.1

· 단, 회전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한 크기이며 속도조절 장치가 내장된 회전문으로 다른 형태의 출입문을 병행하여 설치 할 경우 최하등급을 부여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대지 내 접근로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출입구(문)를 평가함
- 2 여닫이문 도어 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3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 4 회전문 설치는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회전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한 크기이며, 속도조절 장치가 내장된 회전문으로 다른 형태의 출입문을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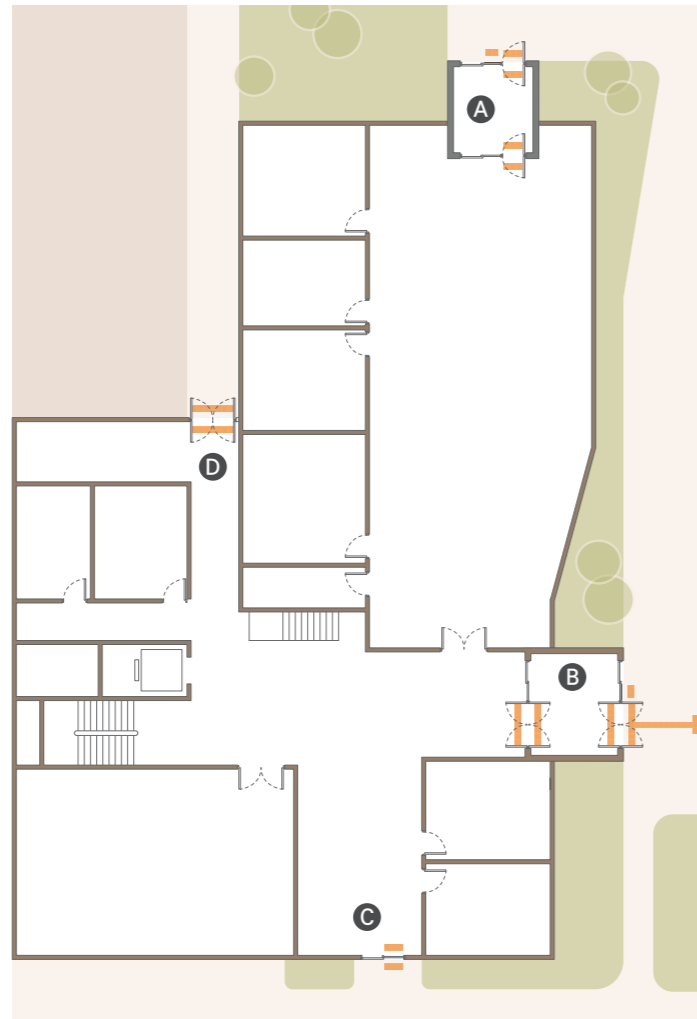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나목(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호나목(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호나목(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호나목(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제6호라목(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 최우수

출입구(문)를 포함하여 모든 출입구의 출입문 중 60%이상 자동문 설치



※ 4개의 출입구(문) 중 3개 출입구(문)(75%)를 자동문으로 설치함

· 출입구(문)를 포함하여 모든 출입구의 출입문 중 60%이상 자동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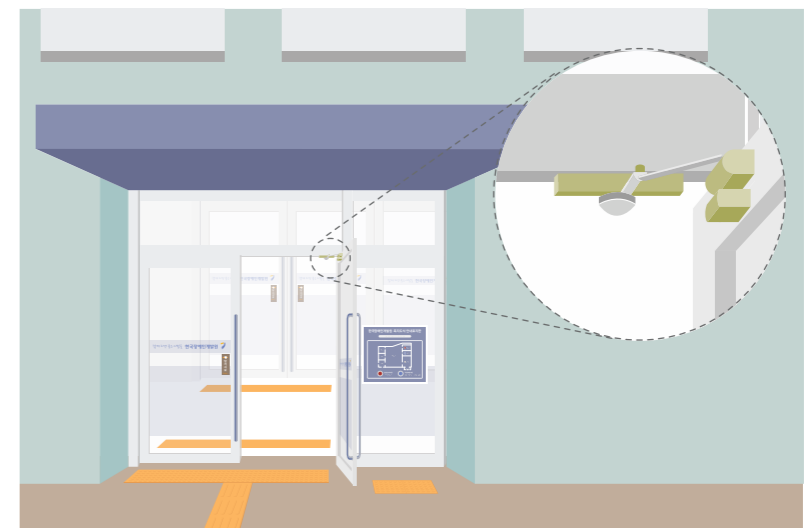
자동문 설치



· 출입구(문)는 자동문으로 설치하고 단차 없이 계획하여야 합니다.

★ 일반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



· 출입구(문)는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 여닫이문으로 설치하고 단차 없이 계획하여야 합니다.

1.3 출입구(문)

1.3.3 유효폭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출입구(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	3.0
우수	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	2.4
일반	출입구(문)의 유효폭 0.9m이상	2.1

- 주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1

출입구(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2

쌍여닫이문의 유효폭은 편개시 유효폭으로 측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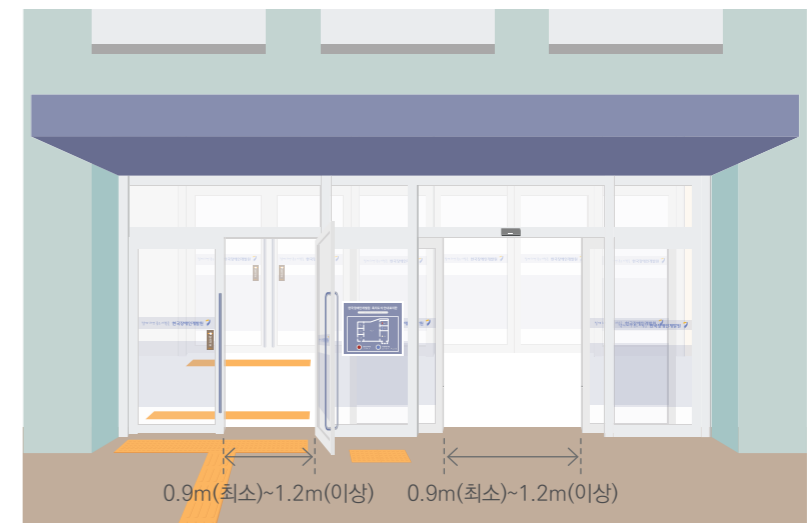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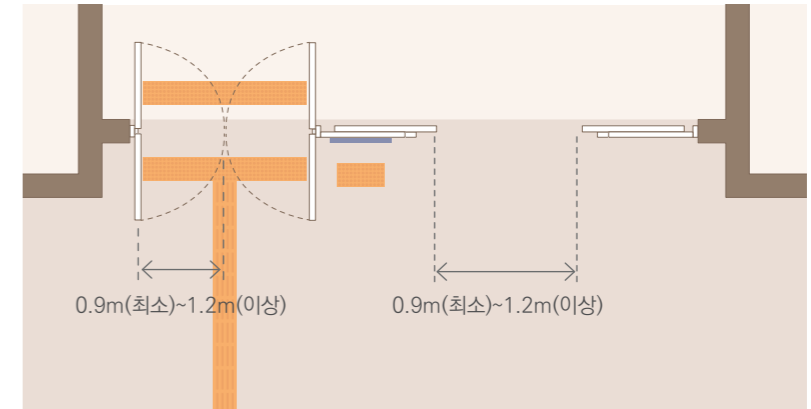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가목(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최우수
★★ 우수
★ 일반

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
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
출입구(문)의 유효폭 0.9m이상



- 출입구(문)의 쌍여닫이문과 자동문의 유효폭은 0.9m~1.2m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입문 유효폭

문 개방시 유효폭을 말한다. 여닫이문의 경우 문을 열은 상태의 폭(문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폭)으로 하고, 미닫이문의 경우 문을 열었을 때 남은 문을 포함하지 않는 폭으로 한다. 또한, 양여닫이문의 경우 한쪽면의 문만 열었을 때를 유효폭으로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016. 12. 31. ISBN 978-89-6921-322-8)]

1.3 출입구(문)

1.3.4 단차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 턱의 높이 차이 정도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주출입문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단차	점수
최우수	출입구(문) 단차 전혀 없음	3.0
우수	출입구(문) 단차 2cm이하	2.4

- 출입구(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우수로 평가함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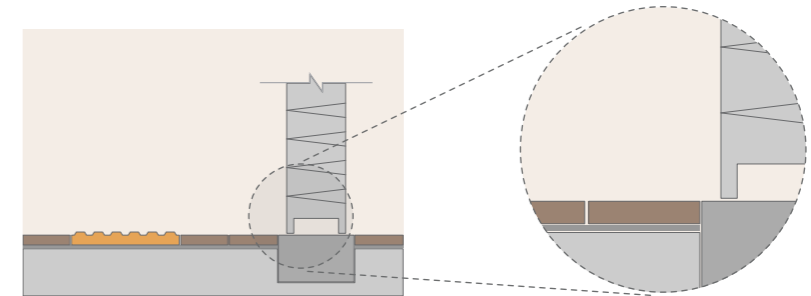
- 1 휠체어사용자가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
- 2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3 출입구(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 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우수로 평가함
- 4 턱낮추기 경사 기울기는 2.4.2 기울기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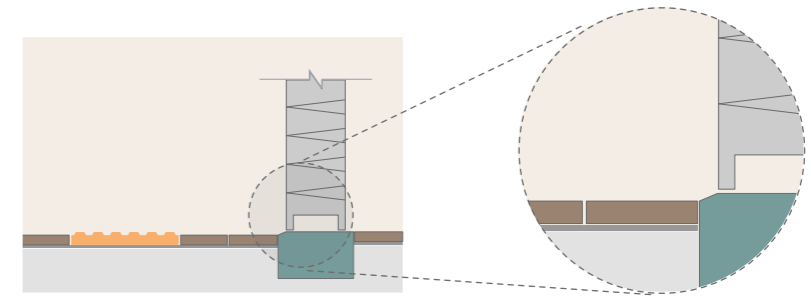
제5호가목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호가목(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최우수 출입구(문) 단차 전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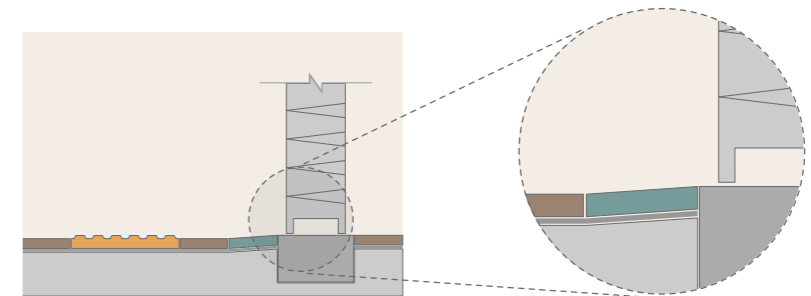


· 출입구(문)에 문턱 등을 매립하여 바닥마감과 동일 높이로 단차 없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TYPE 1 출입구(문) 단차 2cm이하



TYPE 2



· 출입구(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 이하 단차는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하여야 합니다.

1.3 출입구(문)

1.3.5 전면 유효거리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확보 정도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출입구(문) 전면 유효거리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전면 유효거리	점수
최우수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8m이상	2.0
우 수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5m이상	1.6
일 반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1.4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한 유효거리를 지칭함
- 출입구(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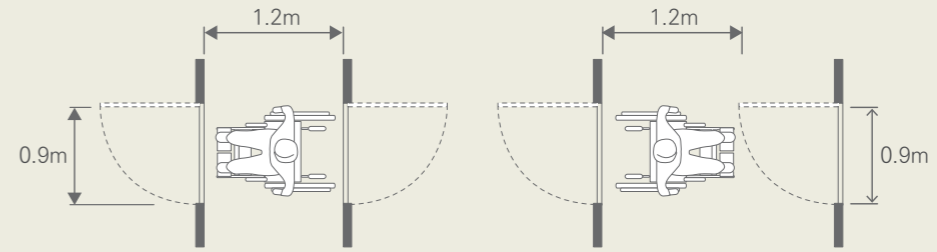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하고 유효거리를 측정함
- 2 출입구(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를 측정함
- 3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여야 함
- 4 방풍실 출입구(문)의 형태가 여닫이문일 경우 한방향으로 개폐방향이 통일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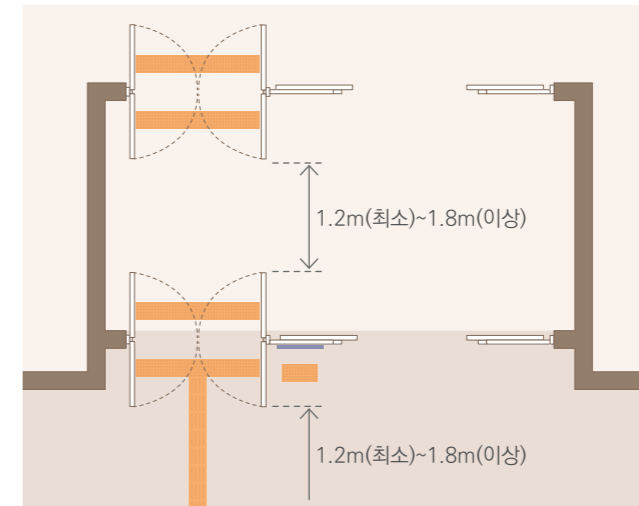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가목(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최우수
- ★★ 우 수
- ★ 일 반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8m이상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5m이상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 방풍실 출입구(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를 1.2m ~ 1.8m 이상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한 유효거리를 지칭하고, 출입구(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합니다. [1.3.5 전면 유효거리 산출기준]

1.3 출입구(문)

1.3.6 손잡이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출입구(문)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점수
최우수	자동문	2.0
우 수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	1.6
	수평 및 수직막대형	
일 반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	1.4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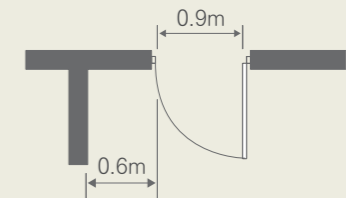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자동문의 작동 방법이 광감지식(자동감지센서)일 경우 자동센서 영역 내에 인지 범위를 조정하고, 버튼을 이용하여 작동할 경우에는 버튼 높이를 0.8m ~ 0.9m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2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계획하여야 함
- 3 손잡이 설치시 힌지 부분이 손잡이 높이와 간섭이 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함
- 4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5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와 0.9m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이어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다목(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제6호다목(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면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호가목(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최우수 자동문

센서형 자동문



· 센서형 자동문(자동감지센서)일 경우 자동센서 영역 내에 인지 범위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버튼형 자동문



· 버튼을 이용하여 작동할 경우에는 버튼 높이를 0.8m~0.9m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0.8m~0.9m

★★ 우수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 수평 및 수직막대형

쌍여달이문



· 손잡이는 0.8m ~ 0.9m 위치에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막대형 손잡이를 함께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로손잡이를 기준으로 0.8m ~ 0.9m 위치에 설치하여 함)

0.8m~0.9m

★ 일반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

수직손잡이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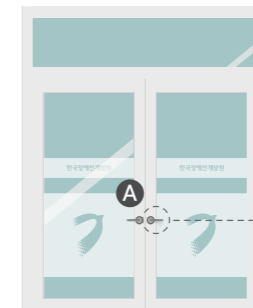
0.8m~0.9m

수평손잡이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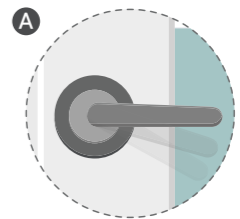


0.8m~0.9m

레버형 손잡이 출입문



0.8m~0.9m



· 손잡이는 0.8m ~ 0.9m 위치에 설치하고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레버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입구(문) 옆 활동공간

장애인들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출입문 손잡이 옆에 0.6m 이상 확보한 공간을 말한다.

1.3 출입구(문)



1.3.7 경고블록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경고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발바닥 촉감으로 문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블록의 설치 여부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출입구(문)의 경고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경고블록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2.0
우수	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1.6
일반	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바닥 색상 및 재질의 변화를 통하여 경고 표시	1.4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자동문인 경우에는 자동센서 영역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자동문인 경우에는 자동센서 영역 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 2 출입구 방풍실의 길이가 3m 미만일 경우 방풍실 내부 점형블록은 생략함
- 3 점자블록은 문이 닫혀있을 때 문 끝을 기준으로 0.3m 전면에 매립하여 설치하여야 함
- 4 모든 출입문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문 폭만큼 매립하여 설치하여야 함
- 5 점자블록은 4.1.2 점자블록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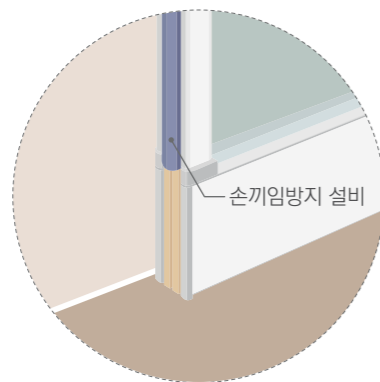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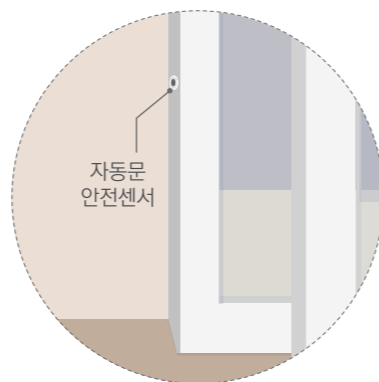
제6호라목(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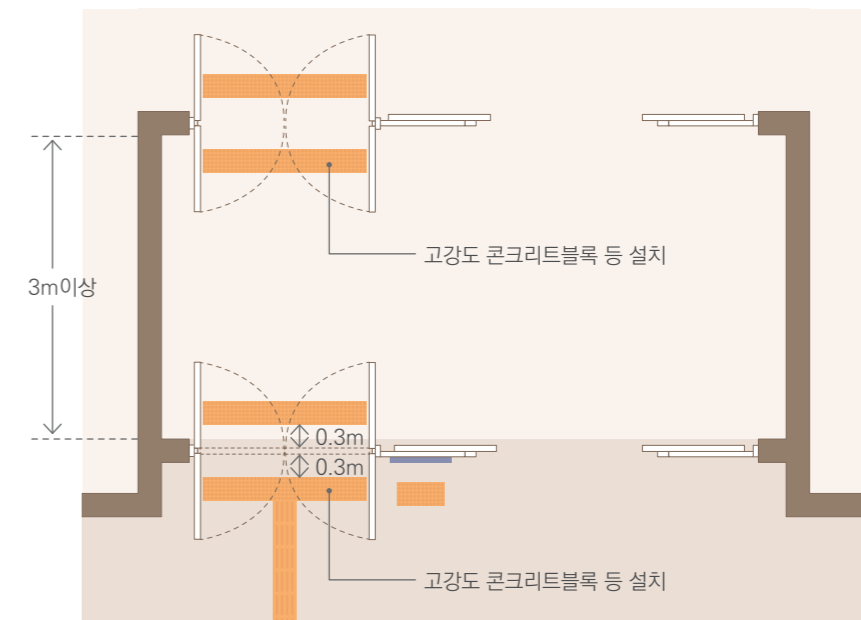


B

· 출입구(문) 0.3m 전후면에는 문의 폭만큼 표준형 점형블록을 매립하여 설치하고, 손끼임 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 출입구(문) 0.3m 전후면에는 문의 폭만큼 표준형 점형블록을 매립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바닥 색상 및 재질의 변화를 통하여 경고 표시

표준형 점형블록

점형블록은 크기 0.3m X 0.3m,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지고,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를 표준형으로 한다. 점형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며 실외에 설치하는 점형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6호가목(2)부터(4)까지, (6)부터(8)까지]

2 내부시설



2.1 일반출입문

- 2.1.1 단차
- 2.1.2 유효폭
- 2.1.3 전·후면 유효거리
-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2.2 복도

- 2.2.1 유효폭
- 2.2.2 단차
- 2.2.3 바닥 마감
- 2.2.4 보행장애물
- 2.2.5 연속손잡이

2.3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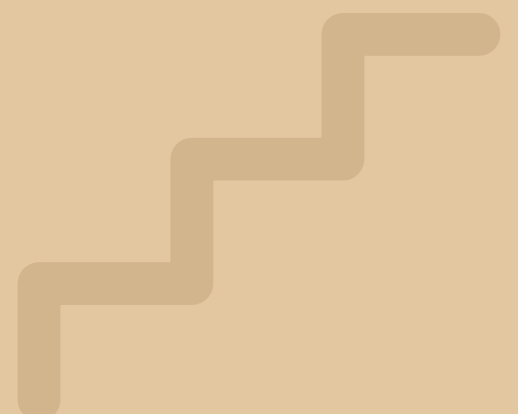
- 2.3.1 형태 및 유효폭
- 2.3.2 철타면 및 디딤판
- 2.3.3 바닥 마감
- 2.3.4 손잡이
- 2.3.5 점형블록

2.4 경사로

- 2.4.1 유효폭
- 2.4.2 기울기
- 2.4.3 바닥 마감
-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 2.4.5 손잡이

2.5 승강기

- 2.5.1 전면활동공간
- 2.5.2 통과 유효폭
- 2.5.3 유효 바닥면적
- 2.5.4 이용자 조작설비
-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 2.5.6 수평손잡이
- 2.5.7 점자블록



2.1 일반 출입문

2.1.1 단차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 출입문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일반 출입문의 단차로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일반 출입문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단차	점수
최우수	모든 문에 단차 전혀 없음	3.0
우수	모든 문에 단차 2cm이하	2.4

· 출입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1 출입구(문)의 바닥면에 2cm이하의 단차가 발생할 경우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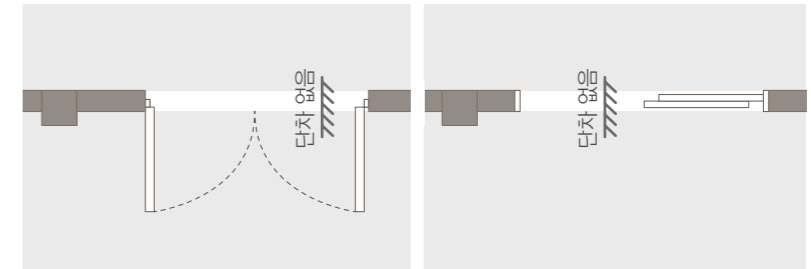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가목(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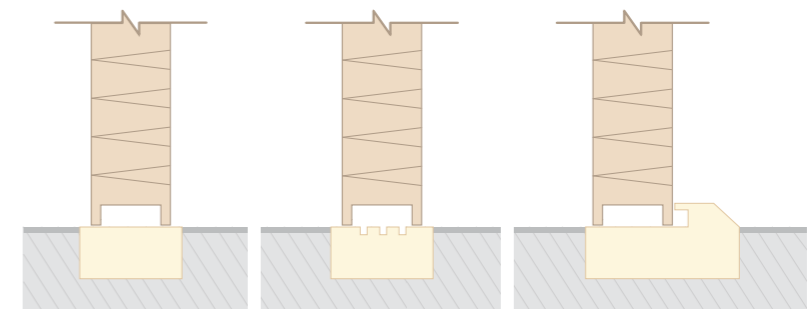
모든 문에 단차 전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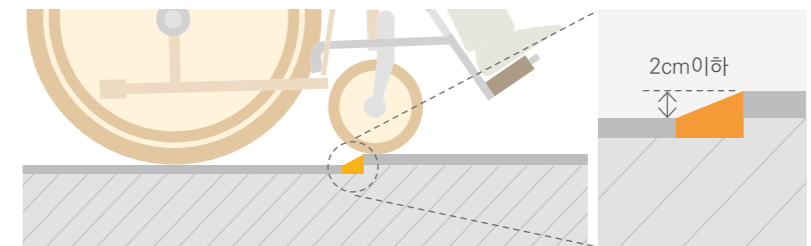
· 일반 출입문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단차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모든 문에 단차 2cm 이하



· 일반 출입문 중 방화문, 방음문 등 문 구조 때문에 단차가 발생할 경우 2cm이하로 계획하고 턱 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하여야 합니다.



·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휠체어 사용자 등이 통행하기 어려움으로 무단차로 계획하고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하여야 합니다.

2.1 일반 출입문

2.1.2 유효폭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일반 출입문의 통과 가능한 유효폭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일반 출입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1.0m이상	3.0
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0.9m이상	2.4

·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하여야 함
-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을 0.9m이상으로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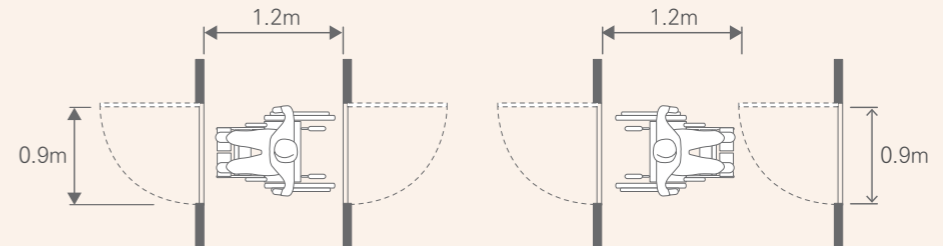
일반 출입문 유효폭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1.2 유효폭 산출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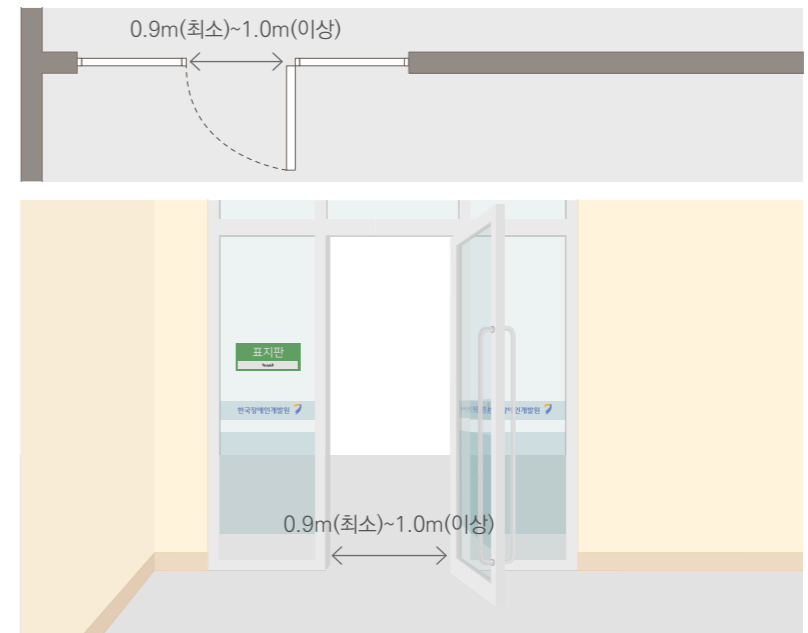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가목(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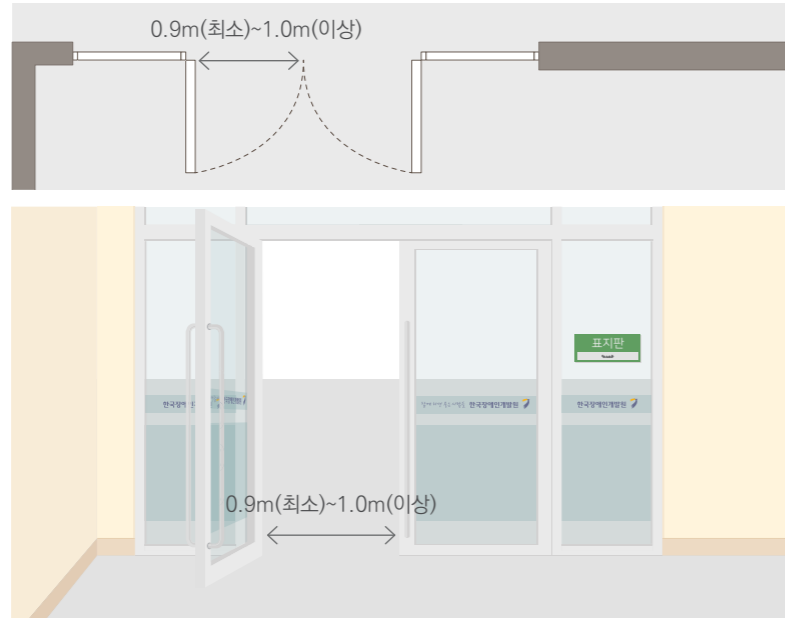
- ★★★ 최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1.0m이상
- ★★ 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0.9m이상

외여닫이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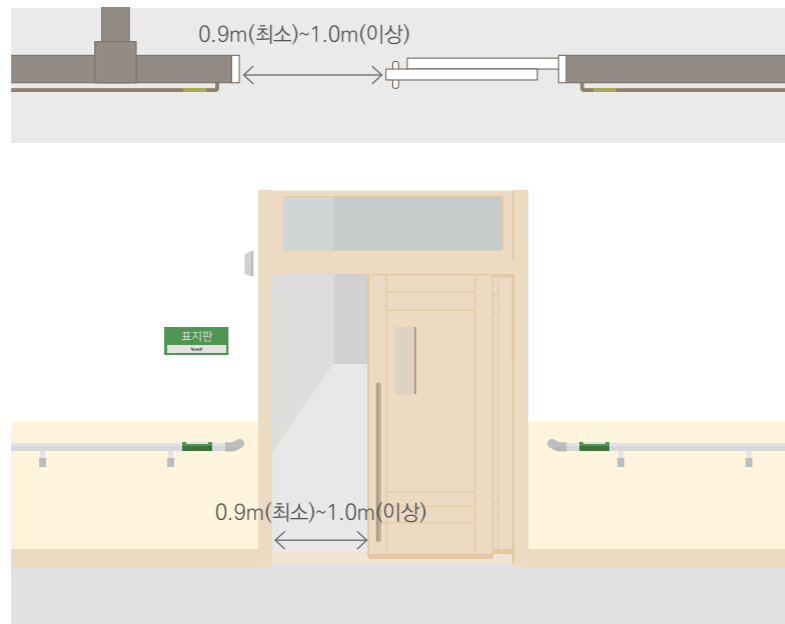
· 외여닫이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쌍여닫이 출입문



- 쌍여닫이 출입문의 유효폭은 한쪽 문(편개 시) 내부 쪽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미서기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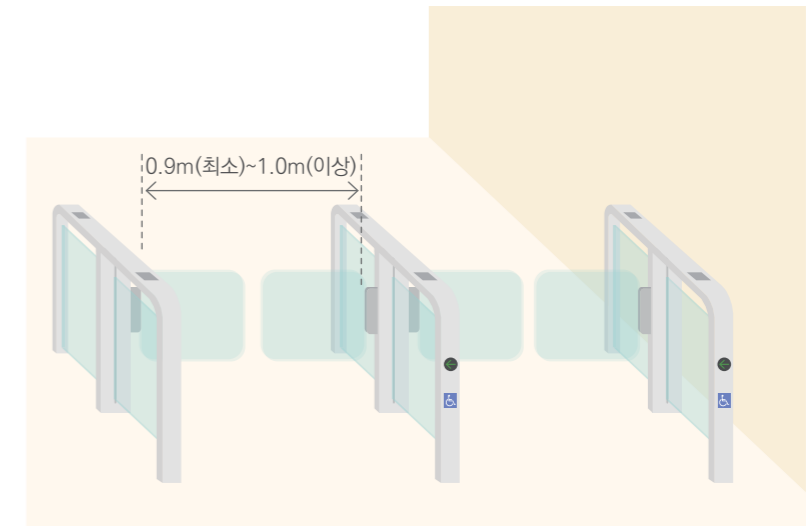


- 미서기 (또는 미닫이)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과 손잡이 사이 손끼임방지 설비의 거리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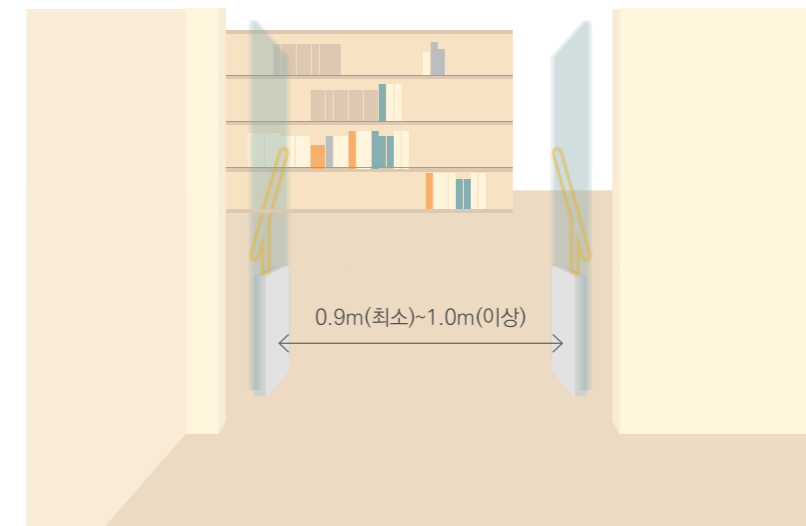
기타설비 등의 유효폭 0.9~1.0m이상

보안스피드게이트



- 보안스피드게이트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개소 이상의 유효폭을 0.9m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도서분실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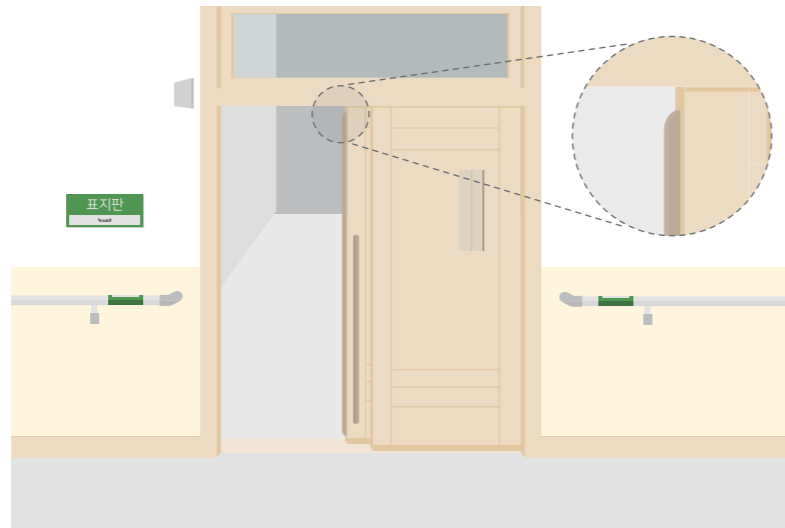


- 출입구에 분실방지기를 설치할 경우 휠체어사용자, 유모차이용자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을 0.9m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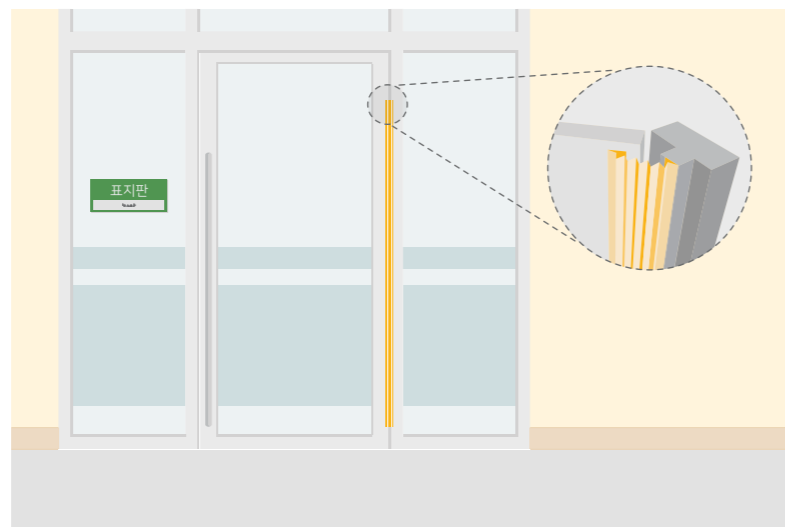
손끼임방지 설비

Typ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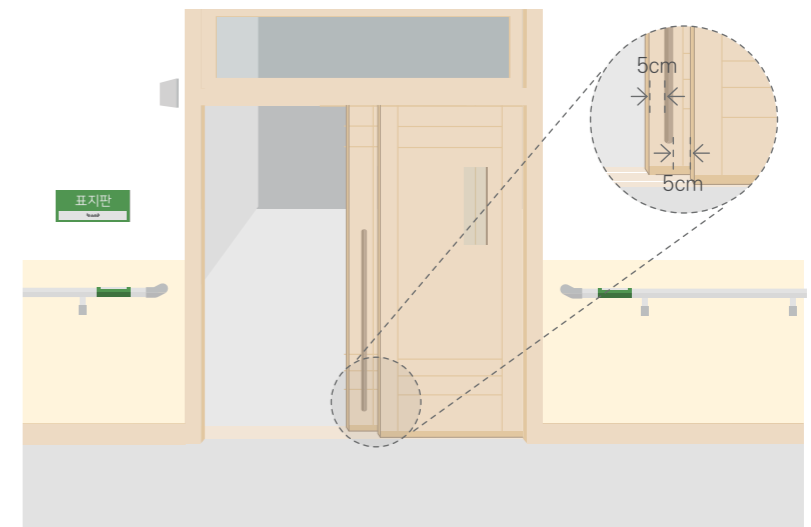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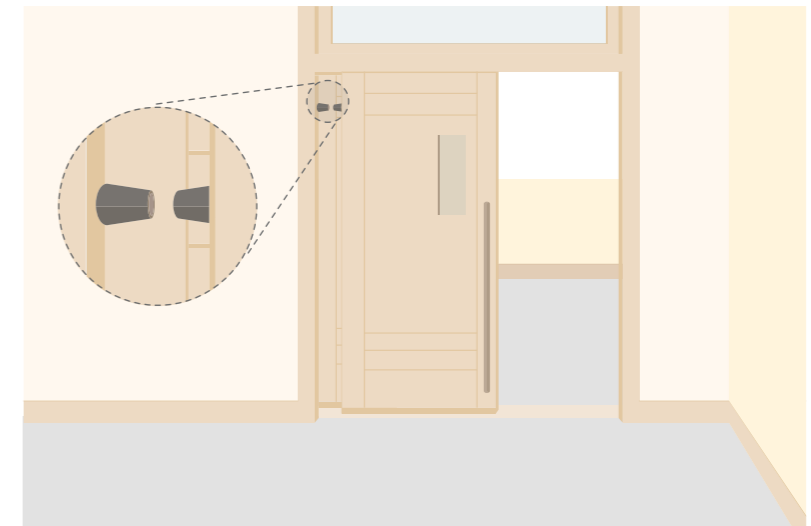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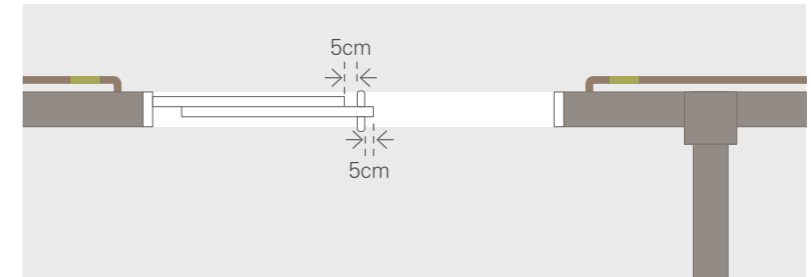
- 미서기(또는 미닫이) 출입문은 문을 열고 닫을 때 손이 끼어 다치지 않도록 고무재질 등의 손끼임방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Type 2



- 외여닫이 출입문은 힌지방향에 손이 끼어 다치지 않도록 주름형태 등의 손끼임방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Type 3



- 미서기(또는 미닫이) 출입문은 도어스토퍼 등 손끼임방지 설비를 설치하여 손잡이와 문틀의 사이간격을 5cm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2.1 일반 출입문

2.1.3 전·후면 유효거리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일반 출입문 전·후면 유효거리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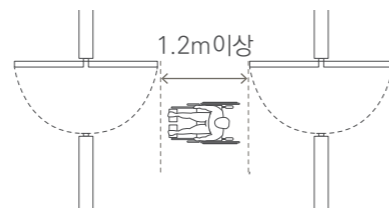
구분	전·후면 유효거리	점수
최우수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8m이상	3.0
우수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5m이상	2.4
일반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이상	2.1

-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 유효거리를 지칭함
- 출입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1 전·후면유효거리는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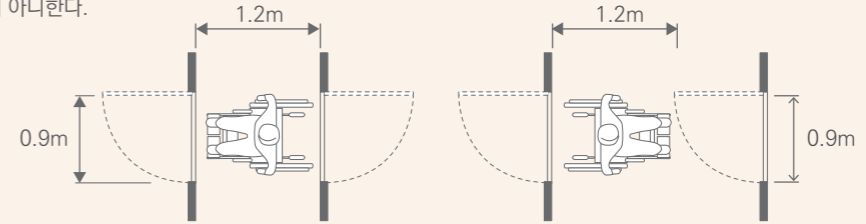
- 출입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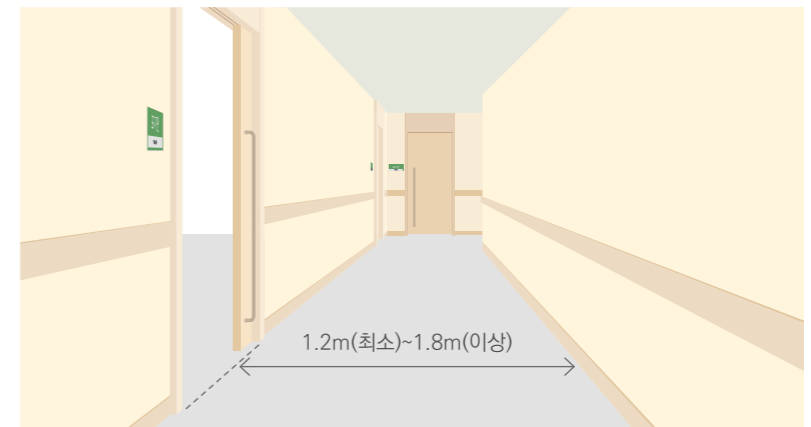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가목(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최우수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8m이상
- ★★ 우수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5m이상
- ★ 일반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이상



- 복도에 미닫이 (또는 미서기) 출입문이 설치될 경우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는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거리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한 유효거리를 지칭하고, 출입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합니다. [2.1.3 전·후면 유효거리 산출기준]

2.1 일반 출입문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각 실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손잡이의 위치 및 형태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출입구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일반 출입구(문)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미닫이문 또는 자동문	3.0
우수	·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 손잡이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 ·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 출입문은 여닫이형태로 출입문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2.4

- 전시장 등 문이 없을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손잡이에 점자 표지판을 부착한 것도 출입구 옆 벽면 점자 표지판과 동일시 평가함
- 미닫이 형태의 문인 경우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거나 그에 유사한 기능의 문 (반자동문 등)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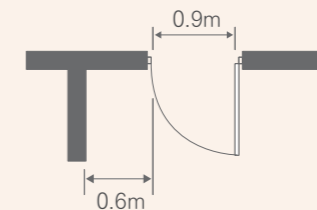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에는 기준에 적합한 출입문 손잡이와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2 실명점자표지판은 출입문의 손잡이 옆 벽면에 설치하며, 전시장 등 문이 없는 실의 경우에는 진입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 3 실명점자표지판은 점자의 높이가 바닥면에서 1.5m 높이에 위치하도록 부착하여야 함
- 4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가목(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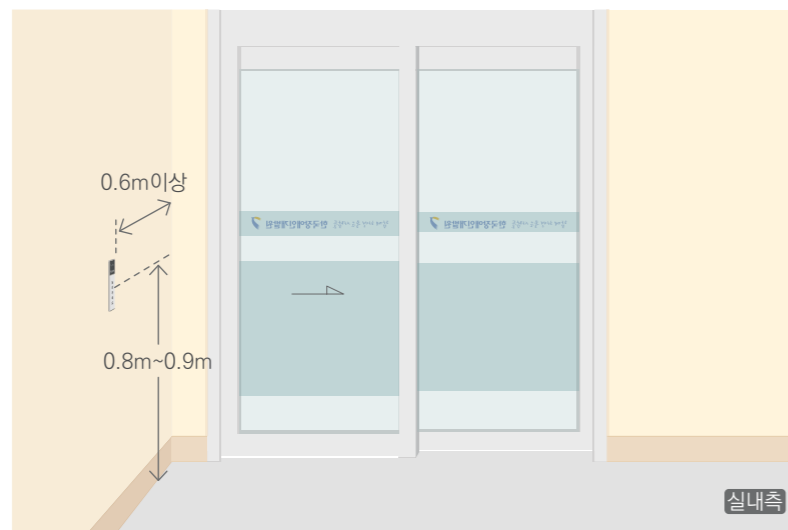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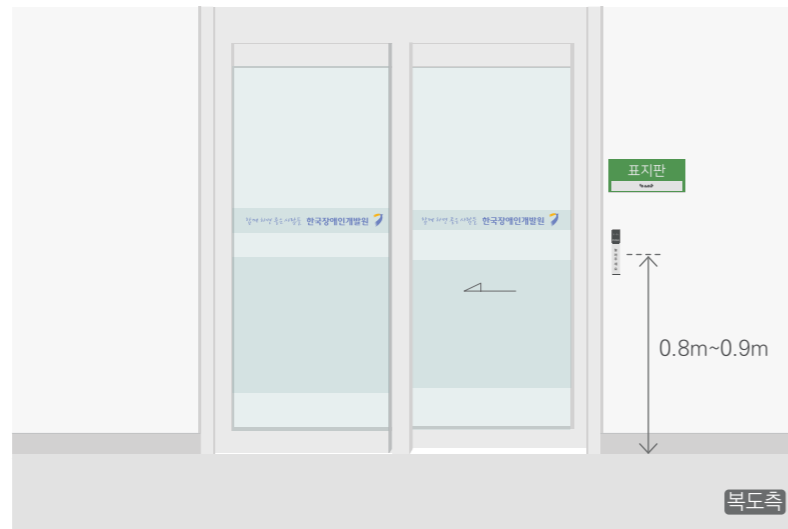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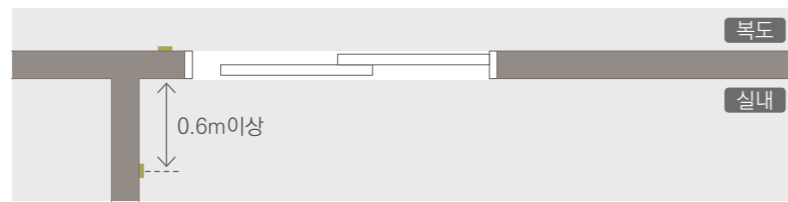
제6호다목(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제6호다목(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미닫이문 또는 자동문

자동문



- 자동문의 조작버튼은 출입문이 열리는 측 벽면에 부착하고 버튼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자동문 옆 활동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동문 버튼을 코너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미닫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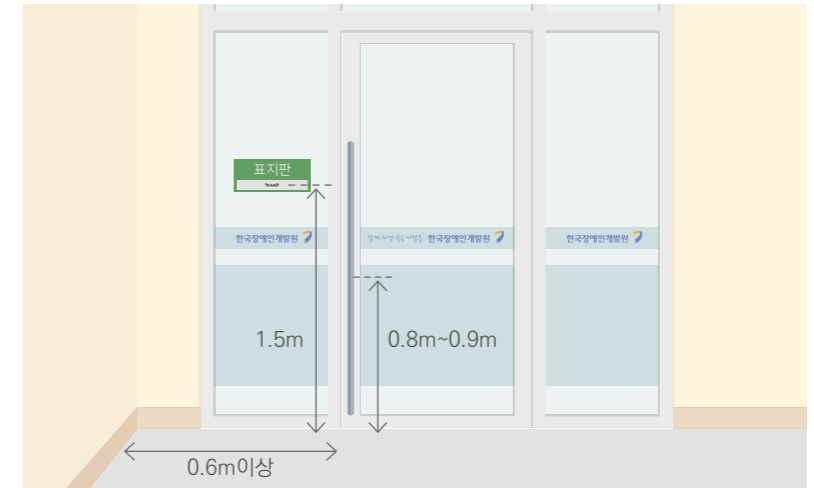


-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것도 출입구 옆 벽면 점자표지판과 동일시 평가합니다.
- 돌출형 안내판을 설치하는 경우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동일한 벽면에 부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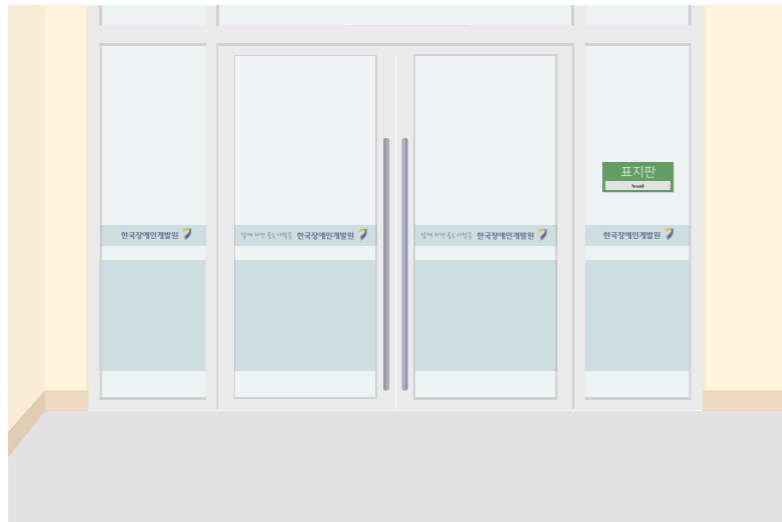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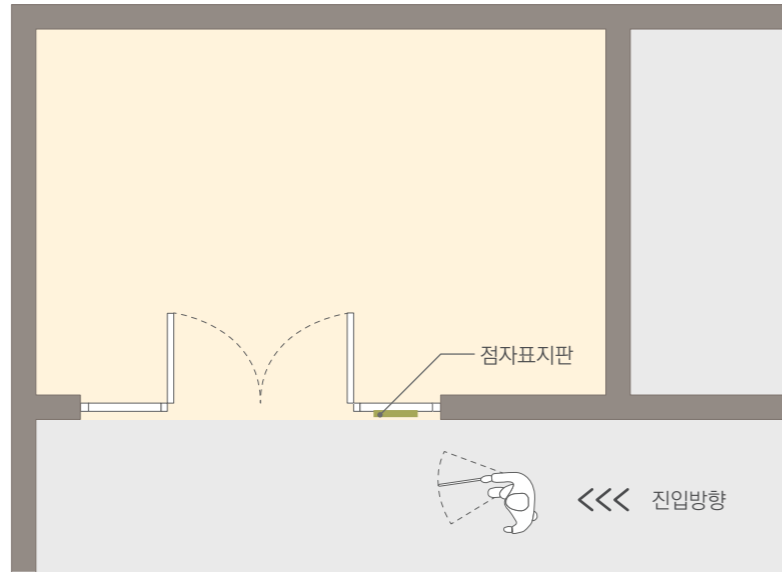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출입문은 여닫이형태로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외여닫이문



-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직막대형 손잡이 등 0.8~0.9m 사이에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지점이 0.8~0.9m 사이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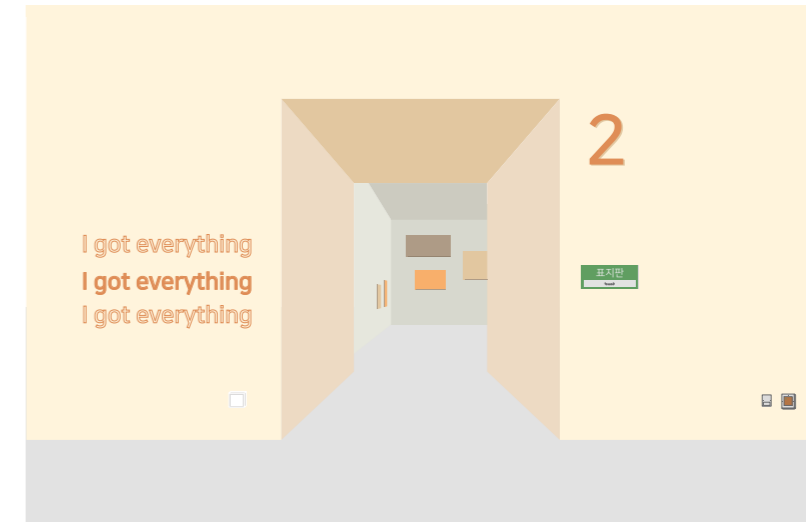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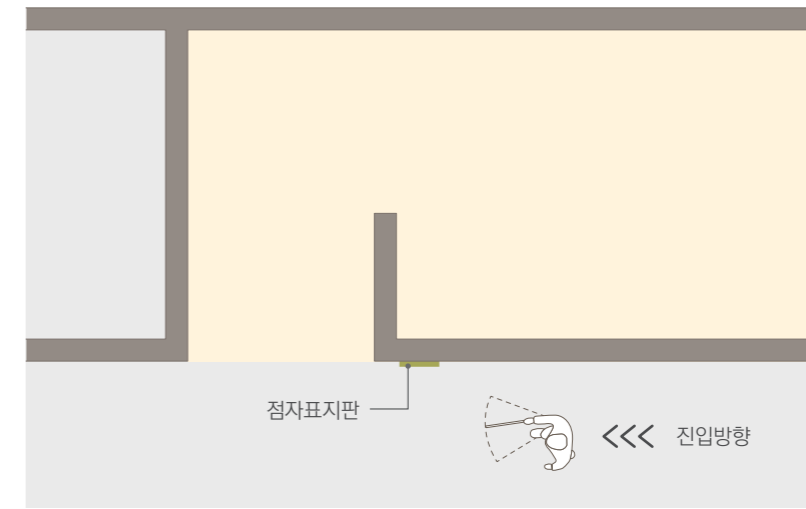
쌍여닫이문



- 출입문이 없는 실의 출입구 또는 쌍여닫이문 등 실의 점자표지판은 출입방향의 우측에 설치하고, 설치방향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방향을 고려하여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전시장 등 문이 없을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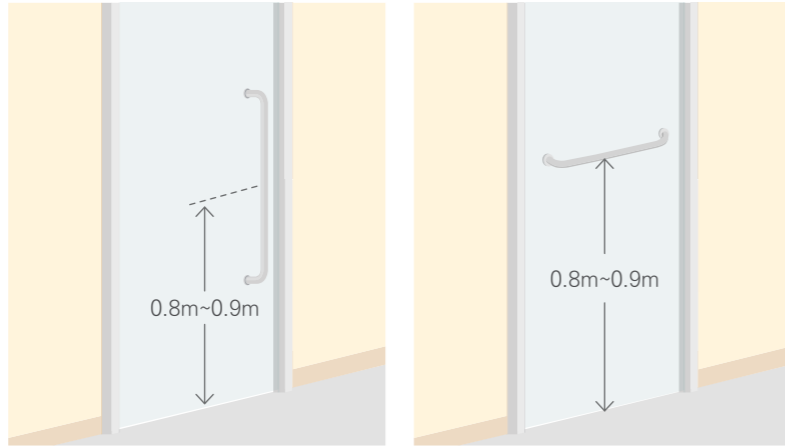


- 전시장 등 출입문이 없는 실의 점자표지판은 출입방향의 우측에 설치하고, 설치방향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진입방향을 고려하여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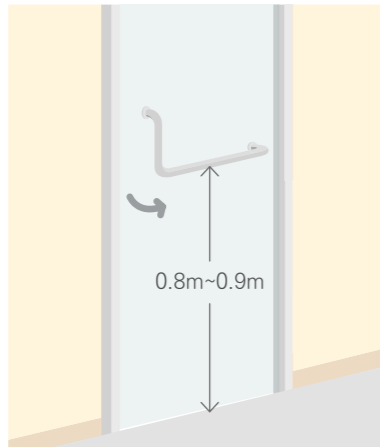
기타사항

출입문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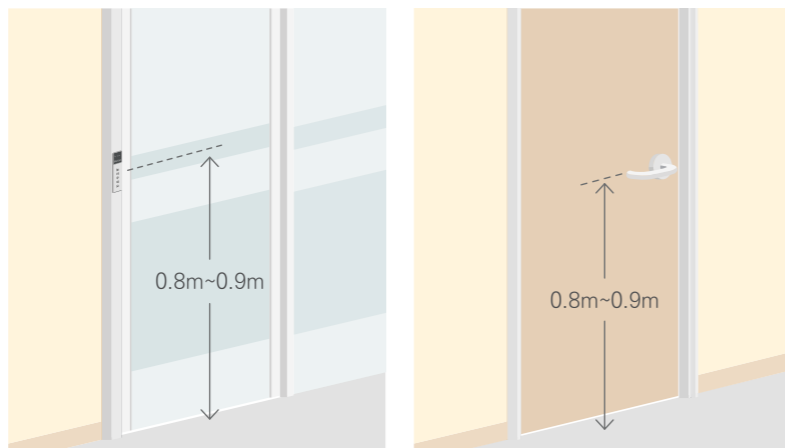
수직 손잡이 / 수평 손잡이



L자형 손잡이



버튼형 자동문 / 레버형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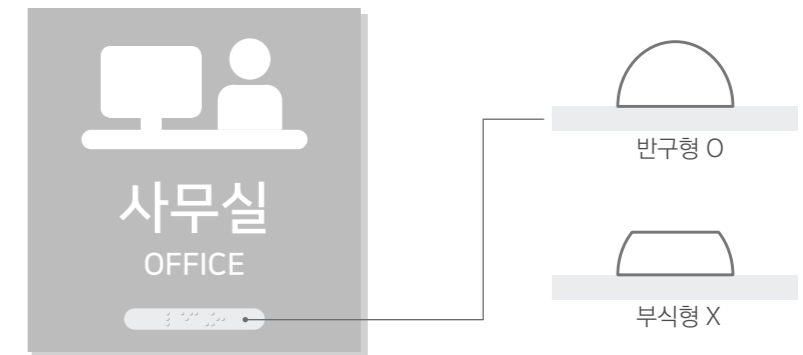


-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직막대형 손잡이 등 0.8m~0.9m 사이에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지점이 0.8m~0.9m 사이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수평 및 수직막대형 손잡이를 0.8m~0.9m 사이에 모두 잡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 손잡이의 길이를 다양하게 설치하여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 중앙지점이 0.8m~0.9m 사이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기타사항

점자표지판 설치기준



- 점자표지판은 글자와 점자로 같이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중증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시력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픽토그램(pictogram)을 추가하여 어린이 등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시안(Universal Design)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점자표지판은 KS B 6895 점자규격을 준용하며 점자표기는 반구형으로 하여야 합니다.
- 점자표지판은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등 내충격성과 내후성이 뛰어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투명테이프 재질은 임시방편용으로 사용을 지양합니다.

☞ 점자표지판

시각장애인들이 각 실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실명을 점자로 표기하여 벽면에 부착한 표지판을 말한다.

2.2 복도



2.2.1 유효폭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의 유효폭 정도로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복도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5m이상	3.0
우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2.4

- 복도에 고정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끝에서 반대편 복도 벽까지의 거리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 건물의 전체 복도 중 폭이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복도에 고정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끝에서 반대편 복도 벽까지의 거리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 2 건물의 전체 복도 중 폭이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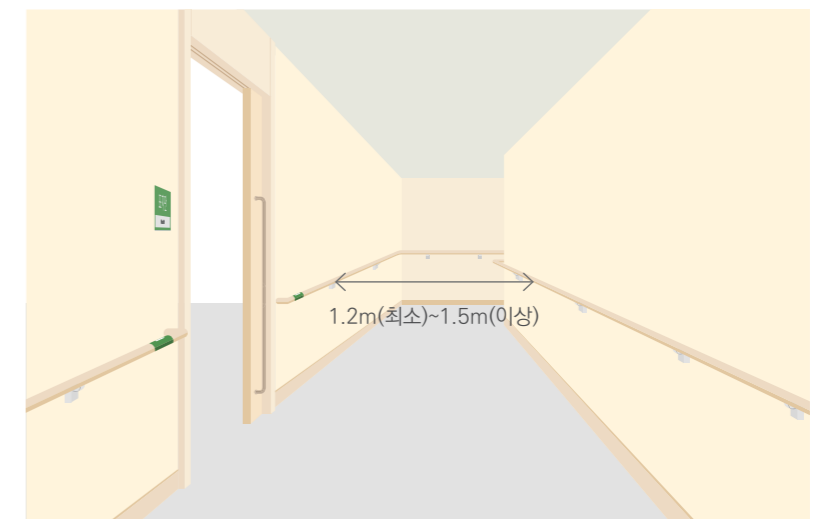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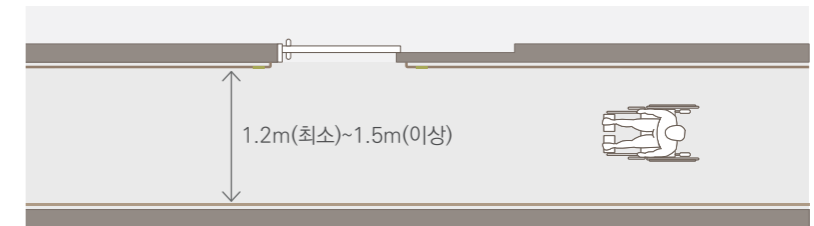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가목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최우수
★★ 우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5m이상
모든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 모든 복도의 유효폭은 1.2m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복도 유효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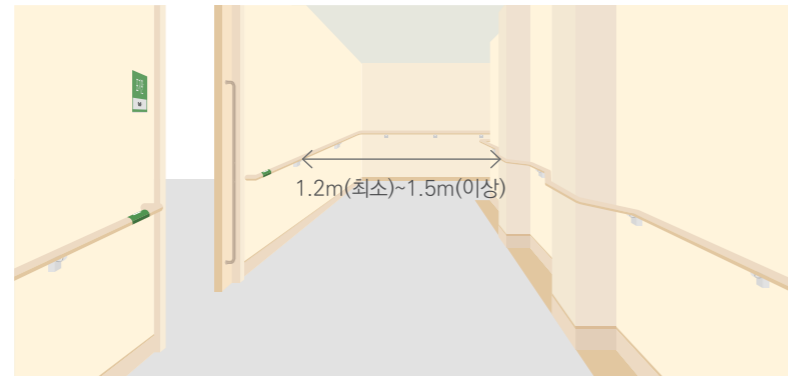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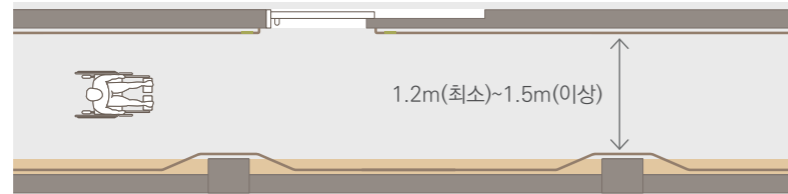
복도에 고정된 장애물 등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말하며, 복도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잡이와 손잡이 사이의 폭을 말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016. 12. 31. ISBN 978-89-6921-322-8)]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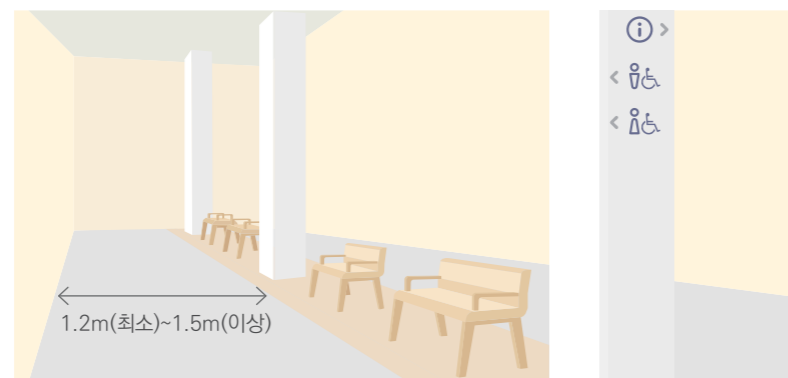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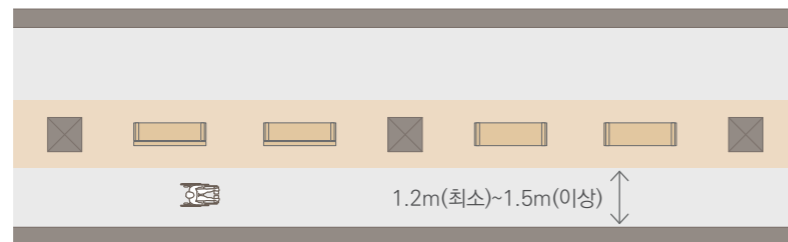
고정된 장애물 설치시 복도 유효폭 측정기준

기둥



- 복도 벽면에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폭이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쪽 손잡이 끝에서 반대편 복도 손잡이까지의 거리로 유효폭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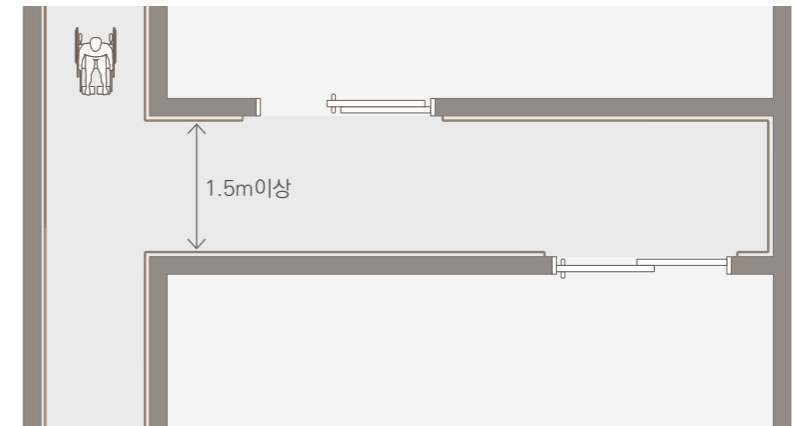
벤치



- 기둥, 벤치 등 고정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끝(Barrier Zone)에서 반대편 복도 벽까지의 거리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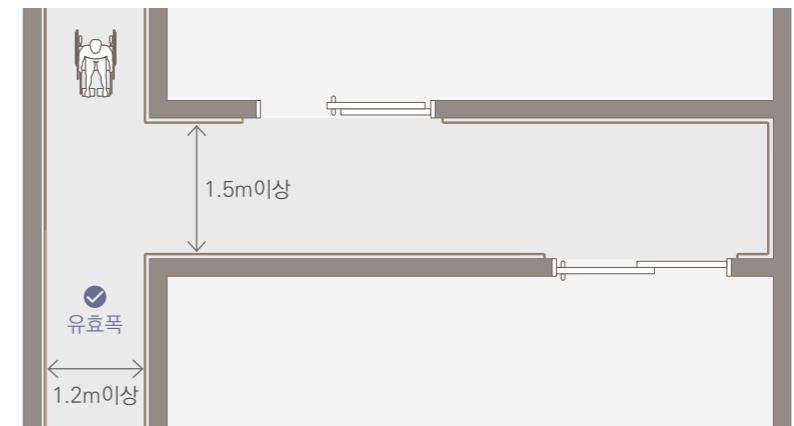
복도 끝에 설치된 실에 접근하는 경우



- 복도 끝에 설치된 실을 접근하는 경우 휠체어사용자의 활동공간을 고려하여 복도의 유효폭을 1.5m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사항

복도 유효폭 측정기준



- 건물의 전체 복도 중 폭이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2.2 복도



2.2.2 단차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의 바닥면 단차 정도로 평가

배점 복도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산출기준 3점 (평가항목)

구분	단차	점수
최우수	복도에 단차가 전혀 없음	3.0
우수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2.4
일반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2.1

· 복도에 여러 부분에서 단차 발생시, 단차 중 그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복도의 바닥면 단차를 측정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단차를 극복하여야 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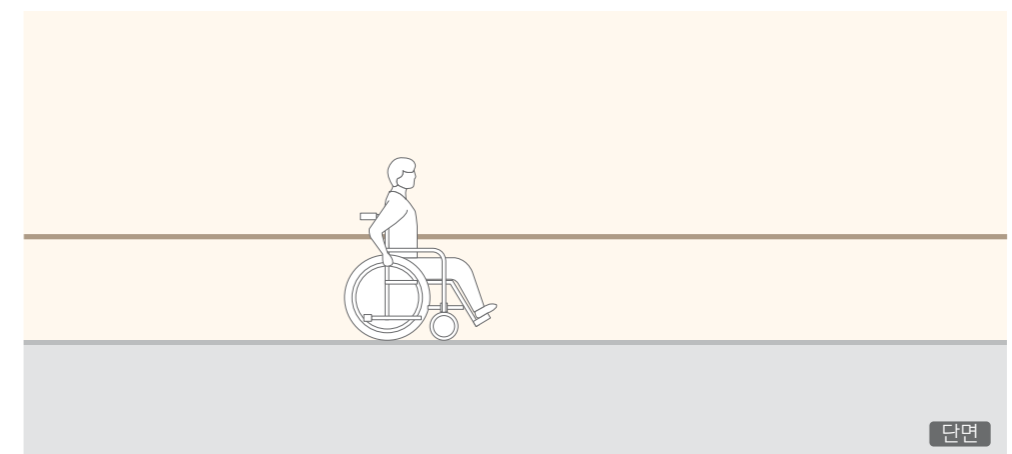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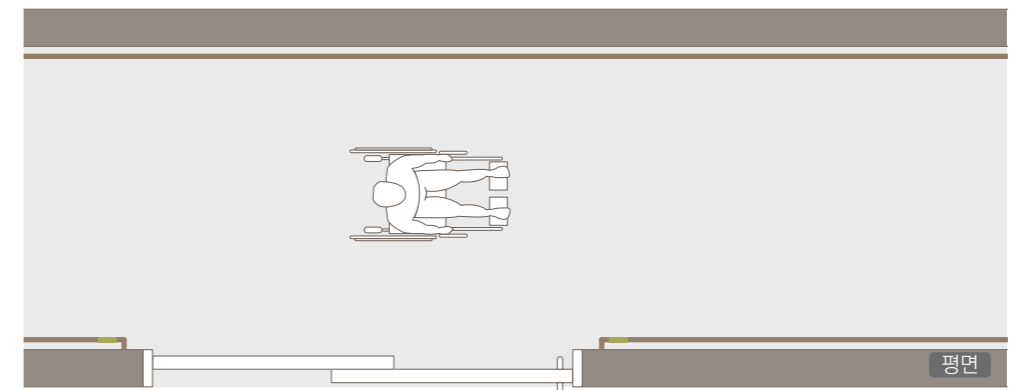
복도의 여러 부분에서 단차 발생시, 단차 중 그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복도의 바닥면 단차를 측정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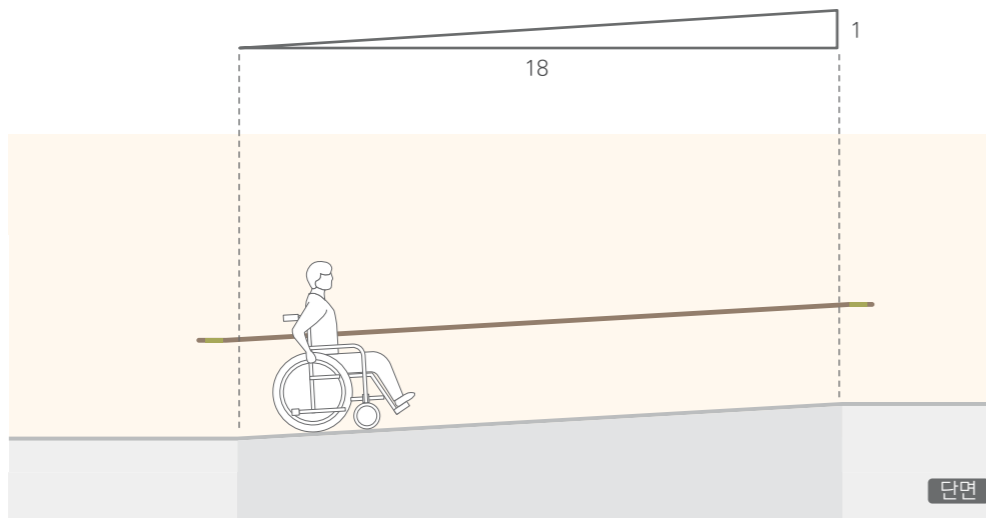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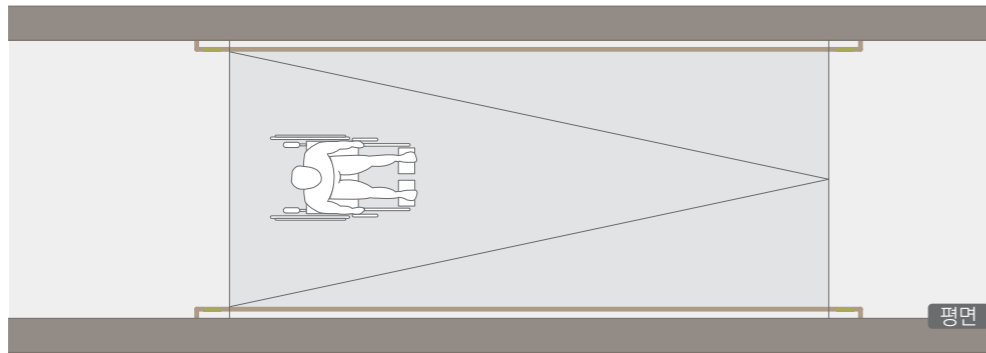
제7호나목(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최우수 복도에 단차가 전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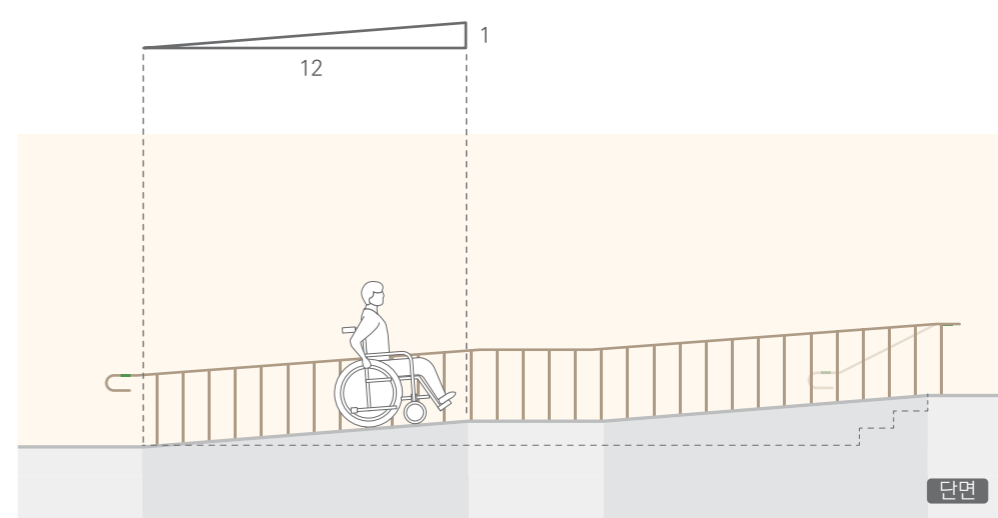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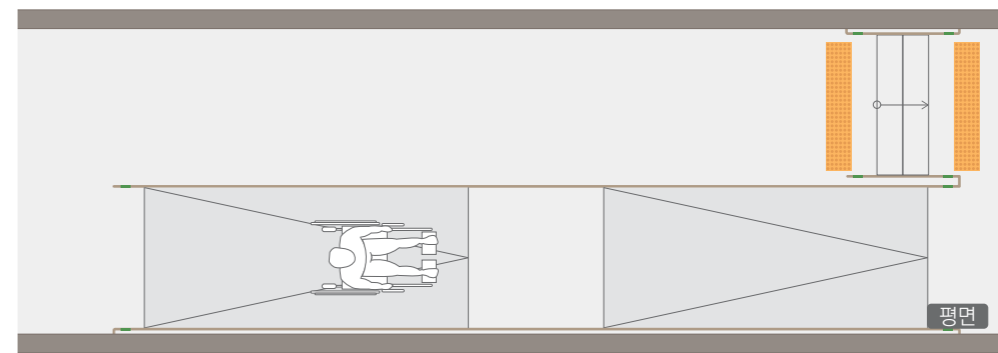
· 복도의 바닥면에는 단차가 전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 우수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 복도의 바닥면에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를 1/18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복도의 경사로는 2.4경사로 산출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일반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 복도의 바닥면에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를 1/12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복도의 계단 및 경사로는 2.3계단, 2.4경사로 산출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2.2 복도



2.2.3 바닥 마감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마감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복도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2.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색상 및 재질 변화로 유도	1.6
일반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4

- 시각장애인의 유도는 복도 벽면의 핸드레일과 바닥 재질 또는 색상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함
- 건축물이 한 개의 실로 구성되어 복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 홀 등의 내부 바닥 마감으로 복도의 바닥 마감 항목을 평가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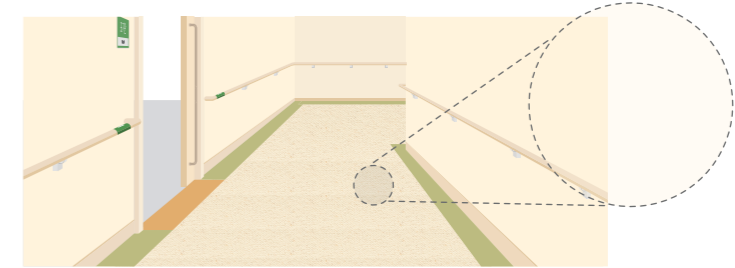
- 1 시각장애인의 유도는 복도 벽면의 핸드레일과 바닥 재질 또는 색상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함
 - 2 건축물이 한 개의 실로 구성되어 복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 홀 등의 내부 바닥마감으로 복도의 바닥마감 항목을 평가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7호나목(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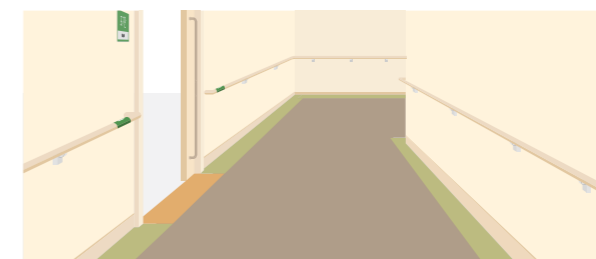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 복도의 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색상 및 재질 변화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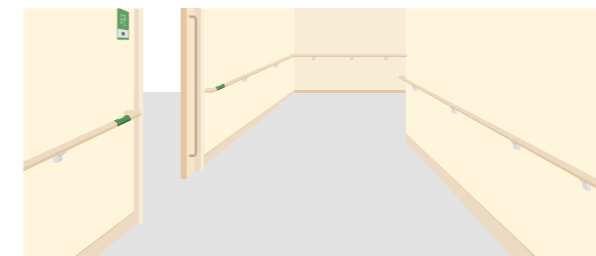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색상 및 재질 변화로 유도



- 복도의 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색상 및 재질 변화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 일반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 복도의 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2.2 복도



2.2.4 보행장애물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복도의 설치물 또는 장애물로 인해 부딪히는 위험 없이 복도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의 제거 여부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복도의 보행장애물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장애물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m에서 0.35m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하고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	2.0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벽면에 부적절한 돌출물 및 충돌 위험이 있는 설치물이 전혀 없고 바닥면에 이동장애물이 전혀 없음	1.6
일반	벽면에 돌출물이 있으나 0.1m이내로 설치	1.4

- 복도의 보행장애물은 높이 2.1m이내에 있는 장애물만 평가함
- 건축물 내부에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경우 그 돌출폭이 가장 큰 장애물을 기준으로 측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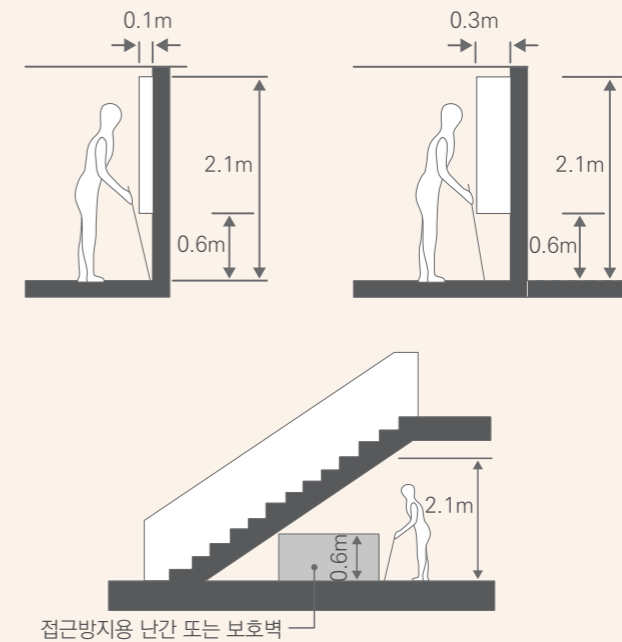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복도의 보행장애물은 높이 2.1m이내에 있는 장애물만 평가함
- 2 유효높이 2.1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함
- 3 건축물 내부에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경우 그 돌출폭이 가장 큰 장애물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며 모든 돌출물은 기준 이내에 설치되어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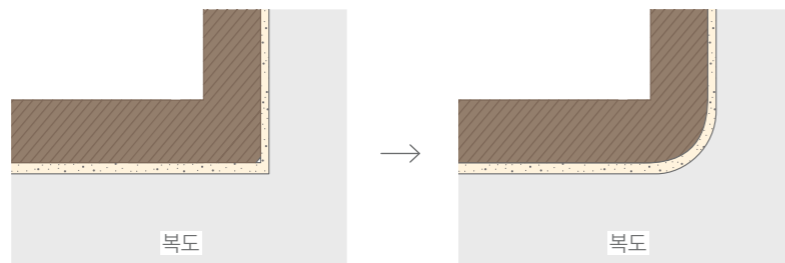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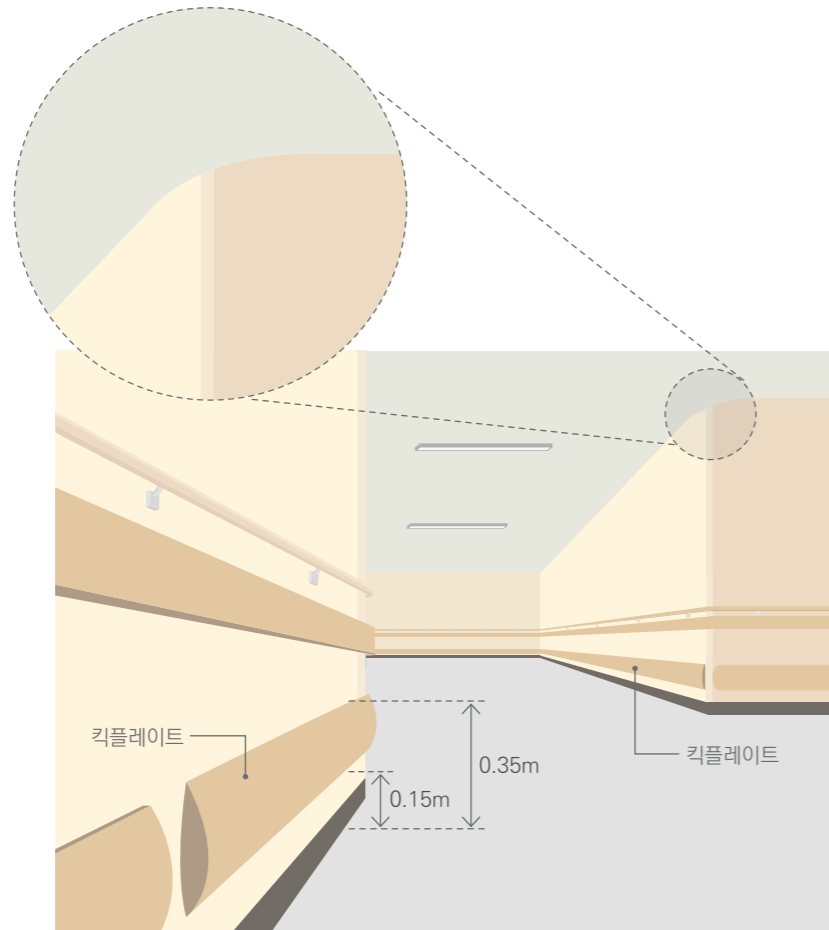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 제7호라목(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제7호라목(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제7호라목(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호마목(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호마목(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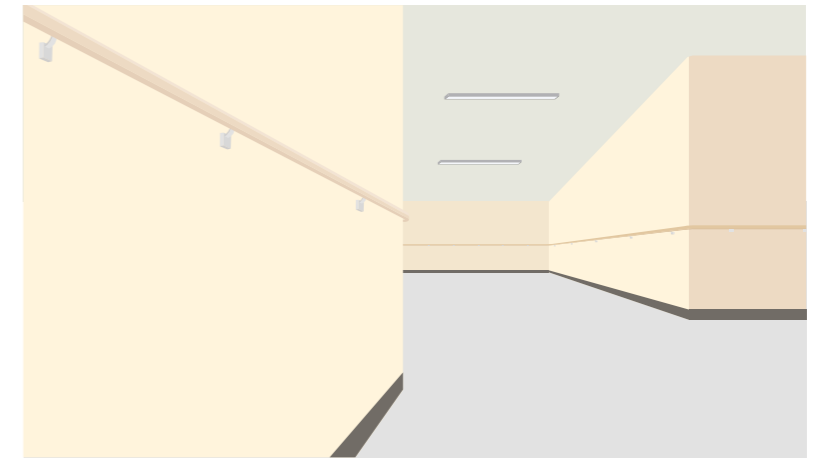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m에서 0.35m까지 키클레이트를 설치하고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동글게 마감



-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m에서 0.35m까지 키클레이트를 설치하고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동글게 마감하여야 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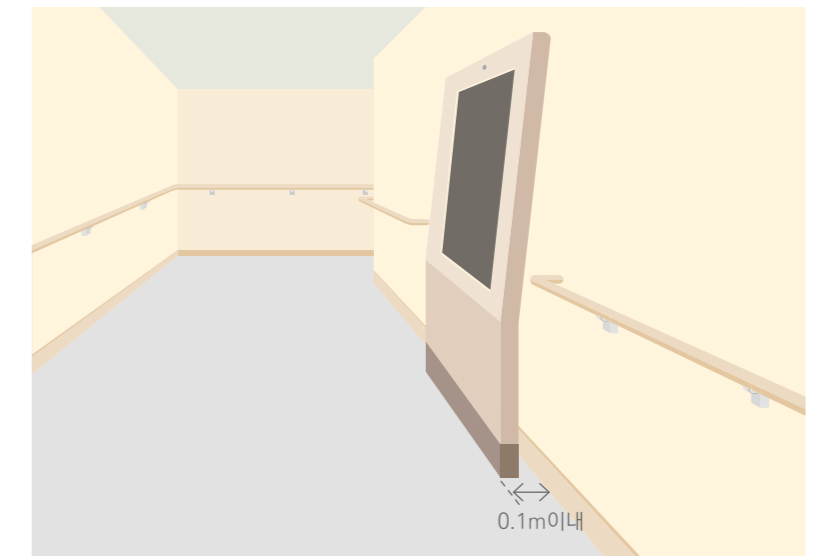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벽면에 부적절한 돌출물 및 충돌 위험이 있는 설치물이 전혀 없고 바닥면에 이동장애물이 전혀 없음



- 복도 벽면 및 바닥면에 부적절한 돌출물 및 충돌 위험이 있는 장애물이 전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 일반

벽면에 돌출물이 있으나 0.1m이내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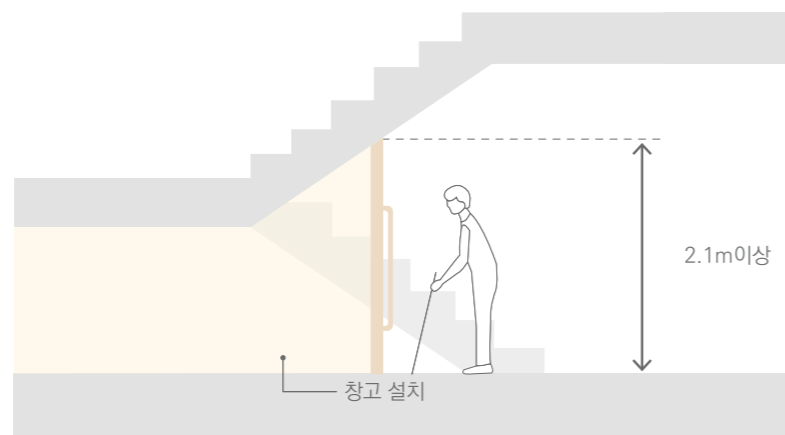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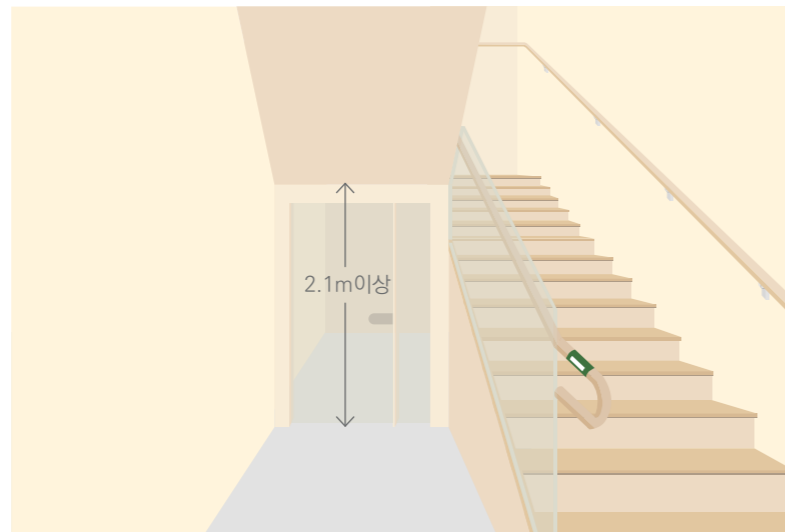


- 복도 벽면에 돌출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부득이하게 돌출물이 설치될 경우 돌출폭은 0.1m이내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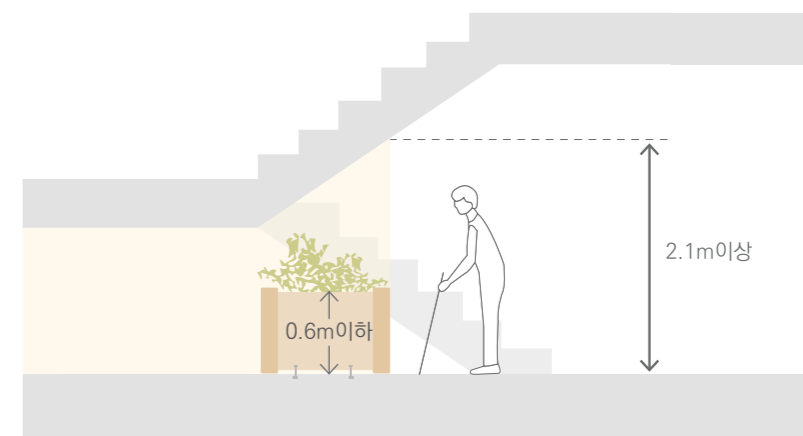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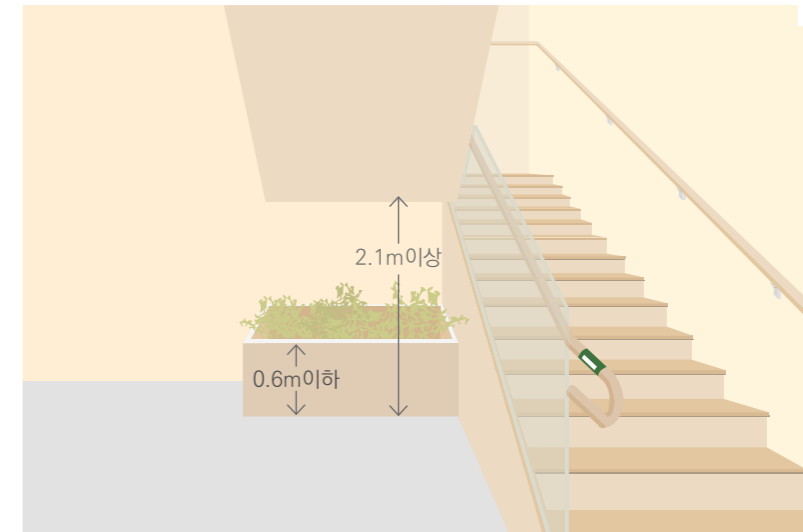
계단 하부 보행장애물 안전조치

Type 1



- 계단 하부 2.1m높이까지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참고 등을 설치하여 안전조치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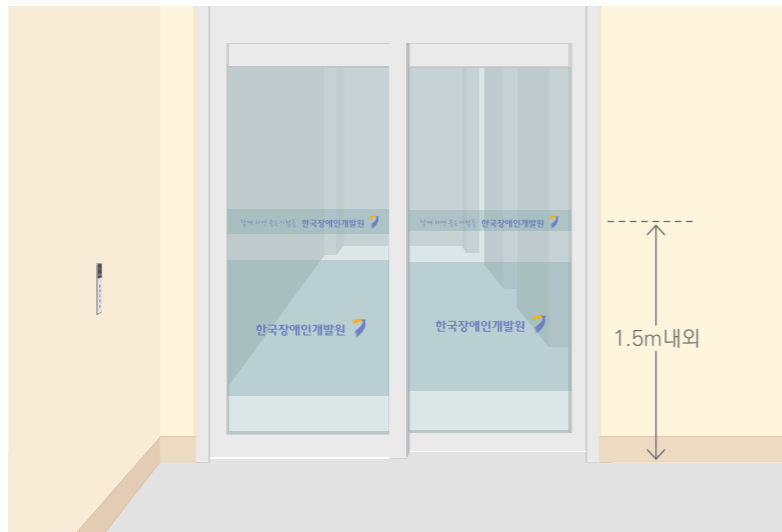
Type 2



- 계단 하부 2.1m높이까지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고정형 플랜트박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조치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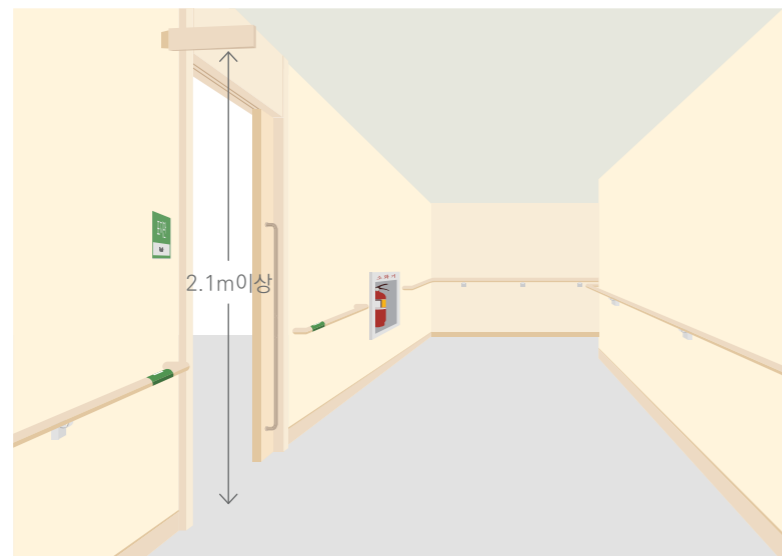
유리문, 유리벽 보행장애물 안전조치



- 유리문, 유리벽 등 보행자가 인지 가능하도록 바닥에서 1.2~1.5m높이에 유색띠 지 등을 부착하여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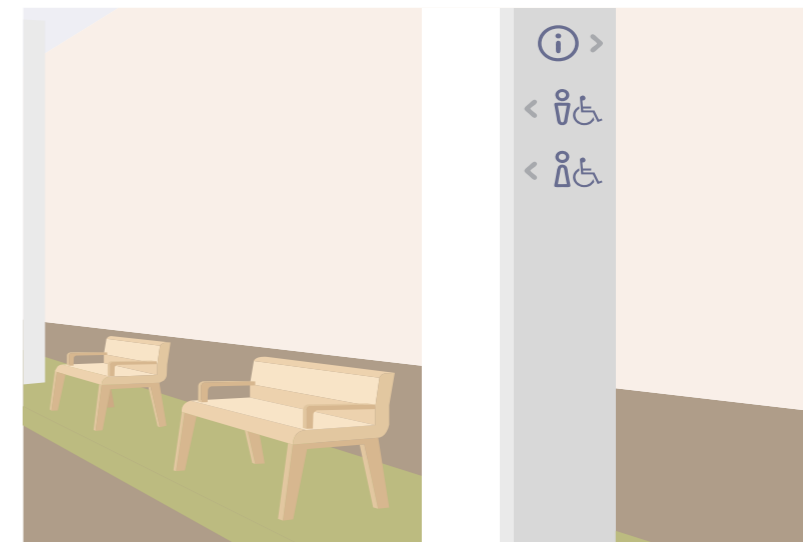
복도 보행장애물 안전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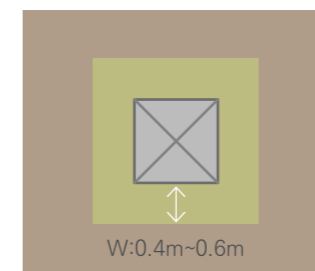
- 복도에 소화기, 달대형 안내표지판 등의 장애물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독립기둥 등 보행장애물 안전조치



- 기둥 등 복도에 돌출물이 설치되는 경우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하여 안전하게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복도에 기둥 등이 설치될 경우 기둥 바닥면에 W:0.4m~0.6m 이색, 이질 조치를 하거나 접근방지 난간 등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보행장애물

다양한 이용자가 복도를 통행하는데 벽면에 돌출물 등 의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2.2.5 연속손잡이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연속손잡이를 평가하여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인 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의 주이동 경로상에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 양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및 손잡이 규격 확보 정도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복도의 연속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연속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2.0
우수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및 손잡이 끝부분에 점자 표기)	1.6
일반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1.4

- 복도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높이가 0.65m 내외에 있어야 동일하게 평가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복도 손잡이의 설치 높이는 0.8~0.9m, 벽에서 5cm내외로 이격,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함
- 2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높이가 0.65m 내외에도 설치하여야 동일하게 평가함
- 3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함
- 4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5 복도의 손잡이는 연속하여 설치하여야하나,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 설치를 제외 가능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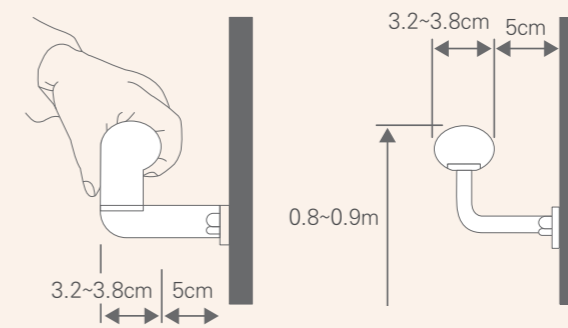
제7호다목(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호다목(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제7호다목(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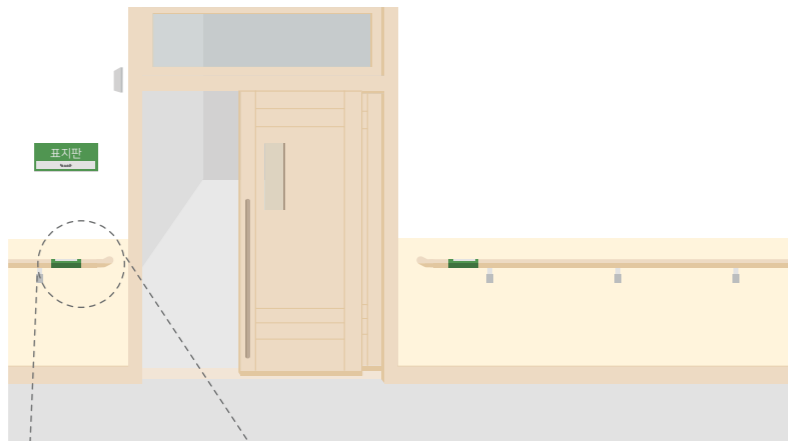
제7호다목(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제7호다목(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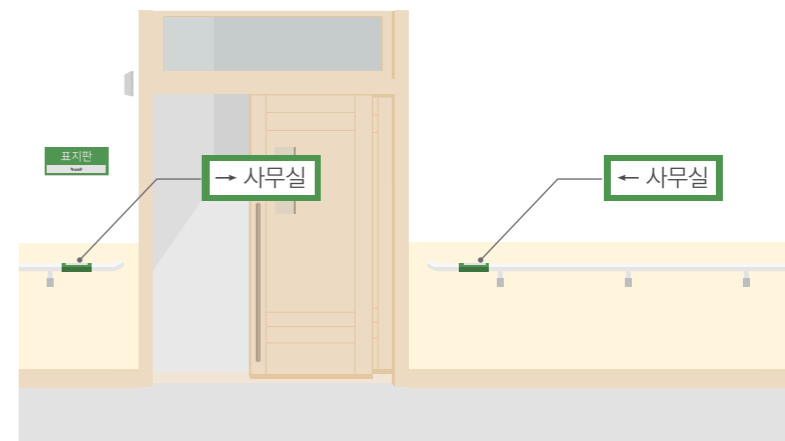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 연속손잡이 설치시 손잡이 끝부분에 점자를 표기하고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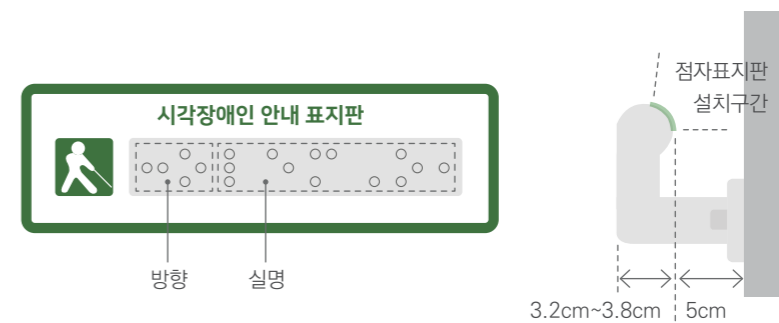
★★ 우수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및 손잡이 끝부분에 점자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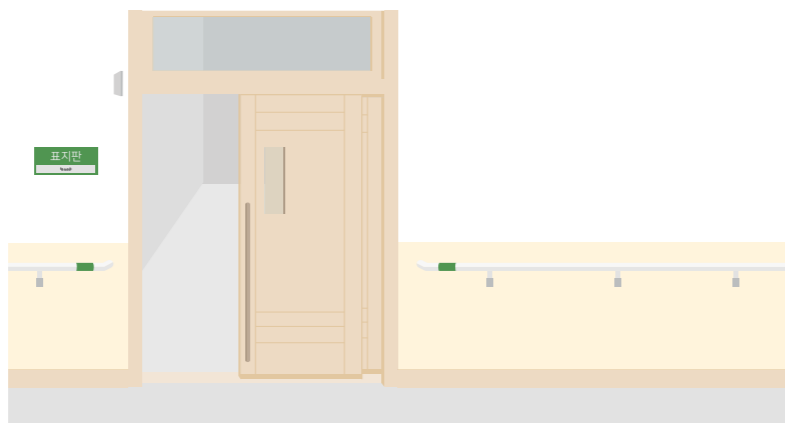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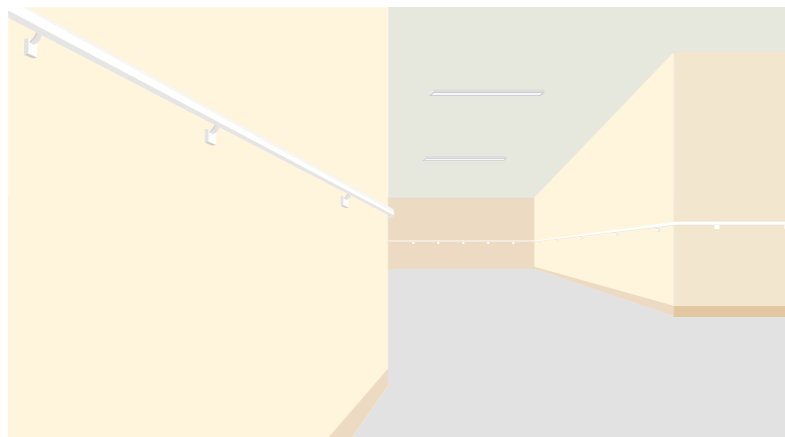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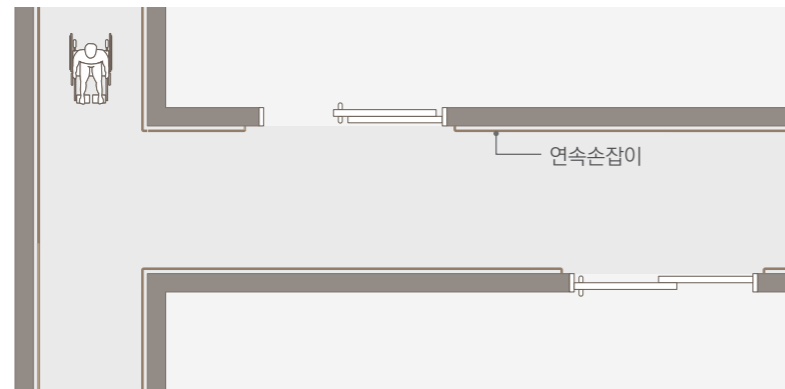
- 연속손잡이 설치시 손잡이 끝부분에 점자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복도 손잡이
점자표지판



- 복도 연속손잡이 점자표지판의 내용은 실명점자 내용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 손잡이 이격거리는 벽면으로부터 5cm이상 이격하고 높이는 0.8m~0.9m사이에 설치하여야 함
- ※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설치 높이는 0.65m내외에도 설치되어야만 최우수로 평가함
- ※ 손잡이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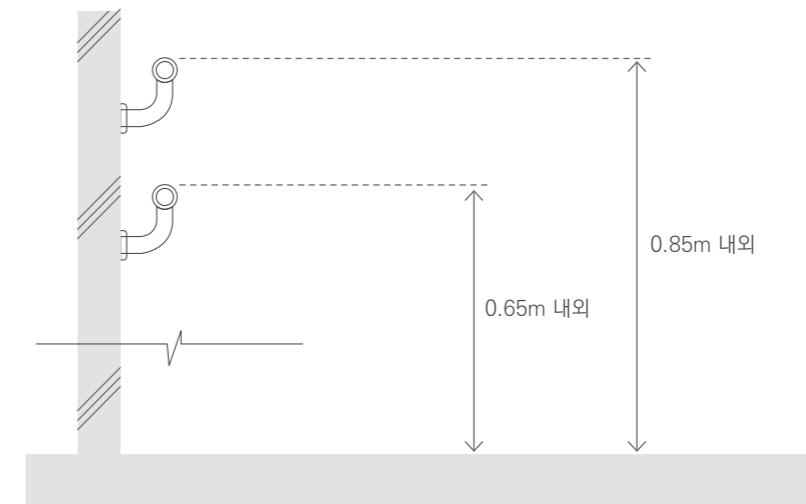
★ 일반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 복도 손잡이는 연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2단손잡이 설치



· 복도 손잡이가 2단으로 설치되는 경우 바닥면에서 1단 손잡이는 0.85m 내외, 2단 손잡이는 0.65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3 계단

2.3.1 형태 및 유효폭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팡이가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정도, 난간하부에 추락방지턱 설치 여부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계단 형태 및 유효폭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이상 확보	3.0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하고, 2cm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2.4
일반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2.1

·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추락방지턱부터 반대편 계단 벽면까지의 폭을 측정하며, 건축물 내 여러 개의 계단이 있는 경우 주계단을 평가대상으로 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유효폭은 계단 및 참의 가장 좁은 부분의 너비로 측정함
- 2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양측 손잡이 안목치수로 측정하여 평가함
- 3 건물 내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이상 확보하여야 함
- 4 건축물 내 모든 계단을 평가 대상으로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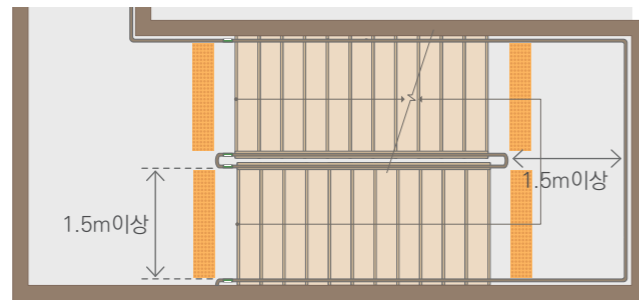
제8호가목(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제8호가목(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제8호나목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호바목(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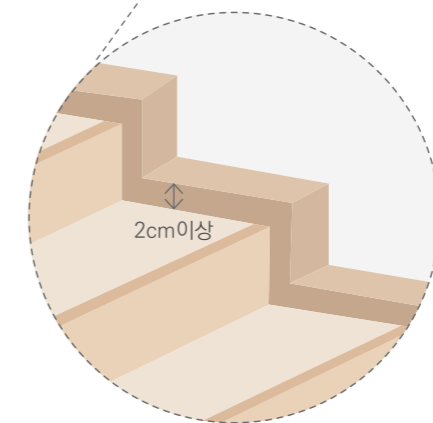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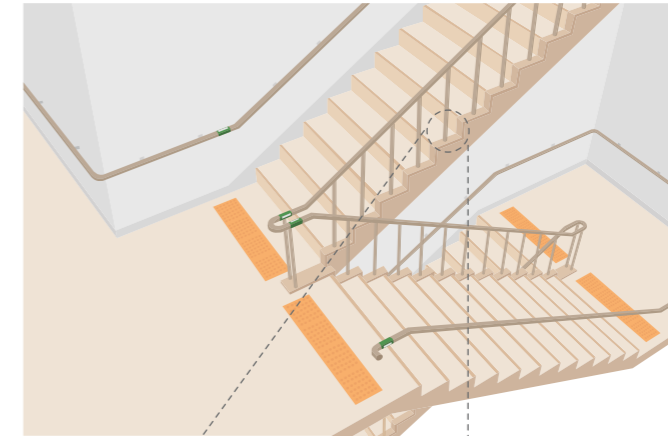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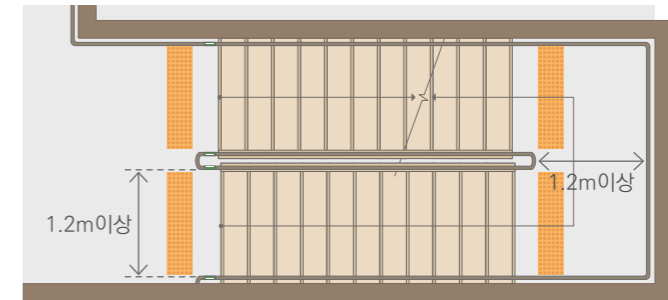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이상 확보



-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지턱은 2cm이상,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5m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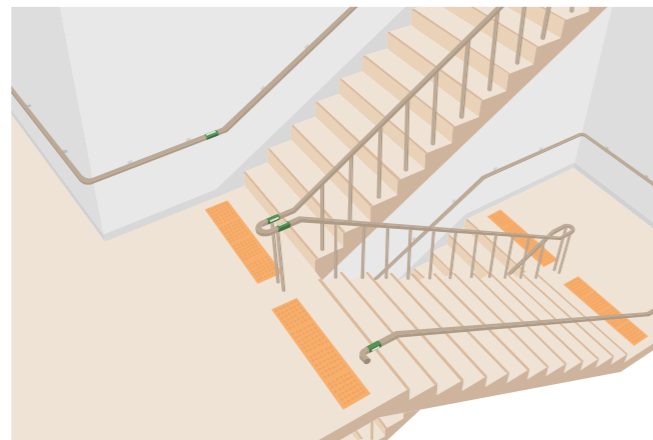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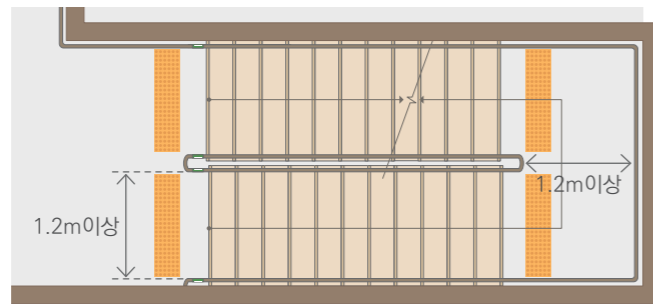
★★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하고, 2cm이상의 추락 방지턱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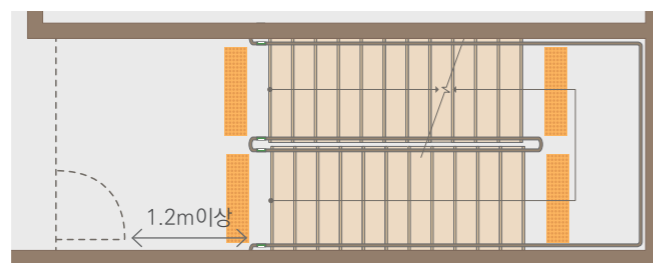
-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측면에 목발이나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2cm이상,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 일반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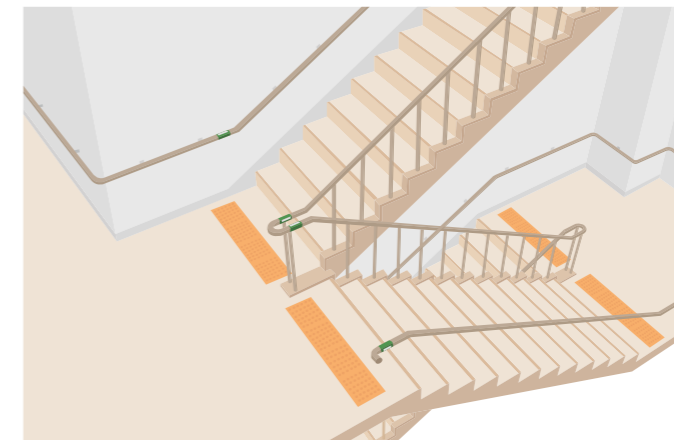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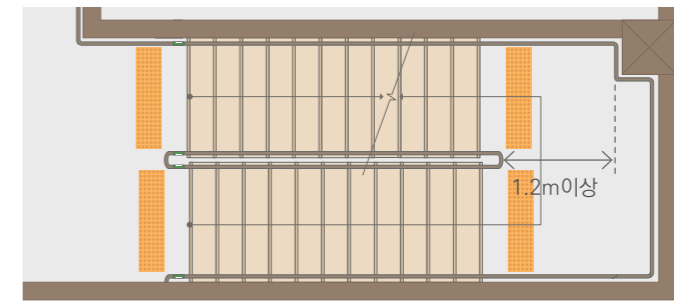
-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가장 좁은 부분의 너비를 측정하며, 최소 1.2m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계단에 방화셔터를 설치할 경우 사례



- 방화셔터의 위치를 고려하여 비상시에도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이 최소 1.2m이상 확보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사항 계단 중간참에 기둥이 설치될 경우 사례



- 계단 및 참에 기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유효폭은 1.2m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 계단 및 참에 기둥, 손잡이, 추락방지턱 등 돌출폭이 가장 큰 돌출물을 기준으로 유효폭을 측정함

지A 계단 및 참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추락방지턱, 손잡이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말한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7. 12.(공공건물·공원·공동주택)]

2.3 계단

2.3.2 철탈면 및 디딤판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의 철탈면 및 디딤판을 평가하여 비상시나 시각장애인이 계단으로 이동할 때 일정한 높이의 계단을 딛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너비의 철탈면 및 디딤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에 철탈면 및 디딤판 설치와 식별정도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계단의 철탈면 및 디딤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철탈면 및 디딤판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조명 및 색상을 달리하여 철탈면과 디딤판의 명확한 식별 가능	3.0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1.8m이내마다 휴식참 설치	2.4
일반	모든 계단에 철탈면 설치 철탈면 0.18m이하, 디딤판 0.28m이상, 철탈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이상으로 설치 계단코는 3cm미만으로 설치	2.1

- 철탈면을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코의 색상 및 재질을 달리하면 기울기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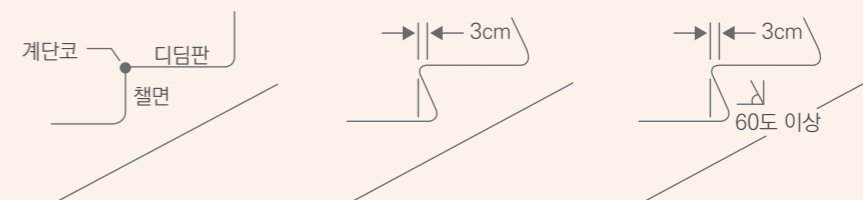
산출기준 기본사항

- 계단에는 철탈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계단 철탈면의 높이와 디딤판의 너비는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함
- 철탈면을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코의 색상 및 재질을 달리하면 기울기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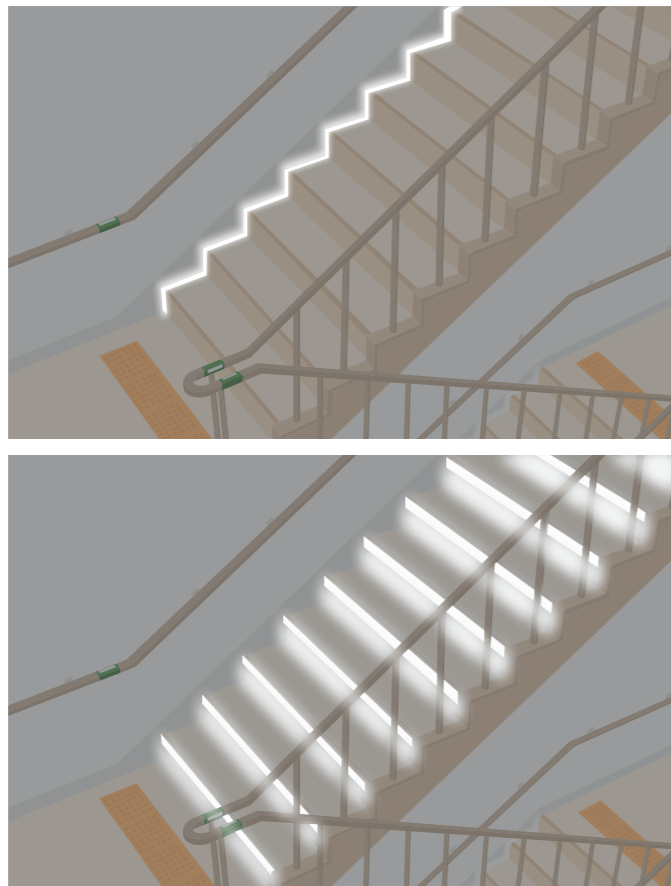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8호다목(1) 계단에는 철탈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8호다목(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철탈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탈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8호다목(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철탈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호바목(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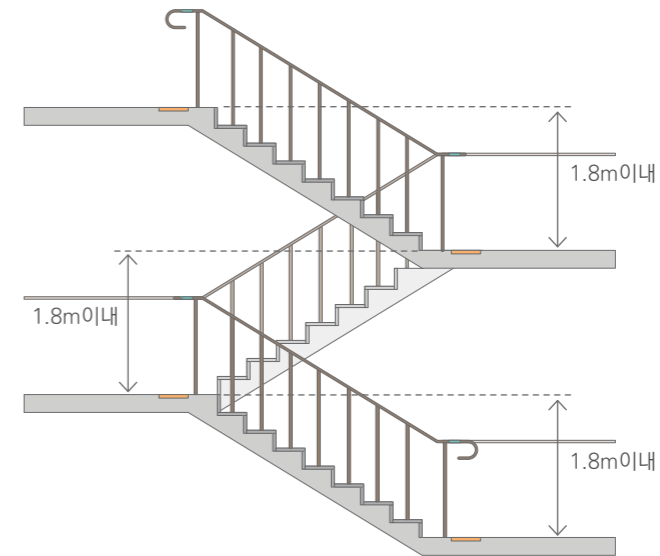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조명 및 색상을 달리하여 철평면과 디딤판의 명확한 식별 가능



- 계단의 철평면과 디딤판의 조명 및 색상을 달리하여 명확히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철평면 0.18m이하, 디딤판 0.28m이상으로 하며, 디딤판의 너비와 철평면의 높이를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디딤판의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철평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cm미만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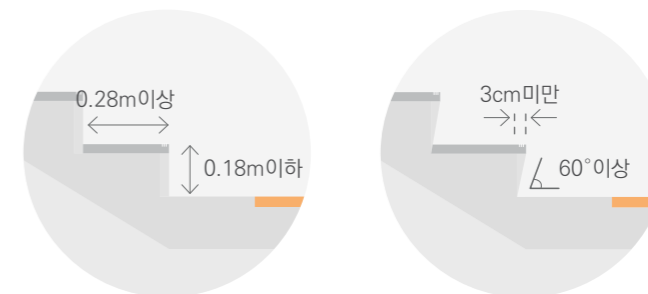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1.8m이내마다 휴식참 설치



- 철평면 0.18m이하, 디딤판 0.28m이상으로 하며, 디딤판의 너비와 철평면의 높이를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디딤판의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철평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cm미만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계단의 높이 1.8m이내마다 휴식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일반

모든 계단에 철평면 설치
철평면 0.18m이하, 디딤판 0.28m이상, 철평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이상으로 설치
계단코는 3cm미만으로 설치



- 철평면 0.18m이하, 디딤판 0.28m이상으로 하며, 디딤판의 너비와 철평면의 높이를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디딤판의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철평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cm미만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3 계단

2.3.3 바닥 마감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의 마감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계단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계단코의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여부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계단의 마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점수
최우수	계단 전체의 바닥표면이 전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발디딤 부분은 촉각 혹은 시각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잘 인지될 수 있는 것을 사용	2.0
우수	계단코에 경질고무류, 줄눈 등의 미끄럼방지설비를 설치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6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계단코는 미끄럼방지설비를 설치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어야 함
- 2 계단코는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 또는 색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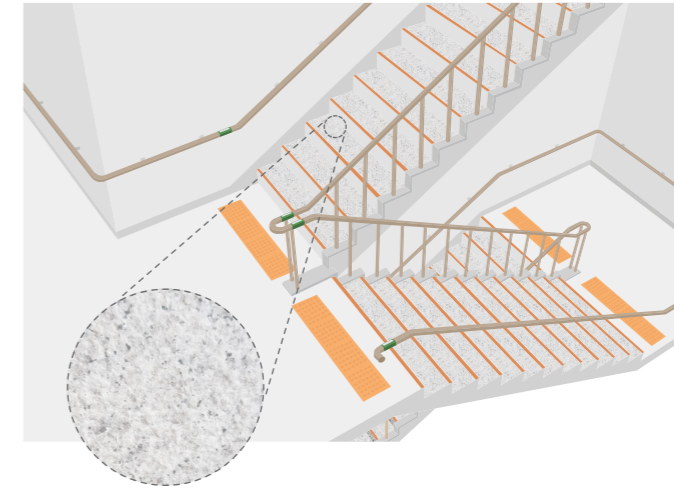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8호마목(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제8호마목(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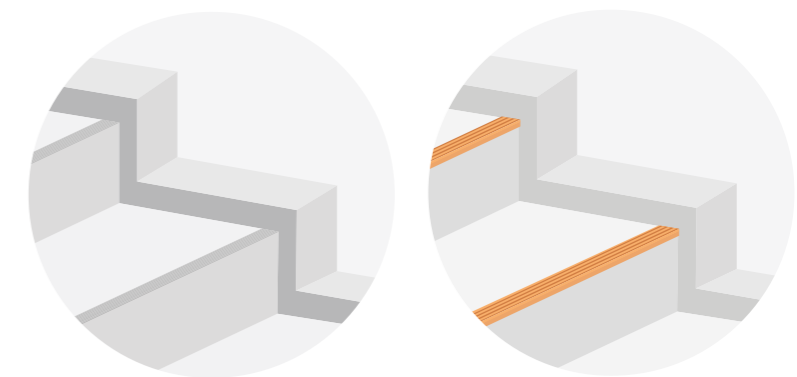
계단 전체의 바닥표면이 전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발디딤 부분은 촉각 혹은 시각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잘 인지될 수 있는 것을 사용



· 계단 전체의 바닥표면이 전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발디딤 부분은 촉각 혹은 시각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계단코에 경질고무류, 줄눈 등의 미끄럼방지설비를 설치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 계단코는 미끄럼방지설비를 설치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시인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단코는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줄눈 및 황동눈슬림은 지양함

2.3 계단

2.3.4 손잡이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 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계단을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 양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굵기로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계단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2.0
우수	연속손잡이 1단 설치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총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 지판을 부착	1.6

- 계단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
-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설치 높이는 0.65m내외에 설치되어야만 최우수로 평가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계단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는 3.2cm~3.8cm, 벽면에서 5cm이상 이격하여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2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함
- 3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4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설치하여야 함
- 5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설치 높이는 0.65m내외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 6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 설치 제외 가능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8호라목(1)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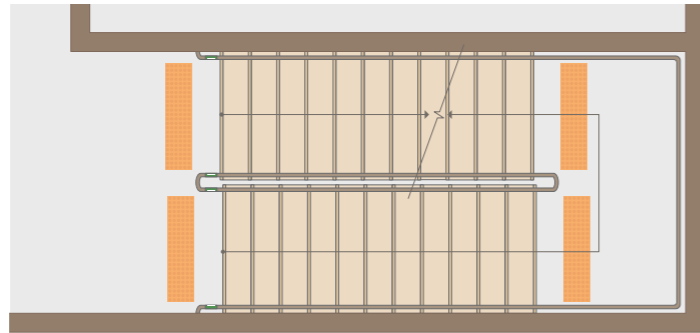
제8호라목(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호라목(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총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호라목(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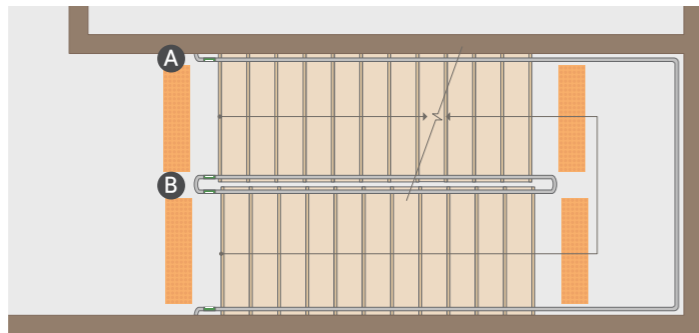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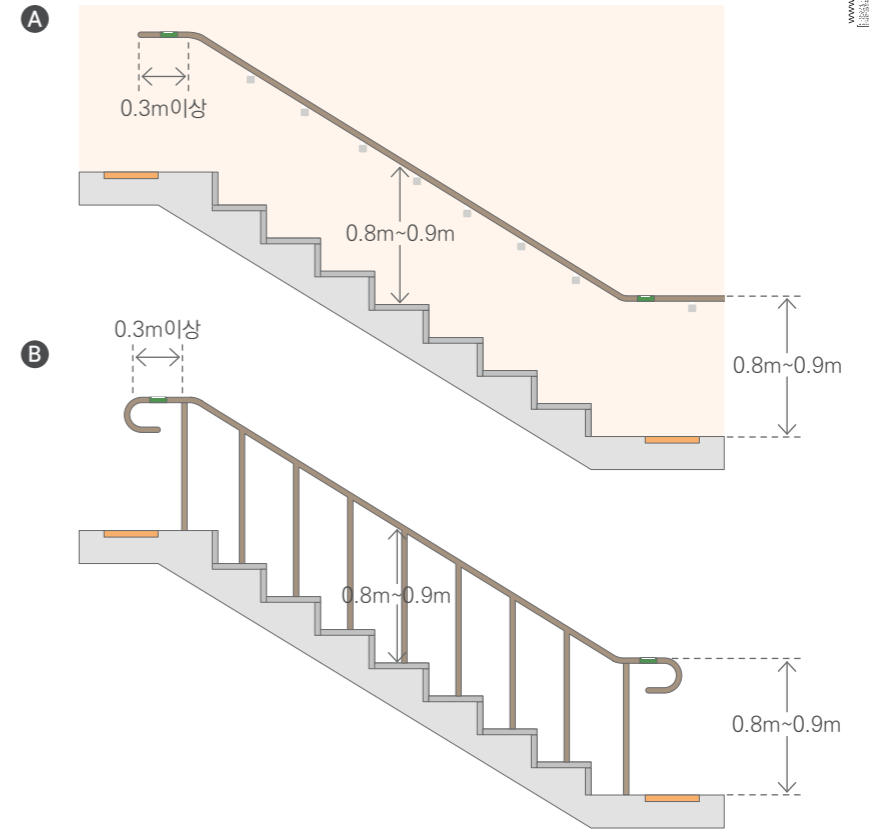
- 계단 손잡이는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하여야 하며 시작과 끝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손잡이는 차갑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우수

연속손잡이 1단 설치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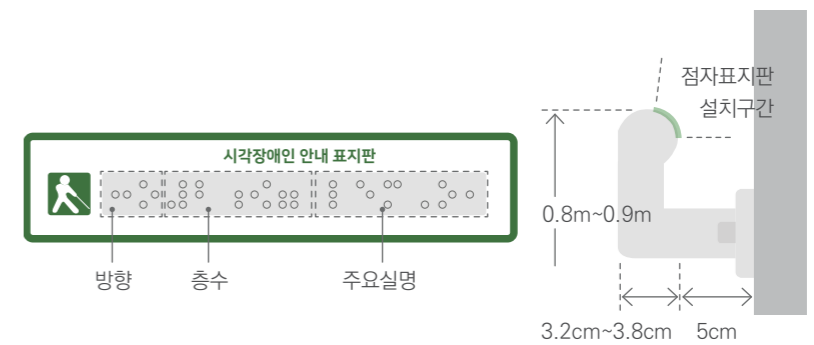


- 계단 손잡이는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하여야 하며 시작과 끝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계단 손잡이는 0.8m~0.9m 높이로 연속하여 설치하고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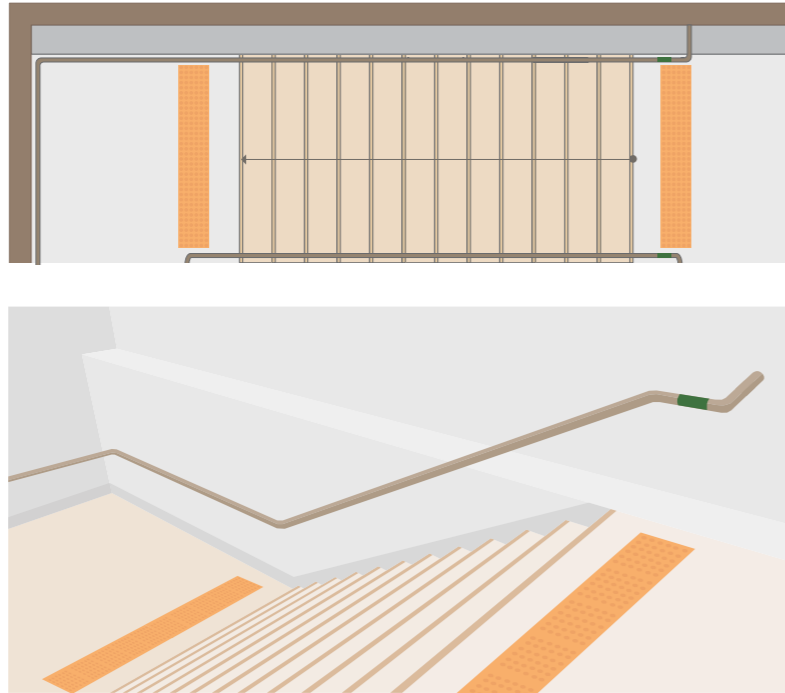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 손잡이 이격거리는 벽면으로부터 5cm이상 이격하고 높이는 0.8m~0.9m사이에 설치하여야 함
- ※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설치 높이는 0.65m내외에도 설치되어야 최우수로 평가함
- ※ 손잡이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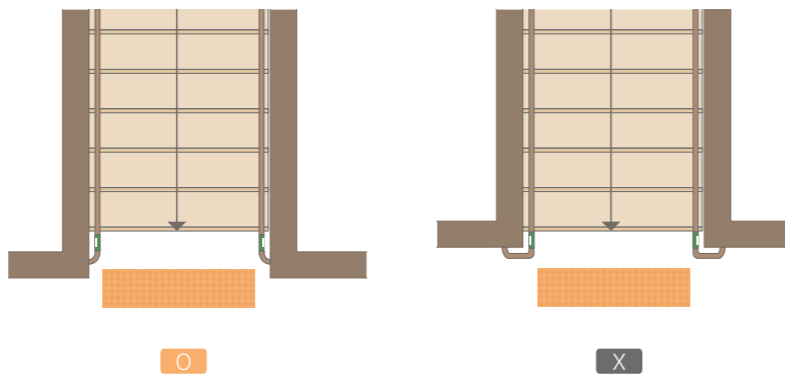
계단에 보 등이 돌출되어 있을 경우에 손잡이 설치 사례



- 계단에 보 등 돌출부분으로 인하여 손잡이가 굴절될 경우에는 손잡이를 직선화하여 연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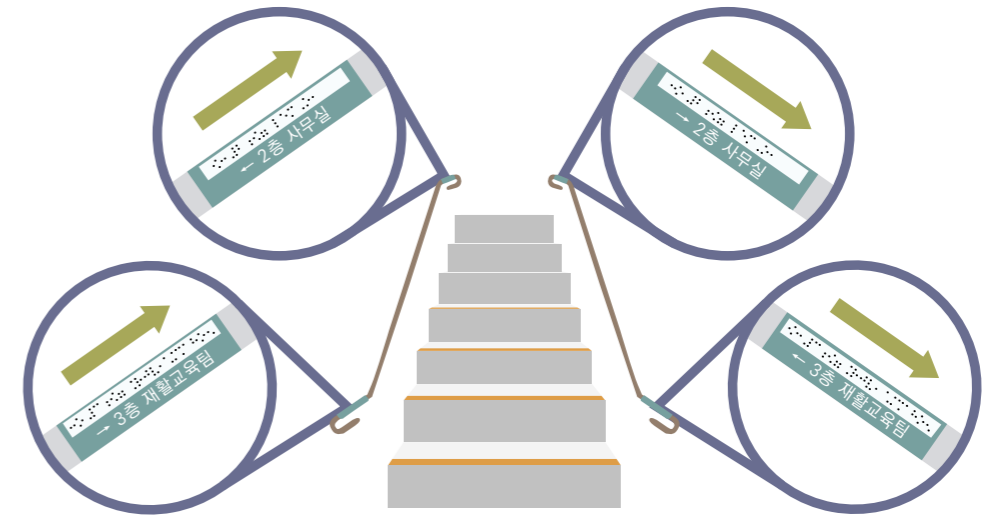
계단의 첫 단 및 수평손잡이 설치 위치 방법



- 손잡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는 0.3m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을 고려하여 수평손잡이가 복도의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계단 점자표지판 설치방법



촉지방향 → 손잡이와 마주보고 서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2.3 계단

2.3.5 점형블록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의 점형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발바닥 촉감으로 계단이 시작되고 끝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계단의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점형블록	점수
최우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2.0
우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1.6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건물 내 모든 계단은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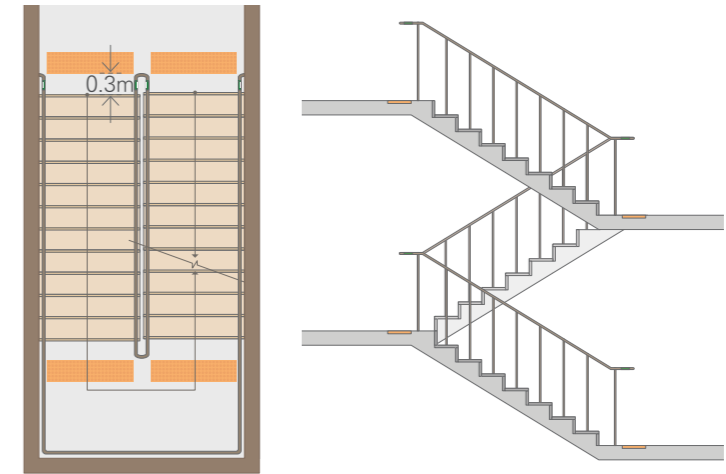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8호마목(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최우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의 0.3m 전면에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을 매립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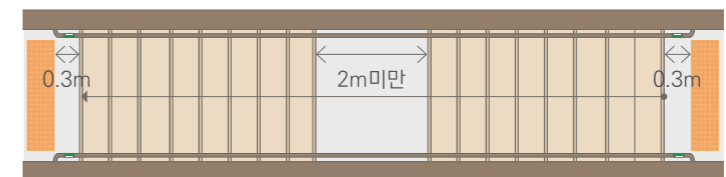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어린이집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획하고, 점형블록 및 손잡이는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우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기타사항

직선형 계단



- 직선형 계단의 중간참의 길이가 2m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참부분에 점형블록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4 경사로

2.4.1 유효폭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경사로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경사로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경사로의 유효폭이 1.5m이상 확보	3.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	2.4
일반	경사로의 유효폭이 1.2m이상	2.1

· 경사로의 유효폭은 추락방지턱으로부터 반대편 벽면까지의 거리로 측정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유효폭은 경사로의 가장 좁은 부분의 너비로 측정함
- 경사로의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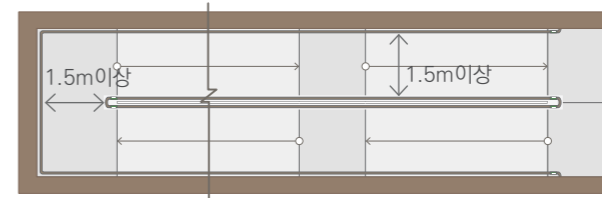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2호가목(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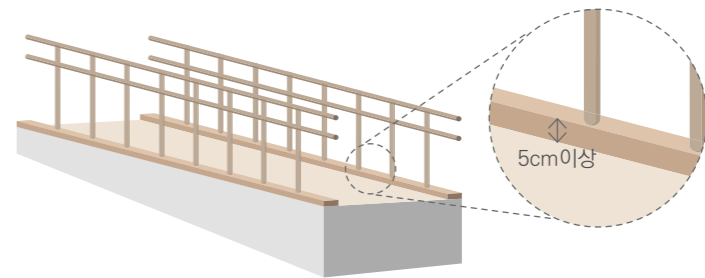
제12호라목(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경사로의 유효폭이 1.5m이상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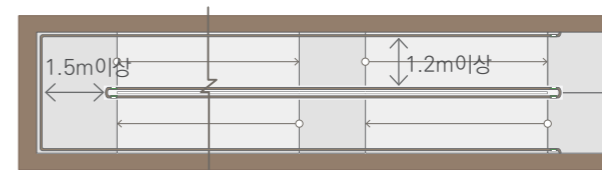
· 경사로의 양측면에는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하고 휠체어사용자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경사로의 유효폭을 1.5m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



·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이상 확보하고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일반 경사로의 유효폭이 1.2m이상



· 경사로의 순수 통행이 가능한 유효폭은 1.2m이상 계획하여야 합니다.

경사로 유효폭

경사로 유효폭은 추락방지턱, 손잡이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말한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7. 12.(공공건물·공원·공동주택)]

2.4 경사로

2.4.2 기울기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기울기 정도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경사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단차	점수
최우수	1/18(5.56%/3.18°)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3.0
우수	1/12(8.33%/4.76°)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2.4

산출기준 기본사항

1 경사로에 횡단구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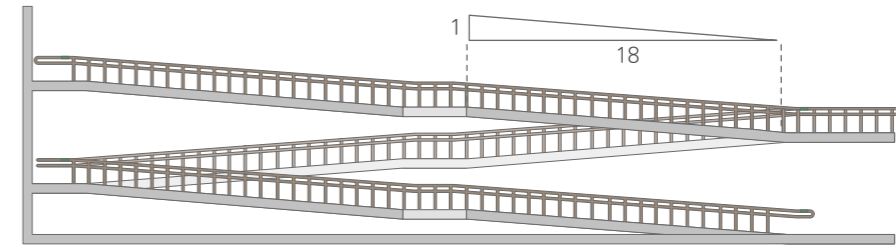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2호나목(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2호나목(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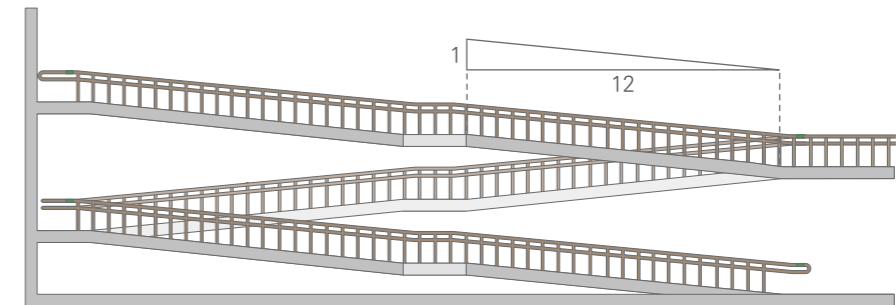
-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0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 최우수 1/18(5.56%/3.18°)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 경사로 기울기는 1/18(5.56%/3.18°)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1/12(8.33%/4.76°)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 경사로 기울기는 1/12(8.33%/4.76°)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경사로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는 1/A의 형식으로 말하며, 1의 높이를 해소하기 위해 A의 거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1/12의 경사로는 0.1m의 높이를 해소하는데 1.2m의 거리부터 경사로는 시작됨을 의미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016. 12. 31. ISBN 978-89-6921-322-8)]

2.4 경사로



2.4.3 바닥마감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마감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경사로를 이용하여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 정도의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경사로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은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2.0
우수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사용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6

산출기준 기본사항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계획하고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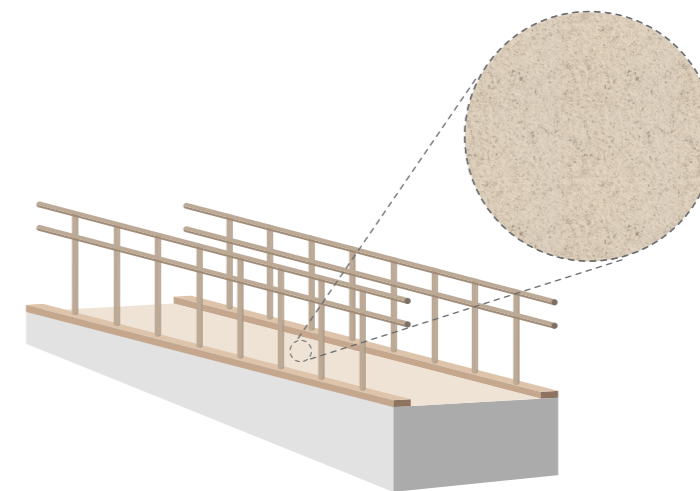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2호라목(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제12호마목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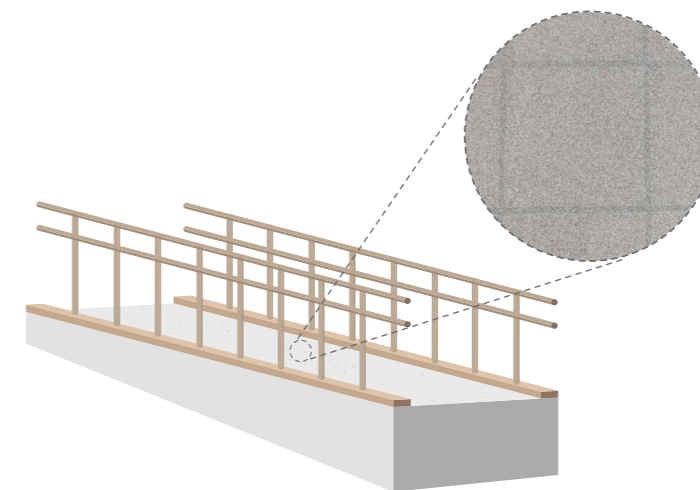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은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 경사로의 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고 걸려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계획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울림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우수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사용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 경사로의 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고, 걸려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합니다.

2.4 경사로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이동하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동공간 확보 여부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경사로 활동공간 및 휴식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활동공간 및 휴식참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충격방지용 매트를 부착	2.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측면에 휠체어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1.6
일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1.5m이상을 휴식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4

- 경사로의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두는 것은 휴식공간이자 상행과 하행의 휠체어가 교행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하기 위함
- 단, 직선형 경사로 참의 폭은 경사로 폭으로 평가 가능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경사로의 굴절부분 및 참에 1.5mX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2 직선형 경사로 참의 폭은 경사로 폭으로 평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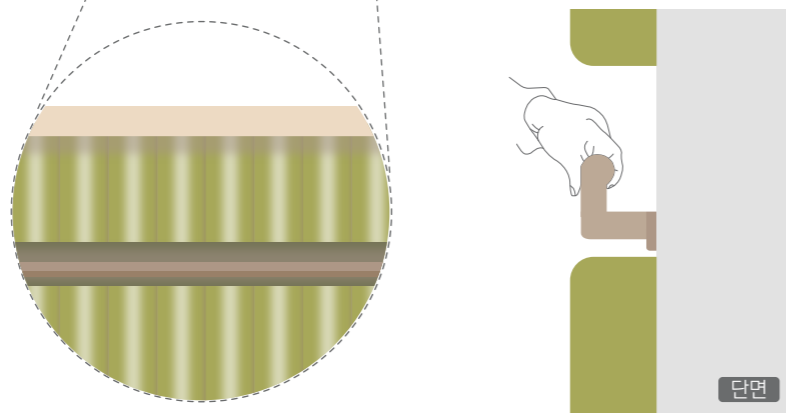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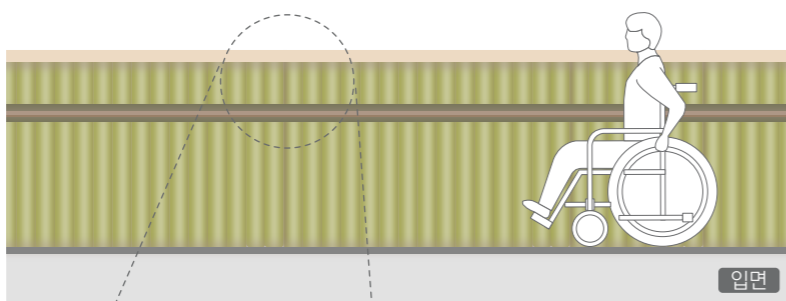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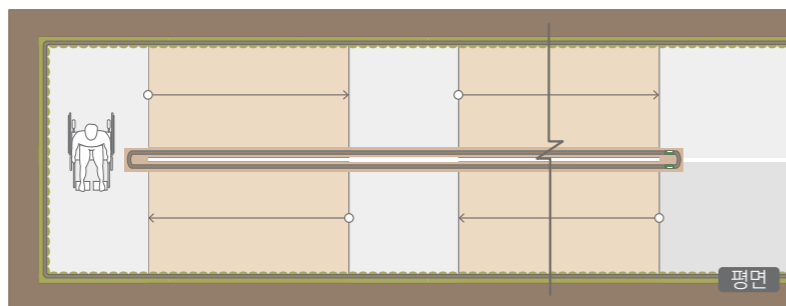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2호가목(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호가목(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제12호라목(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호라목(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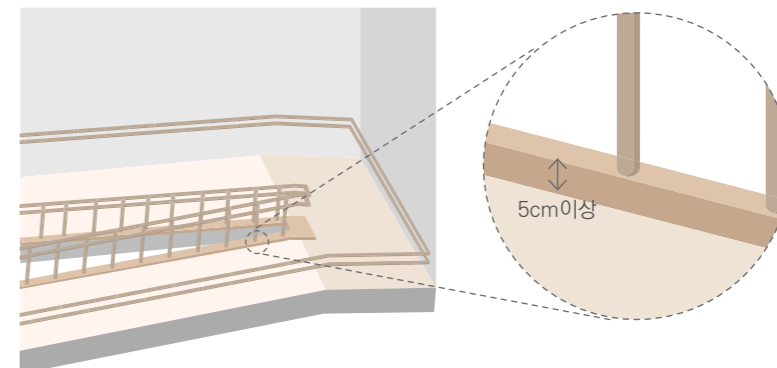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충격방지용 매트를 부착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1.5m이상 수평면으로 확보된 휴식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 X 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양측면에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충격방지용 매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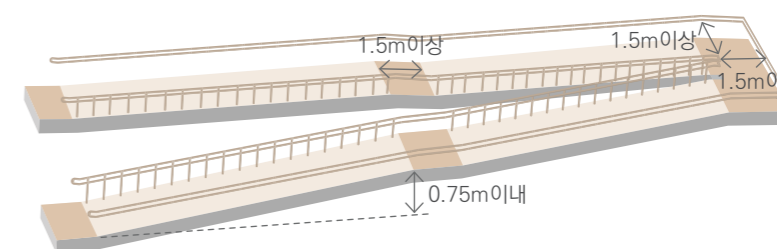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측면에 휠체어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1.5m이상 수평면으로 확보된 휴식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 X 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양측면에 휠체어사용자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일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1.5m이상을 휴식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 X 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1.5m이상 수평면으로 확보된 휴식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 X 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경사로 활동공간

상행과 하행의 휠체어사용자가 교행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 1.5m X 1.5m이상 확보한 수평면으로 된 공간을 말한다.[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산출기준]

2.4 경사로



2.4.5 손잡이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 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경사로를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양측면 손잡이 높이 및 굵기로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경사로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손잡이 2단 설치	2.0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1.6
일반	연속손잡이 1단 설치 색상 및 명도차이가 명확해서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총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1.4

- 경사로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
-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복도 손잡이의 설치 높이는 0.8m~0.9m, 벽에서 5cm내외로 이격,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함
- 2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함
- 3 경사로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함
- 4 경사로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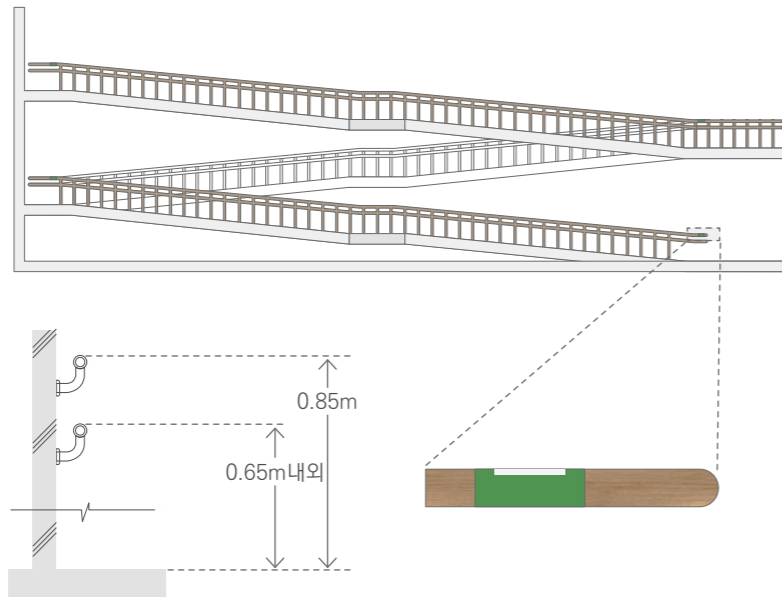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2호다목(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2호다목(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호다목(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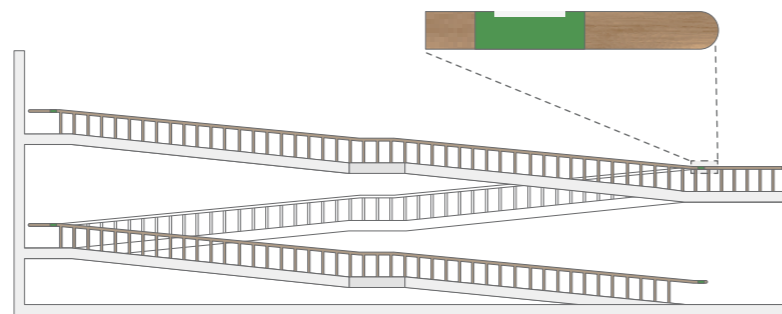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손잡이 2단 설치



- 경사로 손잡이는 색상 및 명도차이가 명확해서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손잡이의 양끝부분에는 방향·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손잡이는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연속 손잡이를 2중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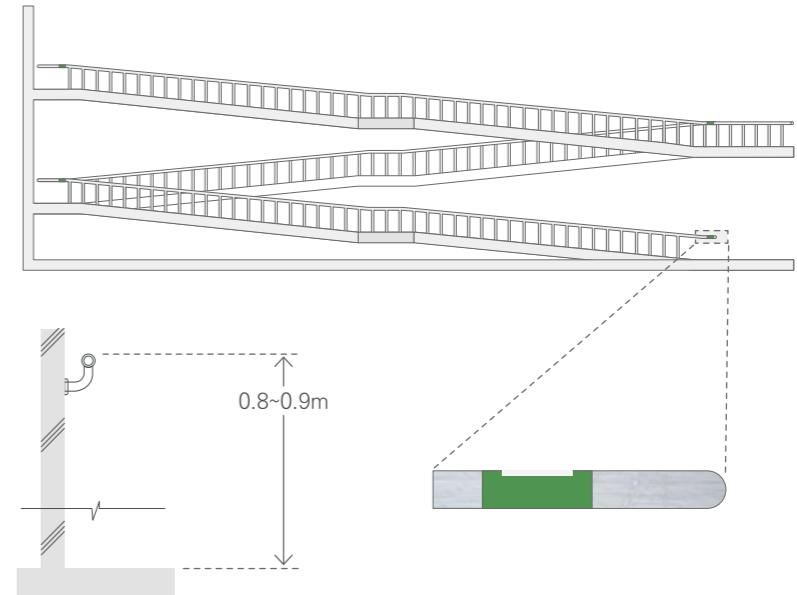


- 경사로 손잡이는 색상 및 명도차이가 명확해서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손잡이의 양끝부분에는 방향·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손잡이는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연속손잡이 1단 설치

색상 및 명도차이가 명확해서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 경사로 손잡이는 색상 및 명도차이가 명확해서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손잡이의 양끝부분에는 방향·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 손잡이 이격거리는 벽면으로부터 5cm이상 이격하고 높이는 0.8m~0.9m사이에 설치하여야 함
- ※ 손잡이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2.5 승강기

2.5.1 전면활동공간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전면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휠체어사용자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활동공간 확보 정도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승강기의 전면활동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전면활동공간	점수
최우수	전면에 1.5m × 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2.0
우수	전면에 1.4m × 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6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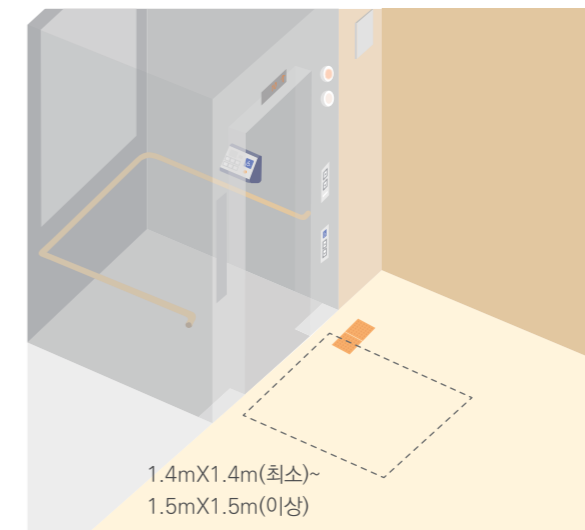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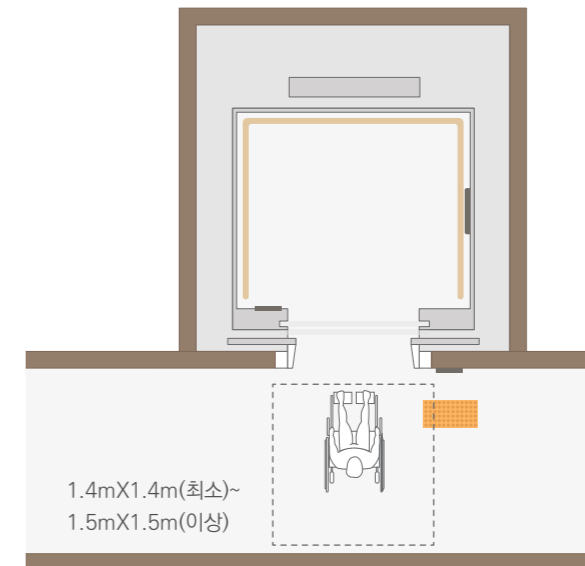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9호가목(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호가목(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 × 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최우수
★★ 우수

전면에 1.5m × 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전면에 1.4m × 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승강기 전면에 1.4mX1.4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전면활동공간

승강기를 이용하는 휠체어사용자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 전면에 확보하는 전면 공간을 말한다. [2.5.1 전면활동공간 평가목적]

2.5 승강기

2.5.2 통과 유효폭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통과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통과폭 정도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승강기 통과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통과 유효폭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2m이상	2.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0m이상	1.6
일반	통과 유효폭 0.8m이상,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cm이하, 되열림장치를 설치	1.4

산출기준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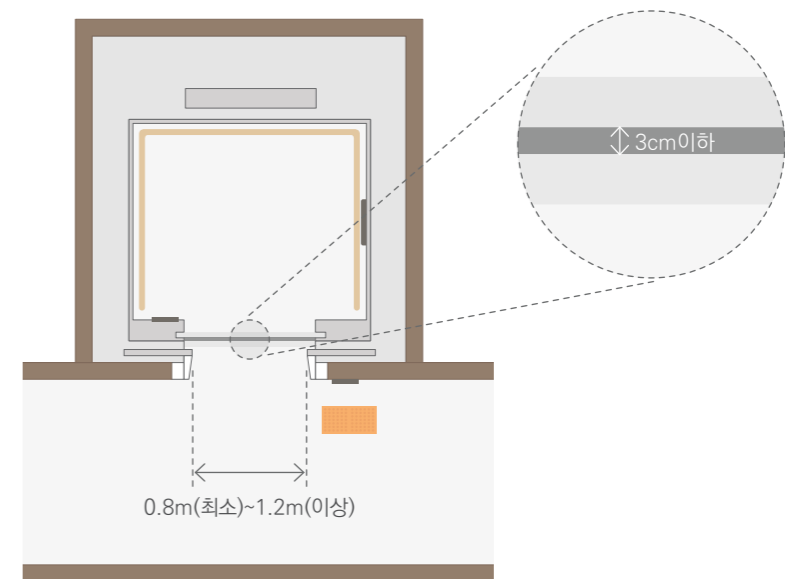
- 1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cm이하로 하여야 함
-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이상으로 하여야 함
- 3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m에서 1.4m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4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9호가목(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9호나목(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호라목(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호라목(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2m이상
- ★★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0m이상
- ★ 일반: 통과 유효폭 0.8m이상,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cm이하, 되열림장치를 설치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이상 확보하여야하고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cm이하로 활체어의 바퀴 등 빠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5 승강기

2.5.3 유효바닥면적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회전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 내부의 적절한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정도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바닥면적	점수
최우수	폭 1.6m이상, 깊이 1.4m이상	2.0
우수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	1.6

· 다만, 기존 건축물 인증의 경우 구조상의 사유로 승강기 폭 1.1m이상, 깊이 1.35m 이상이며 승강기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할 경우 우수로 평가 가능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1 승강기 내부에서 휠체어사용자가 18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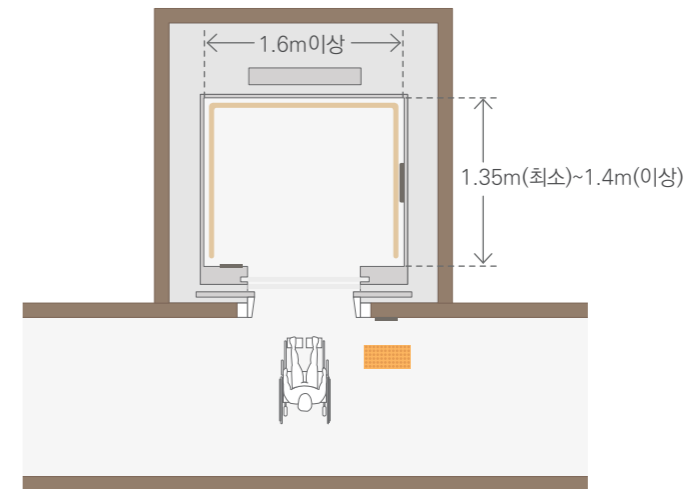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9호나목(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9호라목(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최우수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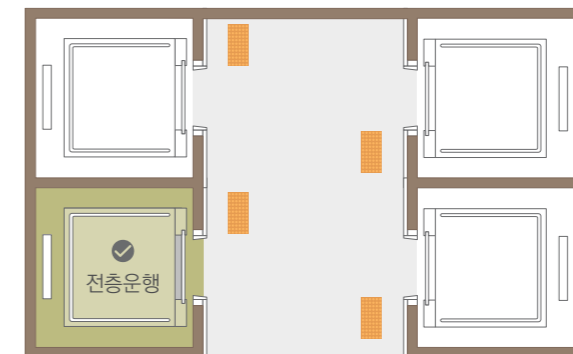
폭 1.6m이상, 깊이 1.4m이상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



· 휠체어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폭1.6m이상, 깊이 1.35m이상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장애이용승강기 운용



· 승강기가 2대 이상 설치되는 경우 1대 이상은 반드시 전층 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 운행하는 층수가 다른 여러 대의 승강기가 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승강기별 운행 층수 정보를 점자 및 글자로 표기하여야 함

승강기 유효바닥면적

휠체어 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회전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폭 1.6m 이상, 깊이 1.35m 이상 확보한 바닥면적을 말한다.[2.5.3 유효바닥면적 산출기준]

2.5 승강기

2.5.4 이용자 조작설비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이용을 위해 조작설비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이용자 조작설비를 적절한 높이에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내·외부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승강기의 이용자 조작설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외부 조작설비]

구분	외부 조작설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성인 및 시각장애인용(1.5m, 점자표시 포함), 어린이 및 휠체어사용자용(0.85m ± 5cm) 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1.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각형태의 버튼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이 켜짐	0.8
일 반	설치 높이 0.8m~1.2m, 점자표시(고정식), 조작버튼전면 0.3m전방에 점형블록 설치	0.7

[내부 가로 조작설비]

구분	가로 조작설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밀면이 25° 정도 들어올러지거나 손잡이에 연결하여 설치된 형태	1.0
우수	양각형태의 버튼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설치 높이 0.85m내외로 점자표시(고정식)하고 내부 모서리로부터 최소 0.4m 떨어져서 설치	0.8

[내부 세로 조작설비]

구분	세로 조작설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1.0
우수	양각형태의 버튼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설치 높이 1.5m의 범위내 설치, 점자표시(고정식) 함	0.8

- 조작설비의 버튼을 센서식으로 사용하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토글방식의 조작설비를 설치한 경우 두 번째 눌러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함
- 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고정식)를 하여야 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조작설비의 버튼을 센서식으로 사용하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2 조작반, 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고정식)를 하여야 함
- 3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여야 함
- 4 휠체어사용자용 가로조작반은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5 토글방식의 조작설비를 설치한 경우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9호다목(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9호다목(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제9호다목(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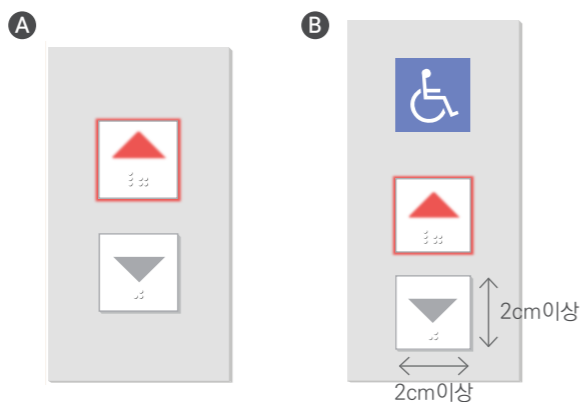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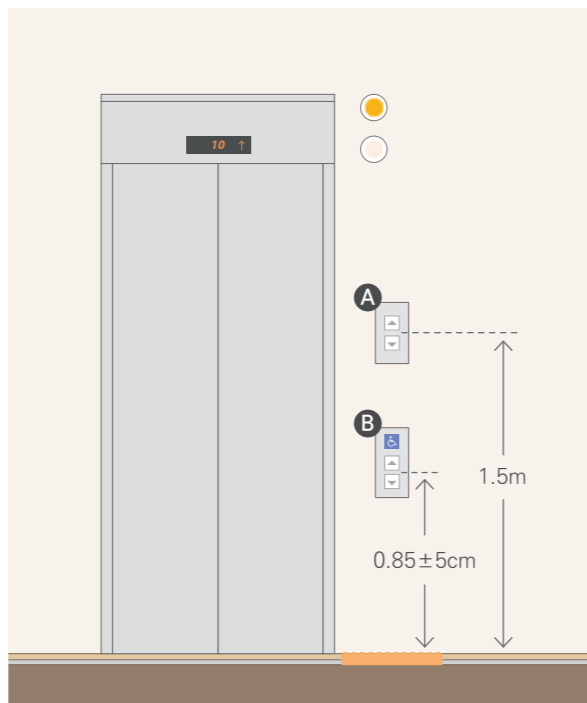
제9호다목(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호라목(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 조작설비]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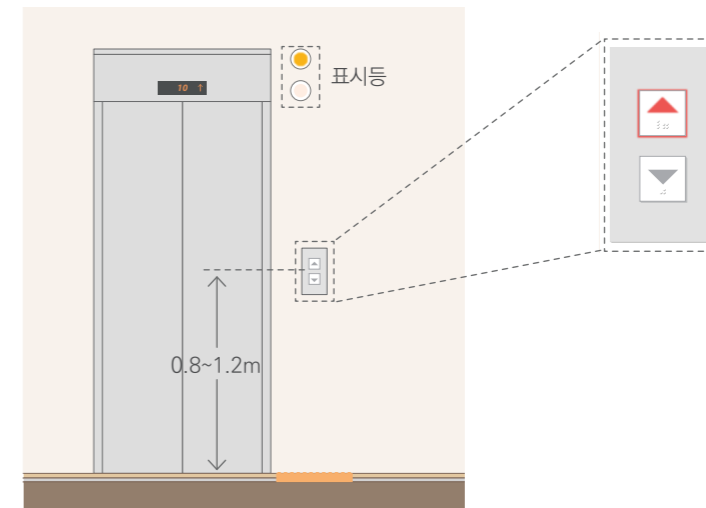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성인 및 시각장애인용(1.5m, 점자표시 포함), 어린이 및 휠체어사용자용(0.85m ± 5cm) 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 이상으로 함



· 외부 조작설비의 설치 높이는 0.8m~1.2m 사이에 계획하고 버튼은 양각형태로 크기는 최소 2cm 이상으로 하며, 고정식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이 켜지고 조작버튼전면 0.3m 전방에 점형블록을 매립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성인 및 시각장애인으로 1.5m에 점자표시를 설치하고, 어린이 및 휠체어사용자용 0.85m 내외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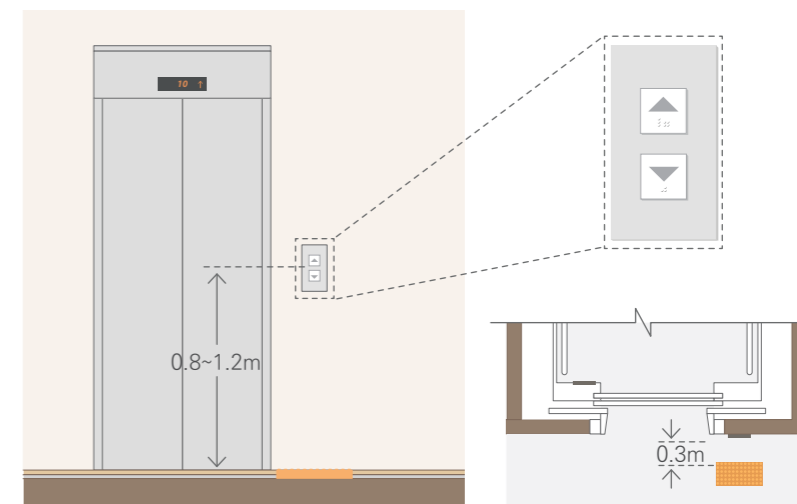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이 켜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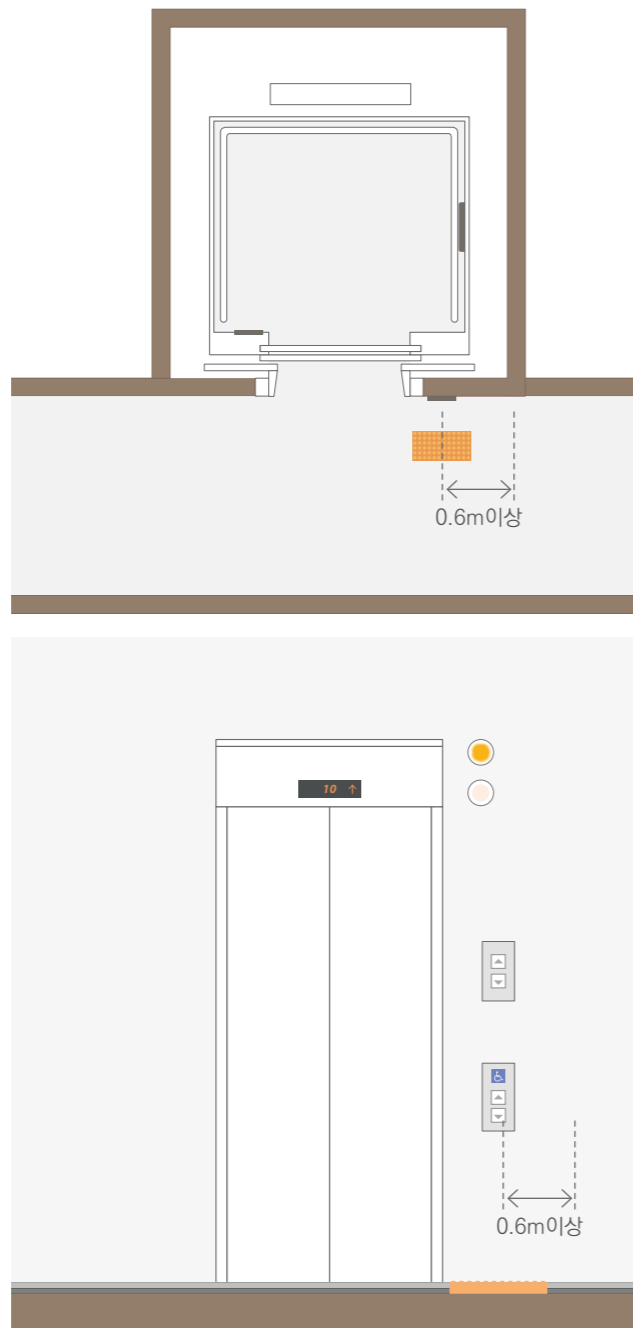
· 외부 조작설비의 설치 높이는 0.8m~1.2m 사이에 계획하고 버튼은 양각형태로 하며, 고정식 점자표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이 켜지고 조작버튼전면 0.3m 전방에 점형블록을 매립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설치 높이 0.8m~1.2m, 점자표시(고정식), 조작버튼전면 0.3m 전방에 점형블록 설치



· 외부 조작설비의 설치 높이는 0.8m~1.2m 사이에 계획하고 버튼은 양각형태로 하며, 고정식 점자표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조작버튼전면 0.3m 전방에 점형블록을 매립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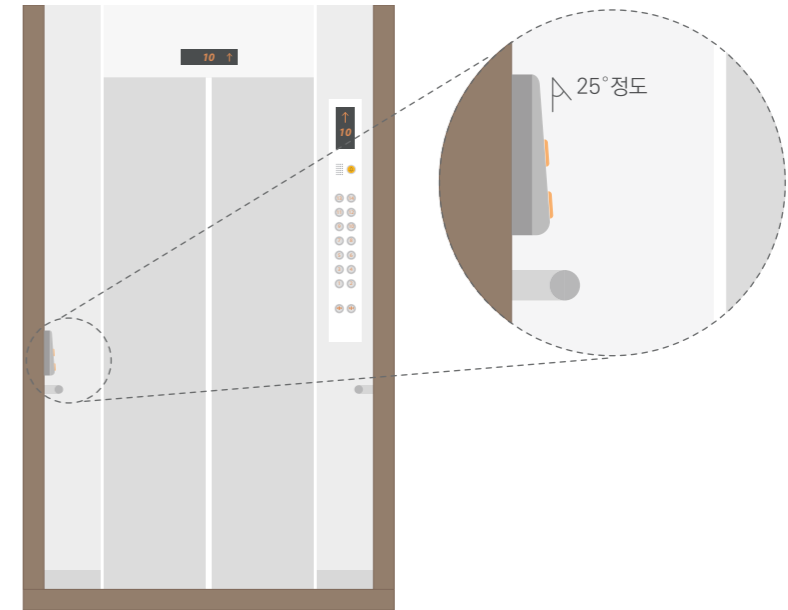


· 승강기 외부 조작설비는 벽 모서리부터 최소 0.6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하여야 휠체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내부 가로 조작설비]

★★★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밀면이 25° 정도 들어올러지거나 손잡이에 연결하여 설치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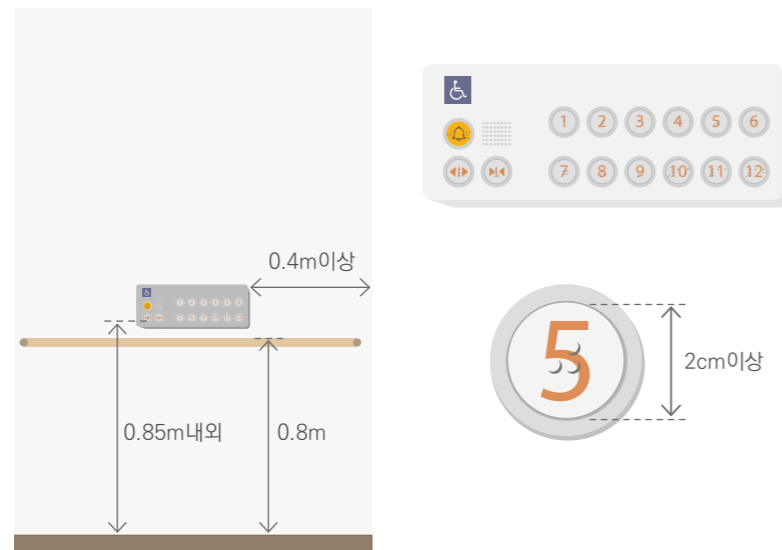
· 내부 가로 조작설비는 내부 모서리로부터 최소 0.4m 이상 이격하고 버튼은 양각 형태로 크기는 최소 2cm 이상으로 계획하고 수평손잡이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높이는 0.85m 내외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버튼의 점자표시는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내부 가로 조작설비의 밀면이 25° 정도 들어올러지거나 손잡이에 연결하여 설치된 형태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버튼을 두 번 눌러 취소하면 “몇 층 취소”에 대한 안내음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우수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설치 높이 0.85m내외로 점자표시(고정식)하고 내부 모서리로부터 최소 0.4m 떨어져서 설치



-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버튼을 두 번 눌러 취소하면 "몇 층 취소"에 대한 안내음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내부 가로 조작설비는 내부 모서리로부터 최소 0.4m이상 이격하고 버튼은 양각 형태로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계획하여야합니다. 수평손잡이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높이는 최하단 버튼 하부 기준 0.85m내외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버튼의 점자표시는 고정식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내부 세로 조작설비]

★★★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 내부 세로 조작설비의 버튼은 양각형태로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계획하고 설치 높이는 0.8m이상~1.2m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m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m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의 점자표시는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버튼을 두 번 눌러 취소하면 "몇 층 취소"에 대한 안내음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우수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설치 높이 1.5m의 범위내 설치, 점자표시(고정식) 함



- 내부 세로 조작설비의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계획하고 설치 높이는 0.8m이상~1.2m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m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m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의 점자표시는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2.5 승강기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도착여부를 알리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를 통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승강기 문자안내 및 음성안내장치를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승강기의 진행방향, 정지 예정층, 현재의 위치 등에 관한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및 각 층의 승강장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안내장치 설치 여부로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승강기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점수
최우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2.0
우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향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1.6

· 음향신호는 일정한 음을 말하며 음성을 육성으로 층수를 알려주는 것을 말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함
- 2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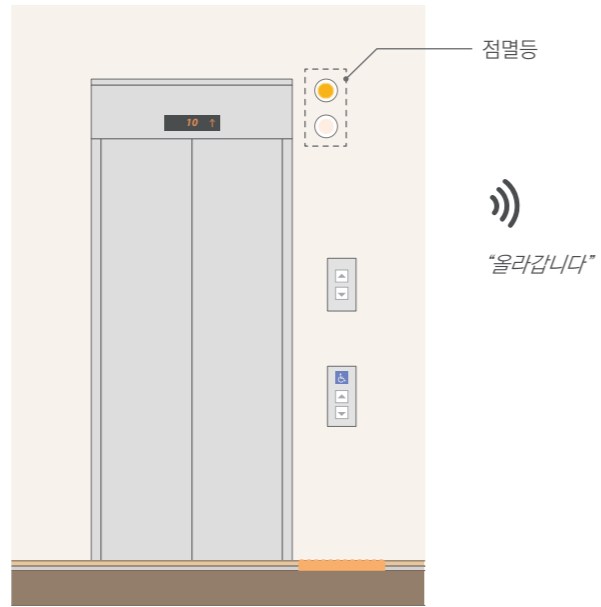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9호라목(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호라목(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제9호라목(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호라목(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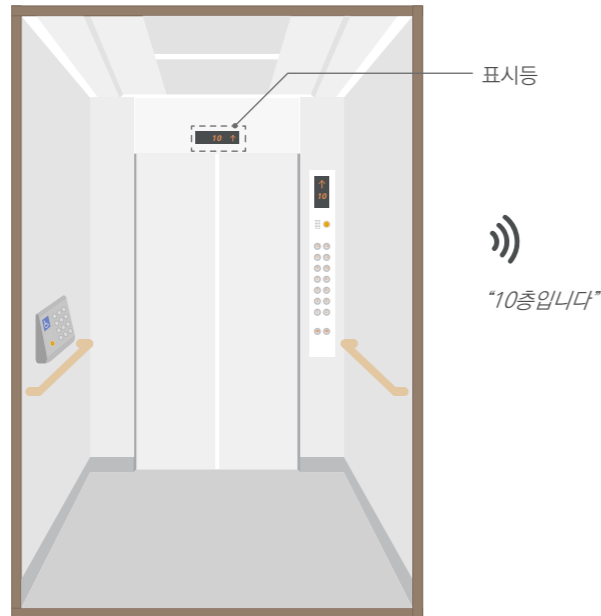
★★★ 최우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외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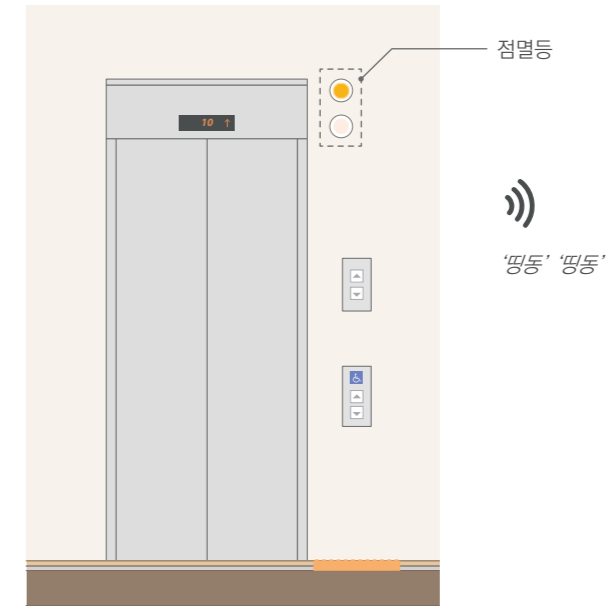


·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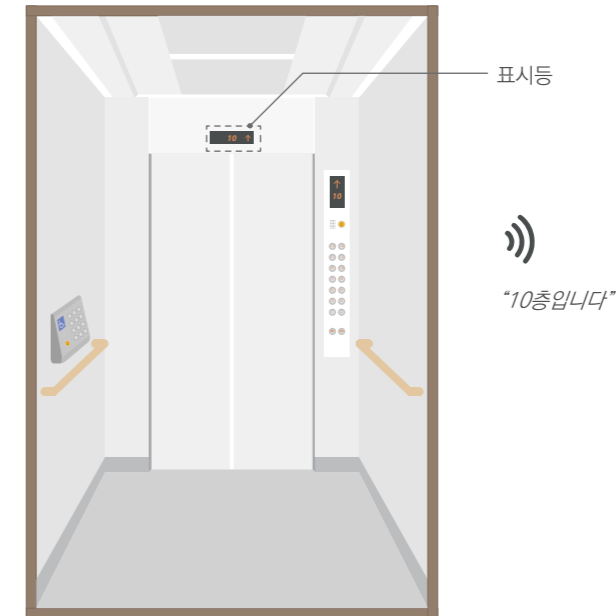
★★ 우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향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외부



내부



·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향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2.5 승강기

2.5.6 수평손잡이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수평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연속된 수평손잡이를 잡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승강기의 수평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평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2.0
우수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1.6

산출기준 기본사항

- 승강기 내부 수평손잡이는 가로 조작설비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손잡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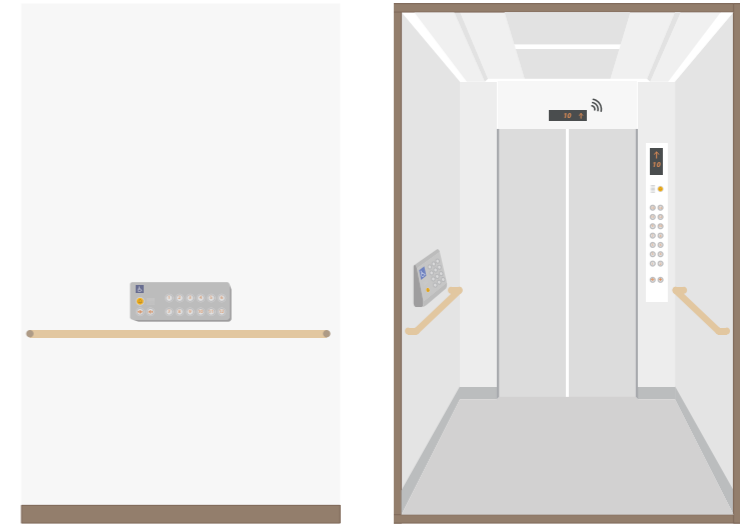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9호라목(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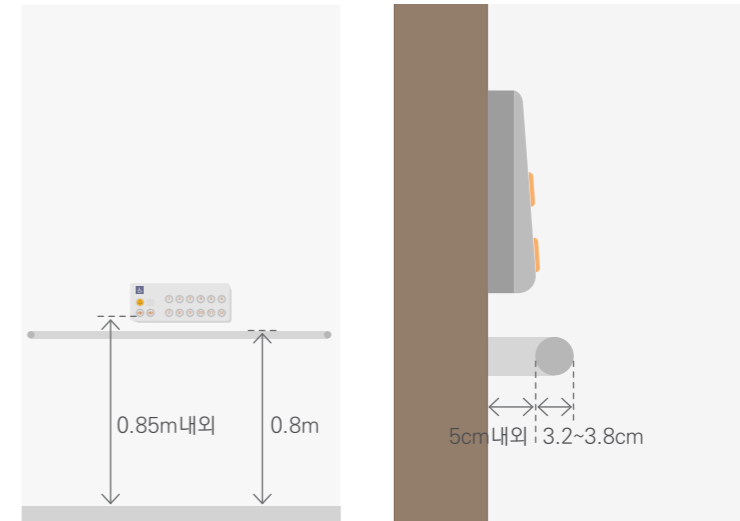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 수평손잡이 높이는 0.85m내외로 설치하고 손잡이의 지름은 3.2cm~3.8cm,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내외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우수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 수평손잡이 높이는 0.85m내외로 설치하고 손잡이의 지름은 3.2cm~3.8cm,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내외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로 조작설비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2.5 승강기

2.5.7 점자블록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의 점형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승강기 버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승강기 버튼 앞 바닥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버튼 앞 바닥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승강기의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점형블록	점수
최우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2.0
우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1.6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점자블록은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전면 0.3m 이격하여 바닥에 표준형 점형블록을 매립하여 설치하여야 함
- 2 신발을 벗고 사용하는 공간에는 점자블록 생략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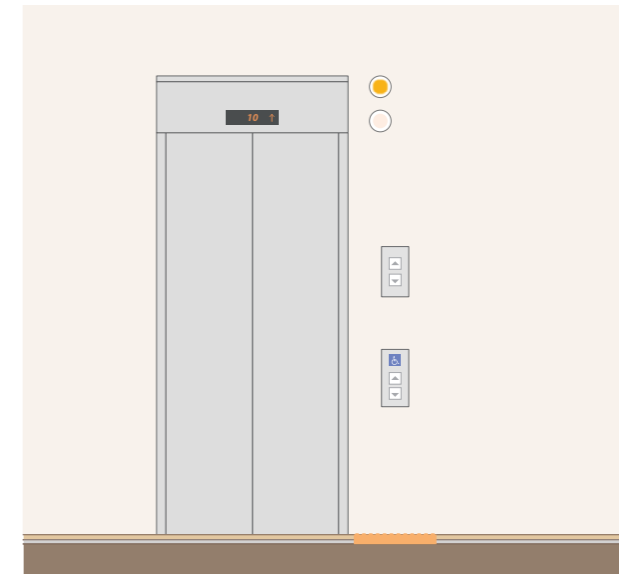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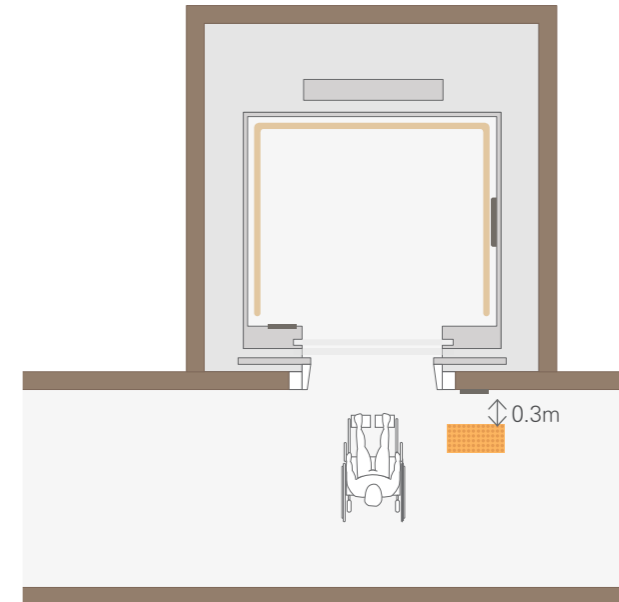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9호라목(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최우수
★★ 우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승강기 버튼앞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버튼 전면 0.3m 이격하여 바닥에 표준형 점형블록을 매립하여 2장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신발을 벗고 사용하는 공간의 경우 점자블록이 생략 가능합니다.

3

위생시설

3.1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3.2 화장실의 접근

3.3 대변기

3.4 소변기

3.5 세면대

3.6 욕실

3.7 샤워실 및 탈의실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3.1.2 안내표지판

3.2.1 유효폭 및 단차

3.2.2 바닥 마감

3.2.3 출입구(문)

3.3.1 칸막이 출입문

3.3.2 활동공간

3.3.3 형태

3.3.4 손잡이

3.3.5 기타설비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3.5.1 형태

3.5.2 거울

3.5.3 수도꼭지

3.6.1 구조 및 마감

3.6.2 기타설비

3.7.1 구조 및 마감

3.7.2 기타설비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응 방법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에 따른 평가

배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점수
최우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50% 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10.0
우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30% 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8.0
일반	최소 1개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7.0

- 다목적화장실(가족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심사단의 가산 평가시 추가 배점함
- ※ 전체층수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층수의 합을 말함
- ※ 다목적 화장실이라함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남·녀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각각 설치 후 다목적화장실(가족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심사단의 가산 평가시 추가 배점함
- 2 전체층수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층수의 합을 말함
- 3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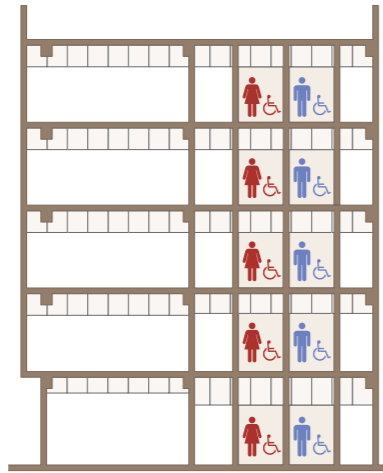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3호가목(1)(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3호가목(1)(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최우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5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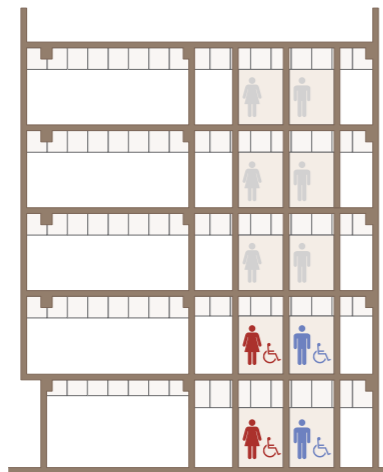


· 5개층 기준 3개층 이상 남녀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1층에 의무로 설치하여야 함

★★ 우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3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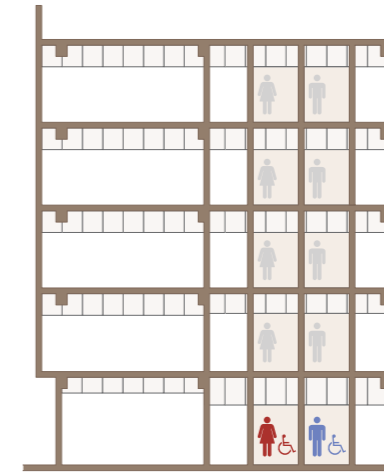


· 5개층 기준 2개층 이상 남녀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1층에 의무로 설치하여야 함

★ 일반

최소 1개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 5개층 기준 1개층 이상 남녀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식 전체층수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층수의 합을 말한다.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산출기준]

지식 다목적화장실

남, 녀 구분 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한다.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산출기준]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3.1.2 안내표지판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실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문) 옆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배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표지판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5.0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4.0
일반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 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	3.5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지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

산출기준 기본사항

1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지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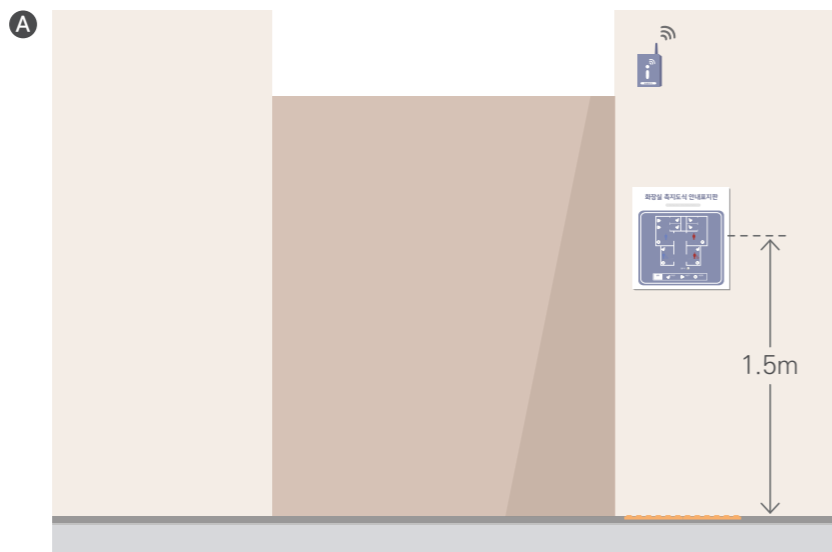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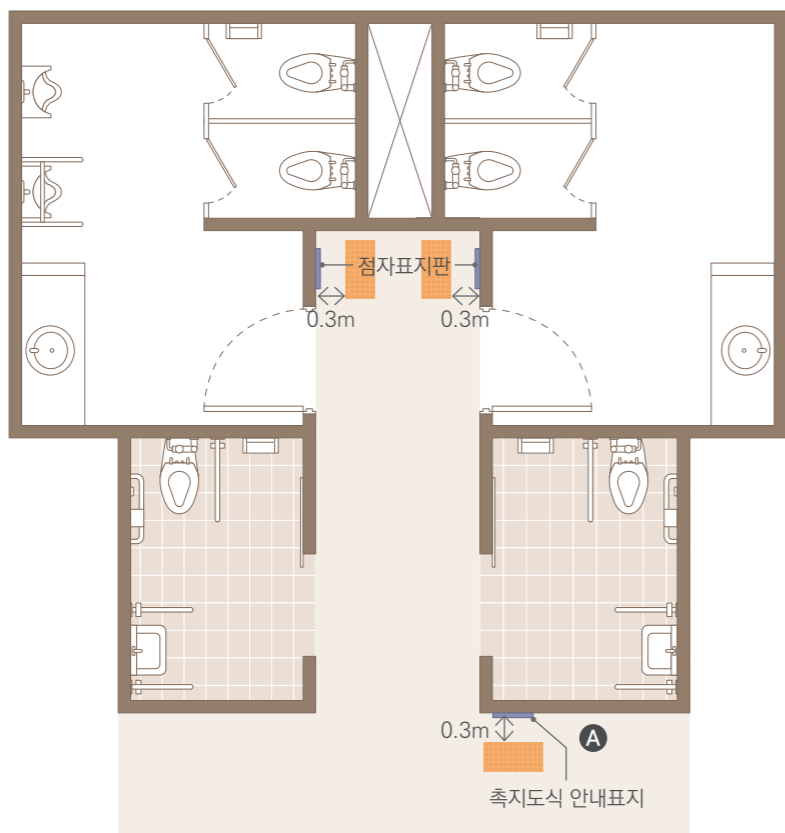
제13호가목(2)(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제13호가목(3)(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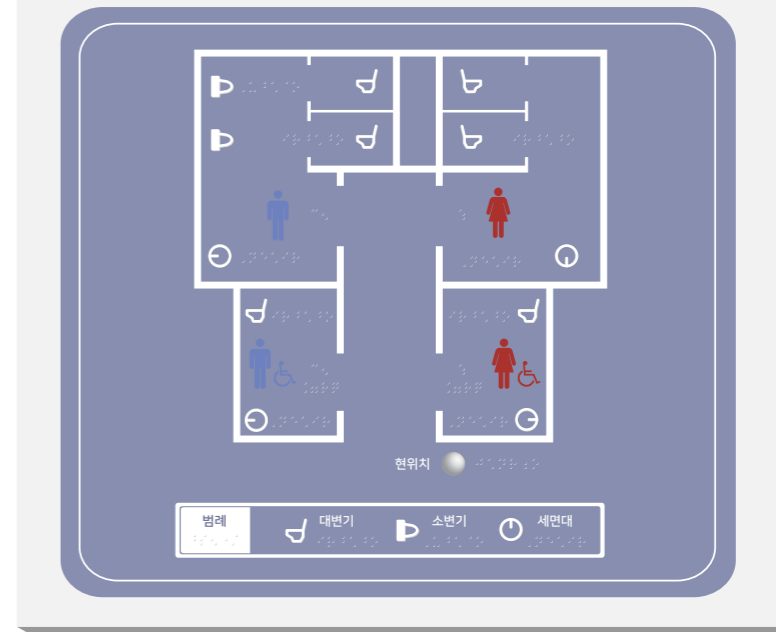
제13호가목(3)(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지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판이 있음



화장실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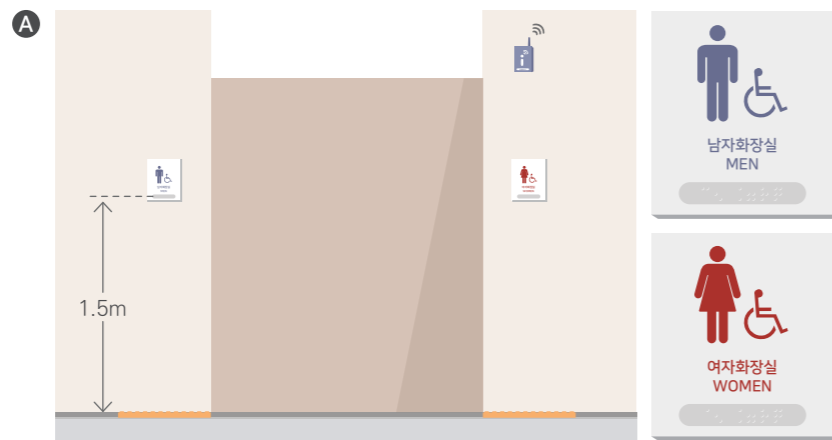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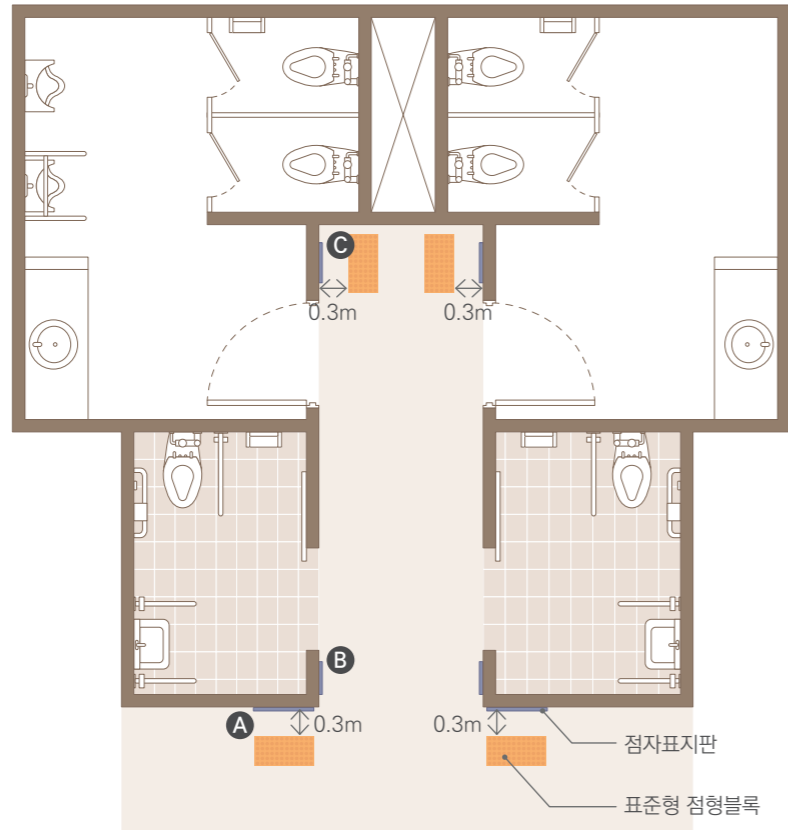


·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를 포함한 남·녀 구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촉지도식 안내판의 돌출된 선, 면, 점자는 손 베임을 방지하는 등 쾌적하게 촉지할 수 있도록 마감해야 하며 음각 사용을 금함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도 SPS-KBUEWL001-5686)
- ※ 장애인복지시설은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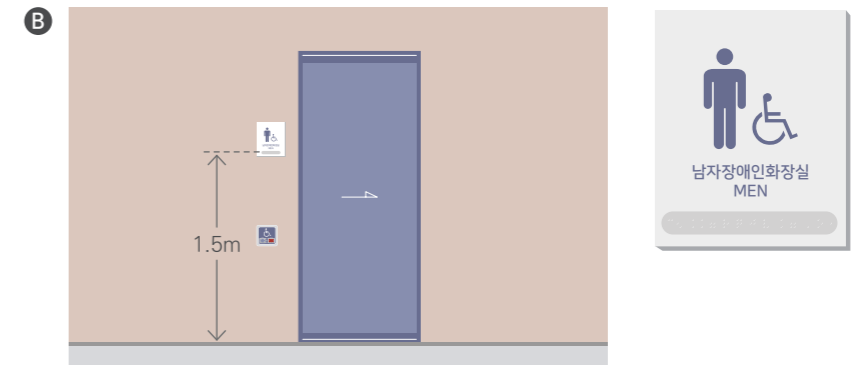
★★ 우수
★ 일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
지 있음
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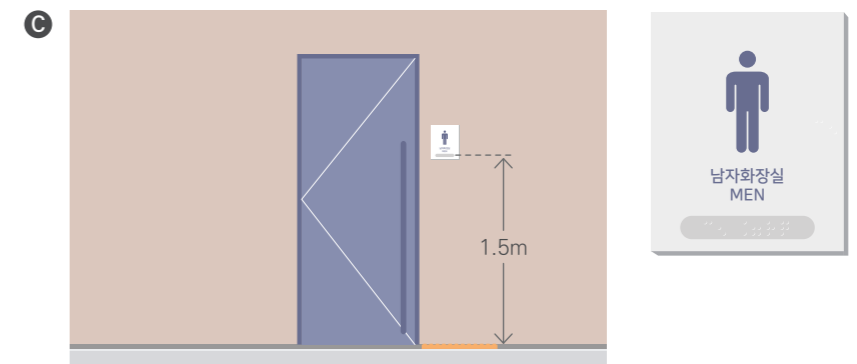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과 일반화장실을 복도에 면한 동일한 출입구로 접근하는 경우 복도 벽면에 휠체어 접근성 마크를 포함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복도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설치하고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은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화장실 안내표지판은 바닥면에서 1.5m 높이에 설치하고 출입문이 있는 경우 문 손잡이가 있는 벽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 안내표지판은 점자뿐만 아니라 픽토그램과 문자를 포함시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자동문의 경우 문이 열리는 측 벽면에 자동문 스위치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 안내표지판은 출입문 손잡이측 벽면에 바닥면에서 1.5m 높이에 설치하고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 안내표지판은 점자뿐만 아니라 픽토그램과 문자를 포함시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2 화장실의 접근



3.2.1 유효폭 및 단차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평가하여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이 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배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3.0
우수	1.2m이상 통로폭 확보	2.4
일반	0.9m이상 통로폭 확보	2.1

구분	단차	점수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3.0
우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2.4
일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2.1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복도의 유효폭은 1.2m이상 확보하여야 함
- 2 출입문 전면, 통로의 굴절부분 등 휠체어의 회전이 필요한 공간 1.4m×1.4m 이상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3 2.4 경사로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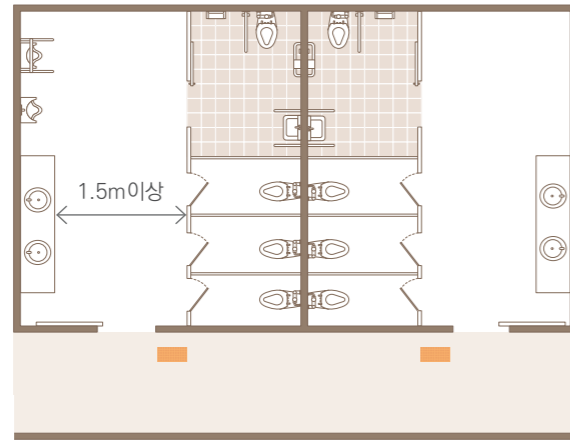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3호가목(2)(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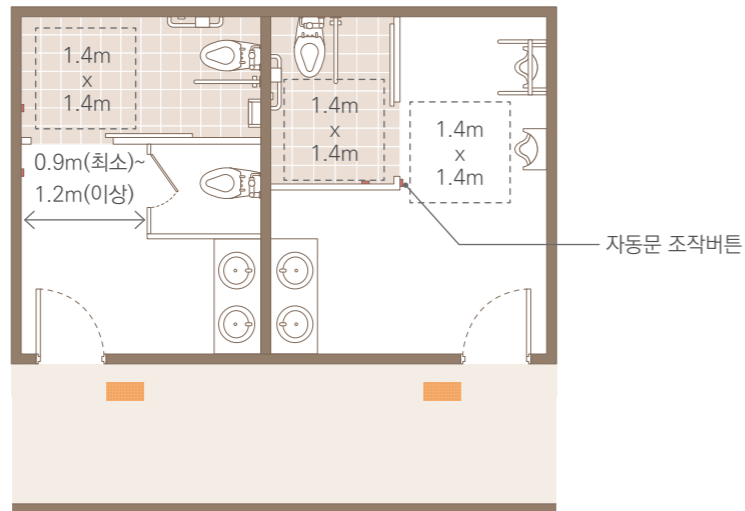
[유효폭]

★★★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 일반화장실 내부에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 화장실로 접근하는 통로유효폭은 1.5m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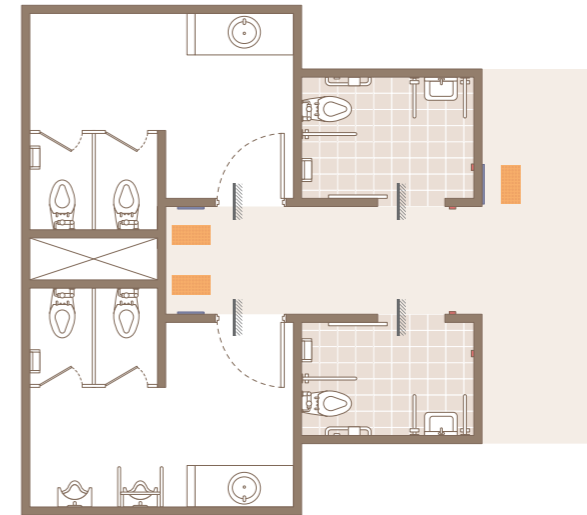
★★★ 우수
★★ 일반 1.2m이상 통로폭 확보
0.9m이상 통로폭 확보



- 일반화장실 내부에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 화장실로 접근하는 통로유효폭은 최소 0.9m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출입문 전면, 통로의 굴절부분 등은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X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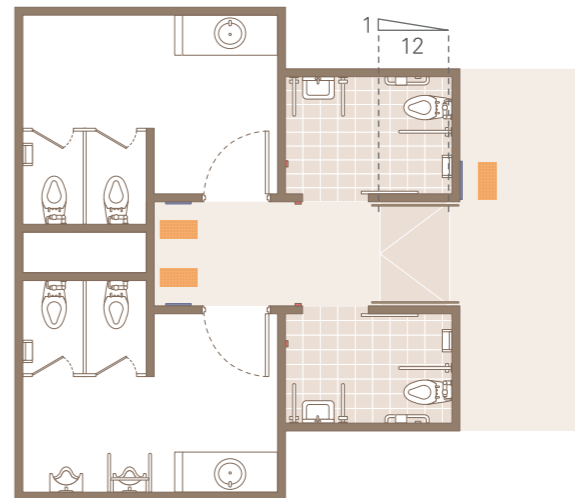
★★★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는 장애인 등 다양한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단차 없이 계획하여야 합니다.

★★ 우수
★ 일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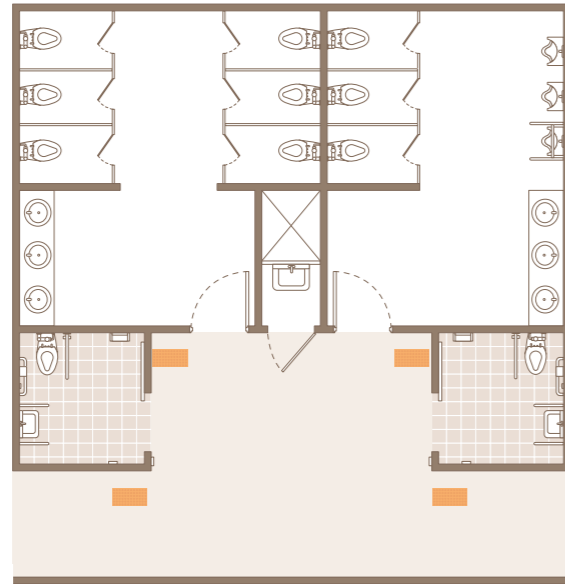
- 화장실로 접근하는 통로에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최소 1/12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유형별 설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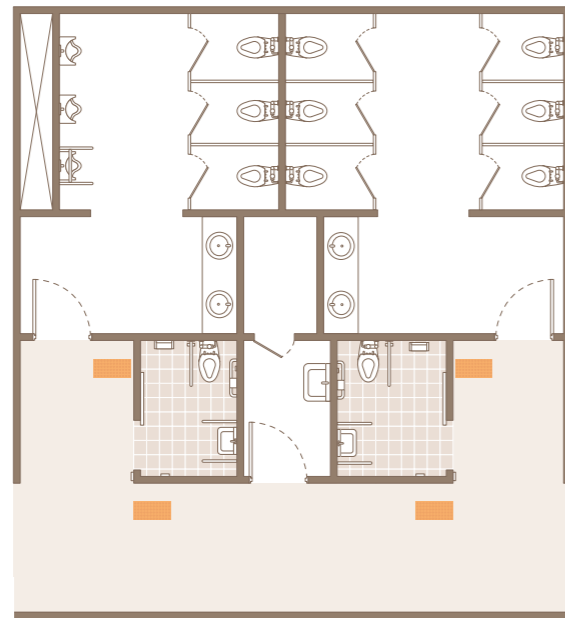
TYPE 1

일반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 성별 구분 없이 통로를 같이 쓰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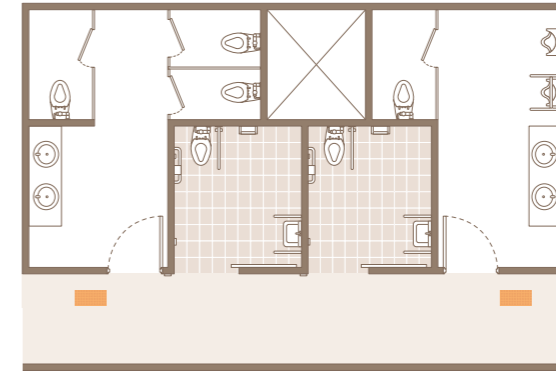
TYPE 2

남녀화장실 통로를 장애인화장실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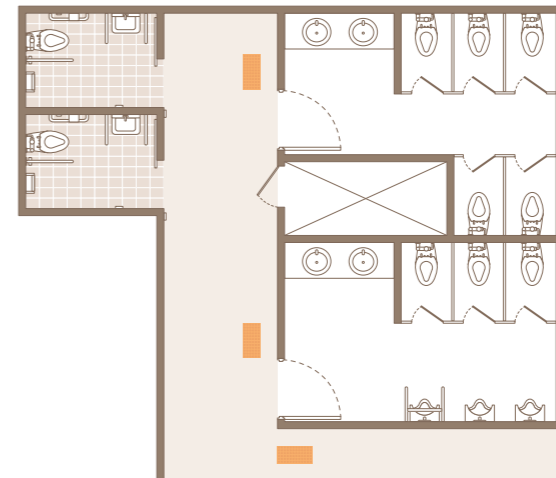
TYPE 3

일반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이 별도로 분리되고 통로를 별개로 쓰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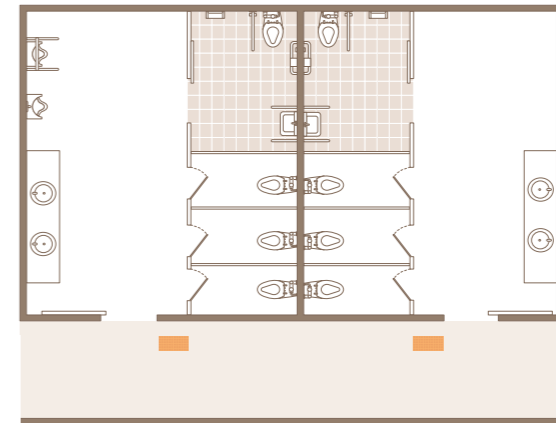
TYPE 4

일반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이 별도로 분리되고 통로를 같이 쓰는 경우



TYPE 5

일반인화장실 내부에 장애인화장실이 포함되는 경우



3.2 화장실의 접근



3.2.2 바닥 마감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 접근로의 바닥 마감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화장실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배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타일이나 판석마감인 경우로 줄눈이 0.5cm이하인 경우	4.0
우수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타일 혹은 판석마감인 경우로 줄눈이 1cm이하인 경우임	3.2

산출기준 기본사항

1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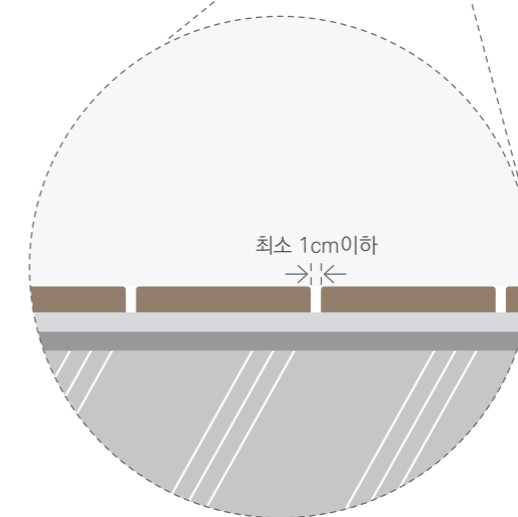
제13호가목(2)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타일이나 판석마감인 경우로 줄눈이 0.5cm이하인 경우

★★ 우수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타일 혹은 판석마감인 경우로 줄눈이 1cm이하인 경우임



· 화장실 바닥마감은 줄눈을 0.5cm~1cm이하로 설치하고 미끄럽지 않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타일이나 판석마감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미끄럽지 않은 재질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바닥 마감재 등) 2항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합니다.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2 화장실의 접근



3.2.3 출입구(문)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의 출입구(문)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출입구(문) 및 적절한 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확보여부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화장실의 출입구(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형태 및 유효폭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	3.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0m이상 확보	2.4
일반	유효폭 0.9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2.1

-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화장실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 형태는 자동문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유효폭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2 화장실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 형태는 자동문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유효폭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
- 3 화장실의 출입구(문)의 단차는 2.1.1 단차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4 화장실의 출입구(문)의 전후면유효거리는 2.1.3 전·후면 유효거리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5 화장실의 출입구(문)의 손잡이 설치기준은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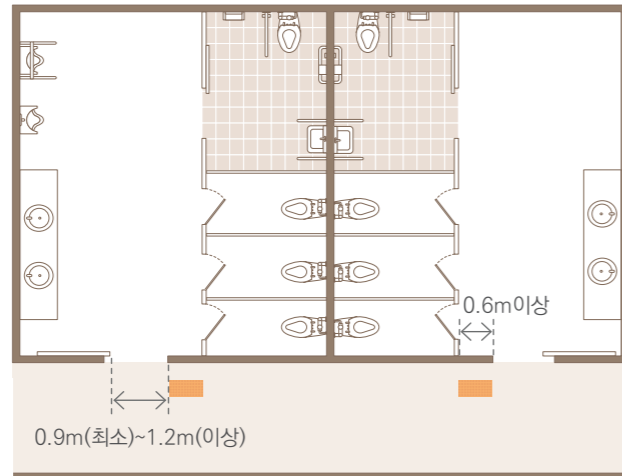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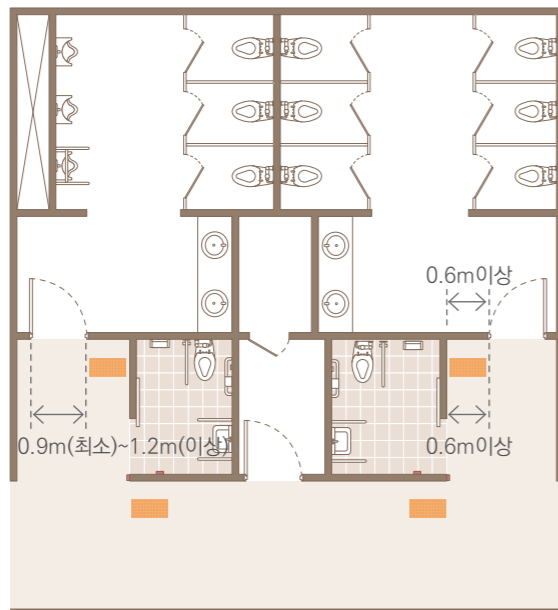
제13호나목(1)(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3호나목(1)(라)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 ★★★ 최우수
- ★★ 우수
- ★ 일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0m이상 확보
 유효폭 0.9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로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의 출입문 유효폭을 0.9m~1.2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과 일반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출입문 유효폭을 0.9m~1.2m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일반화장실 버튼형 자동문



- 일반화장실의 출입문을 버튼형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 잠금 기능이 없는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장실의 출입문 유효폭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2.3 출입구(문) 산출기준]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을 평가하여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이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 및 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칸막이 사용여부 시각설비 여부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로 평가

배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유효폭 1.0m이상	2.0
우수	유효폭 0.9m이상	1.6

구분	형태	점수
최우수	자동문	1.0
우수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0.8

구분	사용여부 설비	점수
최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1.0
우수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0.8
일반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0.7

구분	잠금장치	점수
최우수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	1.0
우수	잠금장치를 설치함	0.8

-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 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
-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쪽에서 정척의 내민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쪽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2 화장실의 출입구(문)의 손잡이는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3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및 일반화장실, 일반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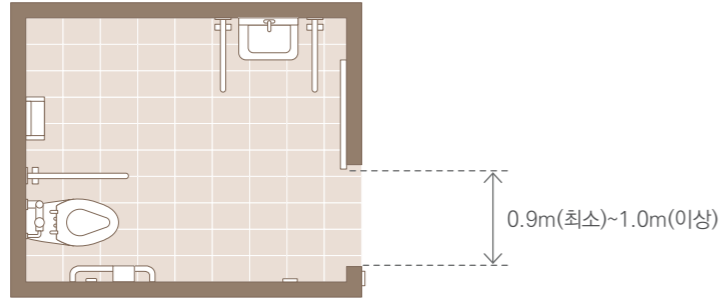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3호나목(1)(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3호나목(1)(라)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제13호나목(4)(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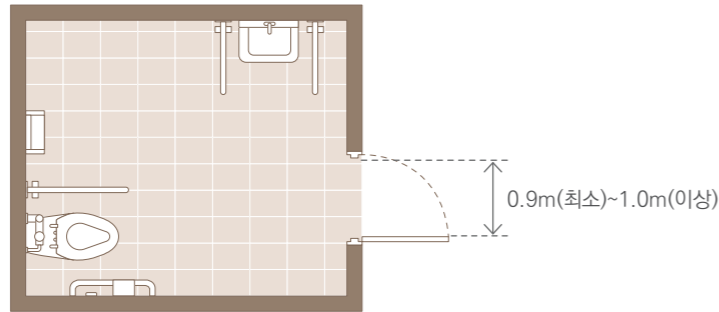
[유효폭]

- ★★★★ 최우수 유효폭 1.0m이상
- ★★★ 우수 유효폭 0.9m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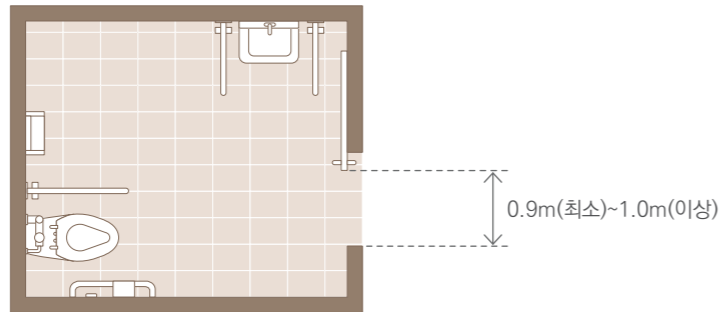
버튼형 자동문



밖여닫이



미닫이



- 손끼임방지, 힌지 등 출입문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효폭을 0.9m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한 유효거리 1.2m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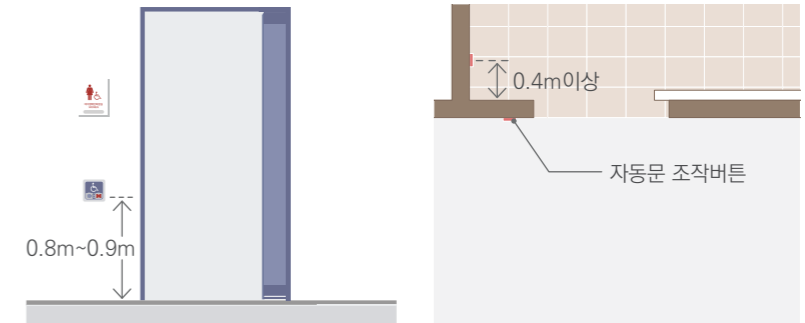
☒ A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 유효폭

문틀 내부 쪽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쪽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3.1 칸막이 출입문 산출기준]

[형태]

- ★★★★ 최우수 자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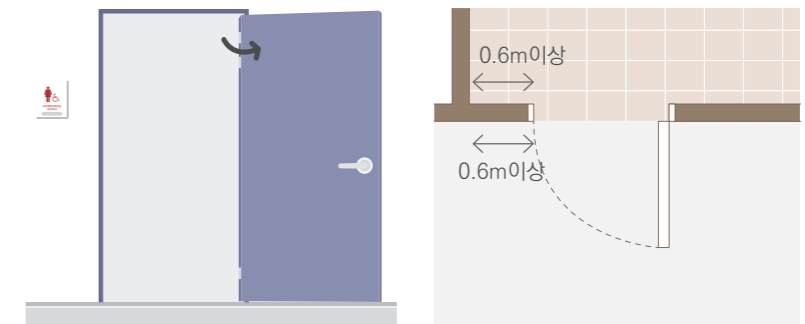
자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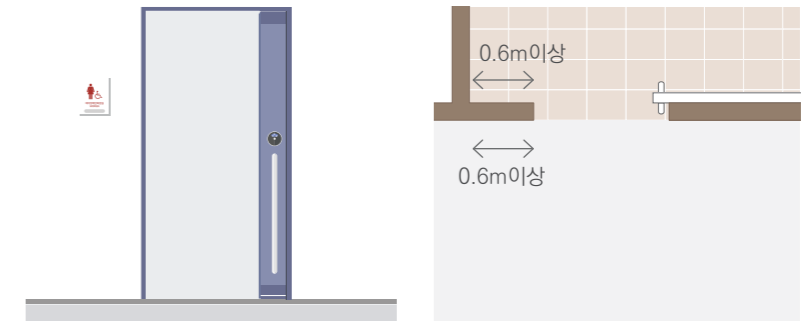
-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우수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밖여닫이



미닫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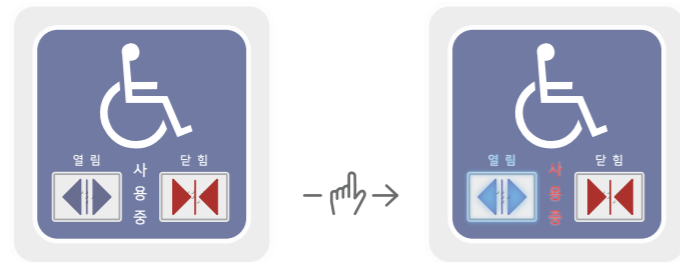


-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등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용여부 설비]

★★★ 최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 자동문 조작버튼은 사용여부에 따라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및 점자표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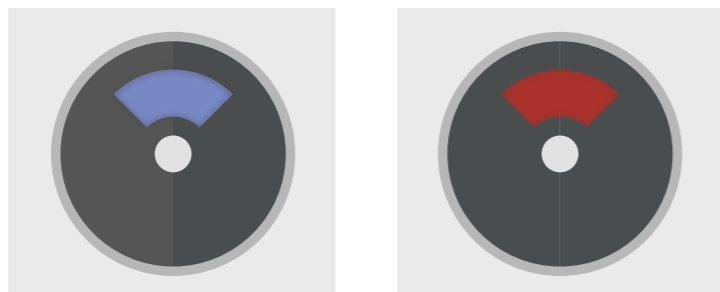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 사용여부 설비는 색상과 문자로 표기하고 잠금장치와 연동되어 작동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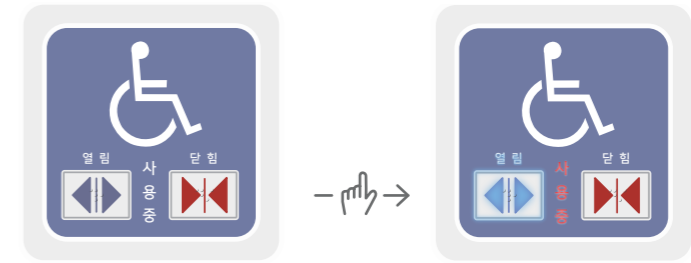


- 사용여부 설비는 색상으로 표기하고 잠금장치와 연동되어 작동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잠금장치]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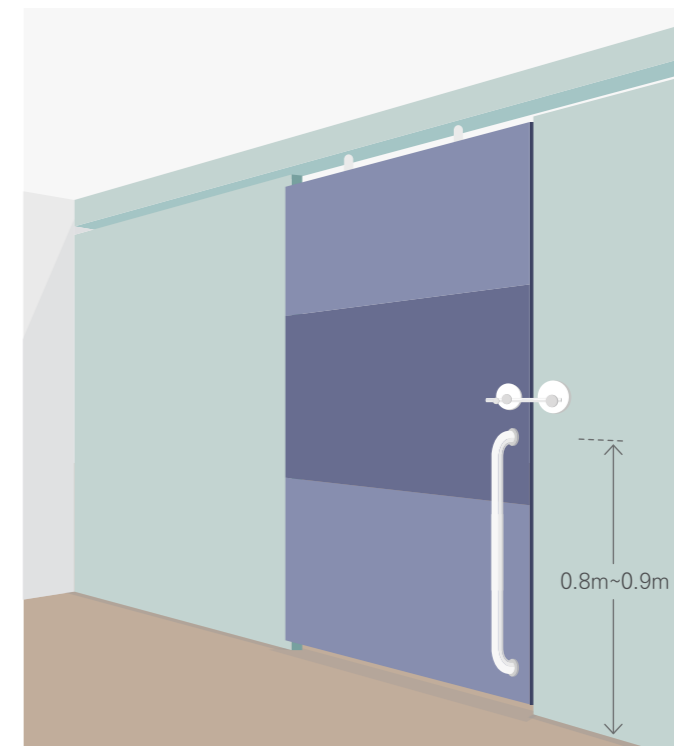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



-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잠금장치를 설치함



- 잠금장치는 막대형 등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잠금장치는 손잡이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 다양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3 대변기



3.3.2 활동공간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 내부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대변기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활동공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 2.1m이상 이 되도록 설치	3.0
우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이상, 깊이 2.0m이상 이 되도록 설치 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2.7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에 가장 좁은 길이로 폭과 깊이를 측정함
- 2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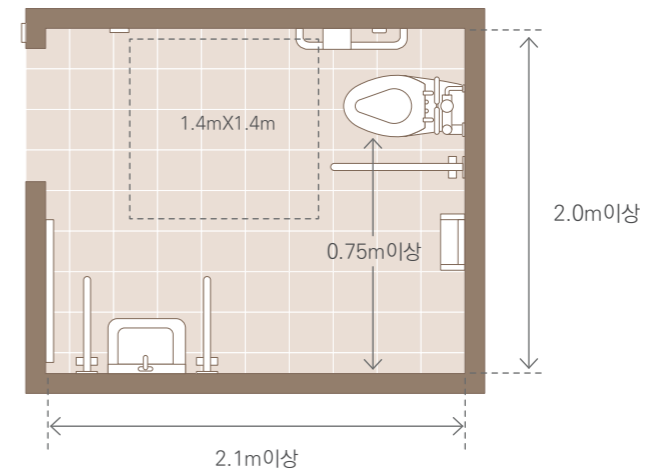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3호나목(1)(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호나목(1)(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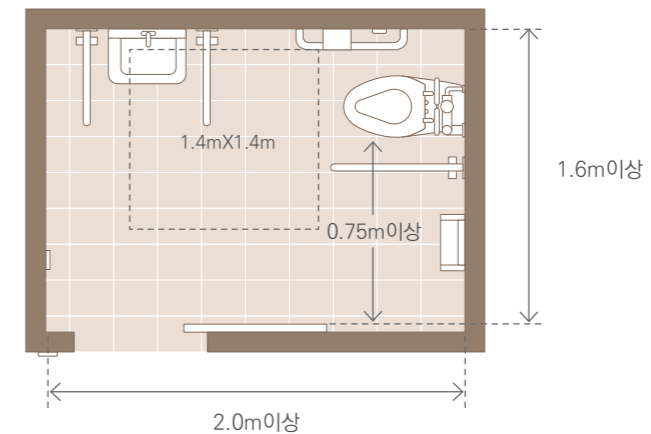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2.1m이상 이 되도록 설치



·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 2.1m이상 이 되도록 설치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 우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이상, 깊이 2.0m이상 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이상, 깊이 2.0m이상 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3.3 대변기



3.3.3 형태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높이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대변기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형태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3.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	2.4
일반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	2.1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함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벽걸이형으로 설치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함
 - 2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벽걸이형으로 설치하여야 함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3호나목(2)(가)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제13호나목(2)(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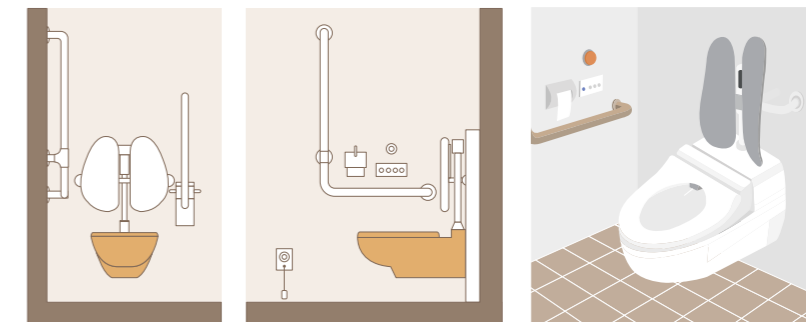


- 대변기는 벽걸이형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하여야 하며, 비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비데조작버튼은 점자표기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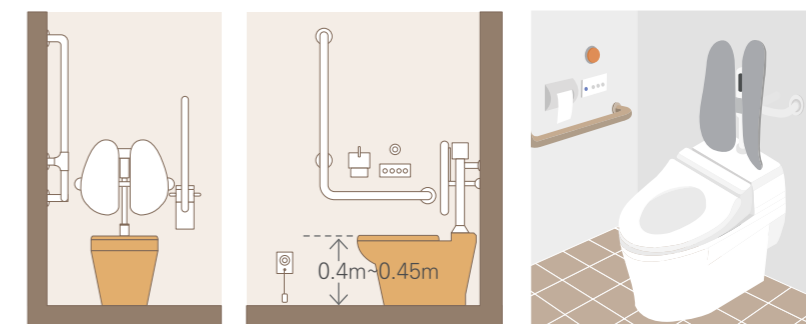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



- 좌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의 벽걸이형 양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일반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



- 대변기를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3 대변기



3.3.4 손잡이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재질과 굵기의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대변기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3.0
우 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 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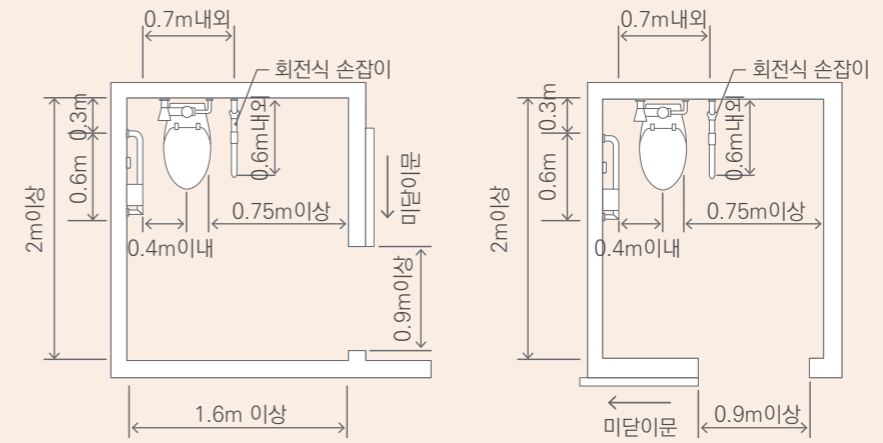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대변기 양측에 설치된 손잡이 간의 간격은 손잡이 중심에서 중심으로 측정함
- 2 대변기 중심에서 고정으로 설치하는 수평손잡이 높이와 회전형 손잡이의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함
- 3 회전식 손잡이는 상하회전식 손잡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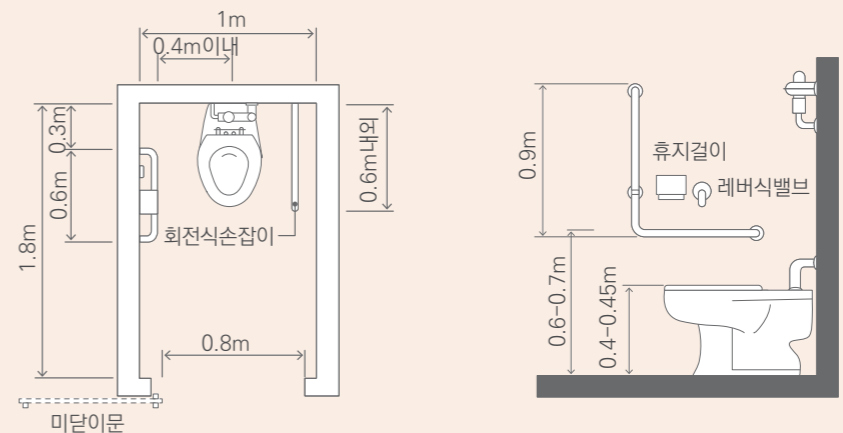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3호나목(3)(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13호나목(3)(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제13호나목(3)(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호나목(3)(라)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제13호나목(3)(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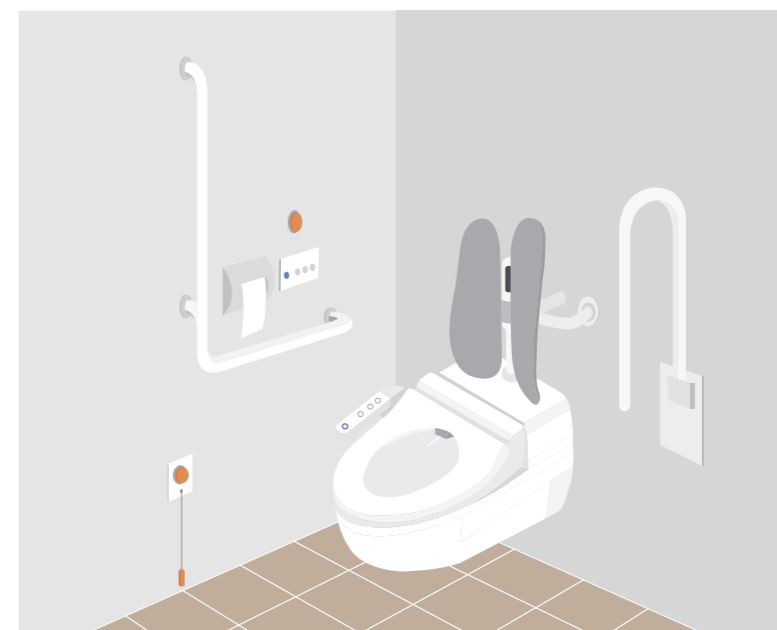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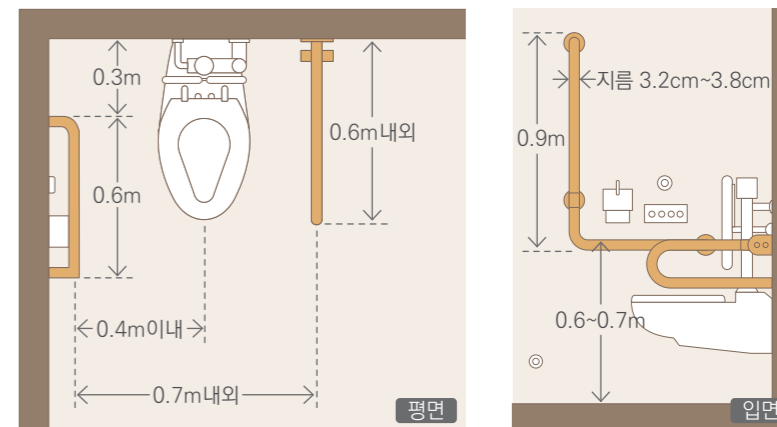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하며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상·하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직 손잡이는 수평 손잡이와 연결하여 0.9m이상의 길이,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 우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 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하며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상·하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직 손잡이는 수평 손잡이와 연결하여 0.9m이상의 길이,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3.3 대변기



3.3.5 기타설비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에 세정장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 세정장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정장치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대변기 기타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기타설비	점수
최우수	우수 조건을 만족하고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및 누름 버튼(바닥 또는 벽면) 설치	3.0
우 수	대변기에 비상호출벨 및 등반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또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2.4

- 유아용 거치대는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또는 일반화장실에 설치한 것을 평가함
- 조명스위치 및 화장지걸이는 바닥면에서 0.8m ~ 1.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문버튼은 바닥면에서 0.8m ~ 0.9m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조명스위치 및 화장지걸이는 바닥면에서 0.8m~1.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2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문버튼은 바닥면에서 0.8m~0.9m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4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3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m~0.9m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m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4 유아용 거치대는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또는 일반화장실에 설치한 것을 평가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3호가목(3)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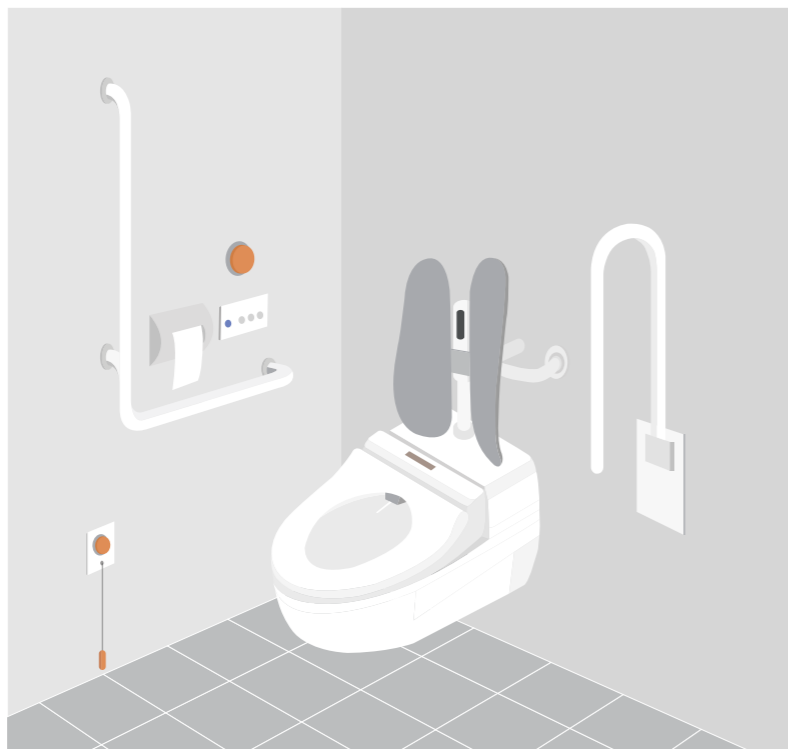
제13호나목(4)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호나목(4)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호나목(4)라)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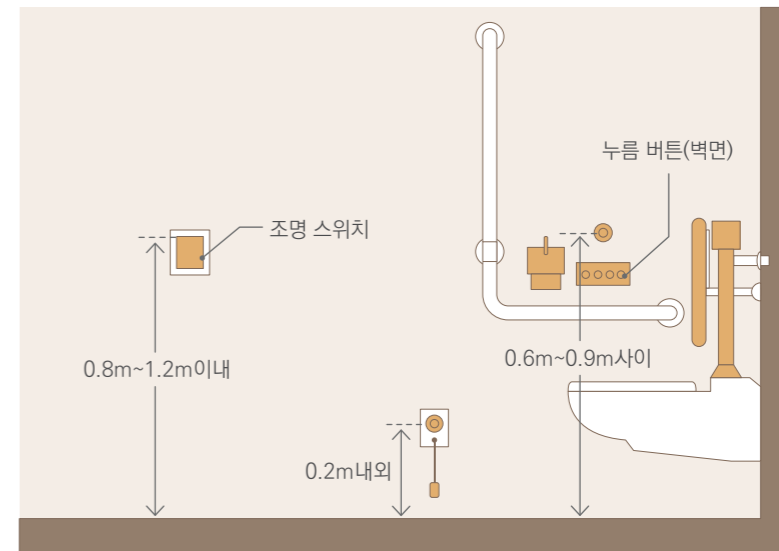
우수 조건을 만족하고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및 누름 버튼(바닥 또는 벽면) 설치



- 대변기에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및 누름 버튼(바닥 또는 벽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대변기에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또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 대변기에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또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3.4 소변기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소변기의 형태 및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다양한 사용자가 소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소변기와 손잡이가 설치 되도록 함

평가방법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배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소변기형태 및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점수로 평가

구분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6.0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	4.8
일반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 좌우 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 수직 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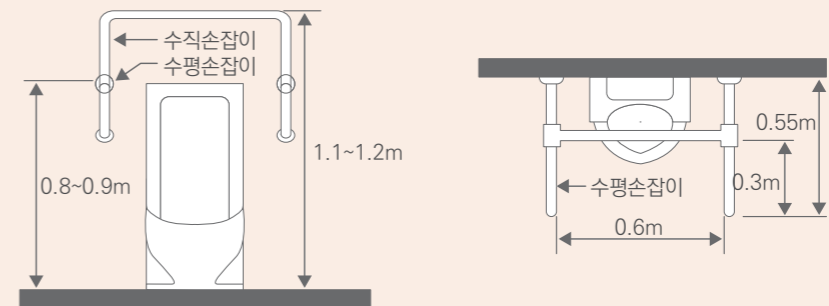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모든 남자화장실에는 최소 1개 이상 소변기 손잡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함
- 2 소변기 손잡이는 세정장치센서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3 장애인 등이 이용이 가능한 소변기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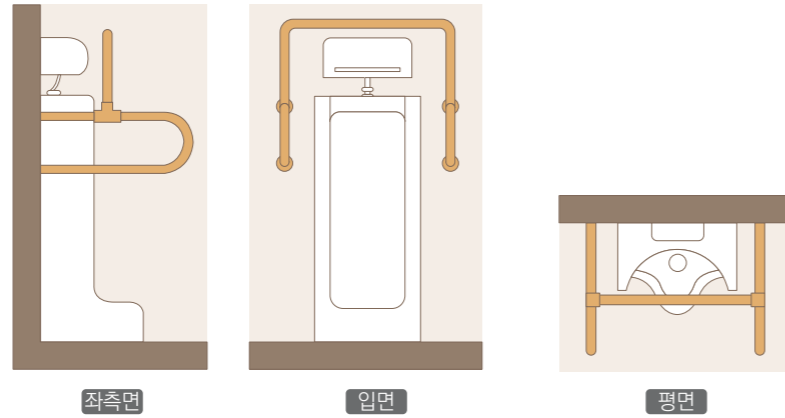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3호다목(1)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제13호다목(2)(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호다목(2)(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제13호다목(2)(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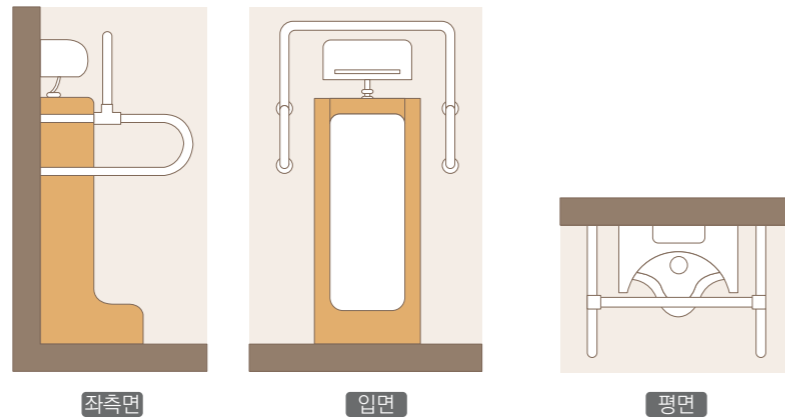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 좌우 손잡이 간격은 0.6m내외, 수직손잡이 높이는 1.1m~1.2m,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가 휠체어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 수평손잡이는 세정장치(광감지식 센서)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부착형 소변기 및 차갑지 않는 재질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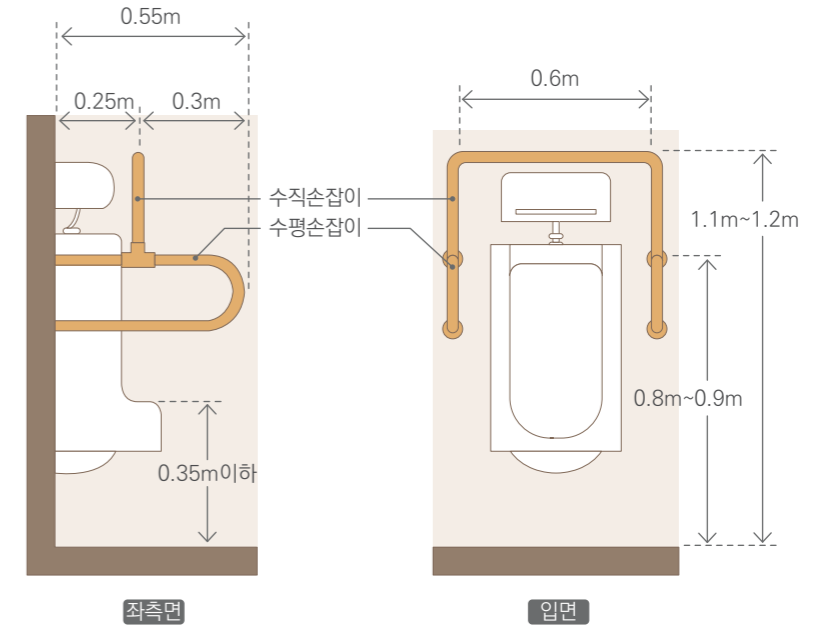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



-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 좌우 손잡이 간격은 0.6m내외, 수직손잡이 높이는 1.1m~1.2m,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가 휠체어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 수평손잡이는 세정장치(광감지식 센서)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부착형 소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
좌우 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
수직 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 좌우 손잡이 간격은 0.6m내외, 수직손잡이 높이는 1.1m~1.2m,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가 휠체어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 수평손잡이는 세정장치(광감지식 센서)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3.5 세면대



3.5.1 형태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세면대의 형태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세면대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세면대 형태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	3.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2.4
일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깊이 0.45m, 높이 0.65m 확보	2.1

-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단독형으로 설치할 경우 세면대 양측면에 회전형 손잡이를 설치
- 외부 세면대로 적용할 경우, 단독형이면 반드시 양쪽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카운터형 일 경우에는 양쪽손잡이 없어도 평가가 가능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세면대를 단독형으로 설치할 경우 세면대 양측면에 상하회전형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2 상하회전형 손잡이의 상단은 세면대 상단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3 카운터형을 설치할 경우 상하회전형 손잡이 없어도 평가가 가능함
- 4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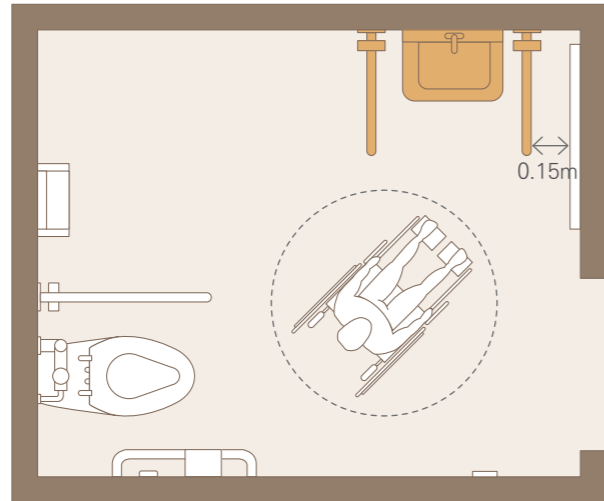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3호가목(1)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호라목(1)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3호라목(1)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호라목(2)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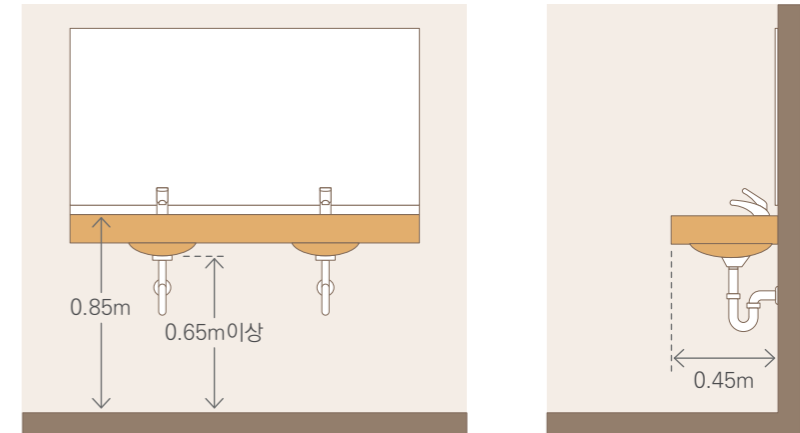


-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의 깊이는 0.45m, 높이는 0.65m 이상을 확보하고,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는 대변기 칸막이 내부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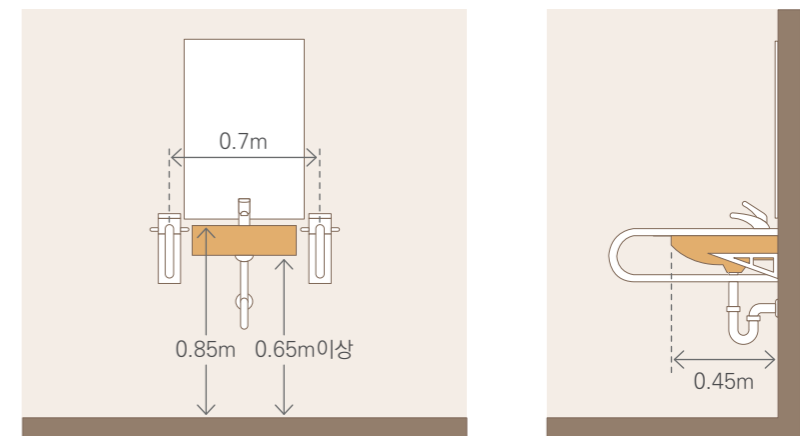
★★ 우수
★ 일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깊이 0.45m, 높이 0.65m 확보

카운터형



단독형



-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의 깊이는 0.45m, 높이는 0.65m 이상을 확보하고,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5 세면대



3.5.2 거울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 거울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 거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 거울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여부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세면대 거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거울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3.0
우수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2.4

· 각도조절이 가능한 거울은 전면거울설치와 동일하게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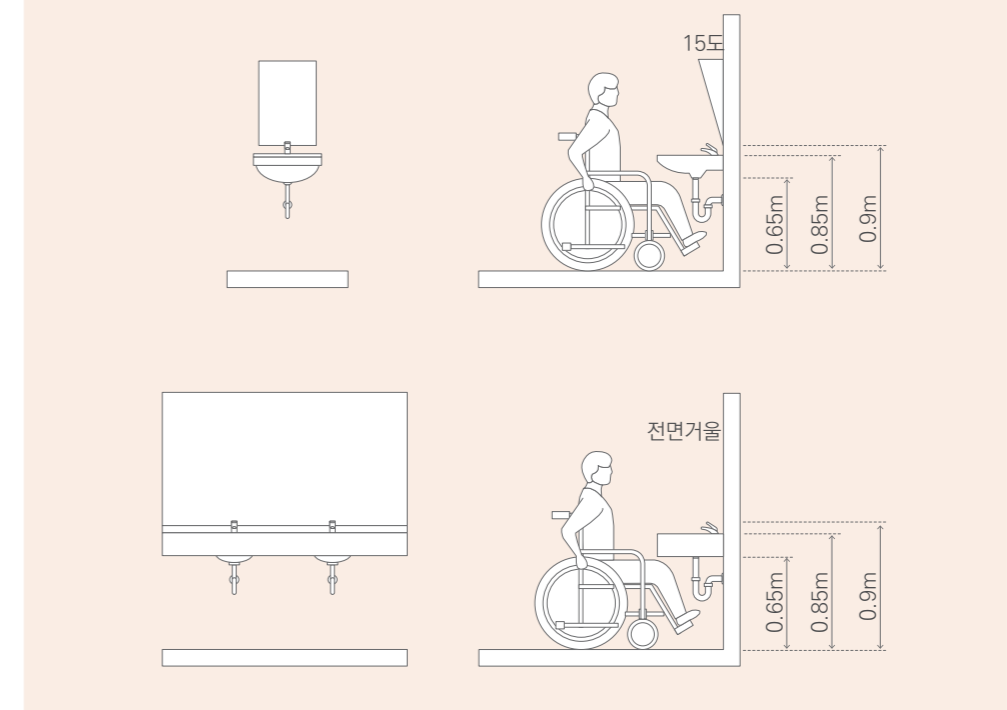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각도조절이 가능한 거울은 전면거울 설치와 동일하게 평가함
- 2 세면대 전면거울의 크기는 최소 가로길이 0.6m×세로길이 0.9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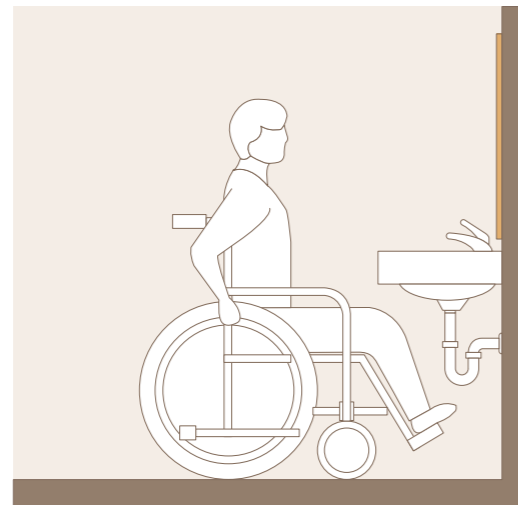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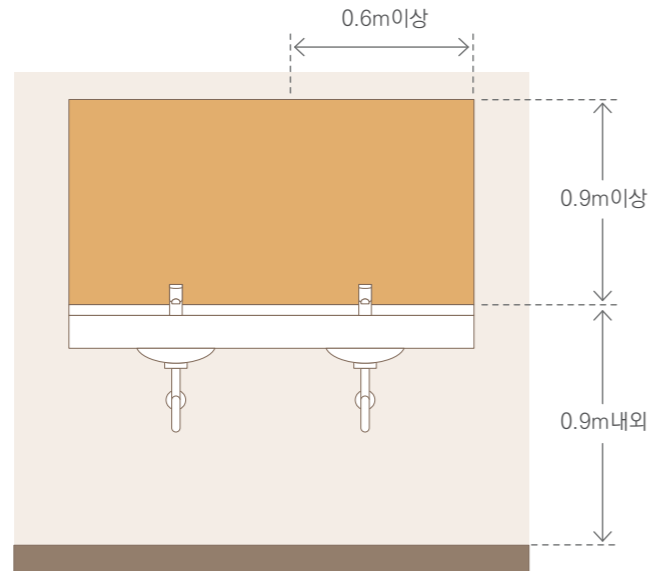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3호라목(2)(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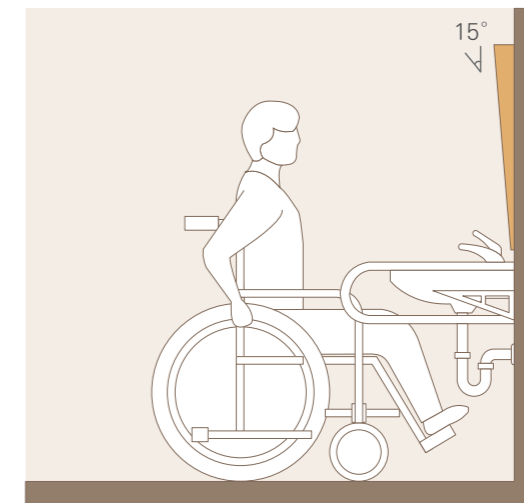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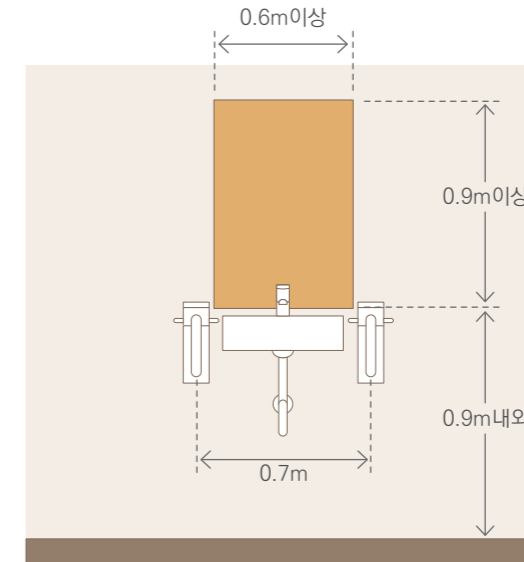
- 세면대 전면거울은 가로길이 0.6m이상, 세로길이 0.9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A 전면 거울

가로길이 0.6m 이상, 세로길이 0.9m 이상의 경사진 곳 없이 전면에 설치된 거울을 말한다.

★★ 우수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 세면대 경사형 거울은 가로길이 0.6m이상,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지도록 거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5 세면대



3.5.3 수도꼭지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수도꼭지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세면대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도꼭지	점수
최우수	광감지식 설치	3.0
우수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표시	2.4

· 광감지식일 경우 적당한 수온이므로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한 최우수로 평가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광감지식일 경우 적당한 수온이므로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한 최우수로 평가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3호가목(3)(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호라목(2)(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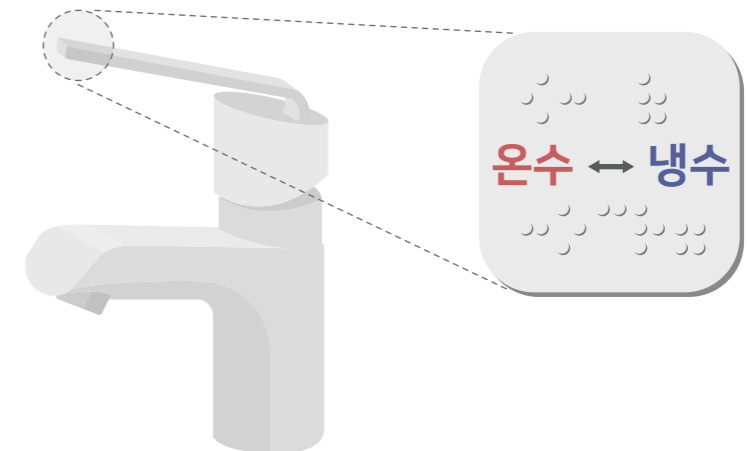
광감지식 설치



· 세면대의 수도꼭지는 광감지식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표시



· 세면대의 수도꼭지는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고, 냉수·온수 점자표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6 욕실



3.6.1 구조 및 마감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욕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욕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욕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욕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구조 및 마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탈의실 등의 바닥면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3.0
우수	내부 욕조전면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로 설치하고,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2.4

산출기준 기본사항

1 욕실은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2 욕실 내부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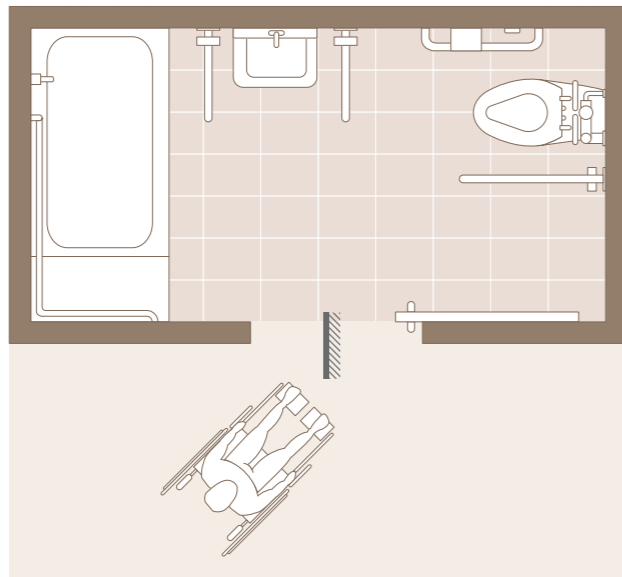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 제14호가목 욕실은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14호나목(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제14호나목(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4호나목(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제14호다목(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 제14호다목(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제14호다목(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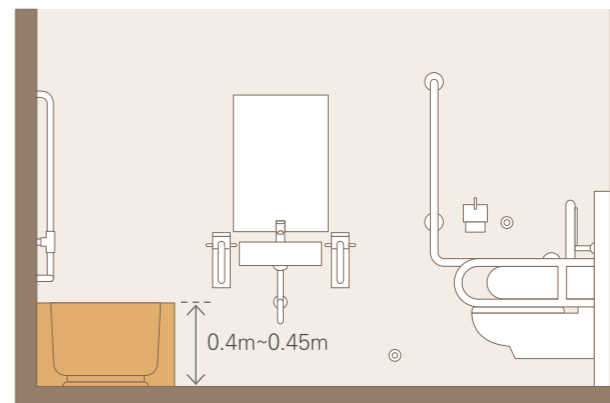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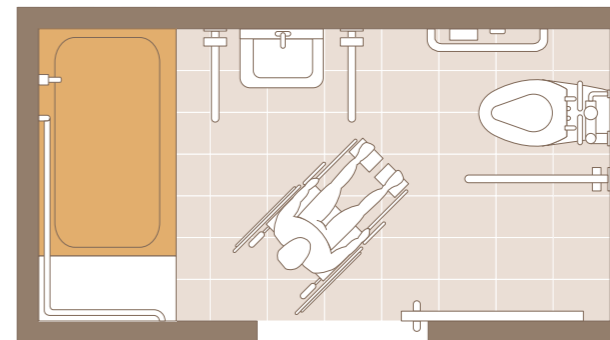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탈의실 등의 바닥면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 내부 욕조 전면의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하도록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고 탈의실 등의 바닥면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내부 욕조전면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로 설치하고,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 내부 욕조 전면의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하도록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A 휠체어 활동공간

욕조의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6.1 구조 및 마감 산출기준]

3.6 욕실



3.6.2 기타설비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욕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 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욕실의 수도꼭지 형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도꼭지 형태 및 비상용 벨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	3.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욕조주위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	2.4
일반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비상용 벨을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설치	2.1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하여야 함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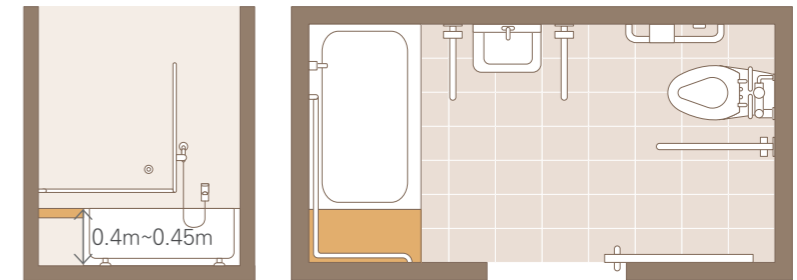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4호라목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호마목(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4호마목(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4호마목(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제14호마목(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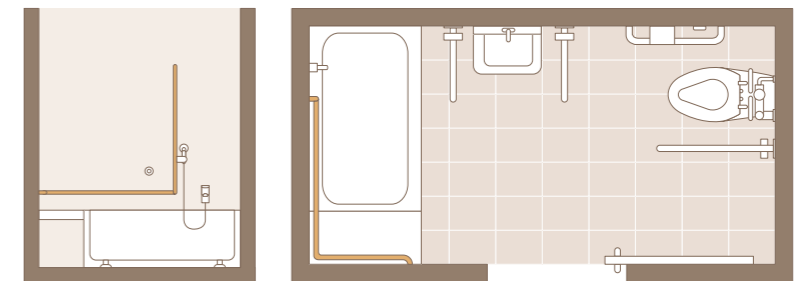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



· 욕실의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계획하고 비상용 벨을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욕조 주위에 수평·수직 손잡이를 설치하며,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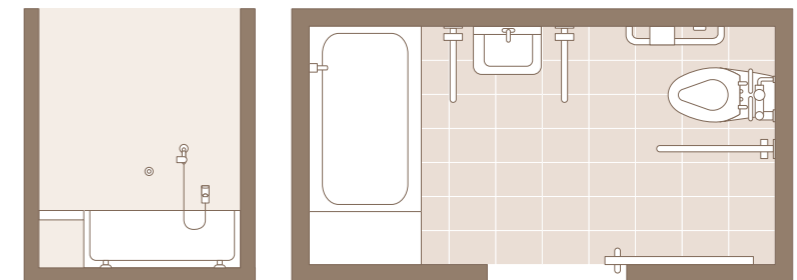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욕조주위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



· 욕실의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계획하고 비상용 벨을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욕조 주위에 수평·수직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비상용 벨을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설치



· 욕실의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계획하고 비상용 벨을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3.7 샤워실 및 탈의실

3.7.1 구조 및 마감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샤워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샤워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샤워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구조 및 마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되 샤워실 입구에 단차없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3.0
우 수	샤워실 입구에 단차 2cm 이하이면서 샤워실 유효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m×1.3m 이상이며,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2.4

· 바닥타일은 미끄럼방지용 타일로 마감 시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에 해당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 2 바닥타일은 미끄럼방지용 타일로 마감 시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에 해당함
- 3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 4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5호가목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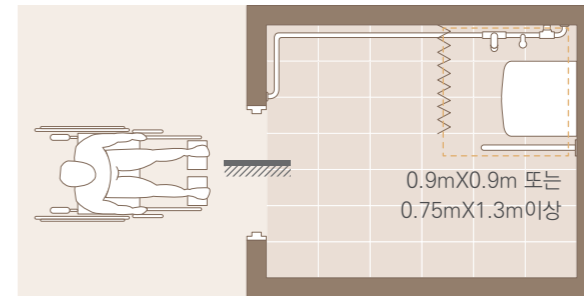
제15호나목(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제15호나목(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호다목(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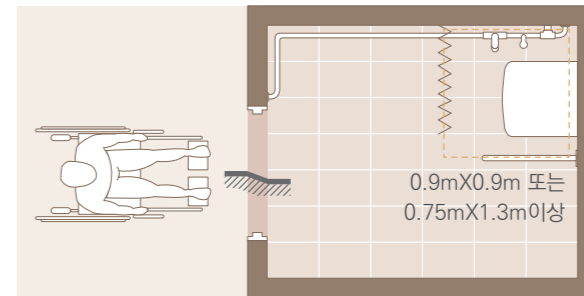
제15호다목(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되 샤워실 입구에 단차없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 샤워실 입구의 단차 없이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으며, 샤워실 유효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m×1.3m 이상 계획하고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 수 샤워실 입구에 단차 2cm 이하이면서 샤워실 유효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m×1.3m 이상이며,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 샤워실 입구의 2cm이하 단차이면서 샤워실 유효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m×1.3m 이상 계획하고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샤워실 유효바닥면적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샤워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샤워실의 내부 마감치수를 0.9m X 0.9m 또는 0.75m X 1.3m 이상 확보한 공간을 말한다. [3.7.1 구조 및 마감 산출기준]

3.7 샤워실 및 탈의실

3.7.2 기타설비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샤워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샤워실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도꼭지 형태 및 비상용 벨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수전을 높낮이 조절형으로 설치, 비상호출벨 설치	3.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실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	2.4
일반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설치	2.1

- 샤워용 접이식 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높이로 설치
-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1.2m로 설치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산출기준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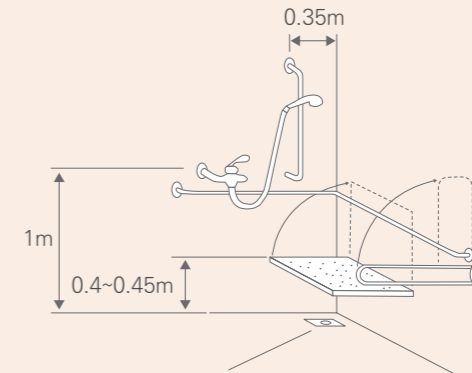
- 1 샤워용 접이식 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2 탈의실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1.2m로 설치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3 수도꼭지에는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하여야 함
- 4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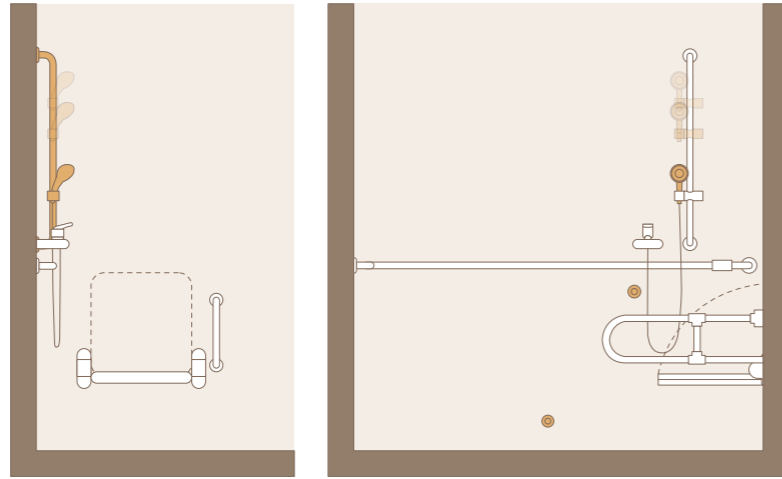
제15호라목 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호마목(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제15호마목(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호마목(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호마목(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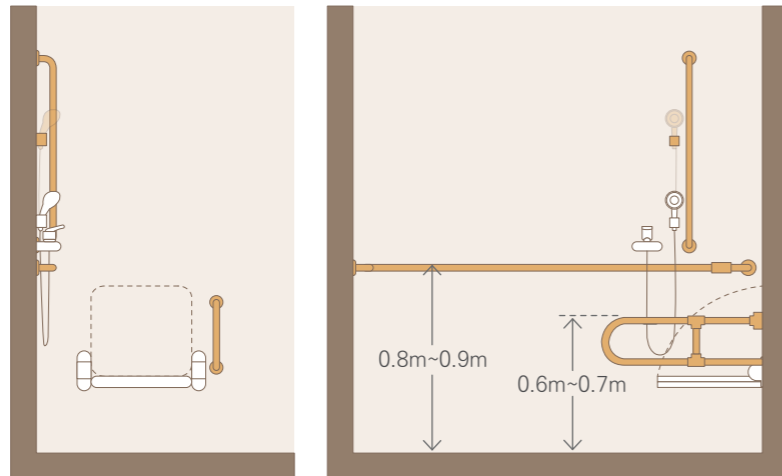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수전은 높낮이 조절형으로 설치, 비상호출벨 설치



- 샤워실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샤워용 접이식 의자, 샤워실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샤워수전은 높낮이 조절형으로 계획하고 비상호출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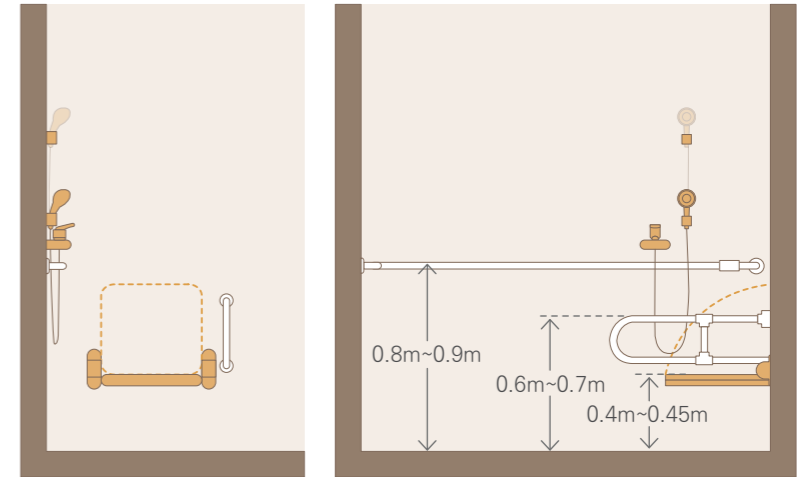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실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



- 샤워실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샤워용 접이식 의자, 샤워실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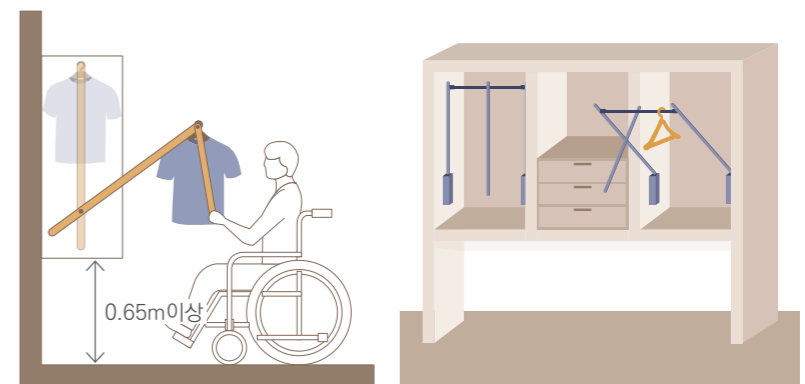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샤워용 접이식의 자를 설치



- 샤워실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샤워용 접이식 의자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탈의실의 수납공간



-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1.2m로 설치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최소 하부높이 0.65m 이상 확보)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안내시설

4.1 안내설비

- 4.1.1 안내판
- 4.1.2 점자블록
-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4.1.4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4.2 경보 및 피난설비

- 4.2.1 시각·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4.1 안내설비



4.1.1 안내판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안내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이 건축물 내부의 위치 및 실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여부 평가

배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촉지도식 안내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판	점수
최우수	우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	4.0
우수	일반 조건을 만족하며 촉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	3.2
일반	장애인 등이 쉽게 인지가능한 안내판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설치	2.8

-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은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글자크기는 최소 1.5cm이상으로 하고, 바탕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한 글자체를 사용, 바닥면으로부터 1.0m~1.2m 범위 안에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 점자는 반구형으로 제작되어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음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 설치하여야 함
- 2 점자는 반구형으로 제작하여야 함
- 3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은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글자크기는 최소 1.5cm이상으로 하고, 바탕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한 글자체를 사용하여야 함
- 4 촉지도식안내판의 현위치의 높이는 5mm이상, 지름은 8mm이상인 되는 반구형으로 표기하여야 함
- 5 벽부형촉지도식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1.0~1.5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함
- 6 입식형촉지도식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1.0~1.2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함
- 7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함
- 8 안내판 0.3m 전방에는 표준형 점형블록을 매립하여 설치하여야 함
- 9 음성유도기는 국가 표준 규격서 KICS.KO-06.0046/R3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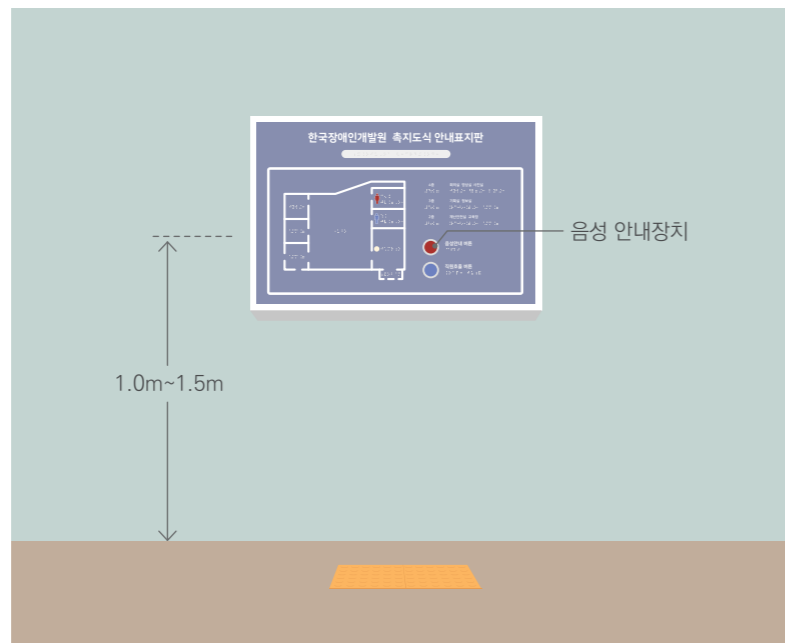
제17호가목(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7호가목(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호가목(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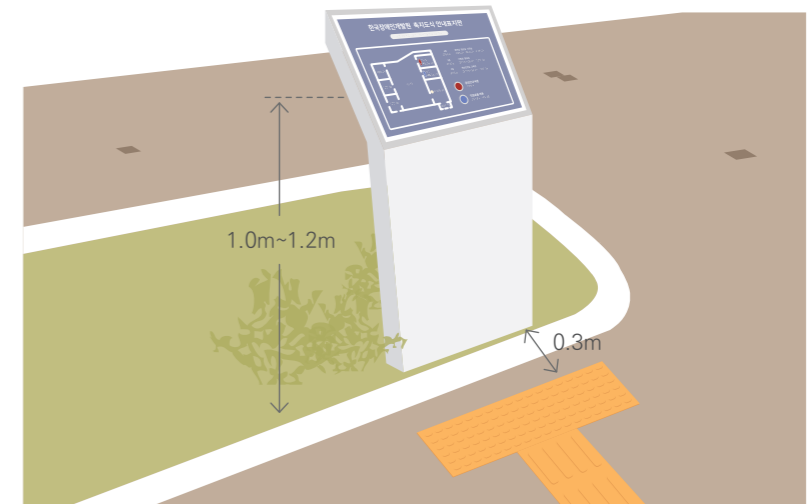
우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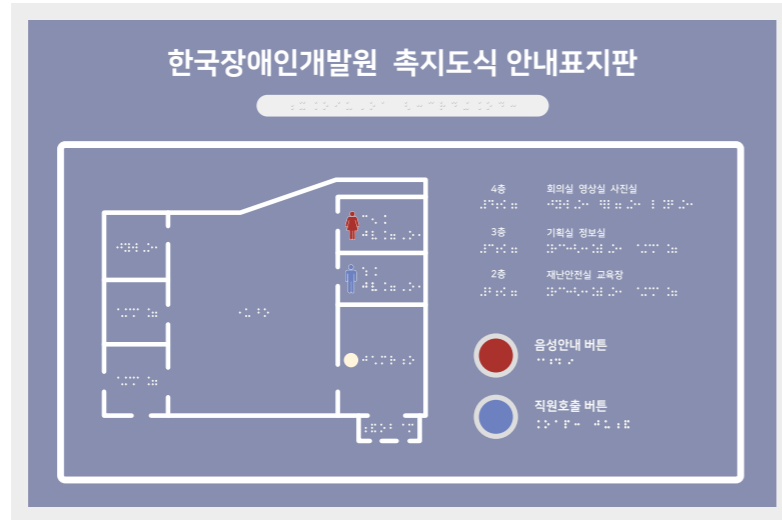


· 장애인등이 쉽게 인지 가능한 축지도식안내판을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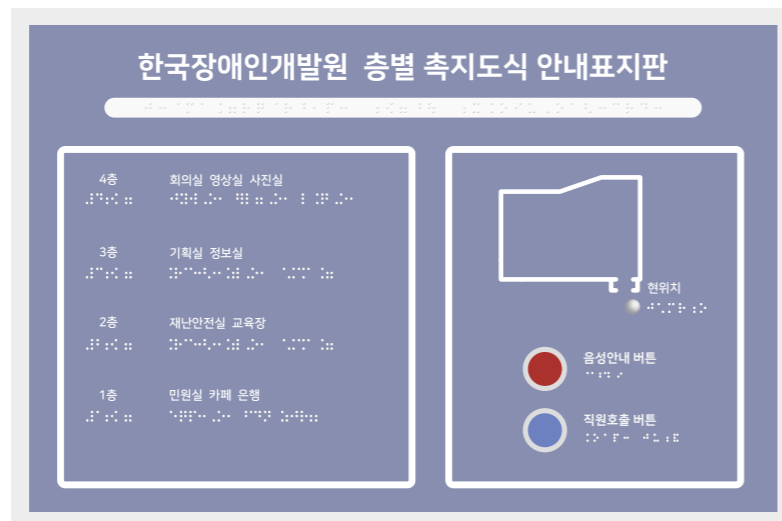
일반 조건을 만족하며 축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





·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 가능한 촉지도식안내판을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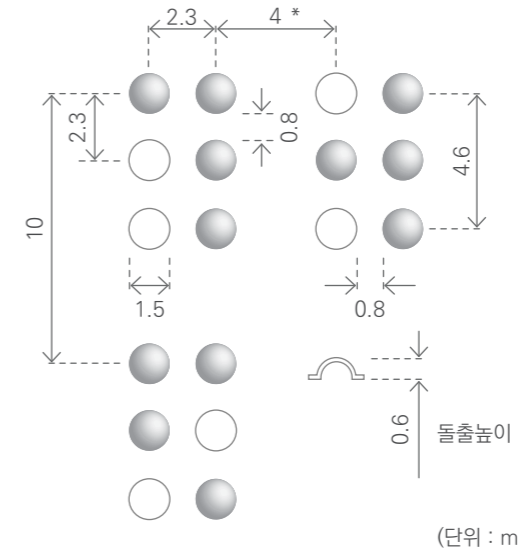
★ 일 반 장애인 등이 쉽게 인지가능한 안내판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설치



·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 가능한 안내판을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점자표지법은 한국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 발간)을 따르며, 점자의 치수 및 형상 등 규격은 국가기술표준 KS B 6895, 엘리베이터 점자 표시의 점자 규격에 준하도록 한다.



* 단 손잡이 점자표지판 등과 같이 표기내용이 많을 경우 최소 3mm까지 조정가능

· 국가기술표준 KS B 6895 승강기용 점자 표시의 점자규격

기타사항

해당 영역 내에 점자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 점자 약자로 표기할 수 있다.
※ 비교: 남자화장실은 남(자), 여자화장실은 여(자),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 종합 안내소는 안내소,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등

·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도 SPS-KBUWEL001-5686

점자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점자법 제3조제1호]

4.1 안내설비



4.1.2 점자블록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장애인에게 건축물로의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자블록을 감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점자블록의 규격과 재질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점자블록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점수
최우수	점자블록 기능이상의 수준인 경우	3.0
우 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로 하며,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색으로 하며,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함	2.4

· 최우수 수준은 사감 즉 청각(음향, 음성), 시각(색상대비 등), 후각(향기 등), 촉각(재질감 등)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의 수준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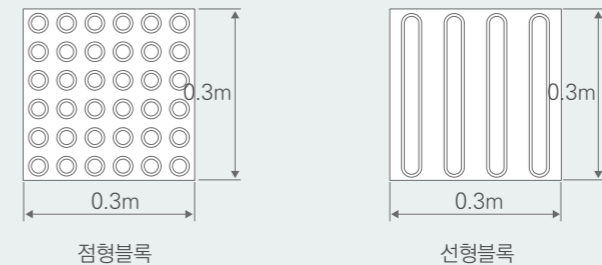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 x 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6호가목(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호가목(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6호가목(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제16호가목(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제16호가목(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제16호가목(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제16호가목(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제16호가목(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호나목(3)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최우수

점자블록 기능이상의 수준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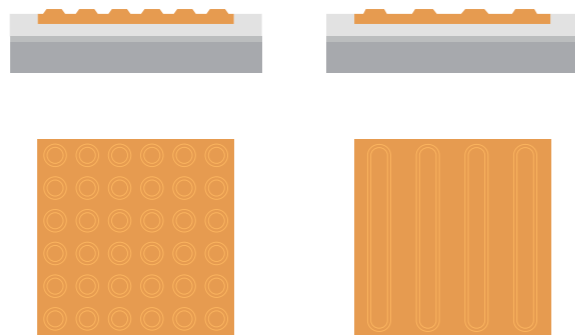


- 최우수 수준은 즉 청각(음향, 음성), 시각(색상대비 등), 후각(향기 등), 촉각(재질 감 등)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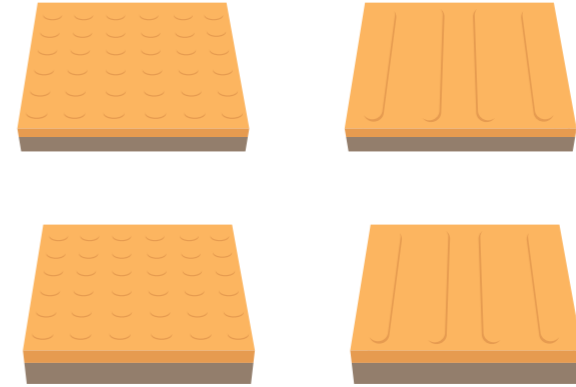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로 하며,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색으로 하며,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함

점자블록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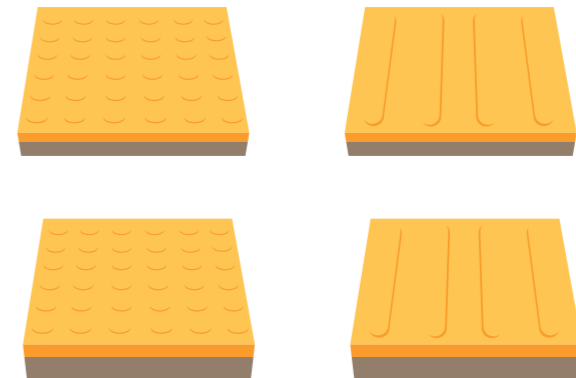


-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 돌출점,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합니다.
-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X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점자블록의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점자블록 종류



- 외부 : 고강도콘크리트블록 등
-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내부 : 미끄럽지 않은 재질 (논슬립 자기질 타일 등)

점자블록

크기는 (0.3m×0.3m)로 하며,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색으로 하며,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블록을 말한다. [4.1.2 점자블록 산출기준]

4.1 안내설비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장애인에게 건축물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의 음성제공 장치 설치와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주 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용 안내설비의 연속적인 설치 정도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3.0
우수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2.4
일 반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2.1

- 점형블록은 위험한 장소의 0.3m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접근로의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되었는지 평가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내부 안내시설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인증심사) 설치할 수 있음
- 음성안내장치는 소리 증폭이 실내외 90(dB)이하로(한국정보통신표준) 현장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음량 조절해야 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점형블록은 위험한 장소의 0.3m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
- 2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접근로의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함
- 3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내부 안내시설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인증심사) 설치할 수 있음
- 4 음성안내장치는 소리 증폭이 실내외 90(dB)이하로(한국정보통신표준) 현장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음량을 조절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6호나목(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호나목(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제17호다목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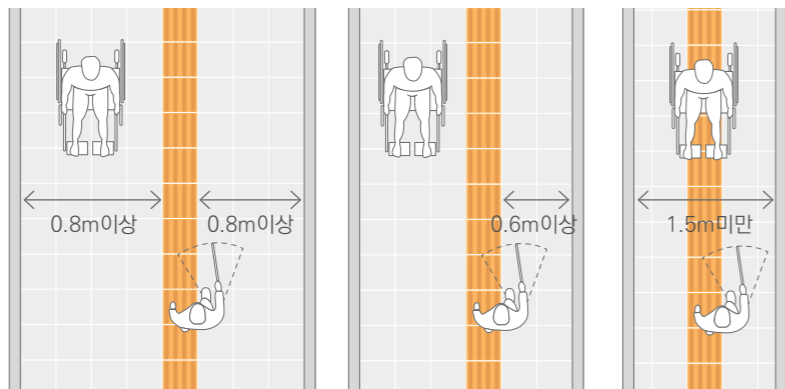


- 출입구(문)까지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하고, 대지경계선에서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음성안내장치는 대상시설의 이름, 이동동선, 거리 등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수
★ 일 반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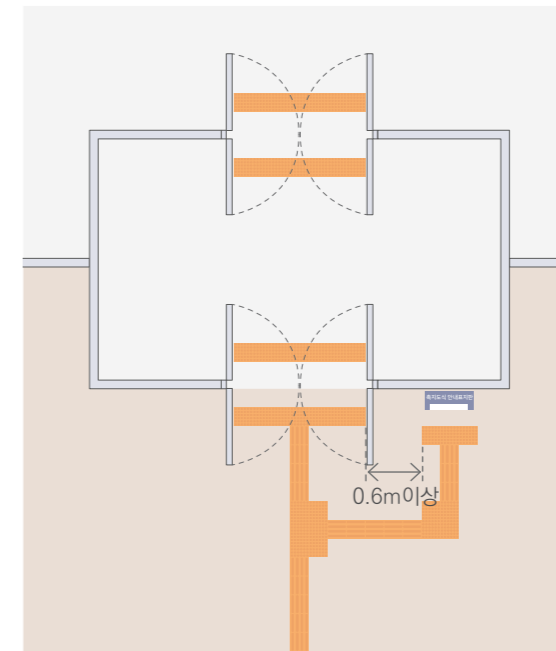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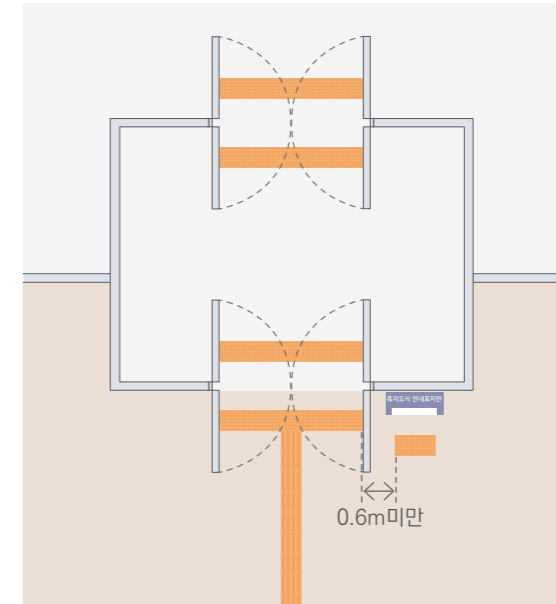
접근로
유도블록 설치



- 출입구(문)까지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선형블록의 외곽선으로부터 좌우 최소 0.6m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하며, 폭이 1.5m 미만인 경우 중앙에 선형블록을 진행방향에 맞게 설치함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7.12 (공공건물·공원·공동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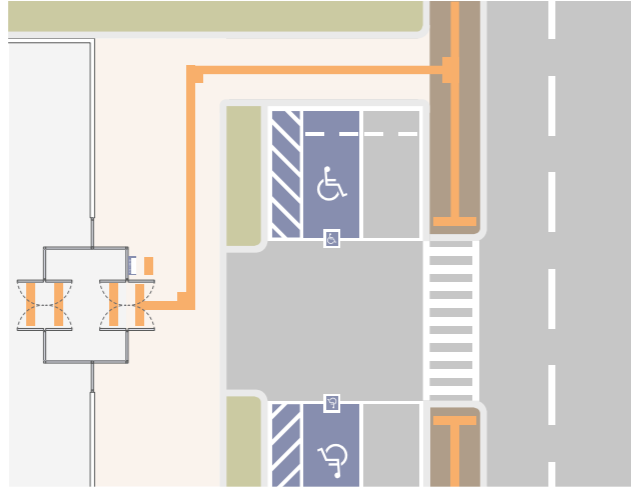
촉지도식안내판과
연계한 유도블록



- 출입구 점형블록과 점자안내판 점형블록의 이격거리가 0.6m 이상인 경우 접근로에 유도설치된 선형블록과 연계하여 주출입구, 점자안내판까지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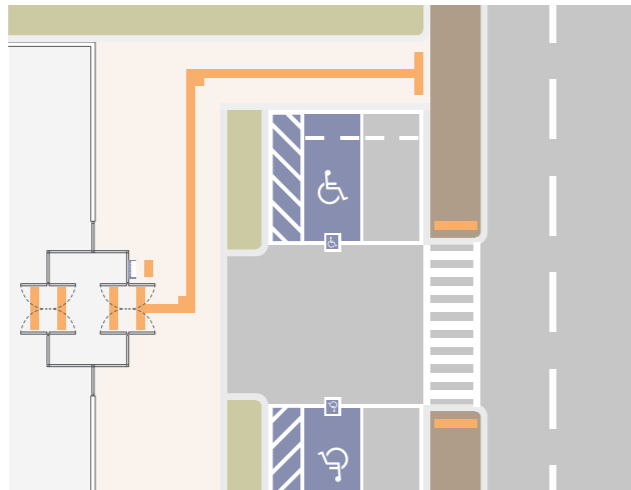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7.12 (공공건물·공원·공동주택)

보도와
연계한 선형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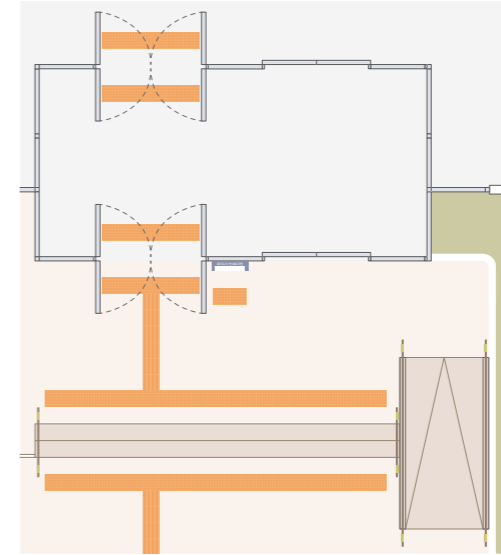
- 대상시설물 인근 보도에 선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상시설 출입구까지 점자블록을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대지경계선에서
연계한 선형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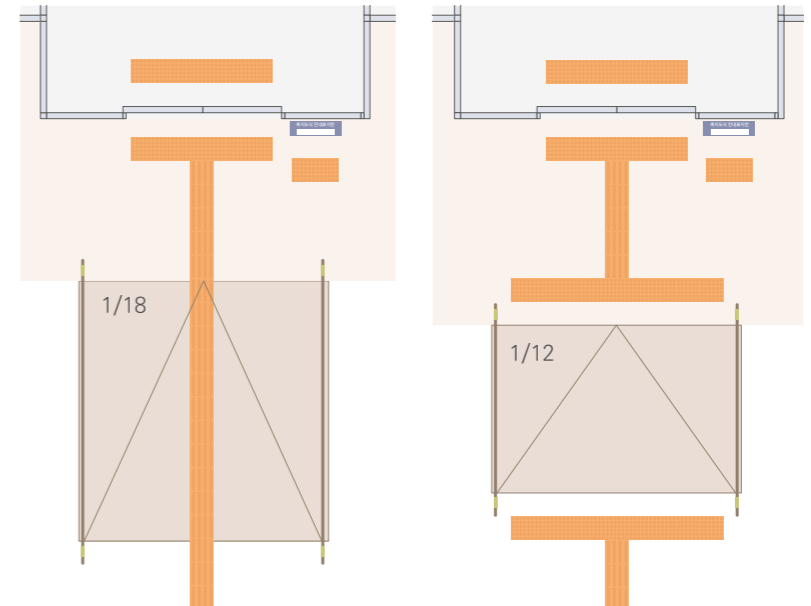
- 대상시설물 인근 보도에 선형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대지경계선 부분에서 점형블록 5장~7장 설치 후 대상시설 출입구까지 점자블록을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계단과 경사로가
같이 설치된 경우



- 계단과 경사로가 같이 설치된 경우는 계단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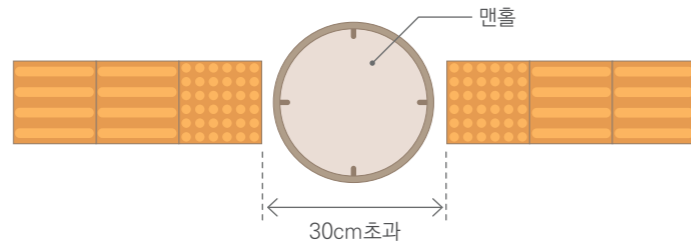
경사로만
설치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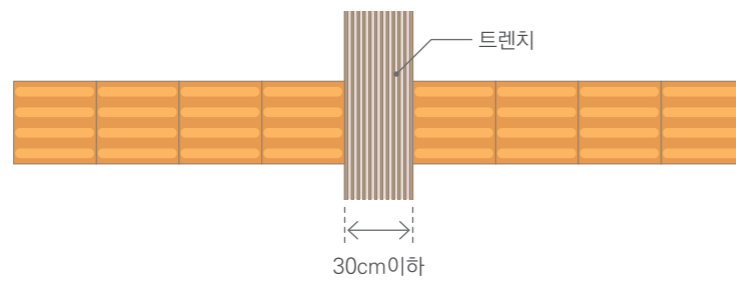
- 1/18이하 경사도가 설치된 경우 출입구까지 선형블록을 연속하여 설치하며, 1/17이상 경사도가 설치된 경우 경사로 시작과 끝에 경사로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후 출입구까지 선형블록을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점자블록 설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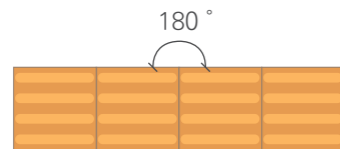


- 30cm초과한 경우 점형블록 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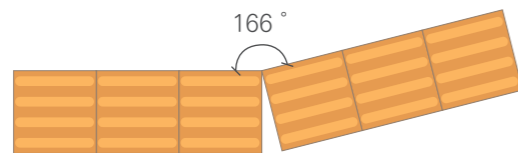
- 30cm이하인 경우 선형블록 매립

진행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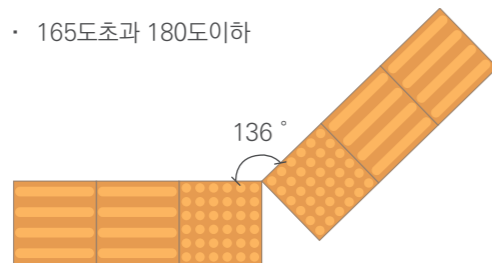


- 180도

사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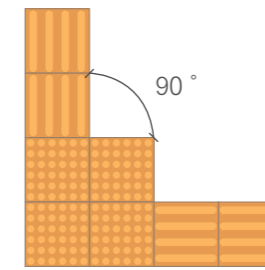


- 165도초과 180도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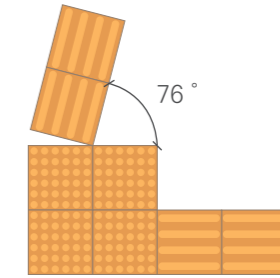


- 135도초과 165도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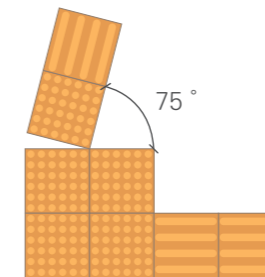
1방향 7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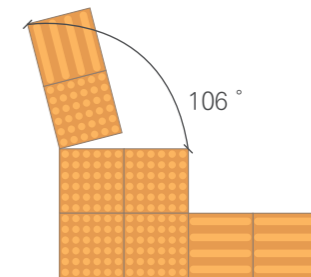
- 90도



- 75도초과 105도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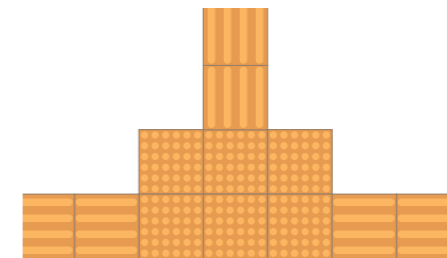


- 75도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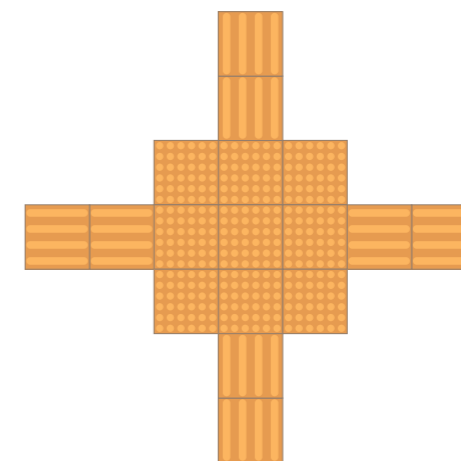


- 105도초과 135도이하

2방향 T자형



3방향 +자형



4.1 안내설비



4.1.4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세부평가기준

- 평가목적** 청각장애인 안내설비를 평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건축물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안내표시 설치의 적정성 여부 평가
- 배점** 3점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	3.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그림을 병용하여 표시	2.4
일반	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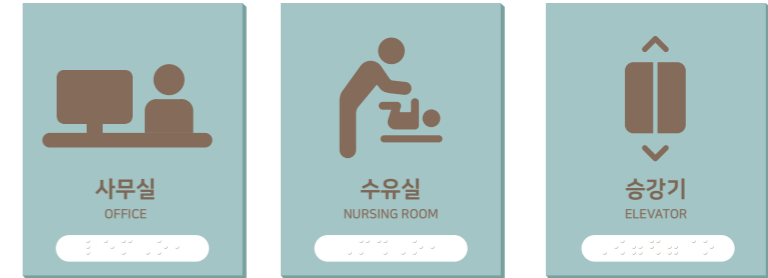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는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계단, 접수대, 주요실 등 청각장애인 및 시설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는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계단, 접수대, 주요실 등 청각장애인 및 시설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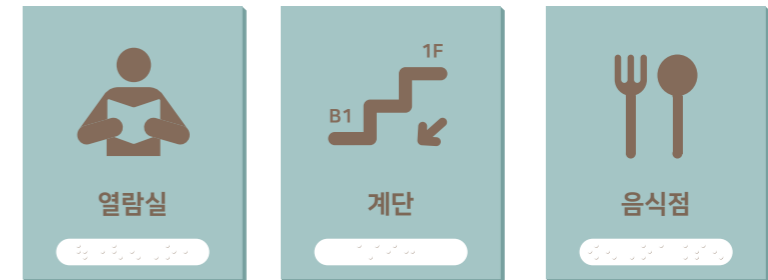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



- 읽기 좋은 글자체를 사용하고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그림 및 외국어 표시를 병용하여야 합니다.

★★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그림을 병용하여 표시



- 읽기 좋은 글자체를 사용하고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및 그림 표시를 병용하여야 합니다.

★ 일반

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



- 읽기 좋은 글자체를 사용하고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2 경보 및 피난설비



4.2.1 시각·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 또는 음성안내 등의 시각경보시스템 및 경광등 또는 문자안내 등의 청각경보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연속설치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시·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 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점수
최우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 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3.0
우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을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2.4

- 시각경보기(경광등)는 남·여 화장실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모든 실에 시각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시각경보기(경광등)는 남·여 화장실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2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3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모든 실에 시각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4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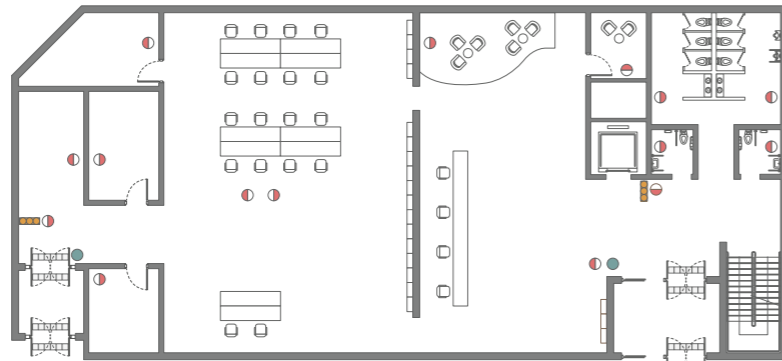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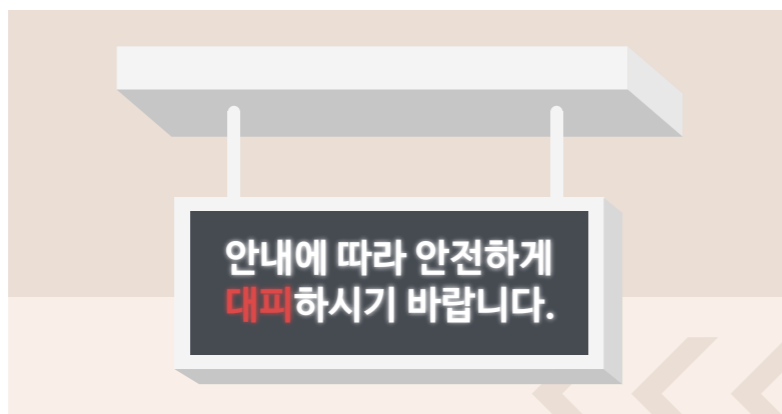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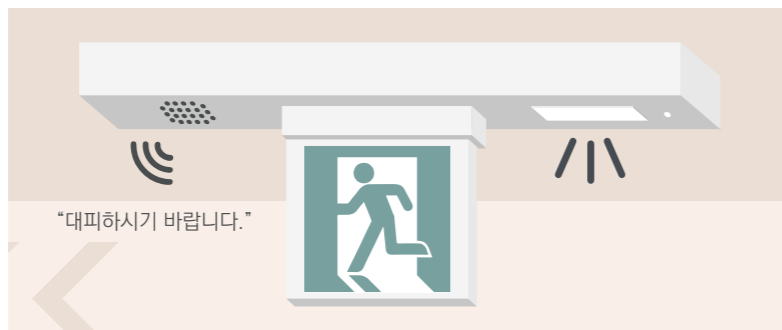
제18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최우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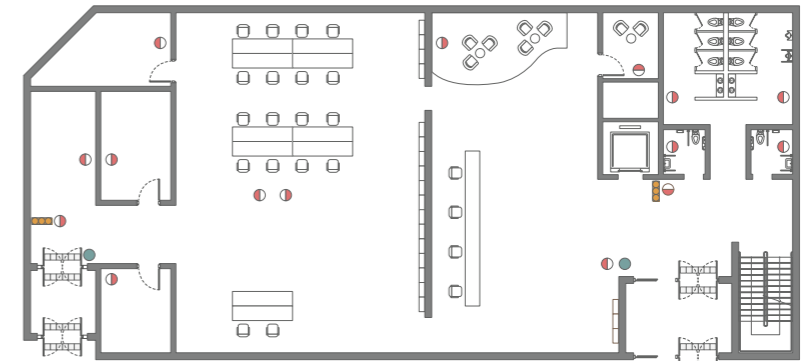
● 시각경보시스템 ● 피난구유도등 ■ 발신기 내장 옥내소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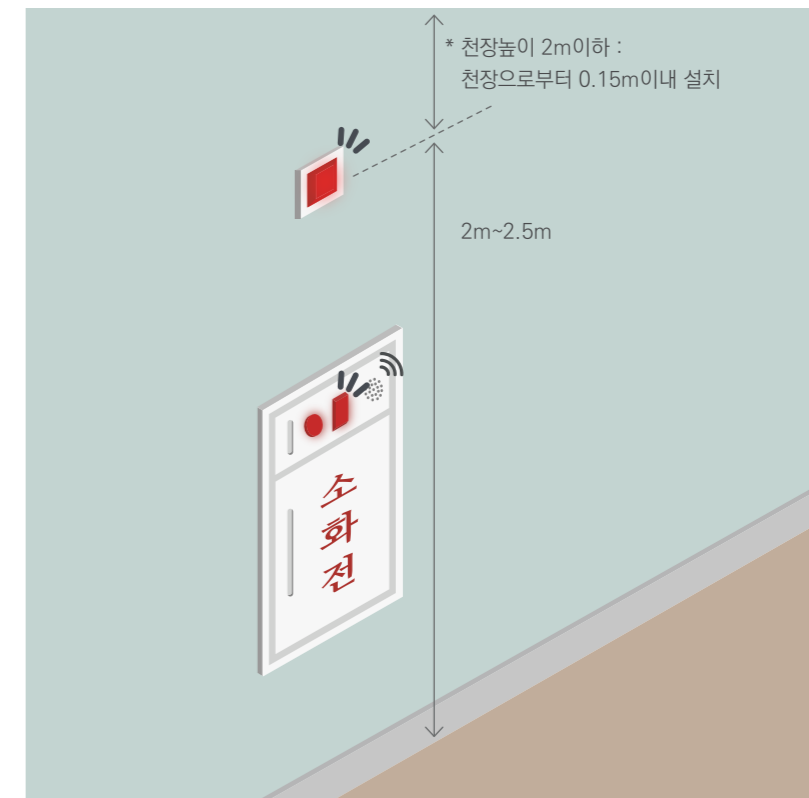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과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 조명이 포함된 문자 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을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 시각경보시스템 ● 피난구유도등 ■ 발신기 내장 옥내소화전



·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과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5 기타시설

5.1 객실 및 침실

- 5.1.1 설치율
- 5.1.2 설치위치
- 5.1.3 통과유�효폭
- 5.1.4 활동공간
- 5.1.5 침대구조
- 5.1.6 객실바닥
- 5.1.7 유효폭 및 단차(화장실)
- 5.1.8 유효 바닥면(화장실)
- 5.1.9 손잡이(화장실)
- 5.1.10 점자표지판(기타설비)
- 5.1.11 설치높이(기타설비)
- 5.1.12 초인등(기타설비)

5.2 관람석 및 열람석

- 5.2.1 설치율
- 5.2.2 설치위치
- 5.2.3 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
- 5.2.4 열람석의 구조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 5.3.1 설치위치
- 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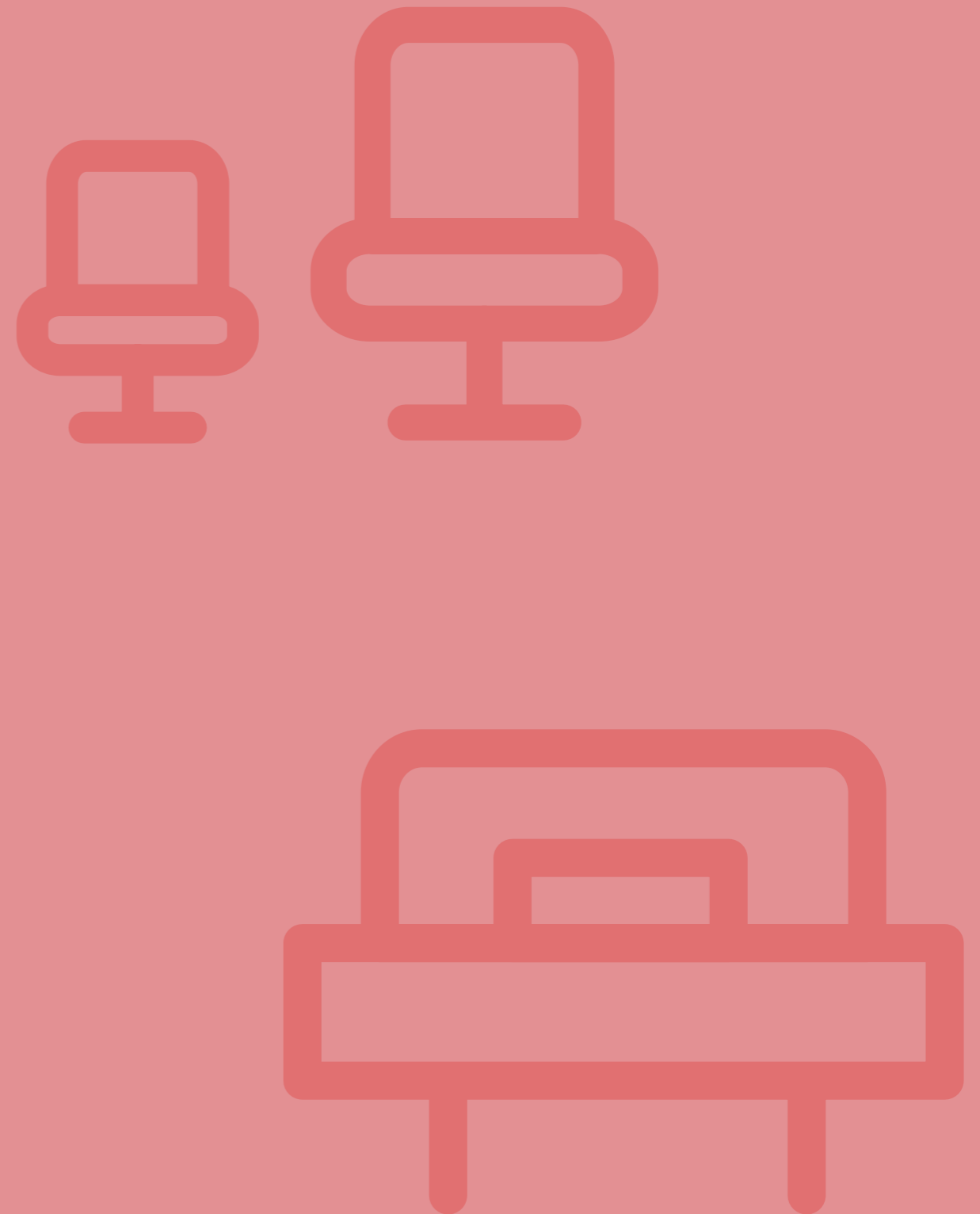
- 5.4.1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5.5 피난구 설치

-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 5.5.2 피난의 구조

5.6 임산부 휴게시설

- 5.6.1 접근 유효폭 및 단차
- 5.6.2 내부 구조



5.1 객실 및 침실



5.1.1 설치율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숙박시설 등의 해당시설에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객실·침실 등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전체 침실 또는 객실 중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객실의 확보정도 평가

배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객실의 설치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율	점수
최우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2%이상 설치(관광숙박시설의 경우 4%이상 설치)	5.0
우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이상 설치(관광숙박시설의 경우 3%이상 설치)	4.0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객실 또는 침실수는 최소 1실 이상 설치하여야 함(단, 성별이 분리된 기숙사일 경우 각각 1실 이상 확보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2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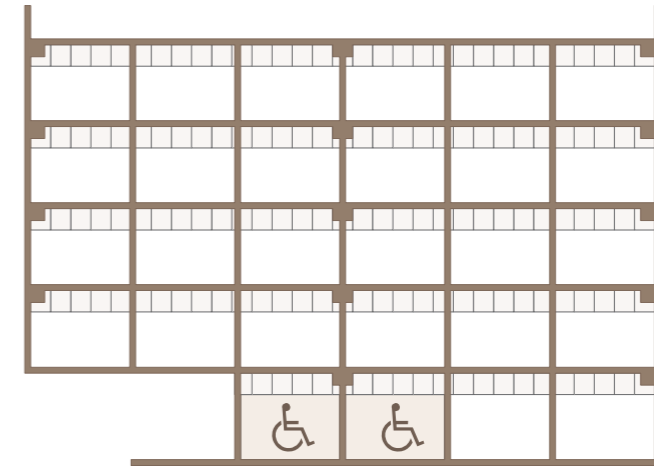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호가목(13)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차물등을 고려하여 설치 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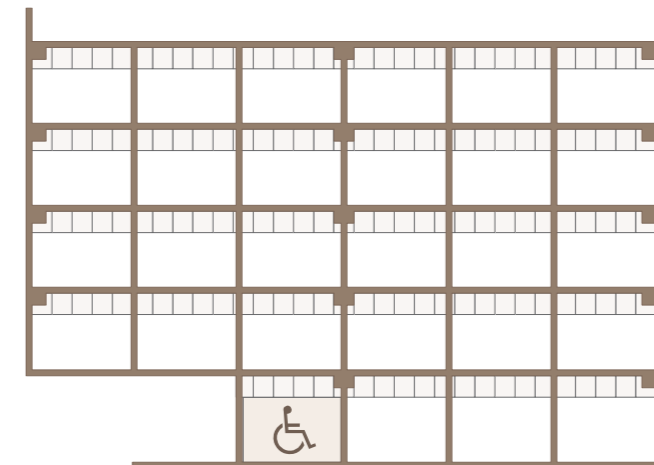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2%이상 설치(관광숙박시설의 경우 4%이상 설치)



· 전체 객실 또는 침실수의 2%(관광숙박시설 4%)이상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이상 설치(관광숙박시설의 경우 3%이상 설치)



· 전체 객실 또는 침실수의 1%(관광숙박시설 3%)이상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5.1 객실 및 침실



5.1.2 설치위치

세부평가기준

- 평가목적** 식당, 로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닐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의 위치가 공용공간에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공용공간으로 단차가 없이 접근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 배점** 5점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설치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위치	점수
최우수	주출입층에 설치되어 공용공간으로 단차없이 접근가능함	5.0
우수	주출입층에 설치되지 않았으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용공간으로 이동이 용이함	4.0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함
- 2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닐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으로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닐 때에도 단차 없이 접근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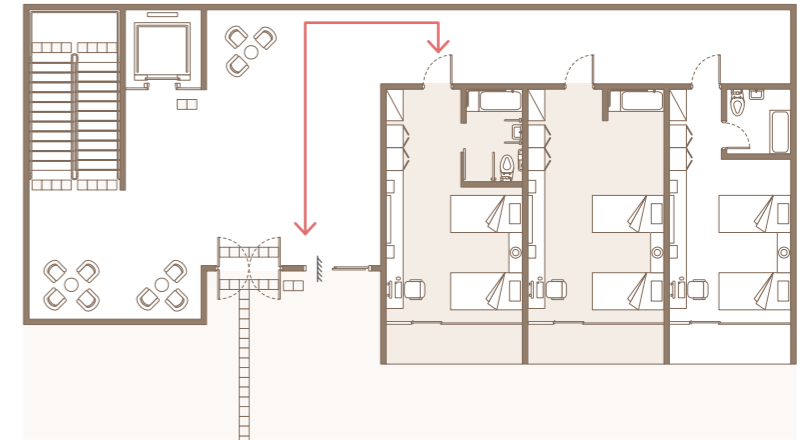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9호가목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닐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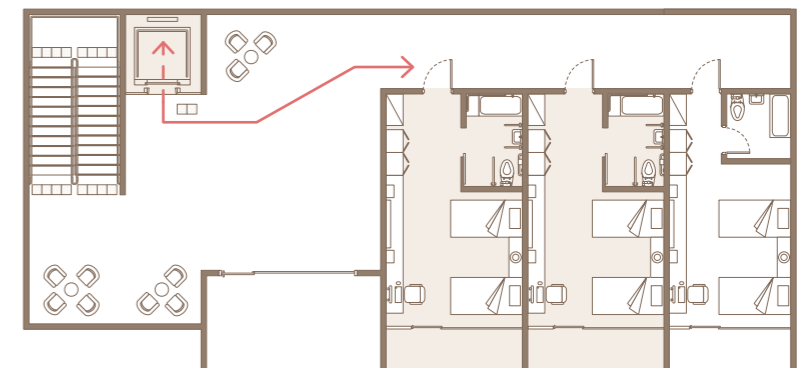
주출입층에 설치되어 공용공간으로 단차 없이 접근가능함



·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 주출입층에 설치되어 공용공간으로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 우수

주출입층에 설치되지 않았으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용공간으로 이동이 용이함



·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 주출입층에 설치되지 않았으나 승강기와 가깝게 설치되어 있으며, 공용공간으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1 객실 및 침실



5.1.3 통과유효폭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출입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정도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통과 유효폭	점수
최우수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1m이상 확보	3.0
우수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이상 확보	2.4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하여야 함
- 2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지 않아야 함
- 3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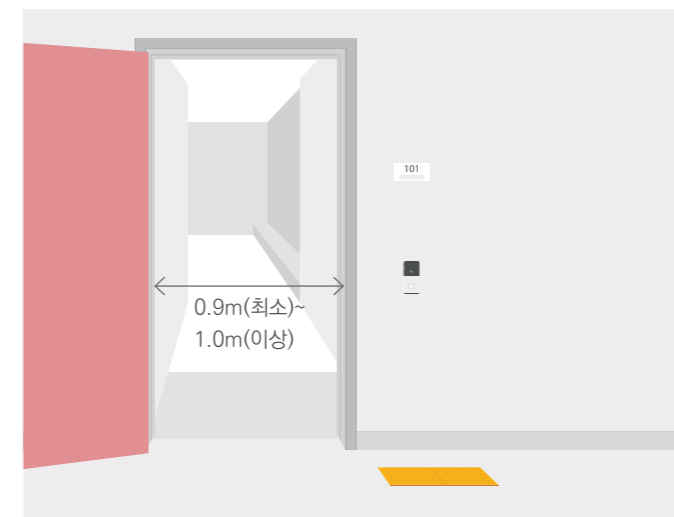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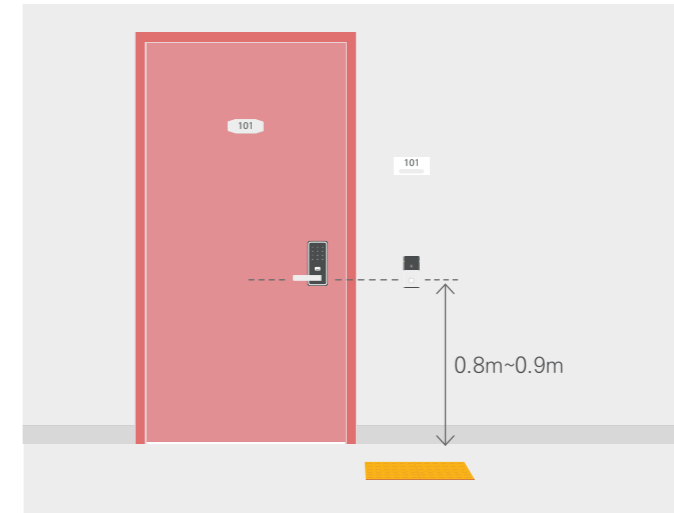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가목(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6호가목(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호가목(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최우수
★★ 우수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1m이상 확보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이상 확보



·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유효폭을 0.9m~1.0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객실 및 침실 출입문 유효폭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1.2 유효폭 산출기준]

5.1 객실 및 침실



5.1.4 활동공간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내부에서 회전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 내부 활동공간의 확보정도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객실 및 침실 내부 활동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활동공간	점수
최우수	객실 및 침실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 이상 활동공간 확보	3.0
우수	객실 및 침실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2m 이상 활동공간 확보	2.4

산출기준 기본사항

1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 1.2m이상 확보하여야 함
※ 휠체어가 회전을 해야할 경우 1.1.2 접근로 유효폭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최소 1.4m 이상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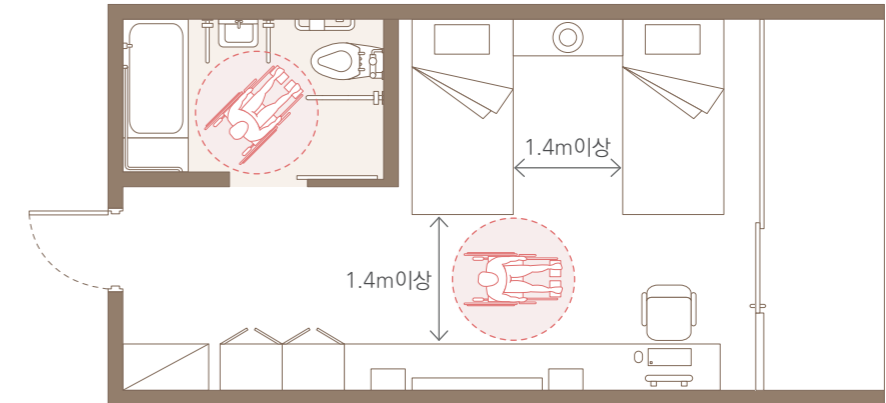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9호나목(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최우수

객실 및 침실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 이상 활동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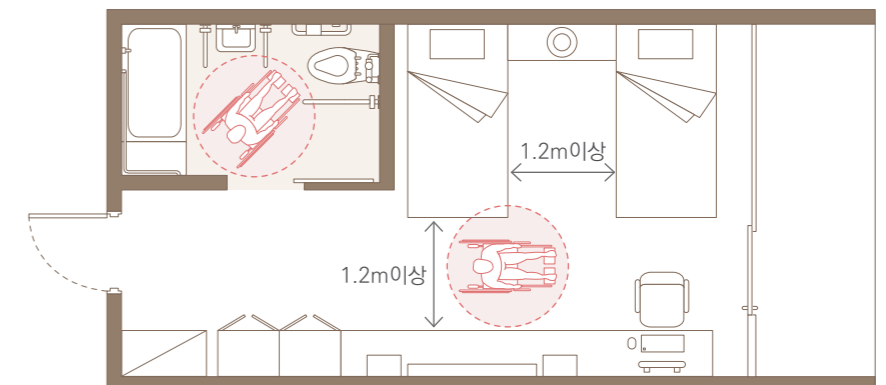


· 객실 및 침실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 이상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 내부 활동공간 1.4m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우수

객실 및 침실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2m 이상 활동공간 확보



· 객실 및 침실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2m 이상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 내부 활동공간 1.4m 이상 확보하여야 함

객실 및 침실의 활동공간

객실 및 침실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2m 이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5.1.4 활동공간 산출기준]

5.1 객실 및 침실



5.1.5 침대구조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 내부 침대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침대구조를 확보함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 내부 침대구조의 확보정도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침대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침대구조	점수
최우수	객실 침대 모두가 높이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 1.4m 이상 확보하며, 보조손잡이 설치	2.0
우수	객실 침대 모두가 높이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 1.2m 이상 확보	1.6
일반	객실 침대 중 1개 이상의 높이가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 1.2m 이상 확보	1.4

산출기준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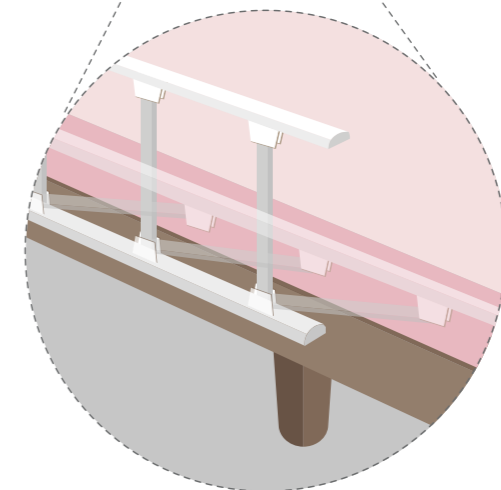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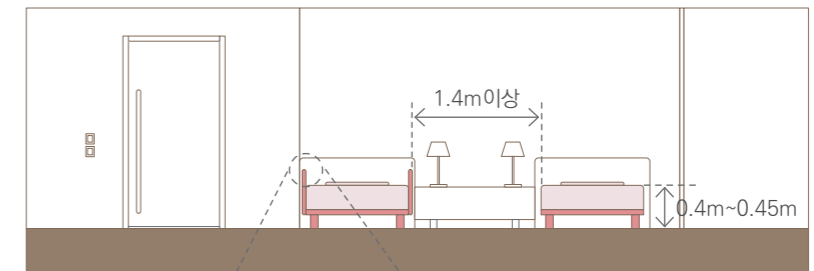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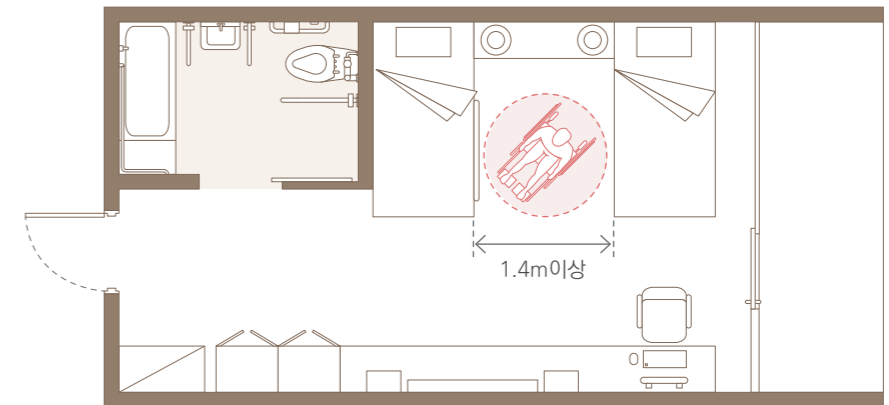
- 1 객실 및 침실에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침대를 설치하여야함
 - 2 침대 높이는 0.4~0.45m로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9호나목(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제19호나목(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호다목(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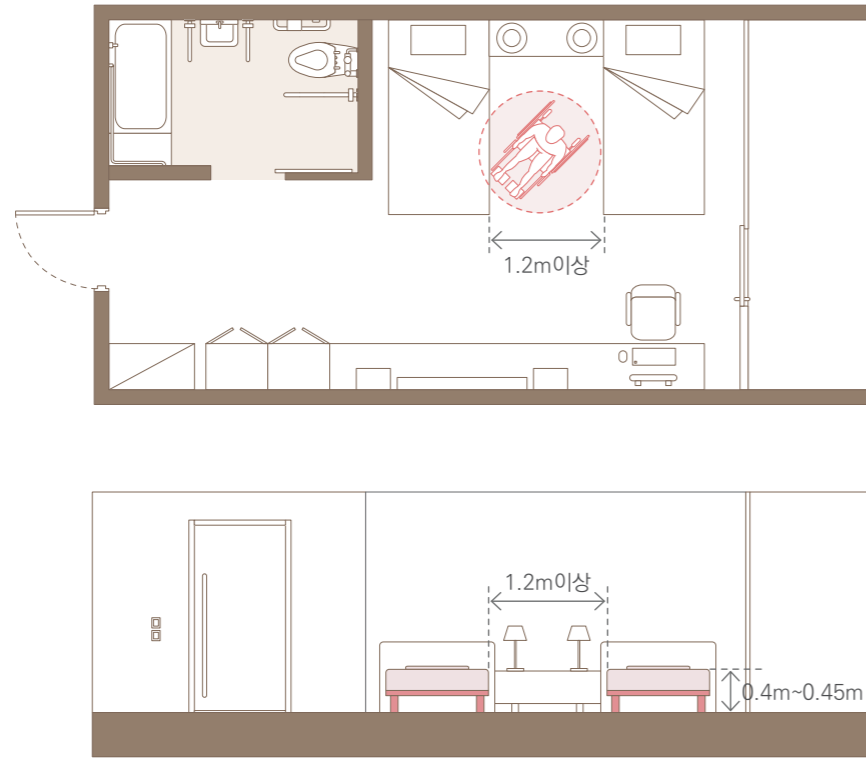
★★★ 최우수

객실 침대 모두가 높이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 1.4m 이상 확보하며, 보조손잡이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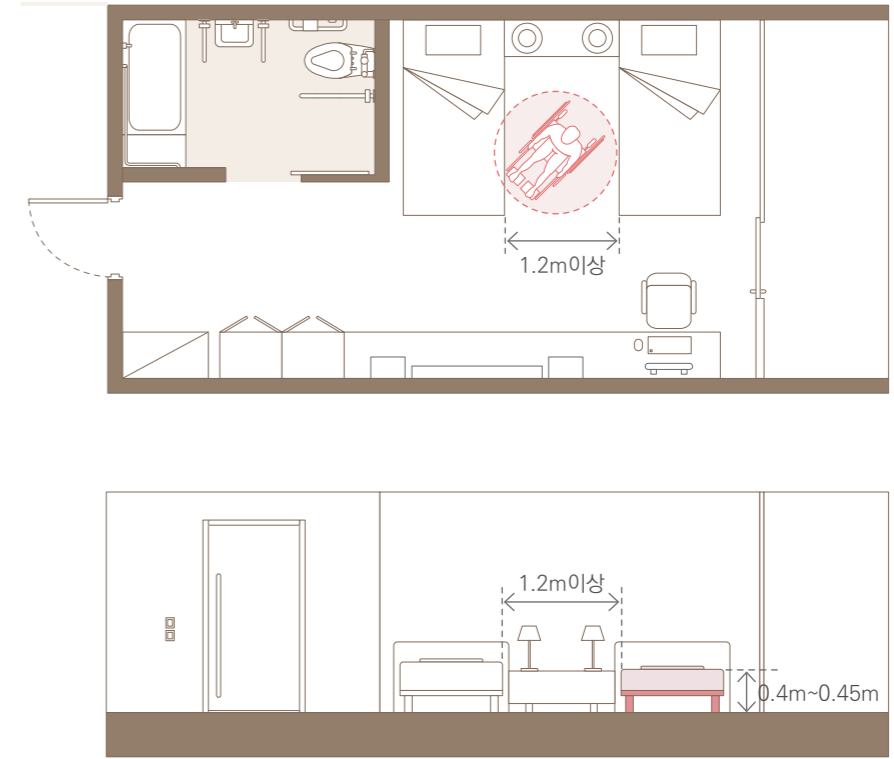
· 객실 침대 모두가 높이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을 1.4m 이상 확보하고 보조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객실 침대 모두가 높이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 1.2m 이상 확보



· 객실 침대 모두가 높이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을 1.2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 일반 객실 침대 중 1개 이상의 높이가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 1.2m 이상 확보



· 객실 침대 중 1개 이상의 높이가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을 1.2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객실 침대 활동공간

객실 침대 측면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2m 이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5.1.5 침대구조 산출기준]

5.1 객실 및 침실



5.1.6 객실바닥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 내부의 바닥 마감정도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는 정도에 따른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객실 및 침실 내부 객실바닥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객실 및 침실 바닥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펫 등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 재료로 마감	2.0
우 수	바닥면에 높이차이를 두지 않으며, 표면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1.6

· 카펫은 목발 등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길게 설치되지 않도록 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 2 카펫은 목발 등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길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3 객실 등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만들지 않아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9호다목(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19호다목(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펫 등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 재료로 마감

카펫



- 바닥면에 높이차이를 두지 않으며, 표면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합니다.
- 카펫 등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 재료로 마감하여야 합니다.

★★ 우 수

바닥면에 높이차이를 두지 않으며, 표면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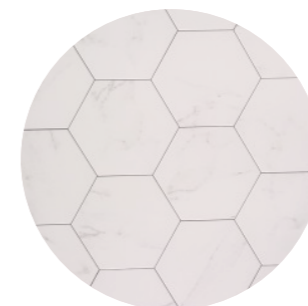


- 바닥면에 높이차이를 두지 않으며, 표면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합니다.

장판



타일



5.1 객실 및 침실(화장실)



5.1.7 유효폭 및 단차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 내부의 화장실 출입문 통과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정도를 평가하여 휠체어 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통과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객실 화장실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객실 화장실 유효폭	점수
최우수	출입문 통과 유효폭 1m이상, 출입문 단차 없음	3.0
우 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이상, 출입문 단차 없음	2.4
일 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이상, 출입문 단차 2cm이하	2.1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하여야함
- 2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3 객실 및 침실 내 화장실은 3.3.1 칸막이출입문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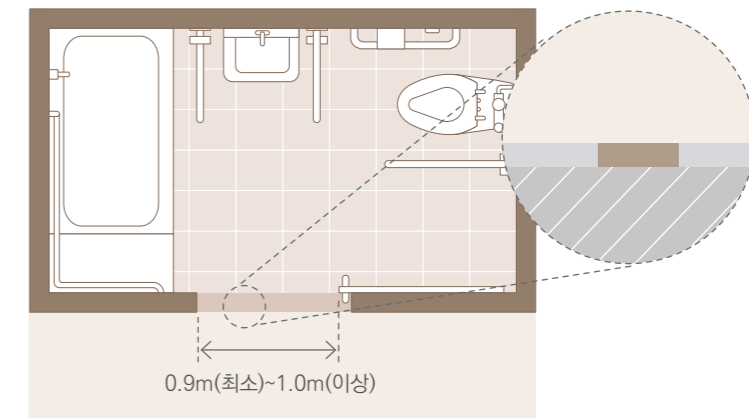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가목(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6호가목(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호가목(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최우수
★★ 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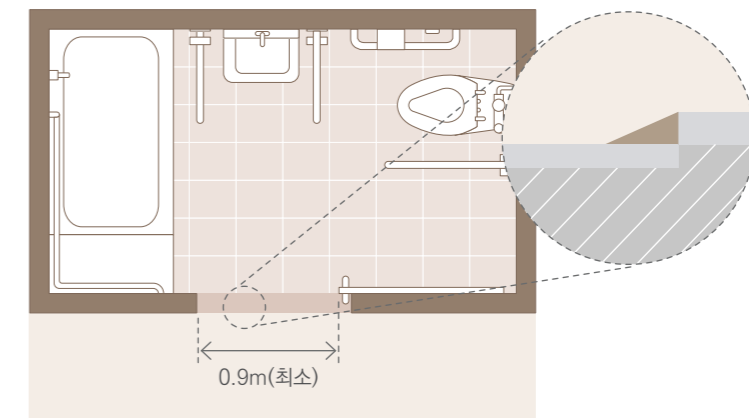
출입문 통과 유효폭 1m이상, 출입문 단차 없음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이상, 출입문 단차 없음



· 객실 및 침실 내 화장실의 유효폭은 0.9m~1.0m 이상 확보하고 출입문은 단차 없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일 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이상, 출입문 단차 2cm이하



· 객실 및 침실 내 화장실의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하고 출입문 단차는 2c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객실 및 침실의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2.3 출입구(문) 산출기준]

5.1 객실 및 침실(화장실)



5.1.8 유효 바닥면

세부평가기준

-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 내부의 화장실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평가방법** 화장실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 배점** 3점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객실 화장실 유효 바닥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객실 및 침실 화장실 유효 바닥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 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3.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상 확보	2.7
일반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이 폭1.6m이상, 깊이2.0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2.1

산출기준 기본사항

- 객실 및 침실의 화장실은 3.3.2 대변기 활동공간, 3.3.3 대변기 형태, 3.3.5 대변기 기타설비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객실 및 침실 화장실 내부에 세면대가 설치될 경우 3.5.1 세면대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객실 및 침실 내부에 3.6 욕실, 3.7 샤워실 및 탈의실의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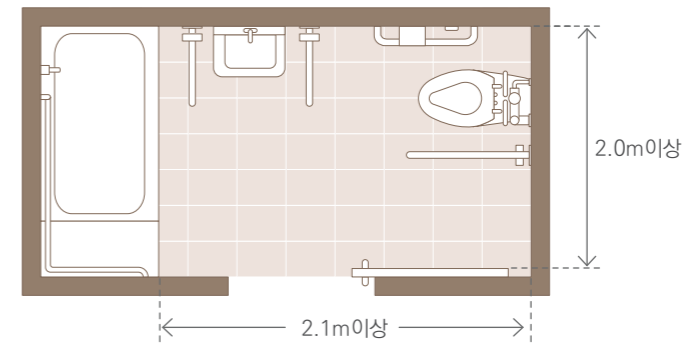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9호라목(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가목(2)(가)·(3)(나), 나목(1)부터 (3)까지·(4)(가), 라목 및 제1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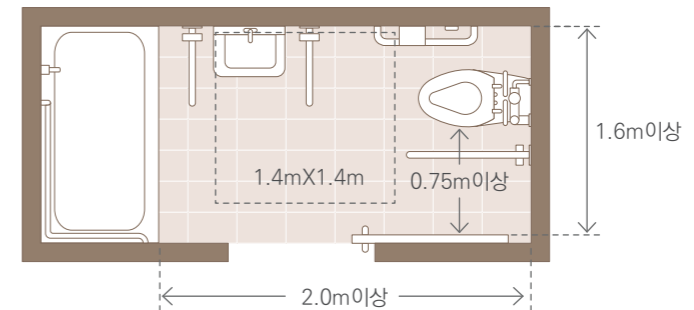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은 폭2.0m이상, 깊이 2.1m이상 설치하고,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 우수
★ 일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상 확보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이 폭1.6m이상, 깊이2.0m이상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은 폭1.6m이상, 깊이 2.0m이상 설치하고,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5.1 객실 및 침실(화장실)



5.1.9 손잡이

세부평가기준

-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의 화장실 대변기 손잡이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재질과 굵기의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 평가방법** 화장실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 배점** 2점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화장실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객실 및 침실 화장실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2.0
우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1.6

산출기준 기본사항

- 고정형 수평손잡이는 벽면에서 0.3m 이격하여「장애인등의편의법」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3호나목(3) 도면을 준수하여야 함
- 회전식 손잡이는 상하회전식 손잡이로 설치하여야 함
- 3.3.4 대변기 손잡이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3호나목(3) 손잡이
제13호나목(3)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13호나목(3)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제13호나목(3)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호나목(3) (라)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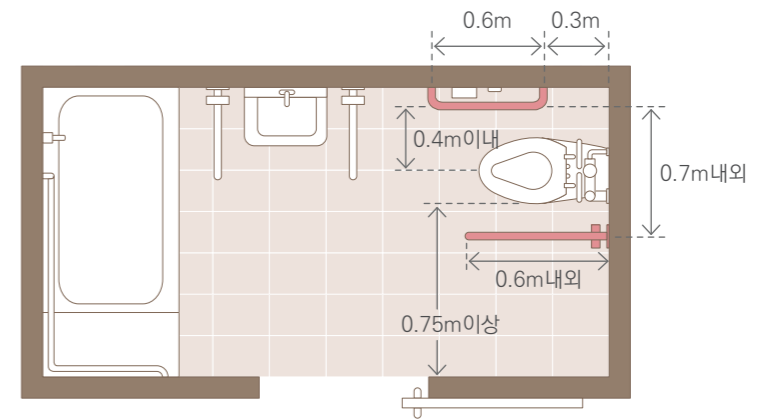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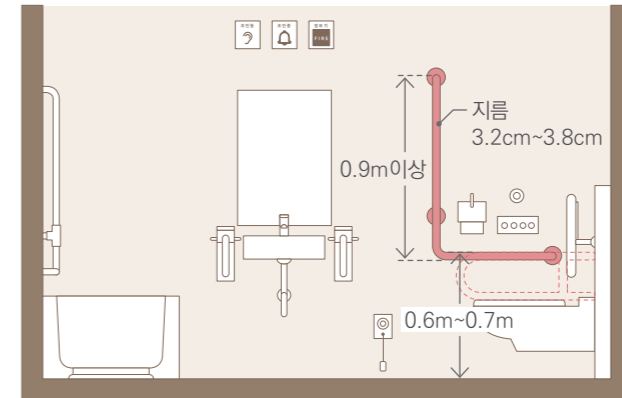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고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상·하회전식으로 설치하며 손잡이 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 이상의 길이로 하고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고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상·하회전식으로 설치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 이상의 길이로 하고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회전식 손잡이

벽면에 고정하여 상하로 움직이는 손잡이를 말한다.

5.1 객실 및 침실(기타설비)



5.1.10 점자표지판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에게 객실 및 침실의 위치 및 호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점자표지판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점자표지판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3.0
우수	출입문 옆 벽면에 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2.4

·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객실 및 침실의 일반출입문은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2 복도에 손잡이 설치된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하며, 2.2.5 연속손잡이 산출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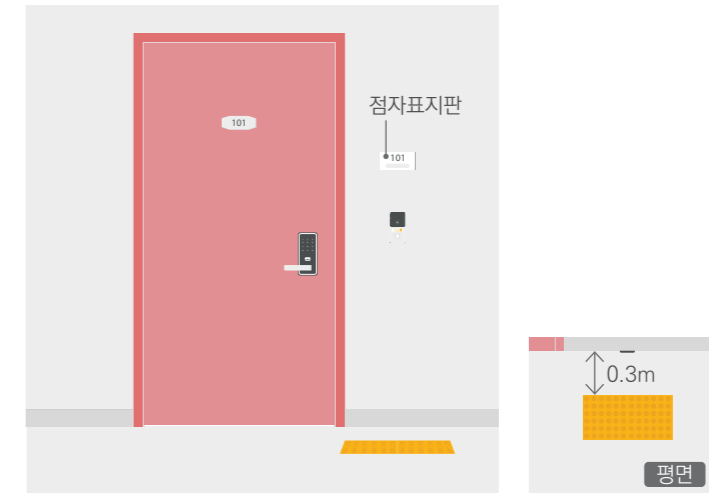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9호라목(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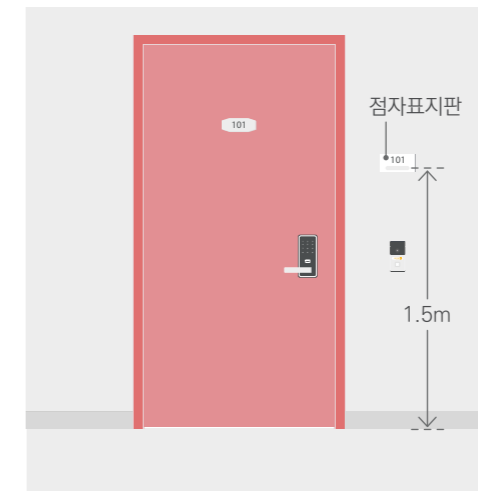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점자표지판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 출입문 옆 벽면에 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점자표지판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출입문 옆 벽면에 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 출입문 옆 벽면에 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5.1 객실 및 침실(기타설비)



5.1.11 설치높이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높이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 높이로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설치높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높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수납방식을 상·하 이동이 가능한 가변형으로 설치	2.0
우 수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1.2m 이하로 설치	1.6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코너로부터 0.6m이상 이격하여 콘센트, 스위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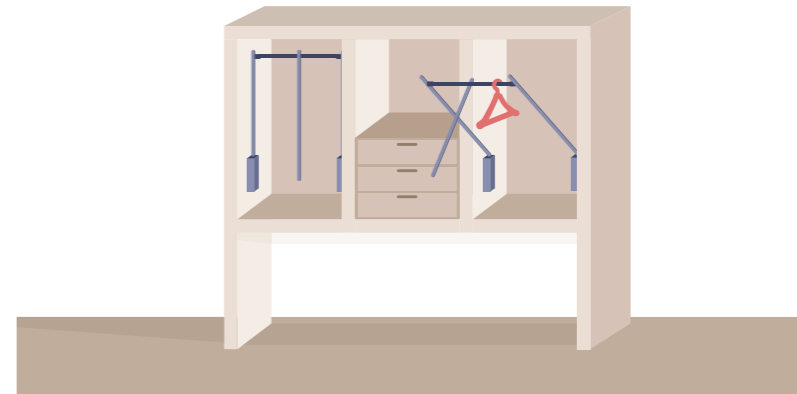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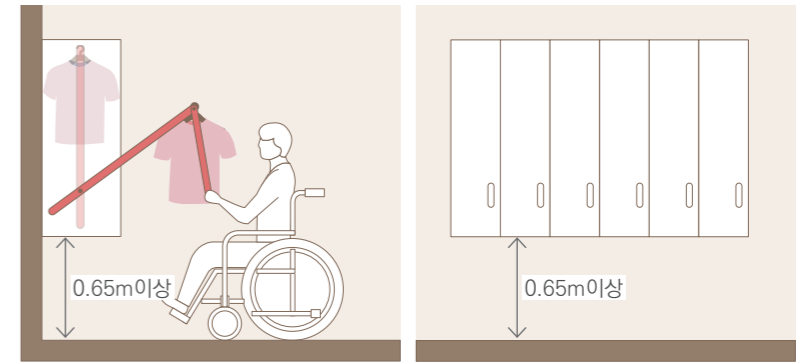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9호라목(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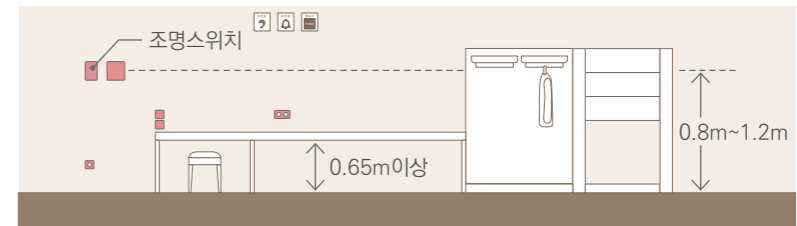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수납방식을 상·하 이동이 가능한 가변형으로 설치



·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1.2m 이하로 설치하고 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수납방식을 상·하 이동이 가능한 가변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 수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1.2m 이하로 설치



·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5.1 객실 및 침실(기타설비)



5.1.12 초인등

세부평가기준

-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 내부에 초인등 설치여부를 평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 설치되어야 함
- 평가방법**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 초인등 설치 여부로 평가
- 배점** 2점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객실 및 침실 초인등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높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청각장애인 경보설비 설치	2.0
우 수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	1.6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객실 및 침실 내 모든 공간에서 인지 가능한 위치에 초인등, 초인종을 설치하여야 함
- 2 객실 등에는 「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9호라목(5)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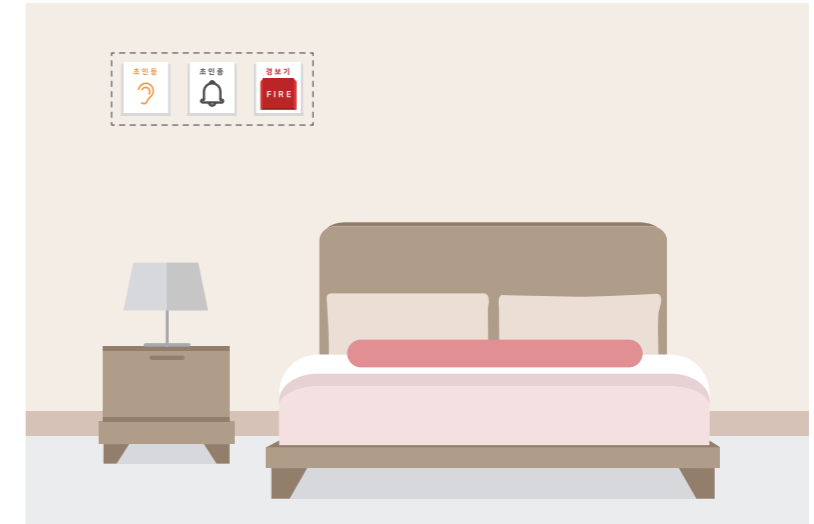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9호라목(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호라목(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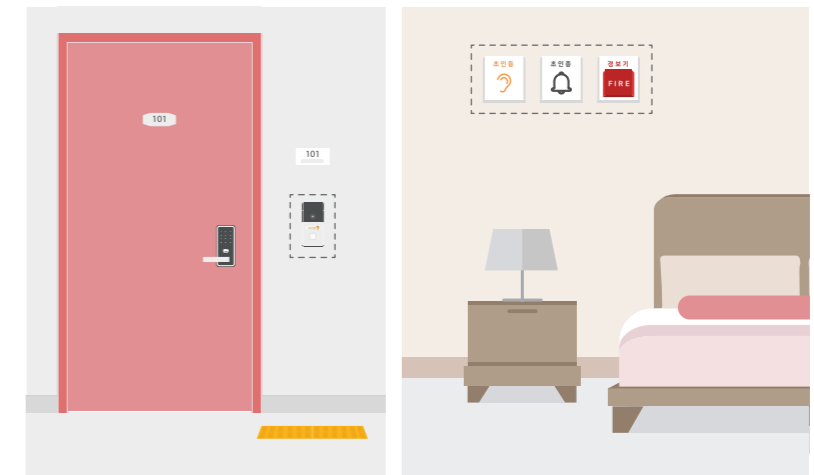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청각장애인 경보설비 설치



·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모든 공간에서 인지 가능한 위치에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 초인등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 수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



·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모든 공간에서 인지 가능한 위치에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객실 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5.2 관람석 및 열람석



5.2.1 설치율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율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일정비율이상 좌석의 확보정도 평가
배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좌석의 설치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율	점수
최우수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2%이상 설치	4.0
우수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1%이상 설치	3.2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평가함
-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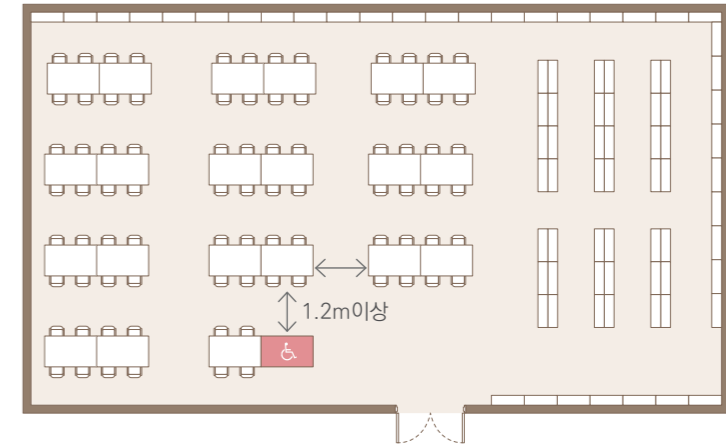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호가목(14)(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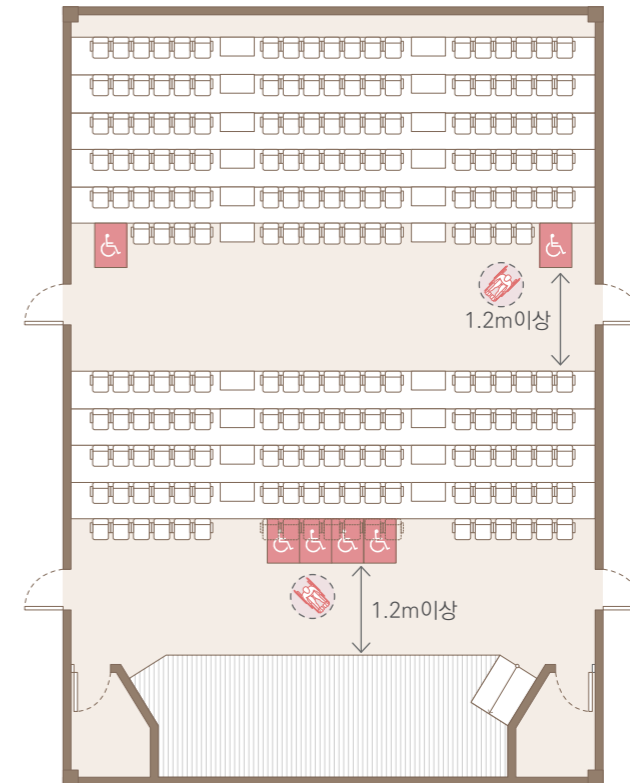
★★★ 최우수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2%이상 설치

도서관 열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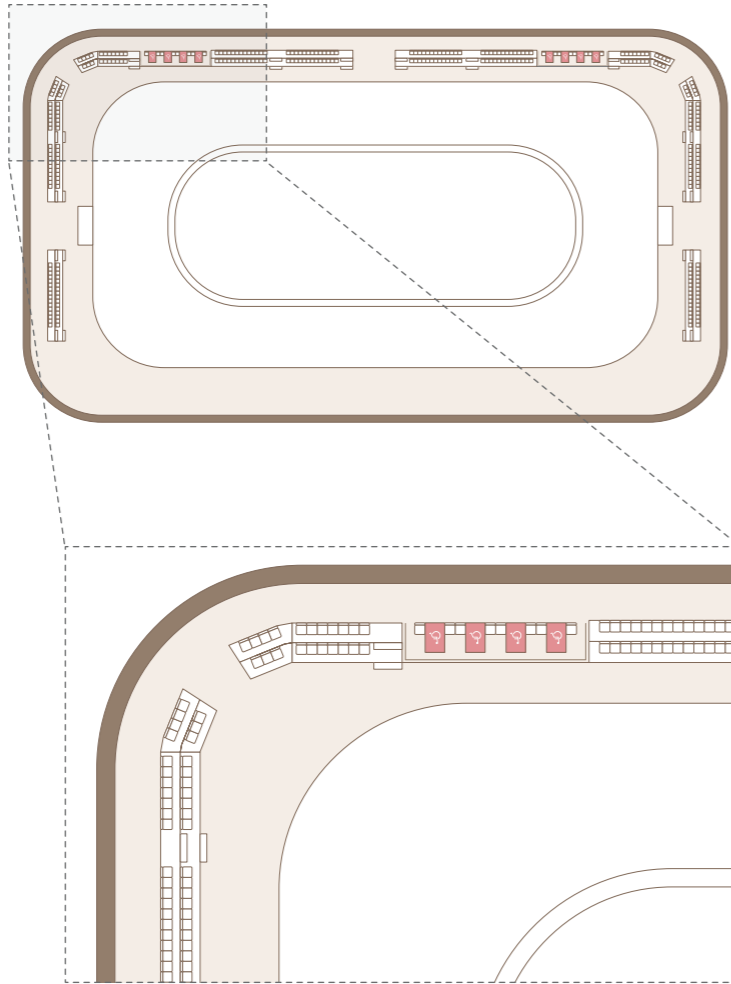
공연장



·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2%이상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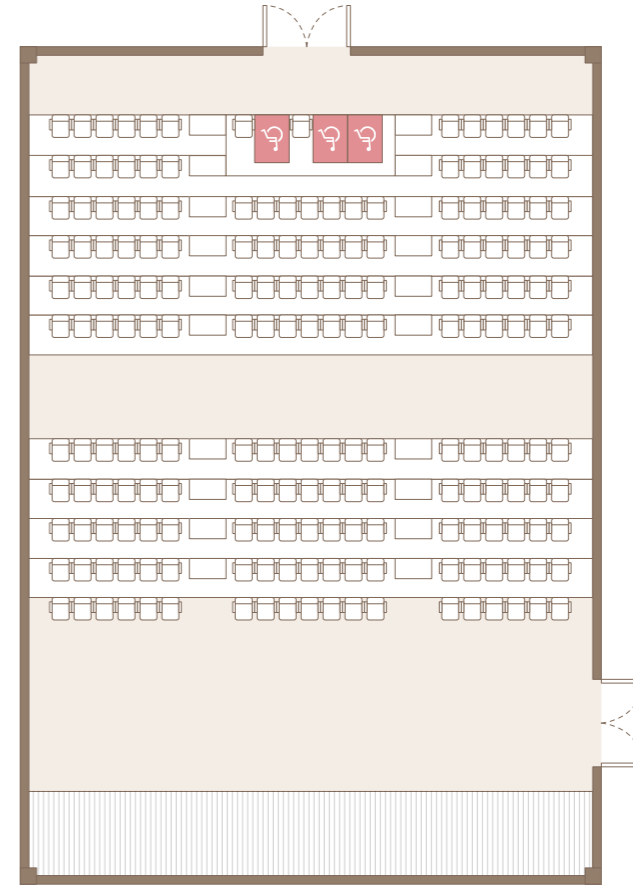
★★ 우수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1%이상 설치

경기장



-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1%이상을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영화관



-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1%이상을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5.2.2 설치 위치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였는지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에 위치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좌석의 설치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위치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2곳 이상 분산배치를 하여야함	3.0
우수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2.4

- 보호자, 활동보조인 등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동반하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좌석을 함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함
-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보호자, 활동보조인 등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동반하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좌석을 함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3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함
- 4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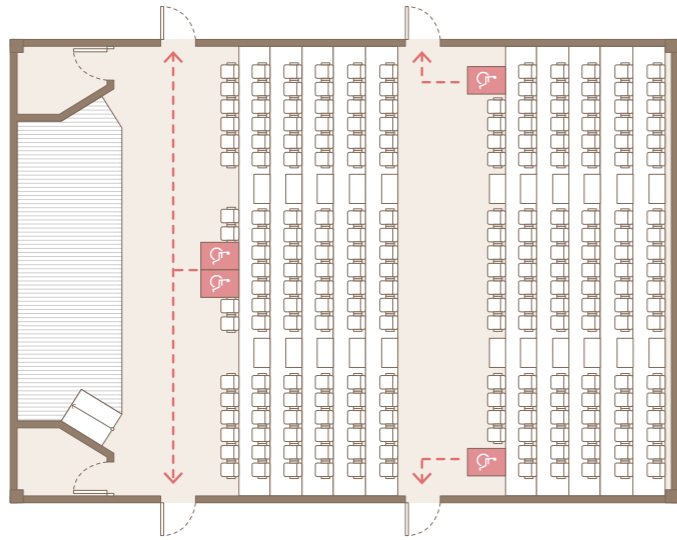
제20호가목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0호나목(5)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관람에 불편하지 않은 충분한 거리일 경우에는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앞 줄에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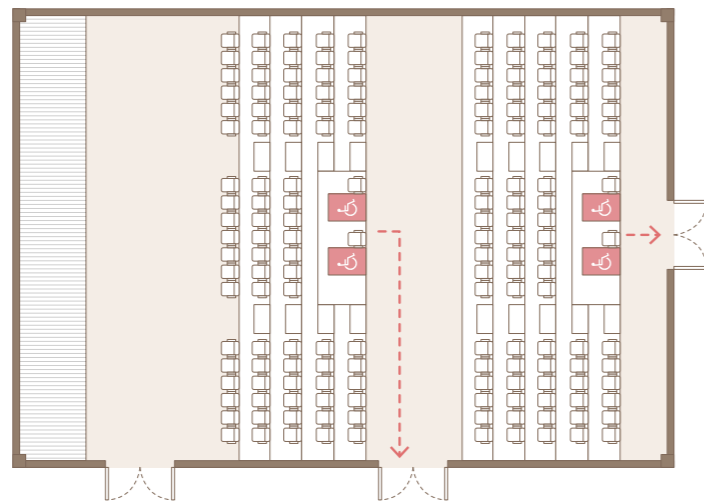
제20호나목(6)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 및 피난통로가 무대 기준으로 제일 뒷 줄로만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할 수 있다.

★★★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2곳 이상 분산배치를 하여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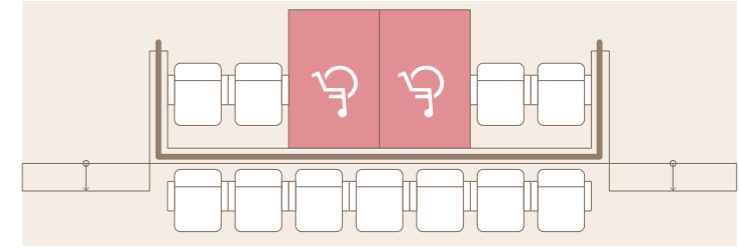


-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기준으로 중간 줄과 제일 앞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각각 설치하여 2곳 이상 분산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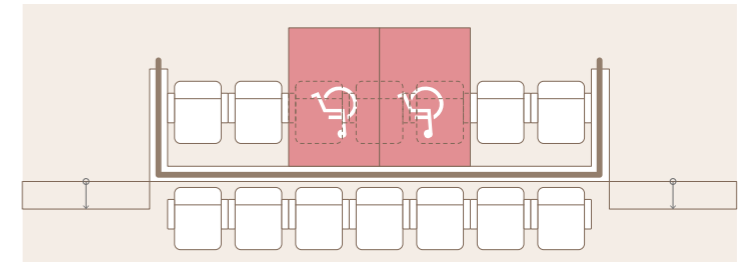
-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과 제일 뒷줄에 각각 설치하여 2곳 이상 분산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공간확보형



- 휠체어 사용자가 관람할 수 있도록 좌석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호자 등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동반하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좌석을 함께 배치하여야 합니다.

가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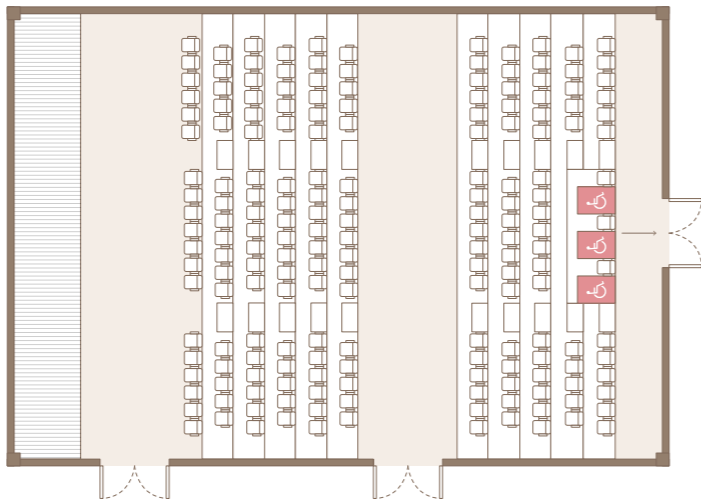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가변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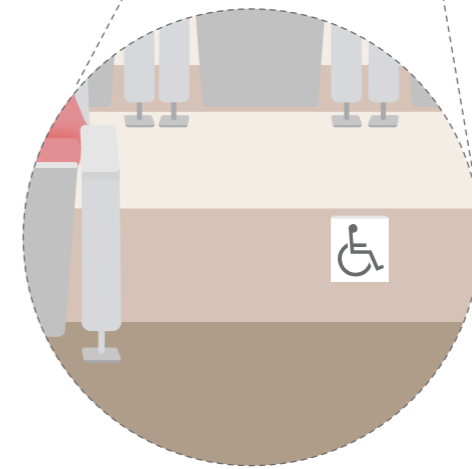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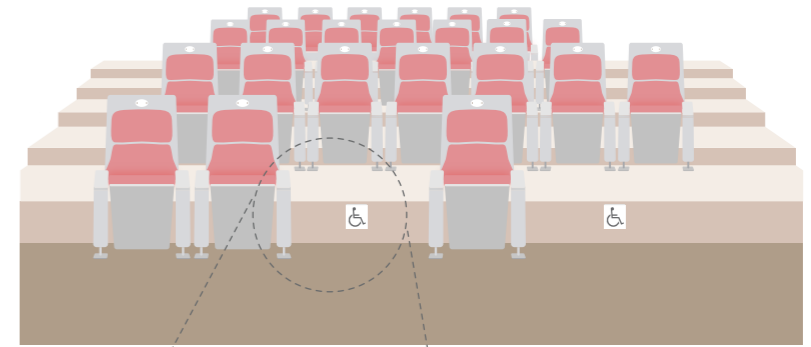
★★ 우수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 공연장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영화관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줄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휠체어 접근성 마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5.2 관람석 및 열람석



5.2.3 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관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무대 및 강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

배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

구분	관람석의 구조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1.2m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설치	1.6
일 반	관람석의 구조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0.9m이상, 깊이1.3m이상	1.4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비장애인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구분	무대의 구조	점수
최우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없이 접근	2.0
우 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	1.6
일 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 다만,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4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비장애인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3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4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m이상, 깊이 1.3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0호나목(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호나목(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0호나목(3)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0호나목(4)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0호나목(5)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관람에 불편하지 않은 충분한 거리일 경우에는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앞 줄에 설치할 수 있다.
제20호나목(6)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 및 피난통로가 무대 기준으로 제일 뒷 줄로만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할 수 있다.
제20호나목(7)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호가목(14)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관람석]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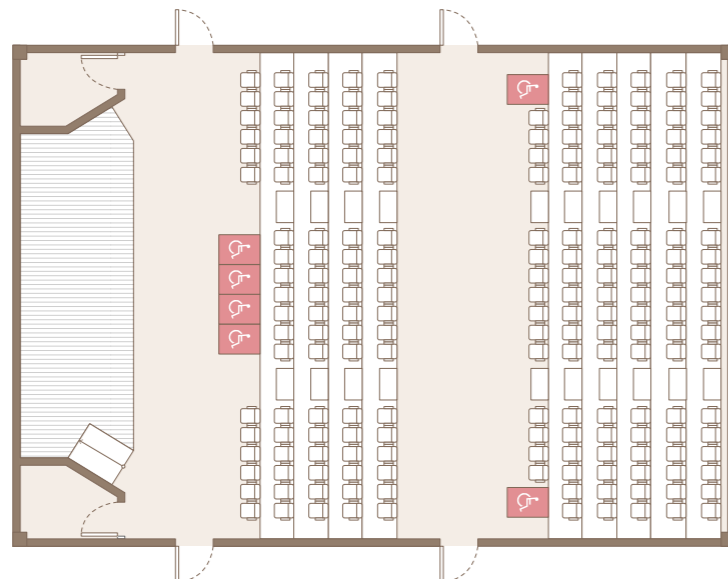
일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 설치



· 난청자를 위하여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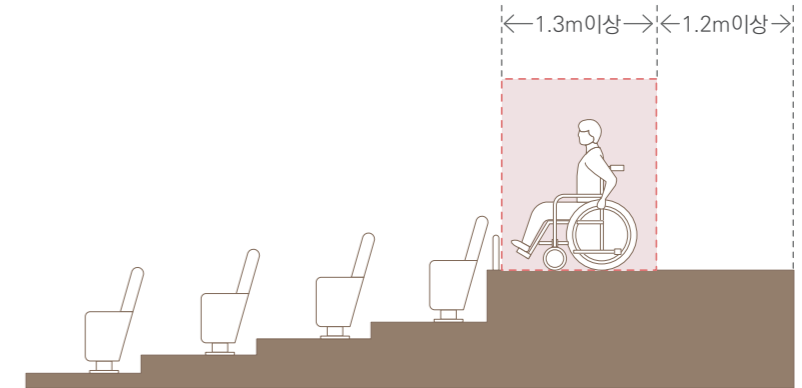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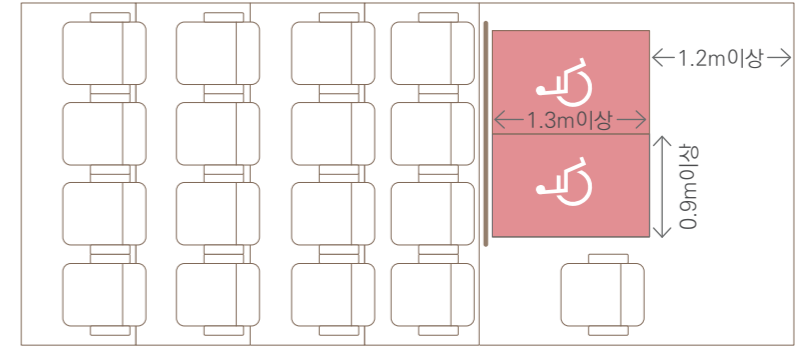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1.2m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설치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구조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으로 설치하고, 1.2m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일반

관람석의 구조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0.9m이상, 깊이1.3m이상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구조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 0.9m 이상, 깊 이 1.3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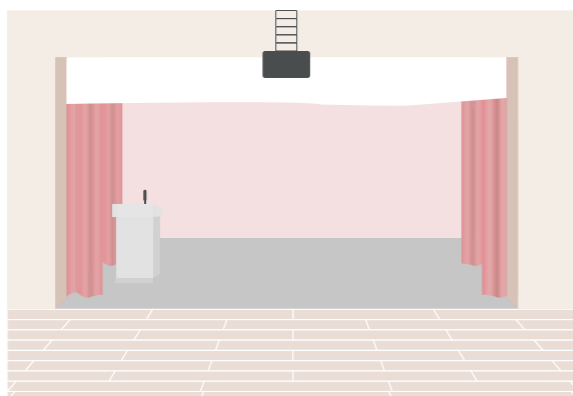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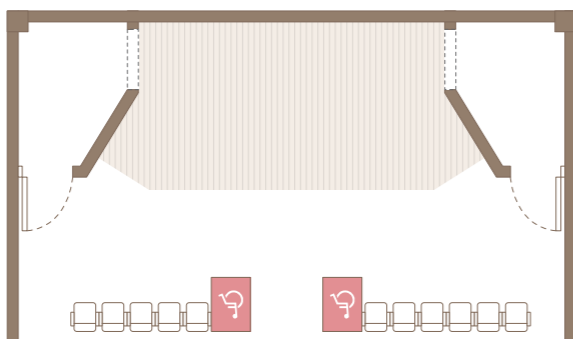
관람석 유효 바닥면적

1석당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5.2.3 관람석 및 무 대의 구조 산출기준]

[무대(혹은 강단)]

★★★ 최우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없이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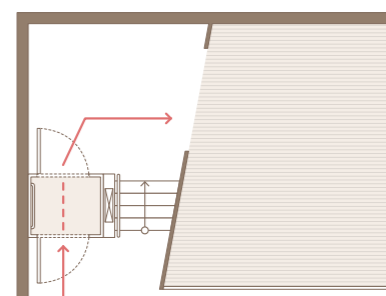


·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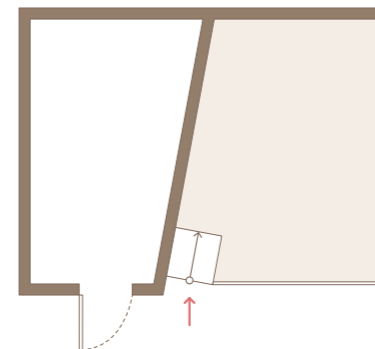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

수직형 리프트



·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정형 경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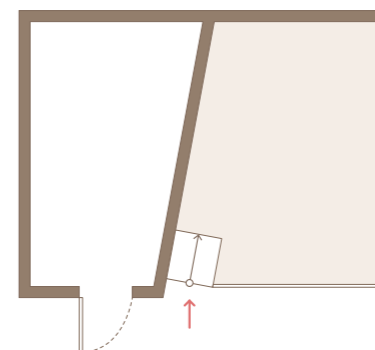


·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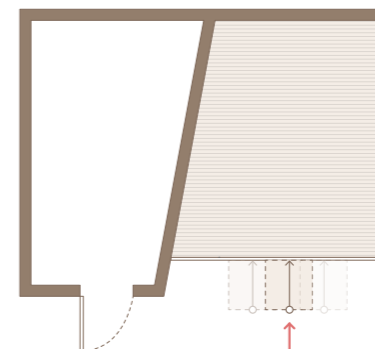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
다만,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고정형 경사로



·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동식 경사로



·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5.2 관람석 및 열람석



5.2.4 열람석의 구조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열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열람석의 구조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열람석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열람석의 구조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 조절형 열람석 설치	2.0
우 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0.9m, 하부공간은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1.6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열람석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 이상, 0.9m 이하로 설치하여야함
-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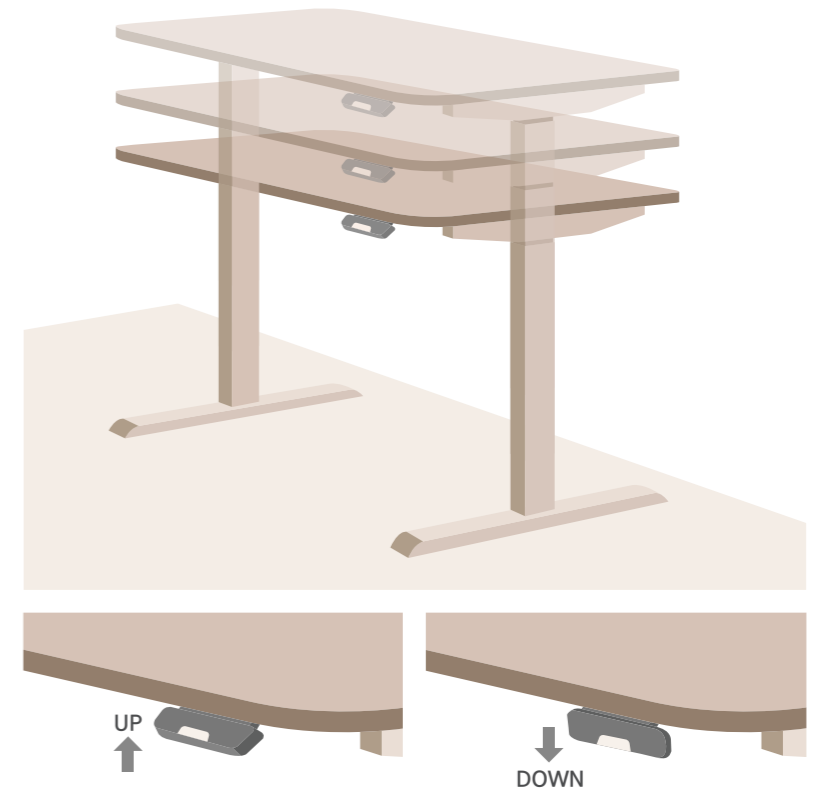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0호다목(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0호다목(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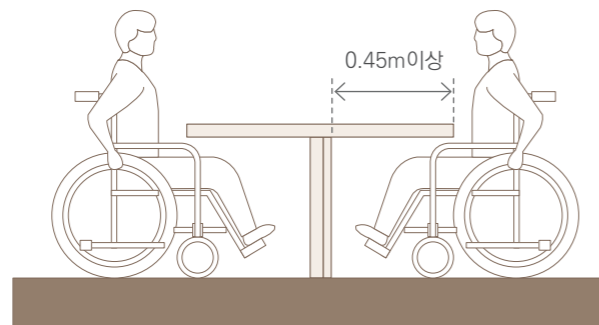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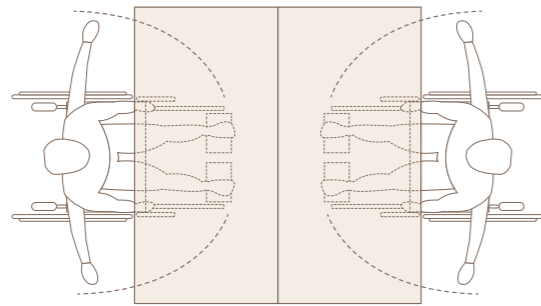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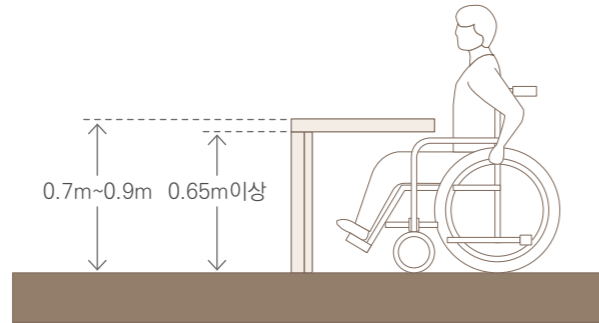
★★★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 조절형 열람석 설치



· 높이 조절형 열람석을 설치하고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0.9m, 하부 공간은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0.9m, 하부공간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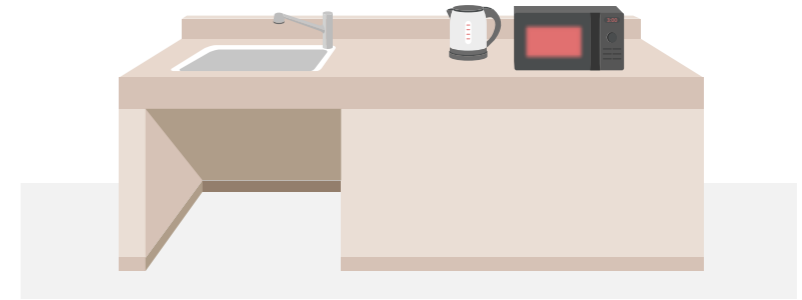


· 휠체어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열람석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0.9m, 하부공간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 이상 공간을 확보 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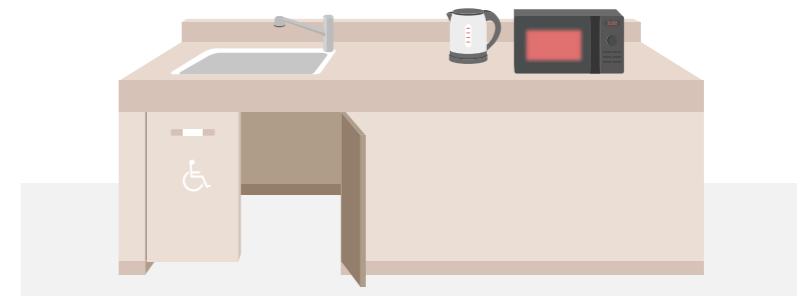
싱크대 / 개수대

TYPE 1



· 싱크대 또는 개수대 하부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부공간을 최소 1개소 이상 확보 하여야 합니다.

TYPE 2



· 싱크대 또는 개수대 하부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부공간을 최소 1개소 이상 확보 하여야 합니다.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5.3.1 설치위치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위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접수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문 가까운 곳에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접근 통로의 단차와 지지난간 설치 여부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 위치단차	점수
최우수	접수대는 출입문 옆 혹은 전면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없음	2.0
우수	접수대는 출입문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가 없으며 안내 표시가 되어 있어야함	1.6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함
- 안내데스크의 위치가 출입구 옆 혹은 전면에 설치되지 않아 안내데스크 위치표시가 인지할 수 있게 설치되었으면 우수로 평가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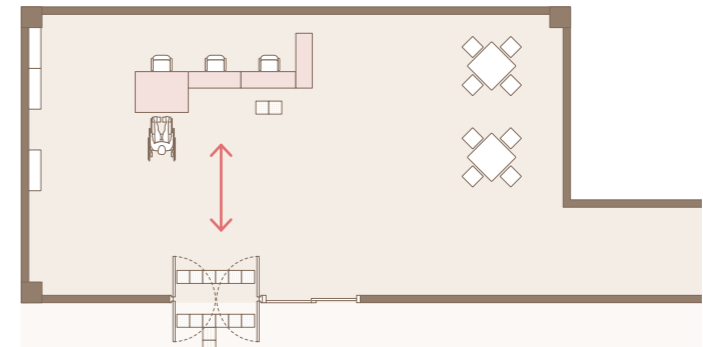
-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2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함
- 3 안내데스크의 위치가 출입구 옆 혹은 전면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 안내데스크의 위치표시가 인지할 수 있게 설치되었으면 우수로 평가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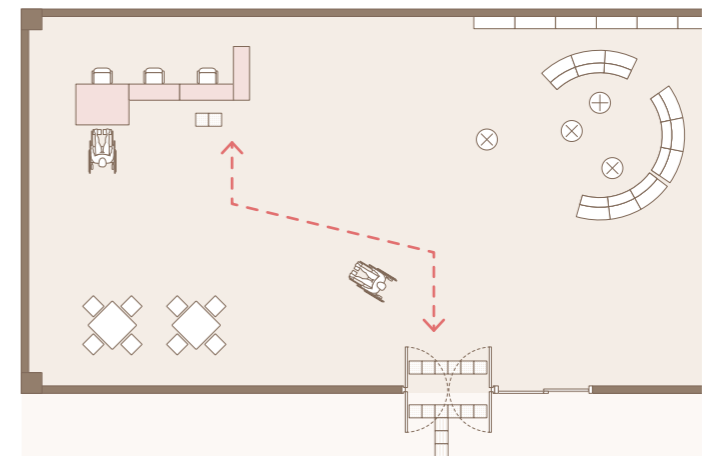
제21호가목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최우수 접수대는 출입문 옆 혹은 전면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없음



· 접수대는 출입문 옆 혹은 전면에 설치하여야하고 접근로상에 단차가 없어야 합니다.

★★ 우수 접수대는 출입문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가 없으며 안내표시가 되어 있어야함



· 접수대는 출입문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하고 접근로상에 단차가 없으며 안내표시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하부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접수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높이 및 하부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정도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형태나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등을 모두 설치	3.0
우수	높이 0.8m~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2.4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함

산출기준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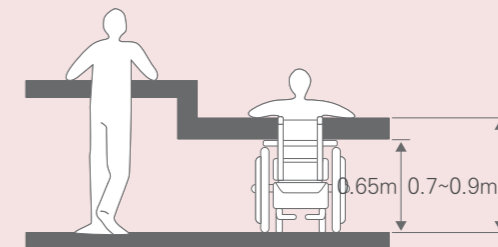
- 1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함
-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부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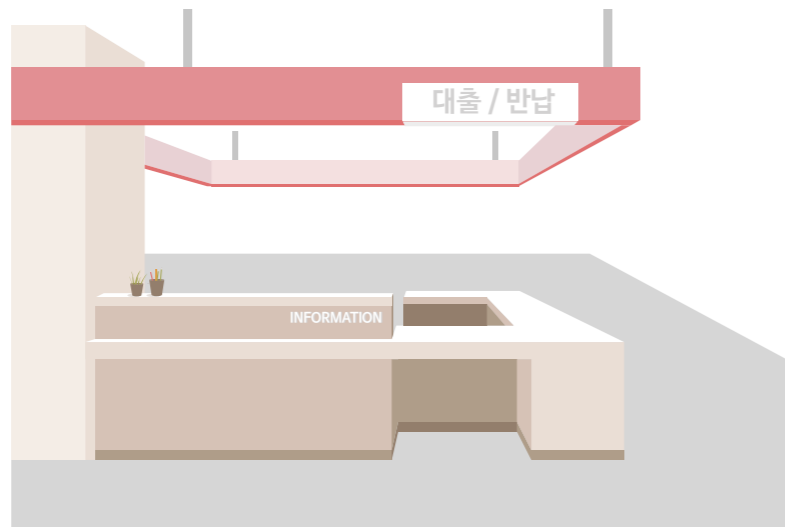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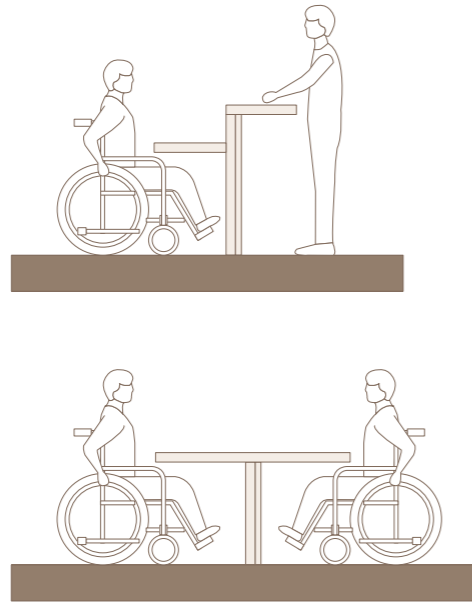
제21호나목(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1호나목(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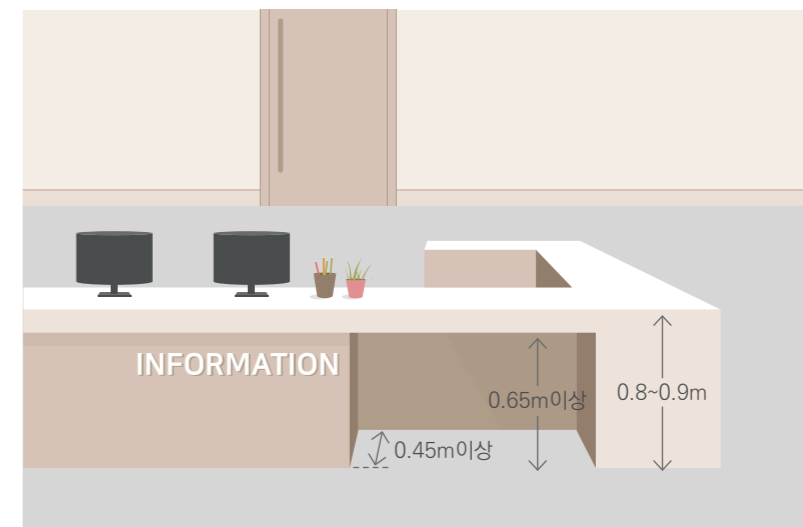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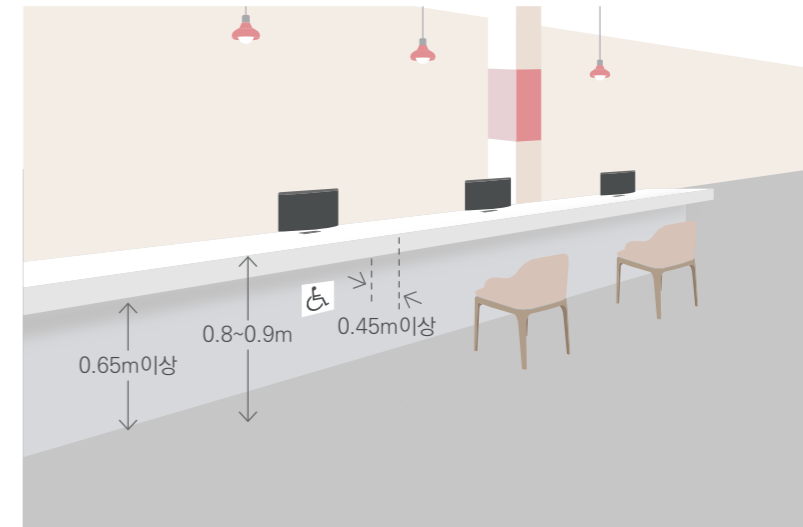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형태나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등을 모두 설치



· 높이 0.8~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을 확보하고,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형태나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등을 모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높이 0.8m~0.9m, 하부 높이가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높이는 0.8~0.9m, 하부 높이는 휠체어의 무릎과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0.65m이상, 깊이는 0.45m이상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5.4.1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세부평가기준

- 평가목적**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매표소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평가방법** 매표소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배점** 2점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매표소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매표소의 구조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매표소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2.0
우수	매표소의 높이는 0.7m~0.9m로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확보	1.6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휠체어의 무릎 및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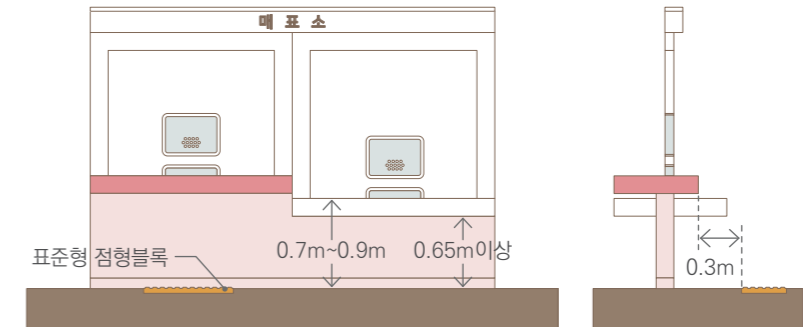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2호가목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호나목(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호다목(3) 매표소 또는 자동판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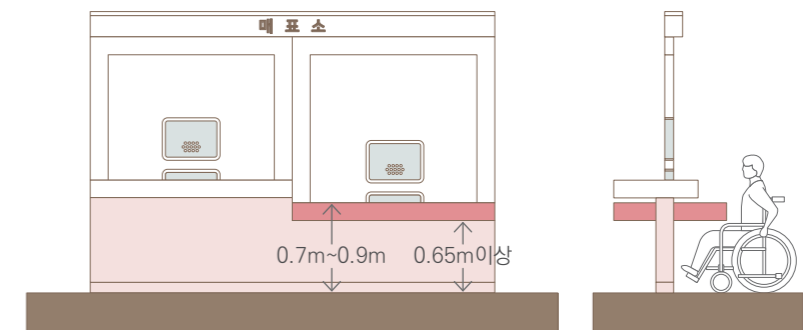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매표소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 매표소의 높이는 0.7~0.9m로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매표소의 0.3m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재질을 달리하여 시각장애인이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매표소의 높이는 0.7m~0.9m로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확보



- 매표소의 높이는 0.7~0.9m로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깊이 0.45m이상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세부평가기준

- 평가목적**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판매기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평가방법** 판매기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배점** 2점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판매기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판매기의 구조	점수
최우수	판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1.2m로 하며,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함	2.0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판매기의 조작버튼 등은 양각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2호가목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호나목(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2호다목(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2호다목(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최우수

판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1.2m로 하며,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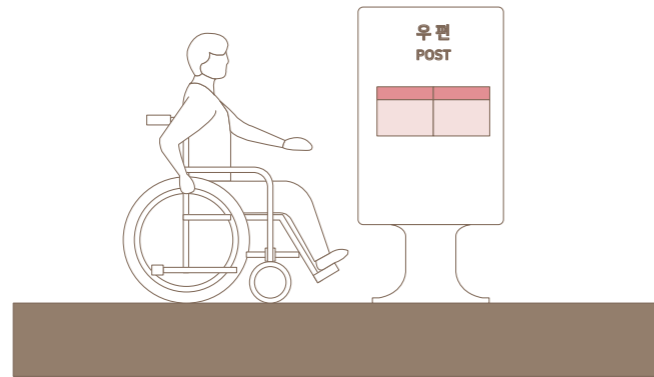
판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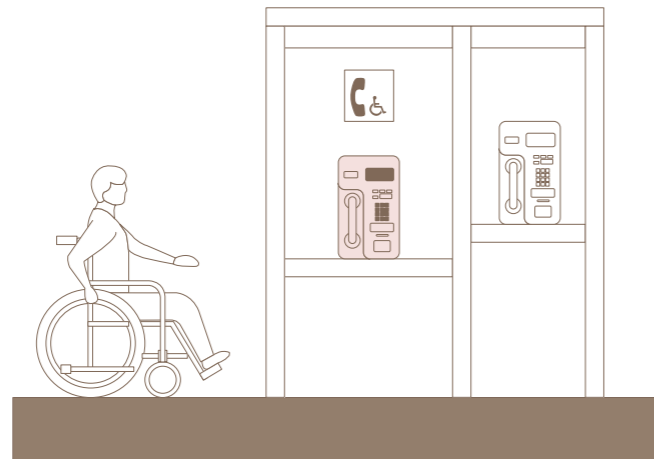
무인발급기



우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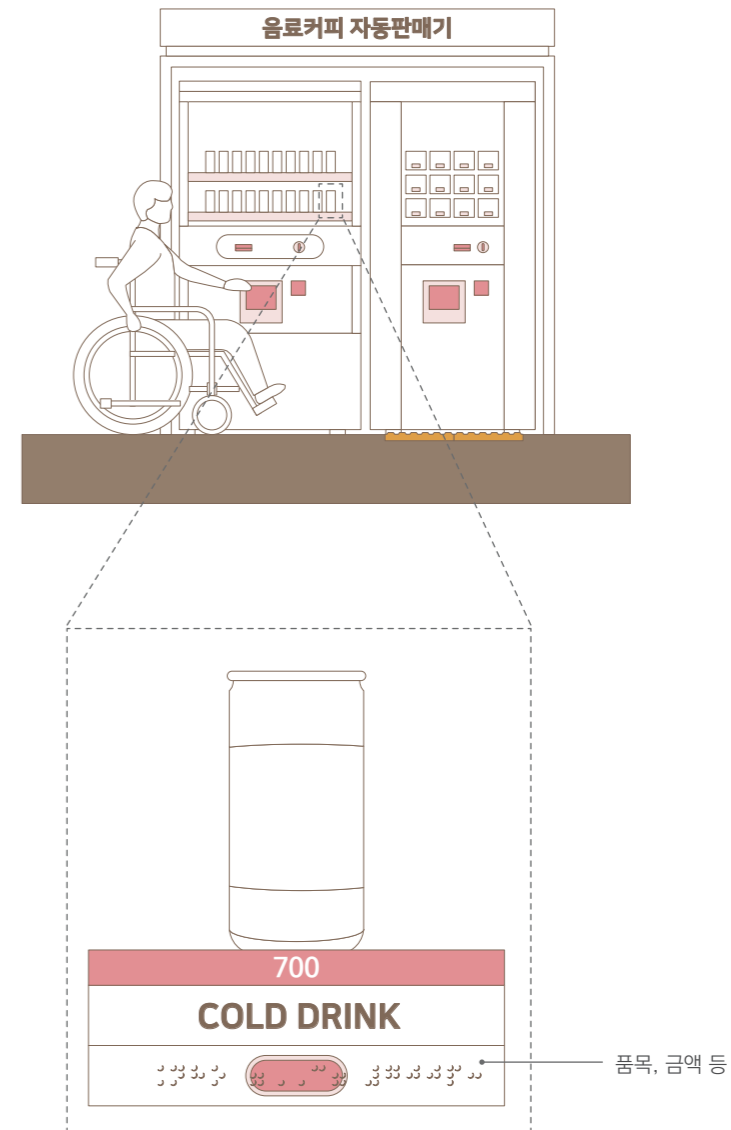
공중전화기



- 판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1.2m로 하며, 시각장애인이 인지 가능하도록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판매기 점자표시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세부평가기준

- 평가목적**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음료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평가방법** 음료대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배점** 2점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음료대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음료대의 구조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료대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2.0
우 수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0.7m~0.8m로 하며,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1.6

산출기준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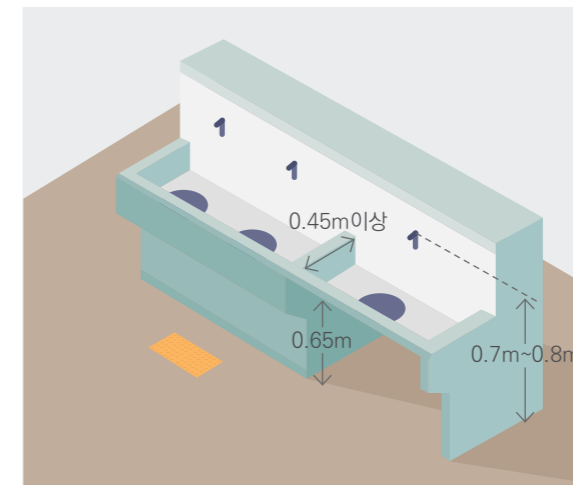
- 음료대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확보하여야 함
 - 냉·온수 사용이 가능하면 수도꼭지에 점자표시를 하여야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2호가목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호나목(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2호다목(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2호다목(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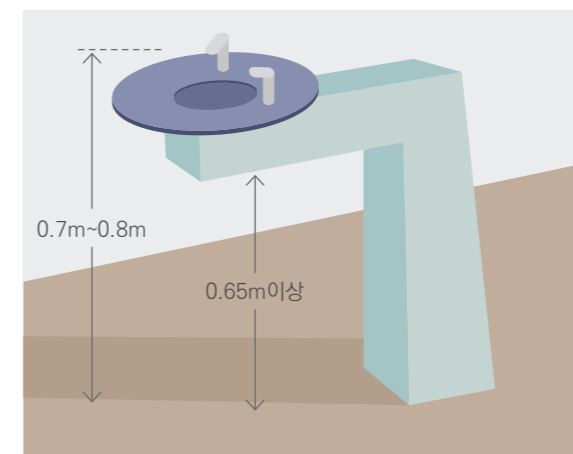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료대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0.7~0.8m로 하며,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고, 음료대의 0.3m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인지 가능하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 우 수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0.7m~0.8m로 하며,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0.7~0.8m로 하며,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5.5 피난구 설치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피난방법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상황 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피난구까지 연속적으로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함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피난구의 설치위치 등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피난방법	점수
최우수	우수조건을 만족하고 피난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 구비	1.0
우 수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 계획 구비	0.8

- 피난훈련은 관련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계획에 한함
- 문화집회시설 중 관람석이 있는 경우 비상시 장애인 이용자 대피에 대한 책임제 구성(최우수 등급에 한함)

구분	피난구의 위치	점수
최우수	각 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각각 설치	1.0
우 수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0.8

구분	피난 안내시설	점수
최우수	연기 등에도 확인이 가능한 안내시설 설치	1.0
우 수	피난구까지 안내시설 연속 설치	0.8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피난 훈련은 관련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계획에 한함

- 2 문화집회시설 중 관람석이 있는 경우 비상시 장애인 이용자 대피에 대한 책임제 구성(최우수 등급에 한함)을 하여야 함

- 3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 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4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제1항제1호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피난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를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③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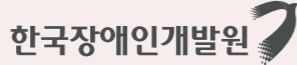
다.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 나) 별표 2 제19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피난방법]

★★★★ 최우수
★★ 우수

우수조건을 만족하고 피난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 구비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 계획 구비



수 신 내부결재
경 유
제 목 0000년도 한국장애인개발원소방계획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0000년도 소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 용 : 0000년도 소방계획
나. 적용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다. 적용대상 :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상시거주·근무인원 및 이용자
마. 자체점검 : 종합정밀점검(0000. 0월에정)
바. 기 타 : 불입참조

붙임 소방계획서(첨부포함) 1부. 끝.

담당 :
협조자
시행 한국장애인개발원 0000 - (0000. . .) 접수 ()
(우00000) 서울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www.koddi.or.kr
전화 (00-0000-0000) 이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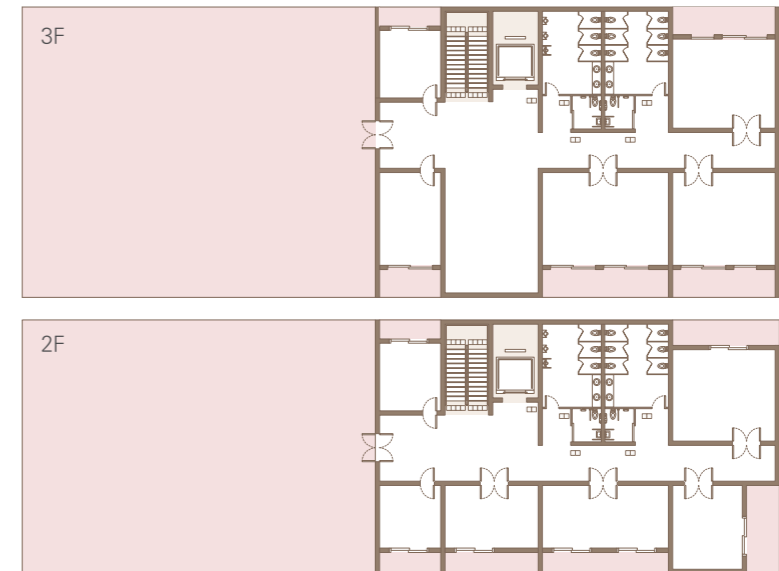


- 정기적으로 관내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 계획 및 피난 훈련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 ※ 문화집회시설 중 관람석이 있는 경우 비상시 장애인 이용자 대피에 대한 책임제 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피난구의 위치]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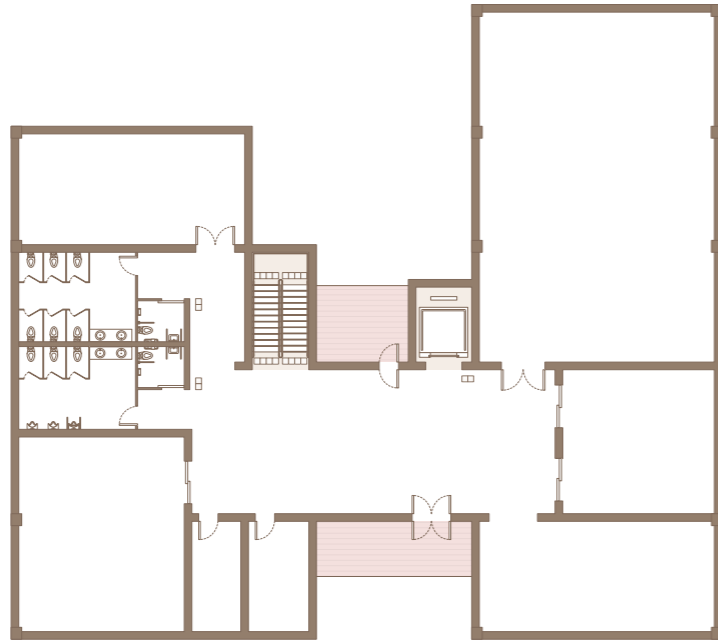
각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각각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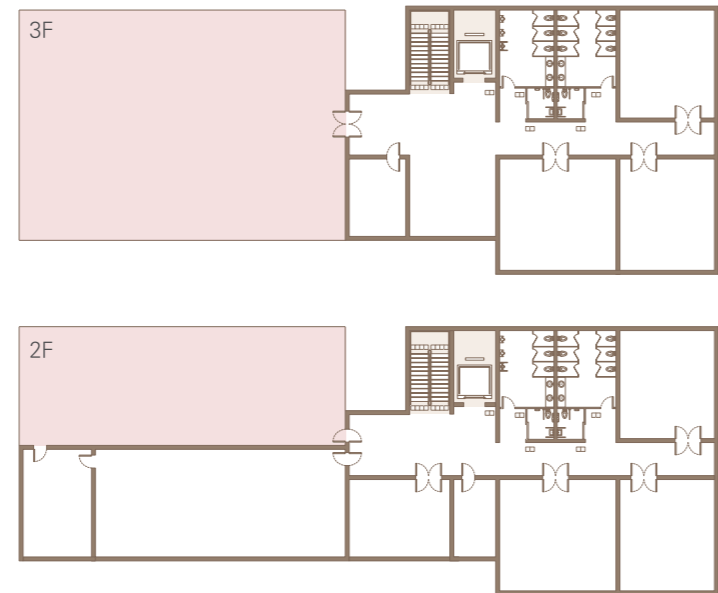
- 층별 각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각각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TYP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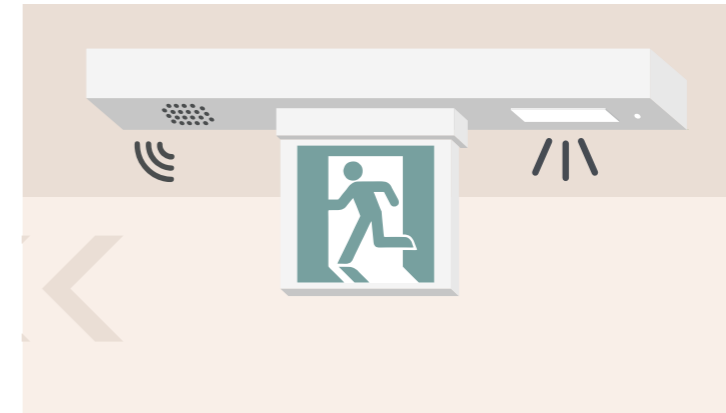
TYPE 2



· 층별 공용공간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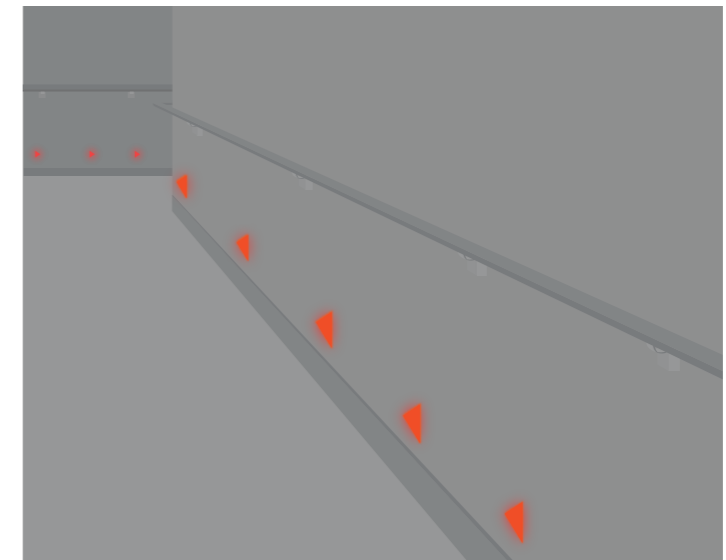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

★★★ 최우수 연기 등에도 확인이 가능한 안내시설 설치



· 피난구까지 연기 등에도 확인이 가능한 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피난구까지 안내시설 연속 설치



· 피난구까지 안내시설을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5.5 피난구 설치



5.5.2 피난의 구조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피난구의 구조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피난구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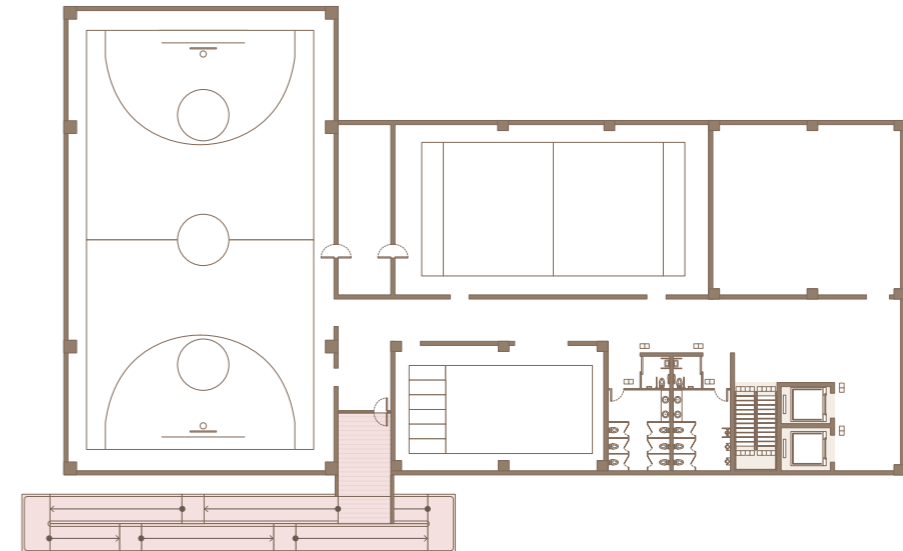
구분	피난 시설 구조	점수
최우수	우수 기준을 만족하며 모든 층의 피난이 직접 지상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임	3.0
우수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주요실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이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2.4
일반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 공간이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2.1

· 단, 기존시설인 경우에는 피난 공간이 반드시 외부에 설치되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소방차 등의 구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일반수준인 것으로 봄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 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2 피난 시설의 구조는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3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4 기존 시설인 경우에는 피난 공간이 반드시 외부에 설치되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소방차 등의 구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일반수준인 것으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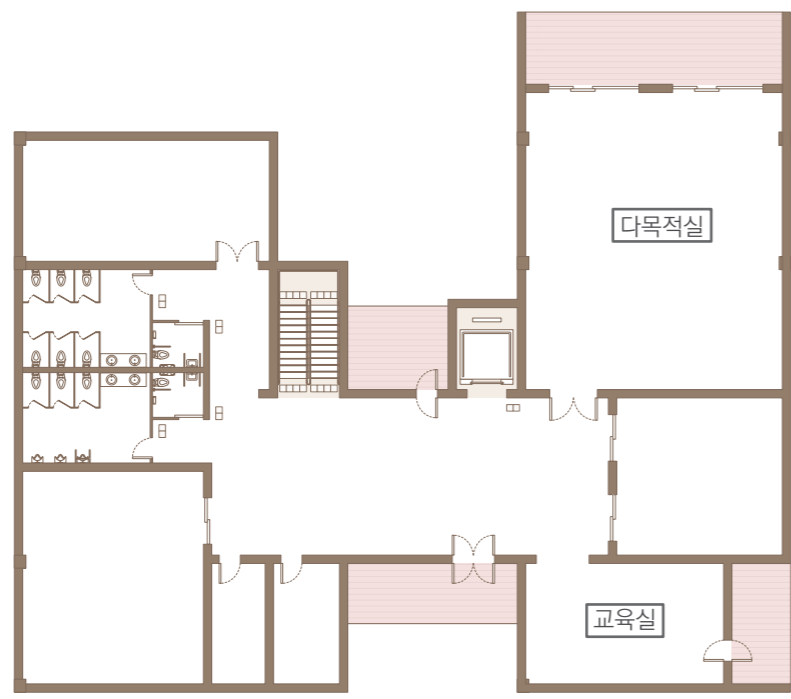
★★★ 최우수 우수 기준을 만족하며 모든 층의 피난이 직접 지상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임



· 피난층을 제외한 층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주요 실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이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층의 피난이 직접 지상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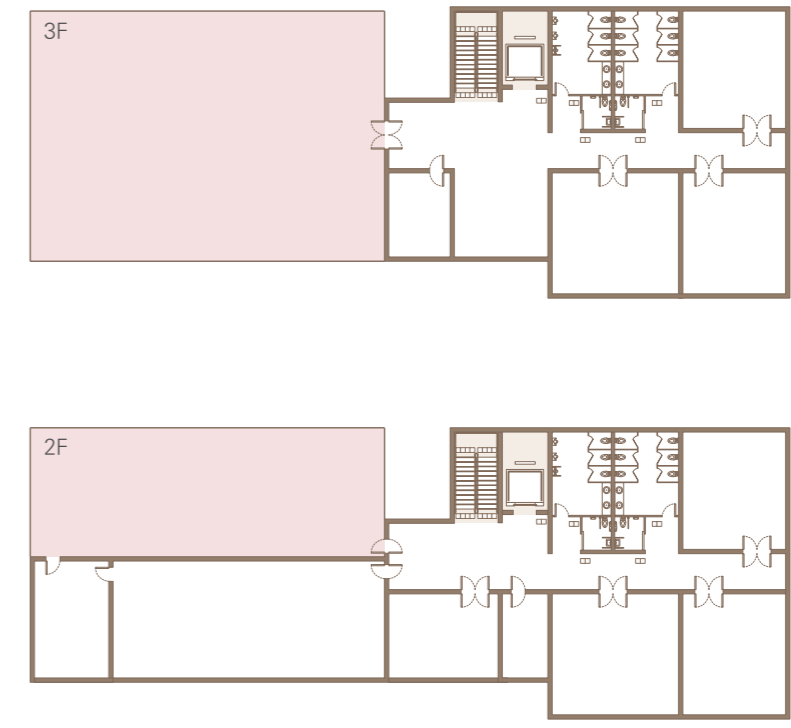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주요실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주요실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이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 일반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 공간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 공간이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5.6 임신부 휴게시설



5.6.1 접근 유효폭 및 단차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임신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평가하여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 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임신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임신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1.0
우수	1.2m이상 통로폭 확보	0.8

구분	단차	점수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1.0
우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0.8
일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0.7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임신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를 평가함
- 2 일반 출입문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노인 및 임신부, 유모차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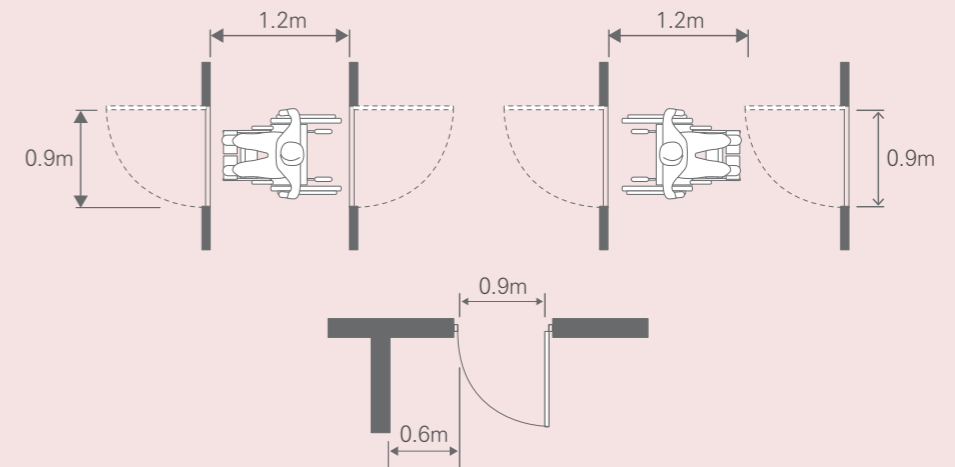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가목(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호가목(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호가목(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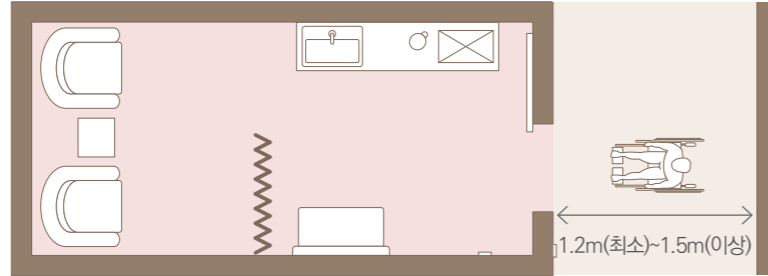
제7호가목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호나목(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호가목 임신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유효폭]

- ★★★★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 ★★★ 우수 1.2m이상 통로폭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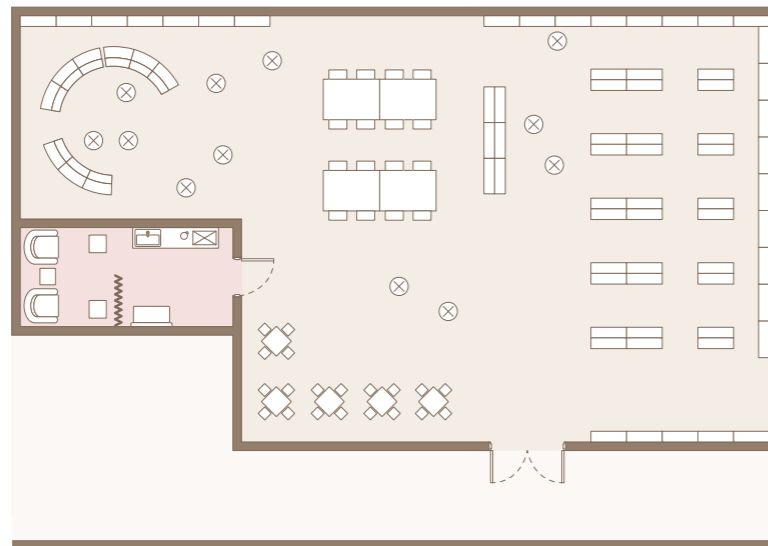
-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은 1.2m~1.5m 이상 통로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A 복도 및 통로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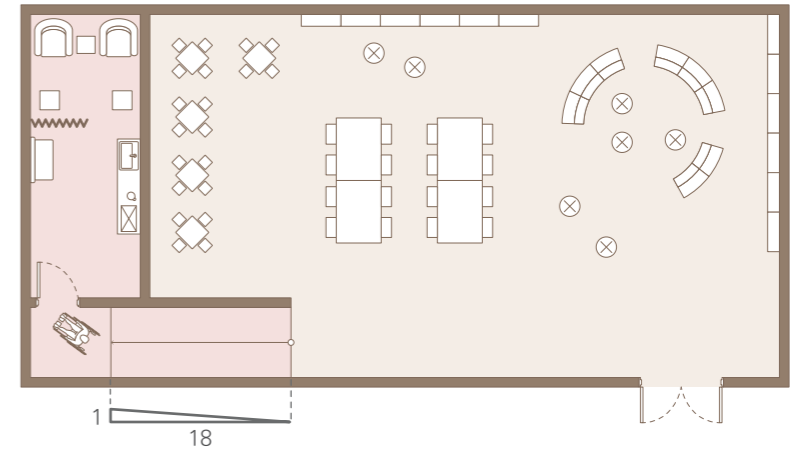
[단차]

- ★★★★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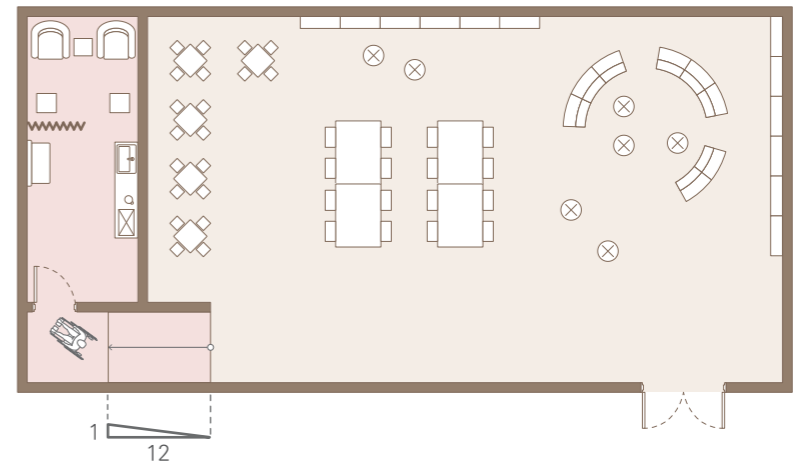
-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단차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우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기울기 1/18 이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일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기울기 1/12 이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A 경사로의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는 1/A의 형식으로 말하며, 1의 높이를 해소하기 위해 A의 거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1/12의 경사로는 0.1m의 높이를 해소하는데 1.2m의 거리부터 경사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016. 12. 31. ISBN 978-89-6921-322-8)]

5.6 임산부 휴게시설



5.6.2 내부구조

세부평가기준

- 평가목적** 임산부 휴게시설의 내부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을 고려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평가방법** 임산부 휴게시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설비 설치여부와 휠체어사용자의 이용 가능 여부로 평가
- 배점** 3점 (평가항목)
- 산출기준** 평점 : 휴게시설 내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에 편리하도록 전기 콘센트와 포트 등을 설치	3.0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할 수 있는 공간에는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주변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전면 혹은 측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2.4
일반	휴게시설 내부 공간에 수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인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를 설치	2.1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임산부 휴게시설 내부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을 고려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2 휠체어사용자 활동공간은 최소 1.4m 이상 X 1.4m 이상 확보하여야 함
- 3 전기 콘센트와 포트 등의 설치 높이는 5.1.11 설치높이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4 세면대는 3.5 세면대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5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 가능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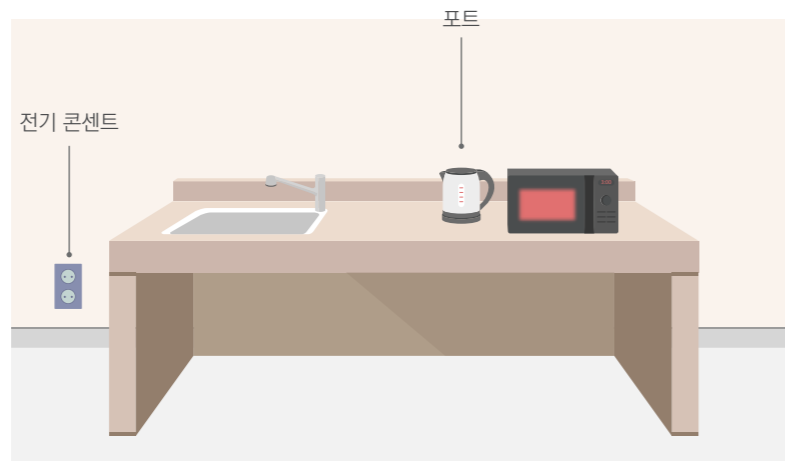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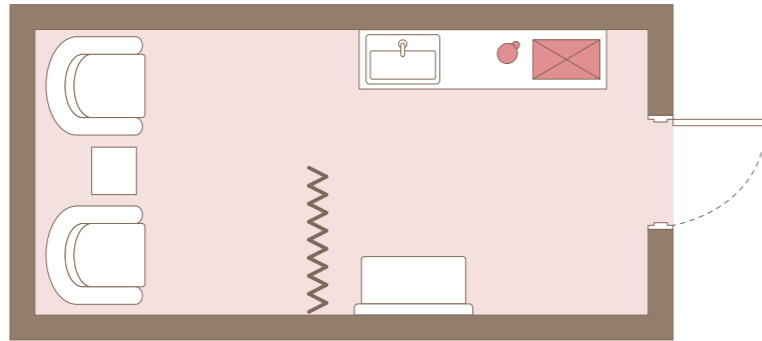
제27호나목(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7호나목(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7호나목(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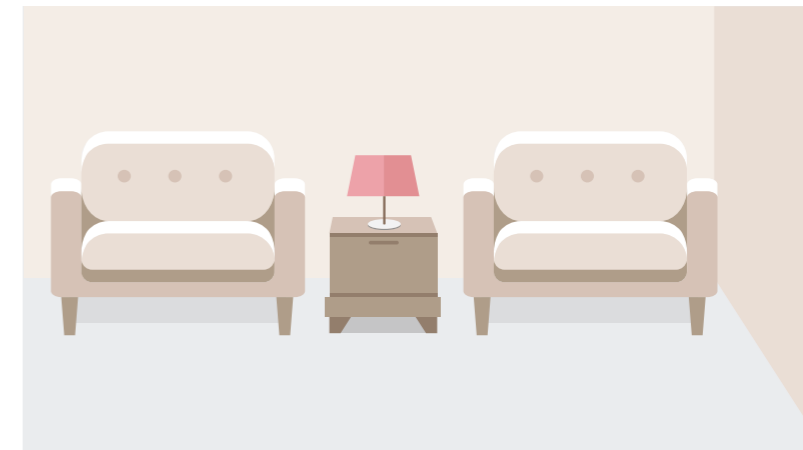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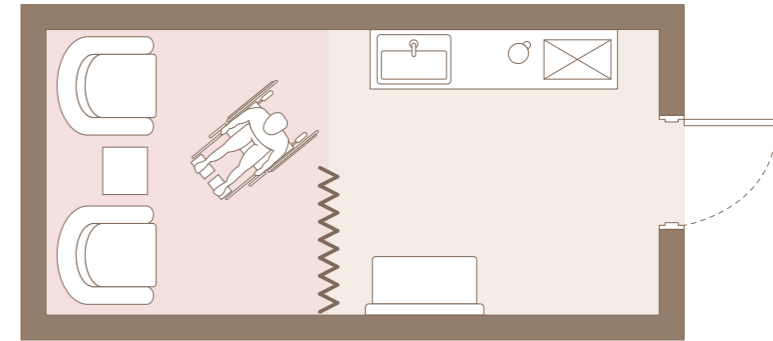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에 편리하도록 전기 콘센트와 포트 등을 설치



- 수유에 편리하도록 전기 콘센트와 포트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수유할 수 있는 공간에는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주변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전면 혹은 측면에 활동공간이 1.4m 이상 X 1.4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 휴게시설 내부 공간에 수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인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할 수 있는 공간에는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주변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전면 혹은 측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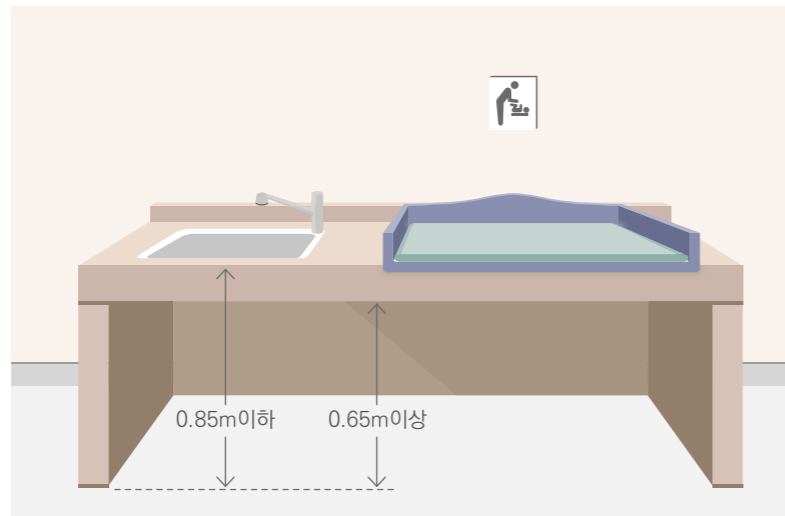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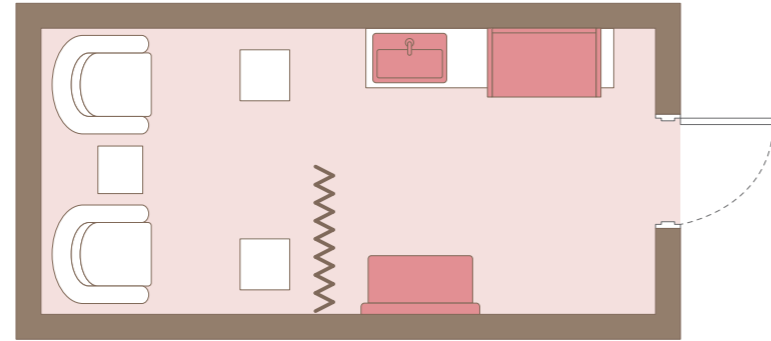
- 수유할 수 있는 공간에는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주변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전면 혹은 측면에 활동공간이 1.4m 이상 X 1.4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 휴게시설 내부 공간에 수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인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A 활동공간

휠체어사용자가 접근가능하도록 임산부 휴게시설 의자 전면 혹은 측면에 1.4m X 1.4m 이상 확보하는 공간을 말한다. [5.6.2 내부구조 산출기준]

★ 일반

휴게시설 내부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인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를 설치



- 휴게시설 내부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인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접이식 기저귀교환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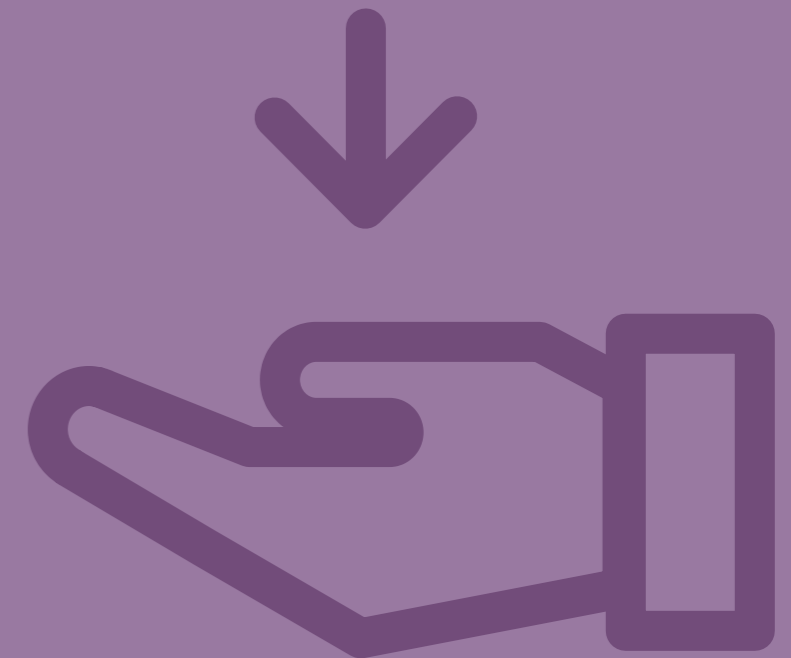


-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설비

6.1 비치용품

6.1.1 비치하여야 할 용품



6.1 비치용품



6.1.1 비치하여야 할 용품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중이용시설에서 휠체어사용자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휠체어 등을 비치하도록 하여 시설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각종 비치용품에 대해 비치여부를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휴게시설내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신중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등 권장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 3)에 맞추어 비치	2.4
일 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1

산출기준 기본사항

- 1 비치용품은 출입구 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같음하여 사용가능함
- 2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 비치 용품을 휠체어사용자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좀 더 시설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3 기타사항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1.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상시설	의무용품	권장용품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2. 문화 및 집회시설		
대상시설	의무용품	권장용품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3. 판매시설		
대상시설	의무용품	권장용품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점	-	음성계산기
4. 교육연구시설		
대상시설	의무용품	권장용품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5. 업무시설		
대상시설	의무용품	권장용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6. 숙박시설		
대상시설	의무용품	권장용품
관광숙박시설	-	점자관광안내책자
7. 장례식장		
대상시설	의무용품	권장용품
장례식장	입식 식탁	-
8. 운동시설		
대상시설	의무용품	권장용품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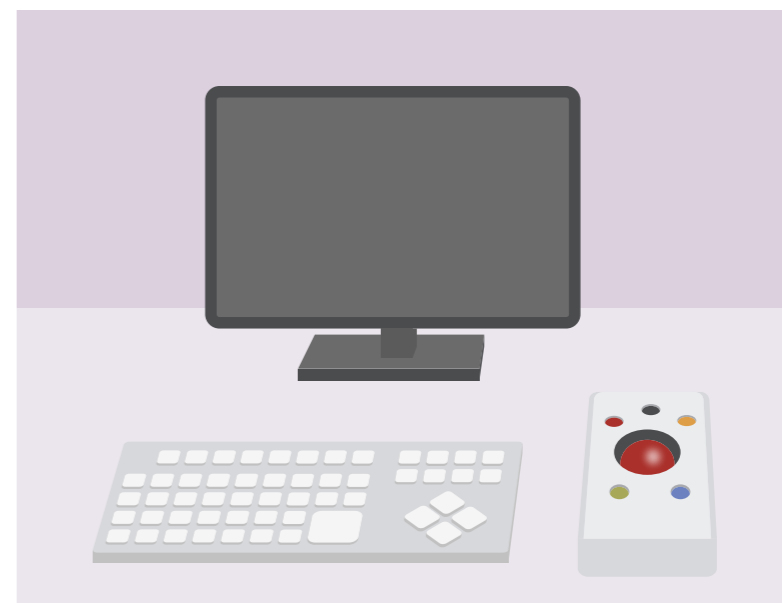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신중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 통신중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음성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등 권장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에 맞추어 비치하여야 합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에 맞추어 비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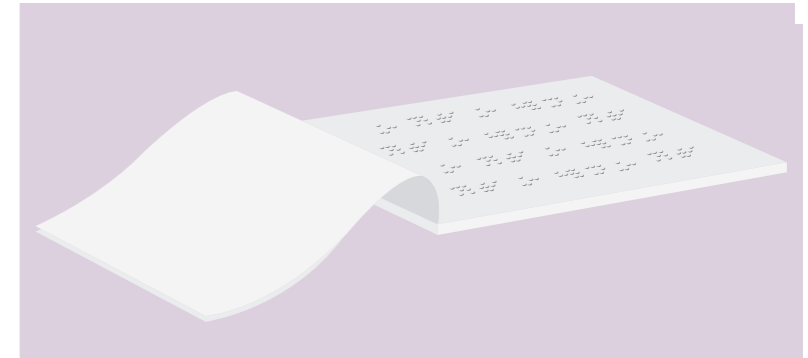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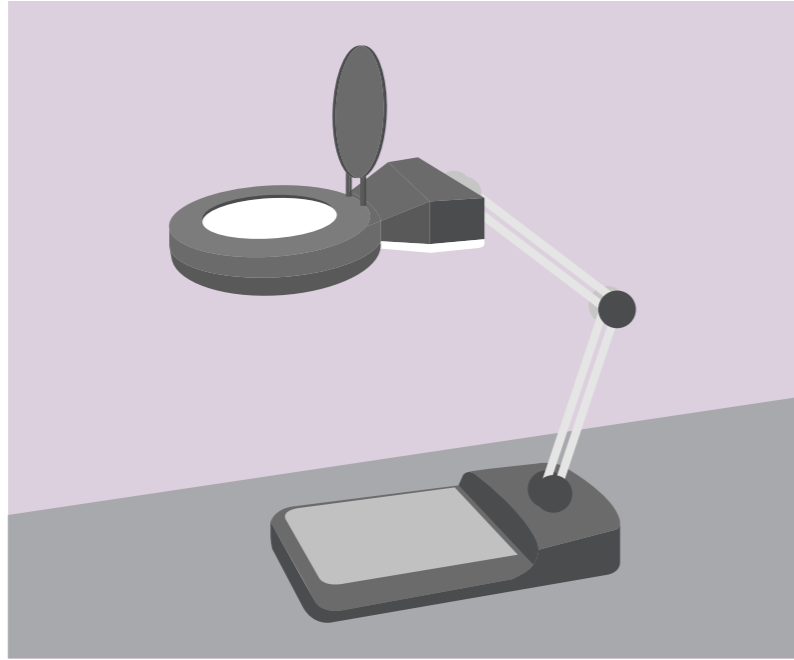
★★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등 권장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 음성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등 권장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에 맞추어 비치하여야 합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에 맞추어 비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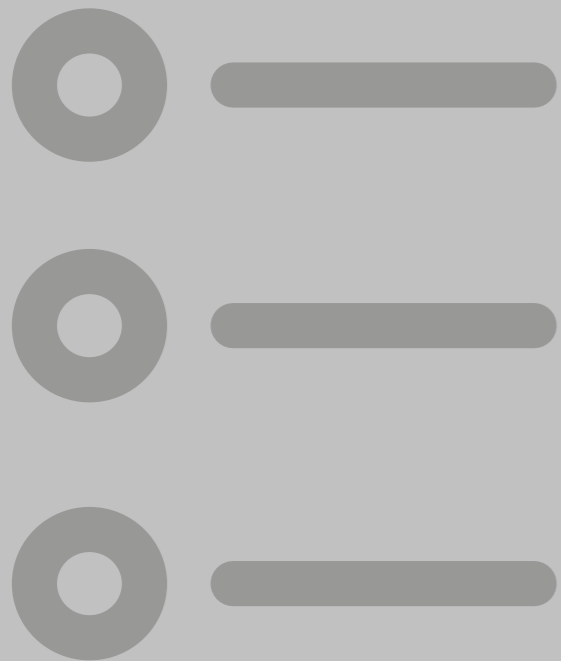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에 맞추어 비치하여야 합니다.

 보청기기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합니다.

7 종합평가





7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편의시설 설치의 종합적 평가
배점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산출기준	평점 : 편의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편의시설 평가	점수
등급 구분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없음	

산출기준 기본사항

가산항목(평가 항목의 총점기준 5%)

- 1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함
- 2 그 외 추가 시설(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조명등 설치, 안내표시가 경로를 따라 찾기 쉽게 설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